

신규발효 FTA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품목별 활용실태 정보수집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2016. 10.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제 출 문

관세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사업』에 관한 용역 중 「신규 발효 FTA협정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품목별 FTA 활용실태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10.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김 기 영

연 구 진

〈연구 주관〉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책임자〉

송 경 은 책임연구원

〈참여연구자〉

권 민 경 연 구 원

윤 호 성 연 구 원

배 철 한 연구보조원

김 설 룡 연구보조원

목 차

I .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2
II .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품목별 FTA 활용실태	4

[한-중국 FTA]

1. 한-중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및 해설	4
제 1 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생산품(제 1 류~제 5 류)	6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제 6 류~제 14 류)	22
제 3 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품등 (제 15 류)	48
제 4 부 조제식료품, 음료·주류와 식초, 담배 등(제 16 류~24 류)	52
제 5 부 광물성 생산품(제 25 류~제 27 류)	80
제 6 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 28 류~제 38 류)	93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 39 류~제 40 류)	138
제 8 부 원피·가죽·모피 등 (제 41 류~제 43 류)	146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등 (제 44 류~제 46 류)	156
제 10 부 펄프, 종이 등 (제 47 류~제 49 류)	164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 50 류~제 63 류)	173
제 12 부 신발류·모자류 등 (제 64 류~제 67 류)	224
제 13 부 돌(石)·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유리제품 등(제 68 류~제 70 류)	233

제 14 부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귀금속·귀금속 등 (제 71 류) ..	243
제 15 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제 72 류~제 83 류)	247
제 16 부 기계류, 전기기기 등 (제 84 류~제 85 류)	287
제 17 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장비 관련품(제 86 류~제 89 류)	306
제 18 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 등 (제 90 류~제 92 류)	318
제 19 부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93 류)	328
제 20 부 잡품(제 94 류~제 96 류)	330
 2. 한-중 FTA 수출 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354
2-1. 수출유망품목의 선정	354
2-2. 수출유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355
2-3. 소결	355
 3 한-중 FTA 와 중국이 제 3 국과 체결한 FTA 와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356
3-1. 한-중 상호 경합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357
3-2. 중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와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분석	358
 4. 수출유망품목 한-중 FTA 활용가이드	365
4-1. 중국의 통관환경 분석	365
4-2. 원산지 절차 분야별 가이드	369
4-3. 소결	375

[한-베트남 FTA]

1. 한-베트남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및 해설 376

제 1 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생산품(제 1 류~제 5 류)	391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제 6 류~제 14 류)	393
제 3 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품등 (제 15 류)	431
제 4 부 조제식료품, 음료·주류와 식초, 담배 등(제 16 류~24 류)	436
제 5 부 광물성 생산품(제 25 류~제 27 류)	468
제 6 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 28 류~제 38 류)	480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 39 류~제 40 류)	520
제 8 부 원피·가죽·모피 등 (제 41 류~제 43 류)	529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등 (제 44 류~제 46 류)	539
제 10 부 펄프, 종이 등 (제 47 류~제 49 류)	547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 50 류~제 63 류)	556
제 12 부 신발류·모자류 등 (제 64 류~제 67 류)	607
제 13 부 돌(石)·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유리제품 등(제 68 류~제 70 류)	617
제 14 부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귀금속·귀금속 등 (제 71 류) ..	627
제 15 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제 72 류~제 83 류)	632
제 16 부 기계류, 전기기기 등 (제 84 류~제 85 류)	671
제 17 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장비 관련품(제 86 류~제 89 류)	701
제 18 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 등 (제 90 류~제 92 류)	713
제 19 부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93 류)	723
제 20 부 잡품(제 94 류~제 96 류)	725

2. 한-베트남 FTA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726
2-1. 수출유망품목 선정	726
2-2. 수출유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726
2-3. 소결	726
3. 한-베트남 FTA 와 베트남이 제 3 국과 체결한 FTA 와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727
3-1. 對베트남 교역현황과 비교우위 품목 선정	727
3-2. 비교우위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729
3-3. 소결	729
4. 수출유망품목 한-베트남 FTA 활용가이드	730
4-1. 베트남의 통관환경	730
4-2. 원산지증명 가이드	732
4-3. 원산지검증 가이드	735
4-4. 소결	737
 부록 1. 한-중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739
부록 2. 한-베트남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744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중국의 내수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보다 앞서 중국 시장선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2012년 본격적인 한-중 FTA 협상을 시작으로 2015년 6월 정식서명에 이르렀다. 한-중 FTA는 EU 및 미국과 더불어 FTA를 통한 수출시장 선점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양국 간 상호 교역의존도 및 산업민감성에 따라 미국과 EU보다 뒤늦게 발효를 맞게 되었다.

한-중 FTA는 중국내 진출한 2만여 개의 우리기업과 40만 명에 달하는 우리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정부는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의 對韓 직접 투자와 중국시장을 겨냥한 미국 및 유럽의 간접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창출을 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고관세 정책을 취하는 국가로 우리기업은 한-중 FTA 활용하여 개별상품의 무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신흥 경제성장국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4,110개의 프로젝트와 372억 달러를 투자하여 일본을 제치고 1위 투자국으로 등극하였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한-아세안 FTA를 통해 이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였으나 자유화의 수준이 낮고, 한-아세안 FTA 이후 추진된 일본과 베트남간의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에 직면하게 되면서 한-베트남 FTA를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한-아세안 FTA 상의 불균형한 상품 양허 수준이 개선되어 향후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한-아세안 FTA에 비하여 FTA 활용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015년 12월 20일 중국과 베트남과의 FTA가 동시에 발효되면서 기업들의 다각적인 FTA 활용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특히 우리 기업은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기존의 아태무역협정(APTA)보다 더 양허개방도가 높은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베트남 수출기업 역시 신규협정이 발효됨으로써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규협정의 적극적인 FTA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역품목의 원산지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 간의 교역특성과 주력산업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고 수출하더라도 협정별로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다. 따라서 개별협정 및 품목별로 복잡난해 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미, 한-터키, 한-콜롬비아, 한-호주 FTA 발효에 앞서 관련 선행연구가

‘12년~’14년 진행된 바 있다. ‘12년 연구는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분석으로 류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석, 수출자의 한·미 FTA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13년 연구는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 분석으로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분석과 유럽권 3개 협정(EU, EFTA, 터키)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을 하였다. ‘14년 연구는 중남미 3대 시장 중 하나인 콜롬비아와 신규 발효된 호주와의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분석하였다. ‘15년 연구는 신규발효 협정인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해설 및 분석하고 영연방 4국(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 하였다.

선행연구에 이어 2016년은 신규발효가 예상되는 중국 및 베트남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해설하고 중국의 경우 기존에 체결하여 활용하고 있던 APTA와의 활용실익을 비교하도록 한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한-아세안 FTA 규정과 한-베트남 규정을 상호 비교해 보도록 한다. 특히 각류별로 기본적인 해설에 덧붙여 류별로 대표적인 수출품목을 선정하여 구체적 원산지판단 사례를 제시하고 중소기업들의 원산지판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리고 중국 및 베트남에 수출하는 품목 중 다른 국가와의 비교우위 품목을 선정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도 분석토록 한다. 특히 중국 및 베트남이 체결한 FTA 중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공통되는 국가들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상호비교 함으로써 협상 후 이행단계에서도 원산지결정기준의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본보고서는 전체품목(제1류~제97류)을 류별로 구분하여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을 분석하고 해설을 수록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과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힌다.

제2장은 한-중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을 수록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류별 품목분류 체계, 류별 하위 세번의 상대국과의 교역동향,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류별 대표교역품목 원산지 판정 사례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류별 대표교역품목의 경우 HS 10단위 품목의 연간 총수출실적이 50만불 이하로 저조한 경우에는 중요성이 미미하여 사례를 생략하였다.

제3장은 비교우위 품목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주요 내용은 중국 시장 내 경합 품목을 선정하고, 아국과 상대국이 공통적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주요 비교우위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하여 동일 물품에 대한 국가 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정도와 지위를 알고자 한다.

제4장은 수출유망품목 또는 당사국내 시장경합 품목에 대해 한-중 FTA 활용 종합가이드를 제시한다. FTA 활용의 핵심인 원산지증명 가이드, 원산지검증가이드, 상대국의 통상환경 등을 수록하여 중소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한-베트남 FTA 역시 위와 동일한 구성으로 진행하여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로 각각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다.

Ⅱ.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품목별 FTA 활용실태

1. 한-중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및 해설

□ 주요내용 개요

- 본 장은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류별(HS 2단위별)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류별로 품목분류구조, 수출동향, 대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해설, APTA와 한-중 FTA간의 활용실익 비교분석으로 구성하였다.
- 류별 원산지결정기준의 분석을 위해 각 류별로 HS 4단위 또는 HS 6단위의 세부적 원산지결정기준 구성현황을 검토하고 주요 품목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의 의미를 해설토록 한다.
- 특히 대표 품목군으로 선정된 30대 HS 2단위 그룹에 대해서는 수출규모가 큰 1개(HS 10단위) 품목을 선별하여 원재료 및 제조공정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원산지결정기준 분석을 추가로 수록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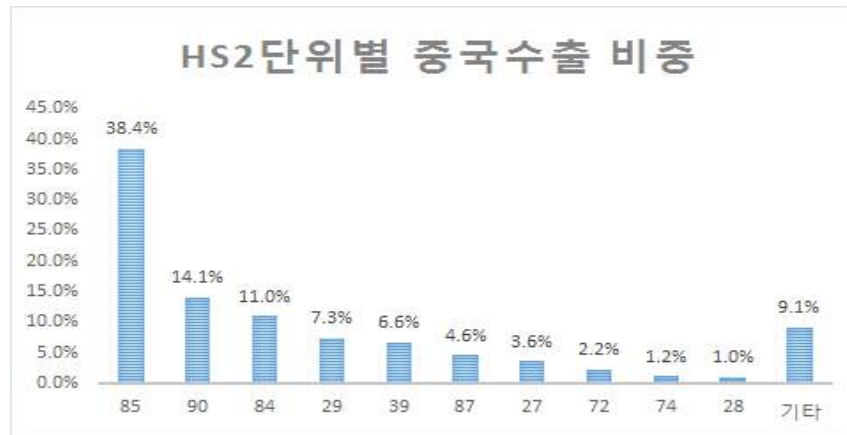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및 해설 구성 예시]

1. 제84류 품목분류 체계
2. 제84류의 對중국 수출동향
3. 한-중 FTA와 APTA 활용실익 비교분석
4. 제8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5. 제84류 대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대표품목의 선정

- 2015년 對중국 총 수출실적은 약 1370억 달러, 평균 수출실적은 14억 4천만 달러로, 총수출 실적과 평균 수출실적의 괴리가 크게 나타난다. 對중국 수출실적을 HS 2단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상위 10대 HS 2단위 그룹이 중국 총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결국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물품은 85류, 90류, 84류, 29류, 39류, 87류, 27류, 72류, 78류, 28류 순으로 주로 화학, 전자전기, 기계 산업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HS 2단위별 대표품목의 선정은 이러한 편차를 고려하여 수출실적 기준으로 수출 집중도가 높은 상위 30대 (HS2단위) 그룹으로 하였다.



- 수출상위 HS2단위 그룹 내에서는 하위 HS10단위 별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규모가 큰 품목을 대표품목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해 원산지결정기준을 해설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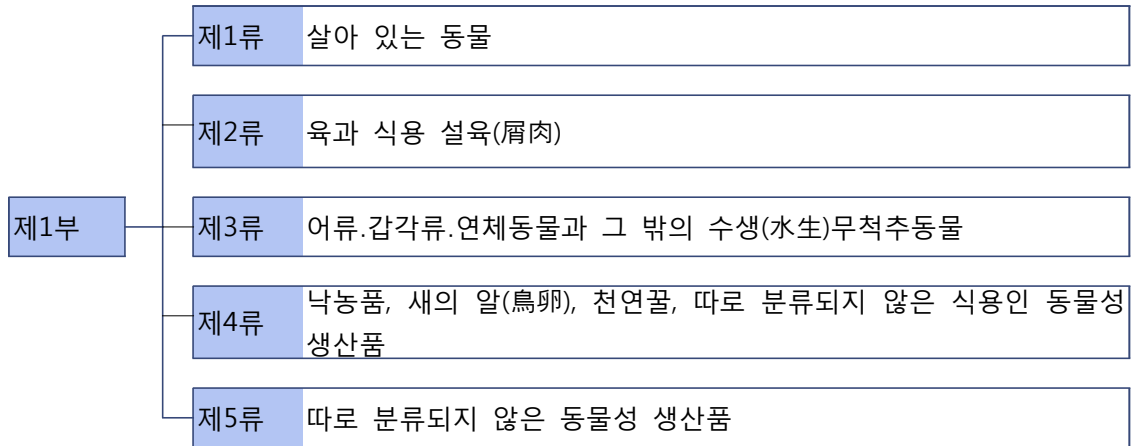
[2015년 對중국 수출 상위 30대 HS2단위 현황]

(단위: 천달러)

연번	HS 2	수출실적	연번	HS 2	수출실적
1	85	52,661,069	16	76	588,485
2	90	19,258,219	17	54	474,135
3	84	15,123,769	18	89	451,480
4	29	10,069,056	19	94	447,262
5	39	9,062,486	20	82	433,002
6	87	6,353,207	21	37	379,093
7	27	4,892,998	22	60	373,470
8	72	3,077,458	23	70	353,941
9	74	1,575,678	24	83	296,025
10	28	1,315,588	25	55	274,073
11	33	1,189,485	26	41	271,084
12	73	1,077,291	27	19	265,436
13	38	899,219	28	62	248,284
14	32	823,881	29	34	235,593
15	40	782,015	30	59	234,734

제1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생산품(제1류~제5류)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屬)이나 종(種)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屬)이나 종(種)의 어린 것도 포함되며,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 건조한 것이 포함된다.



제1류 살아있는 동물

1. 품목분류 체계

제1류에는 ‘살아 있는 동물’을 분류하며,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물품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고 주로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품목번호	품 명
0101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
0102	소
0103	돼지
0104	면양과 산양
0105	가금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으로 한정한다) · 오리 · 거위 · 칠면조와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0106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2. 제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1류의 對중국 수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 수출물품은 0106191000 (살아있는 개)의 한 가지 품목으로 '14년 수출실적은 1천 달러,'15년은 3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106191000	1	-81.9	3	122.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		3	

3. 제1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 품목수
제1류	한중 FTA	31
	무관세	28
합계		59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1류에 총59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1류에 속하는 31개의 세번은 한중FTA 활용실익이 있고, 28개의 세번은 무관세품목이다. 그리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1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한-중 FTA 제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제1류의 전 품목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1류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제3.2조의 가호 및 제3.4조의 가호 및 나호의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동 기준에 따르면 제1류에 분류되는 산동물은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일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살아있는 개)

제1류에 속하는 물품 중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제0106.19.1000호로 살아있는 개가 유일하다.

✓ 품명: 개(Dog) ✓ 세번: 0106.19.1000 ✓ 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개의 생산과정은 모견(수입산 또는 국내산 불문)으로부터 자견이 출생하면 이를 사육한 수 수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간단히 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개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이다. 한-중 FTA 제3.2조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산동물은 제약당사국에서 ‘출생(Born)’하고 ‘사육(Raised)’된, 수출 당시 살아있는 상태의 개만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모견(母犬)을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다면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1. 품목분류 체계

제2류에는 ‘육과 식용 설육(屑肉)’을 분류하며, 10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0201	쇠고기(신선하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5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	소 · 돼지 · 면양 · 산양 ·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의 식용설육(屑肉)(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屑肉)(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	그 밖의 육과 식용설육(屑肉)(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육과 식용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2. 제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제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0202201000(냉동 소갈비), 0202300000(뼈없는 소고기), 0210201000(건조하거나 훈제한 고기)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0202201000(냉도 소갈비)의 ‘14년 수출실적은 9,301천 달러, ‘15년은 10,062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0202300000(뼈 없는 소고기)의 경우 ‘15년 전년대비 수출 증감률은 259%로 대폭 증가했다.

HS 제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 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202201000	9,301	553.5	10,062	8.2
2	0202300000	1,548	-33.2	5,559	259
3	0210201000	40	106.5	31	-22
4	0210190000	16	0	10	-39.8
5	0206299000	7	0	4	-46.6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0,912		15,666	

3. 제2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2류	한중 FTA	79
합계		79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2류에 총79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2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2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한-중 FTA 제2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제2류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2류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제3.2조의 가호 및 제3.4조의 가호 및 나호의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동기준에 따르면 제2류에 분류되는 산동물로부터 획득한 고기는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로부터 획득 될 경우에, 즉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동물을 도축하여 얻은 고기 등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냉동 소갈비)

- ✓ 품명: 냉동 소갈비
- ✓ 세번: 0202.20.1000
- ✓ 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소고기의 생산 과정은 도축장에서 살아있는 소를 실신시켜 방혈하고 도체는 박피하여 내장을 적출하고 두부, 사지단, 꼬리부분을 제거한다. 한중 FTA는 제2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역내에서 출생하고 사육 및 도축하여 생산한 소고기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역외국에서 출생한 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일정기간 사육하고 도축하거나, 역외국에서 사육된 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도축만 하여 소고기를 얻을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 품목분류 체계

제3류는 제0301호부터 제0308호 까지 총 8개의 호로 구성된다. 8개의 호를 크게 분류하는 기준은 척추의 유무에 따라 수생척추동물인 어류는 제0301호에서 제0305호까지, 수생무척추동물은 다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것으로 구분하여 제0306호~제0308호가 이에 속한다.

품목번호	품 명
0301	활어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s)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s)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4	어류의 필레(fillets)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건조한 어류·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s)(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s)(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s)(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8	수생(水生)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s)(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2. 제03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0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0307491020(냉동 오징어), 0303897000(삼치), 0303630000(대구)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0307491020(오징어)의 '14년 수출실적은 38,803천 달러, '15년은 37,362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0303897000(삼치)의 경우 '15년 전년대비 수출 증감률은 85.7%로 타 품목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0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의 수출입동향(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307491020	38,803	-45	37,362	-3.7
2	0303897000	13,537	-51.9	25,134	85.7
3	0303630000	22,156	-10.7	20,361	-8.1
4	0307991900	8,197	5.6	16,721	104
5	0303902010	24,161	-29.1	13,948	-42.3
6	0303310000	11,537	-38.1	9,182	-20.4
7	0303550000	3,779	89.1	6,940	83.7
8	0303670000	22,194	-8.3	6,184	-72.1
9	0303430000	3,272	117.5	5,144	57.2
10	0303899099	4,192	-32.9	5,095	21.5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20,863		199,410	

3. 제3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3류	한중 FTA	116
	양허제외	1
	무관세	27
	APTA	113
합계		257

APTA 활용실익 세번

0301.91.90, 0301.92.90, 0301.93.90, 0301.94.91, 0301.94.92, 0301.95.90, 0301.99.92, 0301.99.93, 0301.99.99, 0302.19.00, 0302.21.00, 0302.22.00, 0302.23.00, 0302.24.00, 0302.29.00, 0302.31.00, 0302.32.00, 0302.33.00, 0302.35.20, 0302.39.00, 0302.41.00, 0302.42.00, 0302.43.00, 0302.44.00, 0302.45.00, 0302.46.00, 0302.47.00, 0302.51.00, 0302.52.00, 0302.53.00, 0302.54.00, 0302.55.00, 0302.56.00, 0302.59.00, 0302.72.00, 0302.73.00, 0302.74.00, 0302.79.00, 0302.81.00, 0302.82.00, 0302.83.00, 0302.84.00, 0302.85.00, 0302.89.10, 0302.89.20, 0302.89.30, 0302.89.40, 0302.89.90, 0303.11.00

0303.12.00, 0303.19.00, 0303.23.00, 0303.24.00, 0303.25.00, 0303.26.00, 0303.29.00
 0303.31.10, 0303.31.90, 0303.32.00, 0303.33.00, 0303.41.00, 0303.42.00, 0303.45.20
 0303.49.00, 0303.51.00, 0303.53.00, 0303.54.00, 0303.55.00, 0303.56.00, 0303.57.00
 0303.63.00, 0303.64.00, 0303.65.00, 0303.67.00, 0303.68.00, 0303.69.00, 0303.81.00
 0303.82.00, 0303.83.00, 0303.84.00, 0303.89.10, 0303.89.20, 0303.89.30, 0303.89.90
 0304.31.00, 0304.32.00, 0304.33.00, 0304.39.00, 0304.41.00, 0304.42.00, 0304.43.00
 0304.44.00, 0304.45.00, 0304.46.00, 0304.49.00, 0304.51.00, 0304.52.00, 0304.53.00
 0304.54.00, 0304.55.00, 0304.59.00, 0305.31.00, 0305.32.00, 0305.39.00, 0305.61.00
 0305.62.00, 0305.63.00, 0306.12.00, 0306.16.11, 0306.16.21, 0306.17.11, 0306.17.21,
 0307.49.00

중국은 제3류에 총257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3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16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27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3류에는 27개의 무관세품목이 존재하므로 이들 품목의 경우 FTA 활용이유가 없다. 한중 FTA 협정세율보다 APTA 협정관세가 더 낮은 품목이 113개로 이들 품목은 APTA 활용을 통한 수출 증대가 가능할 것이다.

4. 제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3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한-중 FTA의 제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이다.

(기본해설) 어류가 분류된 제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이다. 한중 FTA 제3.2조 가호 및 제3.4조 라호, 사호, 아호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라. 그 당사국의 영토,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뱃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사.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수산물
아.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위의 사호에 언급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
....
* 양식이란 정기적인 바양,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 수생생물을 알 치어 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제3.4조 라호는 당사국 영토 또는 영해 내에서 획득되는 어류 등의 경우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 등의 방법으로 획득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사호는 당사국의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상품이나 수산물이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획득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또한 아호에서는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 선박에서 사호에서 언급된 상품만 사용하여 가공한 상품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제3류에 속하는 물품 중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제 0307.49.1020호(냉동오징어)이다.

✓ 품명: 냉동 오징어 ✓ 세번: 0307.49.1020 ✓ 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수산물의 획득은 특성상 ‘양식을 통한 생산’과 ‘선박에 의한 획득(어로)’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중 선박에 의한 획득의 경우는 영역의 범위 면에서는 영해내 어로에 의한 획득과 영해 밖 어로에 의한 획득으로 구분되며, 선박의 종류에 따라 협정에 따른 자국선박에 의한 어로와 자국선박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오징어는 양식을 통한 생산이 불가능하고 근해 또는 심해에서 어로활동을 통해 생산되므로 선박에 의한 획득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협정문에서 규정하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때 어로행위가 영해 내에서 수행된 경우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나 영해 밖에서 수행된 어로행위에 의해 획득된 수산물의 경우 어로행위에 사용된 선박의 국적이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중 FTA의 경우 영해 밖에서 어로행위가 수행될 때 사용된 선박이 ‘국기게양+당사국 등기/등록’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국선박일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 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생산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fats)과 기름(oils)(밀크에서 얻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s)
0406	치즈와 커드(curd)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저장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았거나 찐 것·성형한 것·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저장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409	천연꿀
041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2. 제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밀크와 크림으로 0401509000, 0401100000, 0401200000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0401509000의 '14년 수출실적은 9,502천 달러, '15년은 9,628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0401200000의 경우 '15년 전년대비 수출 증감률은 393.2%로 급증하였다.

HS 제0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 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401509000	9,502	54	9,628	1.3
2	0401100000	5,561	201.7	5,177	-6.9
3	0401200000	487	-55.2	2,402	393.2
4	0402999000	2,766	-14.6	1,262	-54.4
5	0403109000	336	515.7	648	92.6
6	0403101000	188	-31.7	267	42
7	0406300000	225	382.7	262	16.2
8	0406909000	101	-39.3	237	135.6
9	0401409000	22	13.8	226	909.6
10	0402101010	-	-100	130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0,204		20,406	

3. 제4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4류	한중 FTA	25
	양허제외	9
	무관세	2
	APTA	3
합계		39
APTA 활용실익 세번		
0402.10.00, 0402.21.00, 0405.20.00		

중국은 제4류에 총39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4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25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2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4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3개의 세번이 존재하므로 한중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비교하여 보다 효과가 높은 것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제4류에는 9개의 양허제외 세번이 있으므로 이들 품목은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제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4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한-중 FTA의 제4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이다.

(기본해설) 제0401호~제0403호에는 우유 및 크림이 분류된다. 우유는 살아있는 젖소로부터 생산되므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젖소로부터 얻어진 우유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크림이나 제0404호!0406호의 유장, 버터, 치즈 등 우유로부터 생산되는 물품도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물품인 우유로부터 생산되어야 한다.

제0407호~0410호는 낙농품 외의 물품들로 조란과 천연꿀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 물품들 역시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므로 역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이다.

만약 이 물품들이 완전생산기준이 아니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일 경우에는 원산지 판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국산 닭(제0105호)를 수입하여 이로부터 조란(제0407호)을 생산하는 경우 제01류에서 제04류로 2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원산지상품이라 할 수 있지만 동일한 경우 한-중 FTA는 완전생산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닭도 중국산 또는 한국산이어야 한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냉동 크림 ✓ 세번: 0401.50.9000 ✓ 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크림은 버터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원유 검사를 통해 제조 적합도를 판단한다. 다음으로 선별된 원유를 크림을 분리할 수 있도록 35~40℃에서 따뜻하게 가열한 후 원심분리를 통해 유지방을 분리한다.

분리된 유지방 덩어리인 크림은 세균에 노출되지 않도록 65℃에서 30분간 살균을 한후 냉각기에서 냉각시켜 포장한다.

한-중 FTA는 제4류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젖소로부터 얻은 우유를 가공하여 크림을 생산하여야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501	인모(人毛)(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인모(人毛)의 웨이스트(waste)
0502	돼지(pigs'·hogs'·boars')의 뺏뺏한 털(bristles)과 헤어(hair), 오소리 털(hair)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hair),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4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염장한 것·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5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해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새의 솜털(청정·소독이나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
0506	뼈와 혼코어(horn-cores)[가공하지 않은 것.탈지(脫脂)한 것.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산(酸) 처리를 하거나 젤라틴을 제거(degelatinised)한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7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과 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8	산호와 이와 유사한 재료(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나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 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10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빗(civet)과 사향(musk),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 여부를 불문한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 2007년도에 제0503호와 제0509호는 삭제됨

2. 제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0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0505100000(오리털 및 거위털)로 동물품의 '14년 수출실적은 22,374천 달러, '15년은 6,841천 달러를 기록하였고 전년대비 약 70%감소하였다.

- 1) 1988년 HS 협약의 품목분류표 제정당시에 제0503호와 제0509호에는 특정한 생산품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무역거래량이 감소됨에 따라 해당 호를 삭제함으로 빈 번호가 되었다. 현재 이들은 모두 제0511호로 분류한다.

HS 제0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 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505100000	22,374	-38.5	6,841	-69.4
2	0508009000	1,014	-6.5	960	-5.3
3	0511919000	356	28	403	13.4
4	0504003000	-	0	309	0
5	0511999090	7	0	61	790.2
6	0511991000	-	0	46	0
7	0508002050	-	-100	43	0
8	0506901020	-	0	22	0
9	0504001010	-	-100	12	0
10	0501000000	4	120.3	11	138.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3,758		8,715	

3. 제5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5류	한중 FTA	33
	무관세	4
	APTA	6
합계		43
APTA 활용실익 세번		
0504.00.11, 0504.00.14, 0504.00.21, 0504.00.29, 0504.00.90, 0505.10.00		

중국은 제5류에 총43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5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33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4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5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6개의 세번이 존재하므로 한중FTA와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비교하여 보다 효과가 높은 것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제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5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한-중 FTA는 제5류의 품목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0501호~제0502호는 인모와 수모로 인모는 체약당사국 사람으로부

터 채집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0502호에 속하는 수모의 경우 주로 산동물(제01류)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되므로 비원산지 산동물로부터 제0502호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0504호는 동물의 내장이 분류되는데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므로 내장을 적출할 수 있는 원재료인 제1류는 체약국에서 완전생산 되어야 한다. 한-중 FTA는 산동물의 완전생산기준으로 출생+사육을 요하므로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동물로부터 적출한 내장(제0504호)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0505호~제0506호는 동물의 깃털이나 뼈 등이 분류되는데 역시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므로 비원산지 동물(제01류)로부터 깃털이나 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0507호는 동호에서 분류하는 특정한 동물이나 어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뿔, 털, 발톱 등이 분류되는데 동 호의 원재료는 제1류와 제3류에 분류된다. 결국 제1류와 제3류를 역내에서 출생 및 사육한 동물에서 획득 하거나, 선박의 등록요건을 충족한 어류에서 획득할 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0508호~제0511호는 산호, 패각, 동물의 분비물, 기타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들이 분류된다. 산호의 경우 역내의 영역 내에서 채취하거나 영해 밖에서 획득하는 경우 선박요건(당사국 등기/등록+국기계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패각이나 동물성 향료, 기타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들은 제1류 또는 제3류로부터 생산되므로 비원산지 동물이나 어류로부터 동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 품명: 오리털 ✓ 세번: 0505.10.0000 ✓ 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제5류의 물품은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므로 오리로부터 획득하는 오리털은 원재료인 오리 역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역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오리로부터 획득하여야 오리털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부 식물성 생산품(제6류~제14류)

제 2 부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와 괴경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나 멜론의 껍질
	제9류	커피.차.마테와 향신료
	제10류	곡물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제12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이나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lac), 검.수지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s)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6류 살아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601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과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것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0602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cuttings)와 접붙임용 가지(slips), 버섯의 종균
0603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건조한 것·염색한 것·표백한 것·침투한 것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4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풀·이끼와 지의(地衣)(신선한 것·건조한 것·염색한 것·표백한 것·침투한 것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제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0602901010(난초), 0602901090, 0602909090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0602901010(난초)의 '14년 수출실적은 5,295천 달러, '15년은 4,403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0602909090의 경우 '15년 전년대비 수출이 34.6% 소폭 증가했다.

HS 제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602901010	5,295	-51.3	4,403	-16.8
2	0602901090	1,440	1245.1	1,395	-3.1
3	0602909090	435	1330.8	585	34.6
4	0602901060	156	0	83	-46.5
5	0604901000	15	0	55	266.1
6	0602901040	76	0	34	-55
7	0603110000	7	0	10	37.9
8	0603139000	29	0	8	-72.7
9	0603199000	2	-59.4	6	160.4
10	0602109000	-	0	1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7,455		6,580	

3. 제6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6류	한중 FTA	14
	무관세	8
	APTA	9
합계		31
APTA 활용실익 세번		

0602.20.90, 0602.90.99, 0603.11.00, 0603.12.00, 0603.13.00

0603.14.00, 0603.15.00, 0603.19.00, 0603.90.00

중국은 제6류에 총31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6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4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8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7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9개의 세번이 존재하므로 한중FTA와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비교하여 보다 효과가 높은 것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제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6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6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6류에 속하는 살아있는 식물은 완전생산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한 중 FTA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서 체약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되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영연방 국가들과 맺은 FTA는 제6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6류의 품목구조 체계 및 생산구조상(제6류에 속하는 상품은 재료와 상품 모두 제6류이다.) 완전생산기준과 동일하게 풀이된다.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와 괴경(塊莖)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2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kale)과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와 치커리(시커리엄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악(celeriac)·무와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	채두류(菜豆類)(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1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파쇄한 것이나 가루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714	매니옥·참뿌리·샬롯·돼지감자·고구마와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른 것인지 펠릿 모양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의 심(sago pith)

2. 제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0703209000(마늘), 0710809000(취·고려엉겅퀴의 기타의 품목), 0706904000(도라지)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0703209000(마늘)의 '14년 수출실적은 전무하였으나 '15년은 243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0703209000의 경우 '15년 전년대비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HS 제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703209000	-	-100	243	0
2	0710809000	14	-67.8	67	396
3	0706904000	-	0	48	0
4	0712902010	20	0	41	100.4
5	0711905099	36	0	36	0.2
6	0710100000	-	0	33	0
7	0712909000	9	-48.9	32	248.8
8	0709609000	-	0	30	0
9	0711400000	84	0	22	-74
10	0711905091	-	-100	18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73		621	

3. 제7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7류	한중 FTA	110
	무관세	11
합계		121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7류에 총121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7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10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1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7류에는 APTA 양허품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APTA 활용실익 또한 없다.

3. 제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7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한-중 FTA는 제7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완전생산기준 단일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7류에 속하는 식용의 채소 및 뿌리들에 대해 한-중 FTA는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 제3.2조 및 제3.4조 가호에 따라 식물성 물품의 완전생산기준은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배 및 수확’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역외국에서 종자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파종을 하고 재배 및 수확을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제7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이 한-호주 FTA에서처럼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원산지 판단은 유사하다. 예를 들어 냉동, 건조, 저장처리 등이 포함되는 품목(제0710호~제0712호)의 경우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재료가 제0701호~0709호에 속하는 채소류 등이므로 동일한 류(2단위)에 속한다.

따라서 제0701호~제0709호에 속하는 재료들을 역외에서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 0710호~0712호에 속하는 물품의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결국 이들 재료를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므로 완전생산기준과 동일한 결과가 될 것이다.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나 멜론의 껍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801	코코넛·브라질너트(Brazil nuts)와 캐슈너트(cashew nuts)(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s)]을 포함하며, 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구아버·망고와 망고스틴(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포도(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s)[파파야(papayas)](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사과·배와 마르멜로(quinces)(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와 슬로(sloes)(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0812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냉동·건조하거나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제08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0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0802410000(밤), 0813409000(견과일), 0802120000(껍데기를 벗긴 아몬드)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0802410000(밤)의 '14년 수출실적은 전무하였으나 '15년은 243천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0802120000(껍데기를 벗긴 아

몬드)의 경우 '15년 전년대비 증감율은 42,076%('15년 실적:169 천달러)로 수출실적이 '14년에는 400달러였으나, '15년 급증하였다.

HS 제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 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802410000	14,509	-34.6	9,574	-34
2	0813409000	9	-54.7	336	3708.2
3	0802120000	-	135.3	169	42076.8
4	0806100000	-	0	155	0
5	0802110000	-	0	150	0
6	0811909000	-	-100	117	0
7	0802909000	19	0	70	271
8	0813300000	2	-37.2	60	3019.8
9	0813500000	6	6.3	37	472.9
10	0810909000	3	508	33	897.5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4,550		10,743	

3. 제8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8류	한중 FTA	68
	양허제외	1
	무관세	2
	APTA	21
합계		92

APTA 활용실익 세번

0801.11.00, 0801.12.00, 0801.19.90, 0802.80.00, 0803.10.00, 0803.90.00
 0804.30.00, 0804.40.00, 0804.50.20, 0805.50.00, 0805.90.00, 0807.11.00
 0807.19.10, 0807.19.20, 0807.19.90, 0808.30.10, 0808.30.20, 0810.50.00
 0810.70.00, 0810.90.10, 0810.90.90

중국은 제8류에 총92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8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68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2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1개의 무관세 품목이 존재하고, APTA 양허품목은 21개 분포하고 있다 .

4. 제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8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한-중 FTA는 제8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8류에 속하는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들은 제6류에 해당하는 해당 식용수목으로부터 수확되는 것이다. 비원산지 과실수(제6류)로부터 해당 과실을 수확할 경우 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한다.

그러나 과실의 생산과정(묘목 식립- 재배-수확) 과 품목분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완전생산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생물의 특성상 과실을 포함한 과실수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수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중 FTA상 식물성 물품의 완전생산기준은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배 및 수확’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비원산지 묘목(제6류)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재배하고 과실(제8류)을 수확 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될 것이다.

제9류 커피·차·마테와 향신료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 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0902	차류[향(flavoured)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0903	마테(mate)
0904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파쇄하거나 분쇄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5	바닐라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7	정향[과실·꽃과 꽃대로 한정한다]
0908	육두구(nutmeg)·메이스(mace)와 소두구(cardamoms)
0909	아니스(anise)·대회향(badian)·회향(fennel)·코리앤더(coriander)·커민(cumin)이나 캐러웨이(caraway)의 씨, 쥬니퍼의 열매(juniper berries)
0910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2. 제9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0901210000(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 0902400000(홍차), 0902200000(녹차)등이다.

HS 제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 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901210000	2,022	86.9	945	-53.3
2	0902400000	1,373	-2.9	513	-62.6
3	0902200000	88	548.7	504	472.7
4	0901110000	127	-54.4	161	27.1
5	0904120000	39	-17.3	91	135
6	0910911000	66	-50	87	32.3
7	0902100000	43	-6.3	84	95.1
8	0904220000	19	-84.8	48	160.5
9	0901220000	7	-96.7	27	292.3
10	0910111000	-	0	20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835		2,506	

3. 제9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9류	한중 FTA	45
	APTA	3
합계		48
APTA 활용실익 세번		
0904.12.00, 0904.21.00, 0904.22.00		

중국은 제9류에 총48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9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45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3개의 세번은 APTA 활용실익이 큰 품목으로 나타난다.

4. 제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9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0901호는 커피로 볶지 않은 커피와 볶은 커피, 그리고 기타의 대용물 3가지로 분류된다. 제0901.11호~제0901.12호는 볶지 않은 커피, 즉 생두가 분류된다. 생두(제9류)는 커피나무(제6류)로부터 생산되므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커피나무가 역내에서 재배되고 이 나무로부터 생두가 수확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원산지 커피나무 묘목 수입하여 체약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이로부터 커피 열매를 수확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0901.21호~제0901.22호는 볶은 커피로 생두를 로스팅하여 생산한다. 따라서 생두를 수입하여 로스팅 하거나, 볶은 커피를 수입하여 다시 볶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0901.90호는 원두커피나 볶은 커피로부터 커피의 각과 피 혹은 커피 대용물을 만들게 되는데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려면 결국 역내에서 생산된 원두커피(제9류)나 볶은커피(제9류)에서 생산하여야 원산지상품이 될 수 있다.

차(제0902호)나 마태(제0903호)는 차나무(제6류)로부터 생산하므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려면 역내에서 재배된 차나무로부터 수확하여야 한다. 따라서 역외국가에서 수확한 차를 수입하여 건조시키고 소포장을 하는 것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0904호는 후추 및 고추류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후추나 고추 모두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열매로 특히 고추의 경우 건조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가 분류된다. 제0904.11호~제0901.12호는 후추가 분류되는데 부수지 않은 통후추(제0901.11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파쇄나 분쇄를 하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부수거나 잘게 부순 후추(제0901.12호)를 수입하여 이를 역내에서 분말로 만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이는 후추의 생산지 및 생산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된다.

제0904.21호~제0904.22호에는 신선한 고추(제0709호)를 건조하거나 잘게 부순 것이 분류된다. 신선한 고추를 수입하여 이를 역내에서 건조하거나, 건조한 고추(제0904.21호)를 수입하여 이를 잘게 부숴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경우(제0904.22호) 역내에서 재배 및 수확된 고추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0905호는 바닐라열매와 바닐라 가루가 분류된다. 바닐라 식물(제6류)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재배 및 수확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바닐라열매(제0905.10호)를 수입하여 이를 잘게 부수어 가루로 만드는 경우(제0905.20호) 역내에서 재배 및 수확된 것이 아니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0906호는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으로 제0906.11~19호는 부수지 않은 계피가 분류되고, 제0906.20호에는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계피가 분류된다. 부수지 않은 계피는 계피나무의 어린가지의 내피를 벗겨 생산하므로 역내에서 재배된 계피나무로부터 수확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제0906.20호의 부순 계피는 부수지 않은 계피(제0906.11~19호)로부터 생산되므로 부수지 않은 상태의 계피를 역외에서 수입하여 역내에서 분쇄하거나 분말을 내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0907~제0910호에는 정향, 육두구, 아니스 등의 기타향신료가 분류되는데 이 호의 향신료들 역시 해당 식물로부터 채취되는 것이므로 결국 해당 식물을 역내에서 재배하고 이로부터 수확한 경우에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0류 곡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001	밀과 메슬린(meslin)
1002	호밀
1003	보리
1004	귀리
1005	옥수수
1006	쌀
1007	수수
1008	메밀 · 밀리트(millet)이나 카나리시드(canary seeds), 그 밖의 곡물

2. 제10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10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1006301000(멥쌀), 1008900000(그밖의 곡물)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1006301000(멥쌀)이며 2014년 수출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10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 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006301000	-	0	76	0
2	1008900000	-	0	2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		78	

3. 제10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10류	한중 FTA	12
	양허제외	16
	무관세	8
합계		36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10류에 총36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10류에는 무관세품목 8개, 양허제외 품목 16개, 한중 FTA 활용가능 품목이 12개 분포하고 APTA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제1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10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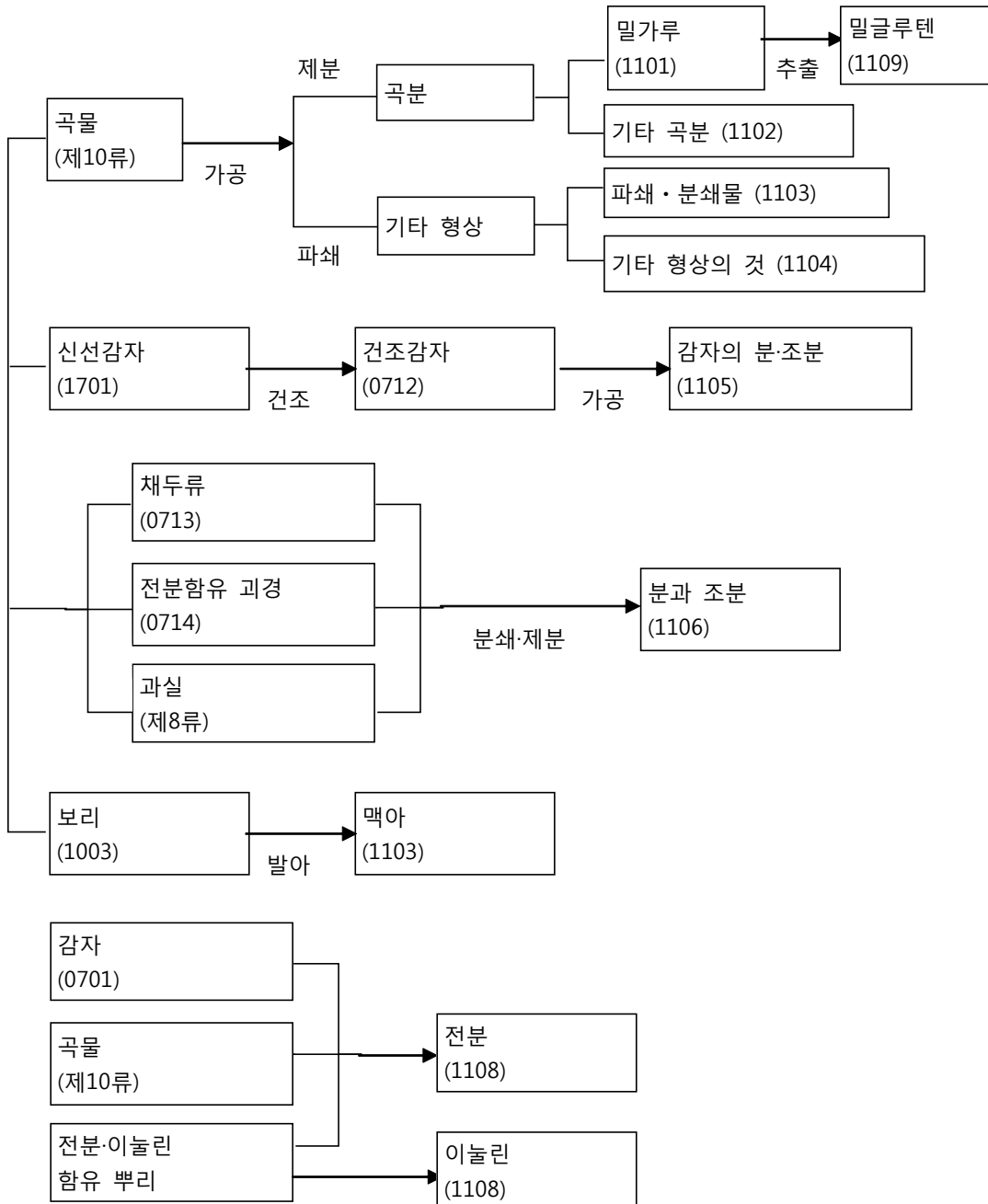
(구성분석) 제10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이다.

(기본해설) 제10류에 분류되는 곡물은 일반적으로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 상관없이 낱알형태 이고 껍질을 벗기지 않거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다만 쌀의 경우에는 현미나 정미된 것도 제10류에 분류된다. 그러므로 제10류에 분류되는 곡물들은 역내에서 재배되고 이로부터 수확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 품목분류 체계

[HS 제11류의 세번변경 흐름도]



품목번호	품 명
1101	밀가루나 메슬린(meslin)의 고운가루(flour)
1102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의 고운가루(flour)는 제외한다]
1103	곡물의 부순 알곡(groats) · 거친 가루(meal)와 펠릿(pellets)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d)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이나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germ)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d) 모양인 것이나 잘게 부순 것
1105	감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 플레이크(flaked) · 알갱이와 펠릿(pellets)
1106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제0714호의 사고(sago) · 뿌리.괴경이나 제8류 생산품의 고운가루(flour) · 거친 가루(meal)와 가루(powder)
1107	맥아(볶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108	전분, 이눌린
1109	밀의 글루텐(건조 여부를 불문한다)

2. 제11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1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1101001000(밀가루), 1106300000(제8류 물품의 것), 1104309000(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의 기타의 품목)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1101001000(밀가루)이며 전년대비 10.3%가 감소하였다.

HS 제1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101001000	2,476	44.2	2,221	-10.3
2	1106300000	59	47.1	118	98.9
3	1104309000	-	0	117	0
4	1102909000	11	-59.7	73	568.7
5	1103199000	54	1227.1	36	-33.5
6	1106100000	-	0	30	0
7	1108121000	30	228.8	26	-14.3
8	1104120000	-	0	23	0
9	1104301000	16	2363.6	11	-27.9
10	1107209000	-	0	10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691		2,682	

3. 제11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11류	한중 FTA	23
	양허제외	11
	APTA	1
합계		35
APTA 활용실익 세번		
1106.30.00		

중국은 제11류에 총35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11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23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APTA 적용이 가능한 품목은 1개로 나타난다. 특히 제11류에는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지 않은 양허제외품목이 11개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제1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11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1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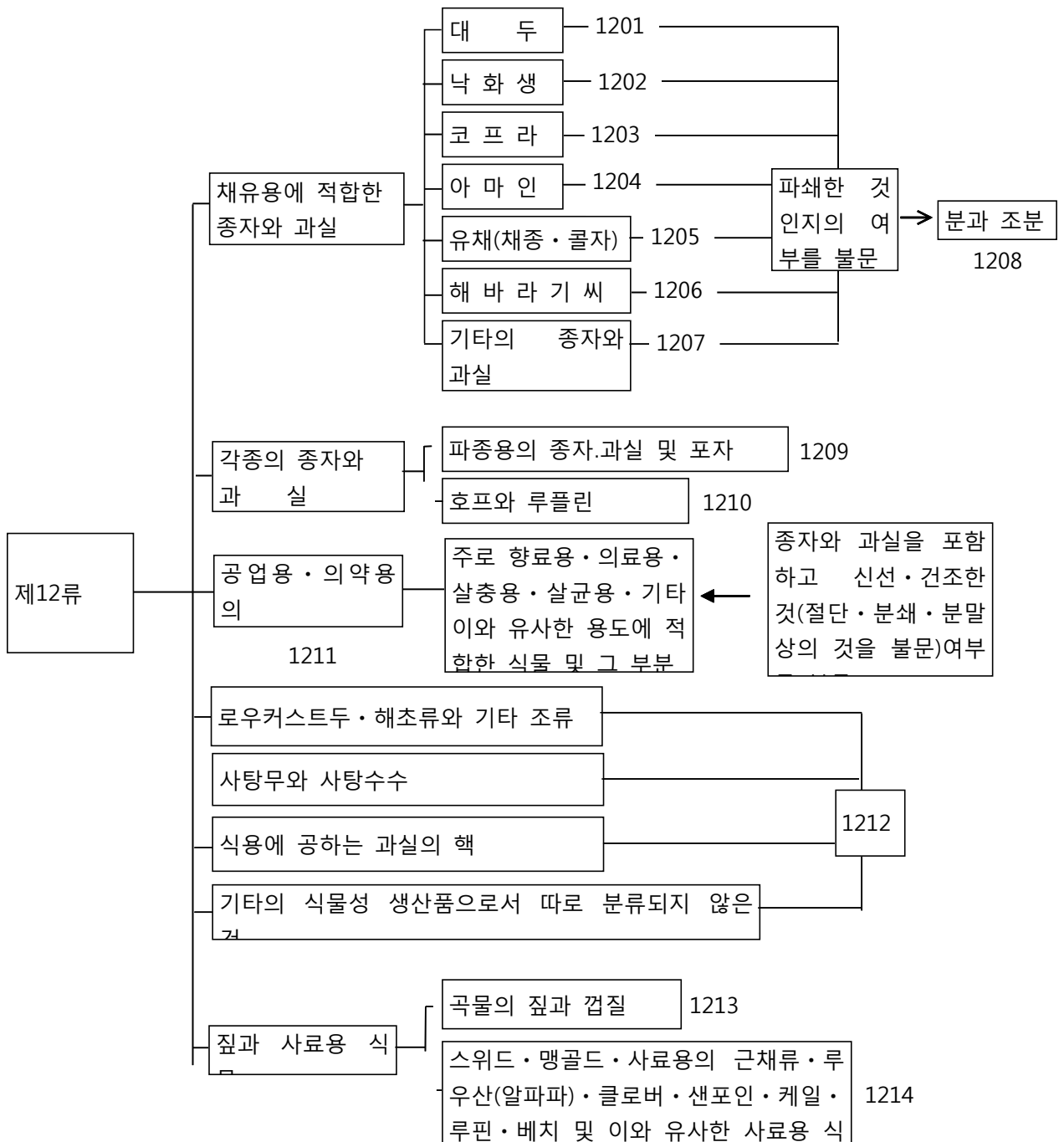
(기본해설) 제11류는 제분공업의 생산품으로 주로 제10류의 곡물들을 제분하여 얻어진다. 따라서 역외국가에서 곡물(제10류)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분과정을 거쳐 제11류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다른 FTA들은 제11류의 물품 중에서 쌀(제1006호)을 수입하여 제11류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한-중 FTA는 11류의 모든 품목에 완전생산기준을 도입하여 매우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택하고 있다.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이나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 품목분류 체계

[제12류의 품목분류 체계도]



품목번호	품 명
1201	대두(파쇄 여부를 불문한다)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거나 파쇄 여부를 불문한다)
	코프라(copra)
1204	아마씨(파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05	유채[레이프(rape)나 콜자(colza)]씨(파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06	해바라기 씨(파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08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09	파종용 종자·과실과 포자
1210	홉 콘(hop cones)(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하거나 가루로 하거나 펠릿 모양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루플린(lupulin)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분쇄나 가루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s).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 여부를 불문한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1213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분쇄·압착하거나 펠릿 모양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14	스위드(swedes)·맹골드(mangolds)·사료용 뿌리채소류·건초·루우산(알팔파)·클로버·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s)·베치(vetches)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생산품(펠릿 모양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 제12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1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1211201391(본삼), 1209912000(무 종자), 1211201311(본삼)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1211201391(본삼)이며 전년대비 6.1%가 감소하였다. ‘15년 기준 수출실적이 두 번째로 높은 1209912000(무 종자)의 경우 전년대비 111.4% 수출 증가하였다.

HS 제1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 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211201391	16,952	0	15,914	-6.1
2	1209912000	3,975	8.7	8,402	111.4
3	1211201311	7,792	0	5,762	-26.1
4	1212211010	2,565	-9.9	3,976	55
5	1212212020	2,207	-38.3	3,037	37.6
6	1209919000	2,601	17.4	2,236	-14
7	1209914000	1,442	12.2	2,010	39.4
8	1211202210	293	-46.9	1,420	384.2
9	1212213010	931	-7.9	1,267	36.1
10	1211201211	1,133	0	1,075	-5.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7,053		51,183	

3. 제12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12류	한중 FTA	80
	양허제외	3
	무관세	24
	APTA	10
합계		117
APTA 활용실익 세번		

1205.10.90, 1205.90.90, 1211.20.20
 1211.90.50, 1211.90.99, 1212.21.10
 1212.21.20, 1212.29.10, 1212.29.90, 1212.92.00

중국은 제12류에 총117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7류에는 양허제외품목 3개, 무관세품목 24개, 한중 FTA 활용가능 품목 80개, APTA 활용가능 품목 10개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제12류의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자는 수출품목이 우선 무관세품목 및 양허제외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별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중 FTA와 APTA 활용실익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4. 제1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12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12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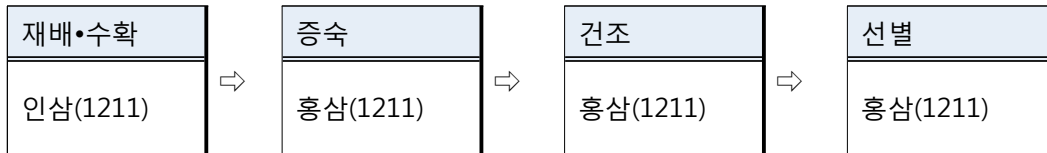
(기본해설) 제12류에는 대두, 땅콩 등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 제12류 역시 제1류와 마찬가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류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완전생산기준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홍삼)

✓ 품명: 홍삼 ✓ 세번: 1211.20.1391 ✓ 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홍삼은 인삼의 재배 적지에서 생산된 좋은 품질의 6년근 수삼을 엄선하여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증기로 찌서 건조시킨 담황갈색 또는 담적갈색을 띠는 인삼이다. 즉 밭에서 캔 수삼은 우선 크기와 모양 등을 따져 1~5등급으로 분류하여 씻기, 찌기, 건조를 거쳐 홍삼으로 변한다.

<홍삼 제조과정>



홍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이다. 결국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배 및 수확된 인삼을 이용하여 홍삼으로 제조한 경우에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엄격한 원산지기준으로 풀이된다. 만약 홍삼의 원산지결정기준이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 하더라도 홍삼의 재료인 인삼과 홍삼은 동일한 류에 속하므로 류 변경은 발생할 수 없고 완전생산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13류 락(lac), 검·수지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301	락(lac), 천연검·수지·검수지와 올레오레진(oleoresins)[예: 발삼(balsams)]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s)과 펙틴산염(pectates),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s)(변성 가공 여부를 불문한다)

2. 제13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1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1302199099(식물성 수액), 1302191210(홍삼 추출물)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1302199099(식물성 수액)으로 전년 대비 147.8%(‘14년 실적:2,911천 달러→’15년 실적:7,215천 달러)가 증가하였다.

HS 제1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 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302199099	2,911	3.8	7,215	147.8
2	1302390000	1,223	-25	1,436	17.4
3	1302191210	877	466.3	497	-43.3
4	1302320000	421	-10.1	448	6.5
5	1302120000	225	312.1	446	97.9
6	1302312000	210	99.4	366	73.9
7	1302311000	154	-60.2	135	-12.6
8	1302191290	3	-59.5	49	1807
9	1302199039	1	0	49	8219.8
10	1302191110	33	64.4	28	-14.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6,089		10,744	

3. 제13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13류	한중 FTA	17
	무관세	1
	APTA	3
합계		21
APTA 활용실익 세번		
1302.19.40, 1302.19.90, 1302.32.00		

중국은 제13류에 총21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13류에는 무관세 품목이 1개 존재하고 APTA 활용실익이 있는 품목이 3개 존재한다. 그 외 17개 품목은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분포되어 있다.

4. 제1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13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1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단일의 기준이다.

(기본해설) 제13류에는 주로 식물성의수액과 엑스가 분류된다. 예를 들어 인삼(제1211호)를 수입하여 인삼(홍삼이나 백삼 모두 포함한다)의 수액이나 엑스 등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이 된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홍삼 엑기스)

✓ 품명: 홍삼 엑기스 ✓ 세번: 1302.19.9099 ✓ 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홍삼엑스는 홍삼의 원료인 수삼이나 백삼을 98~100℃에서 수 시간 쪄 후 60℃ 전후에서 약 24시간 건조시켜 만들어진 홍삼으로부터 추출한 제품이다.

홍삼의 제조과정은 수삼을 세척한 후 용기에 넣어 가열된 수증기를 이용하여 크기에 따라 일정시간 쪄 후 1차적으로 열풍건조하고, 이후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함량이 12.5~13.5% 정도 될 때까지 건조하고 잔뿌리 제거 등 모양을 가다듬는 작업을 거쳐 개체의 크기와 중량에 따라 등급별로 진공 포장한다.

홍삼엑스는 증탕기를 이용하여 제조하는데 물을 가열하여 발생된 증기로 2~5시간 정도 증삼하며, 이후 가열원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30분 정도 건조시키는 공정을 거친다.

< 홍삼엑스 생산과정 >

원재료		증류		추출		포장
수삼 (1211.20)	⇒	홍삼 (1211.20)	⇒	홍삼엑스 (1302.19)	⇒	홍삼엑스 (1302.19)

홍삼엑스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으로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배 및 수확된 인삼을 이용하여 홍삼을 제조하고 이 홍삼으로부터 엑스를 추출한 경우에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造物)용 재료,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401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등나무·갈대·골풀·버드나무가지·라피아·청정·표백이나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껍질]
1404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물

※ 2007년도에 제1402호와 제1403호는 삭제²⁾

2. 제14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1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1404909000(기타의 식물성 생산물), 1404906090 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1404909000이며 전년대비 75.4%가 증가하였다.

HS 제1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404909000	67	485.1	117	75.4
2	1404906090	-	0	40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67		157	

3. 제14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14류	한중 FTA	10
합계		10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14류에 총10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14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 가능 품목은 없다.

2) 제1402호와 제1403호는 무역거래량이 미미하여 2007년도 HS 제4차 개정에서 삭제하여 제1404호로 분류토록 하였다.

3. 제1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14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14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단일 기준이다.

(기본해설) 제14류는 주로 바구니와 같은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인 대나무, 등나무, 갈대, 버드나무 가지와 같은 것이 분류된다. 역내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식물성 재료로부터 생산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므로 대나무 등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쪼개거나 인발하는 공정을 거쳐 대나무 상품을 만들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제15류)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501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지방(제0209호나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	소·면양이나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3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라드유(lard oil)·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올레오유(oleo-oil)·탈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혼합이나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1504	어류나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5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1506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나 목화씨유[棉實油]와 이들의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3	야자[코프라(copra)유·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4	유채유[레이프유(rape oil)나 콜자유(colza oil)나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	그 밖의 비휘발성의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버유(jojoba oil)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

	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인테스테라화한 것·리테스테라화한 것이나 엘라이딘화한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7	마가린, 이 류의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8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처리하거나 불활성 가스 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1520	글리세롤[가공하지 않은 것(crude)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와 글리세롤 페액(lyes)
1521	식물성왁스(트리글리세라이드는 제외한다)·밀납(beeswax)·그 밖의 곤충 납(waxes)과 경납(spermaceti)(정제하거나 착색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22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이나 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2. 제15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1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1520000000(글리세롤), 1516202090(식물성 지방), 1515909090 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1520000000(글리세롤)로 전년대비 23.8%가 감소하였다.

HS 제1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520000000	3,327	-63.7	2,534	-23.8
2	1516202090	74	15.7	1,542	1982.2
3	1515909090	1,392	893.2	1,268	-8.9
4	1509900000	889	61.2	1,241	39.6
5	1521902000	8	-44.8	605	7400.6
6	1507901010	469	-92.9	395	-15.6
7	1509100000	190	941.4	337	77.6
8	1515500000	172	113.8	293	69.7
9	1515290000	2,119	137.5	229	-89.2
10	1518002000	476	67.5	209	-56
해당 류 총 수출금액		9,901		9,722	

3. 제15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15류	한중 FTA	28
	양허제외	24
	APTA	4
합계		56
APTA 활용실익 세번		
1502.10.00, 1502.90.00, 1513.11.00, 1513.19.00		

중국은 제15류에 총56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15류에는 24개의 양허제외 세번이 속하고 있으므로 이들 품목은 한중 FTA 및 APTA 규정을 활용할 수 없다. 그 외 한중 FTA 활용가능 세번은 28개, APTA 활용가능 세번은 4개로 나타난다.

3. 제1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15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15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이다.

(기본해설) 제1501호부터 제1514호는 동물성이나 식물성의 유지가 분류되므로 역외에서 다른 류에 속하는 동물이나 식물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유지를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채택하였다면 원산지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돼지비계(제0209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돈지(제1501호)를 생산하는 경우 돈지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515호에는 제1501호부터 제1514호를 제외한 비휘발성의 기타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이 분류된다. 제15류의 모든 품목이 완전생산기준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타의 식물성 유지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종자가 모두 완전 획득된 원산지재료여야 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였다면 일부의 원재료를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완전생산기준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될 수 없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라 하겠다.

제1516호에는 동식물성 유지에 특정한 화학적 변형을 가한 유지가 분류된다. 동

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완전생산기준이다. 따라서 다른 류에 속하는 동식물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유지를 생산하고 화학적 변형을 진행하여 제1516호의 물품을 만들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제15류에 속하는 물개유지나 분획물(제1504호)을 수입하여 체약국 내에서 화학적 변형을 거쳐 제1516호의 상품을 생산할 때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판단을 각각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제1516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이나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면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4부 조제식료품, 음료·주류와 식초,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제16류~24류)

제4부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코코아 조제품
	제19류	곡물·고운가루·전분이나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이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제22류	음료·주류와 식초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사료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1601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생산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생산품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식료품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s)과 즙(juices)
1604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어류, 캐비아와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5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2. 제16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1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1604203000(생선소시지), 1604204090(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의 기타의 품목), 1601001000(소시지)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1604203000(생선소시지)이며 전년대비 60.9%가 증가하였다.

HS 제1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604203000	8,888	136	14,302	60.9
2	1604204090	3,983	17.5	6,578	65.1
3	1601001000	1,913	28.9	3,618	89.2
4	1604141011	2,823	-67.7	3,245	15
5	1604204010	4,280	55.1	3,034	-29.1
6	1602491000	650	-18.6	1,805	177.7
7	1604141019	924	-56.8	1,589	72
8	1605599090	2,779	379.8	1,241	-55.3
9	1605619000	1,692	-81.7	1,198	-29.2
10	1601009000	1,594	35	1,148	-2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4,280		42,539	

3. 제16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16류	한중 FTA	59
	APTA	2
합계		61
APTA 활용실익 세번		
1604.20.11, 1604.20.91		

중국은 제16류에 총61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16류에 속하는 물품 대다수인 59개 세번은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APTA 적용가능 세번은 2개로 파악된다.

4. 제1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1601~1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1604 1605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45)

(구성분석) 제16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제1604호~1605호에 속하는 물품은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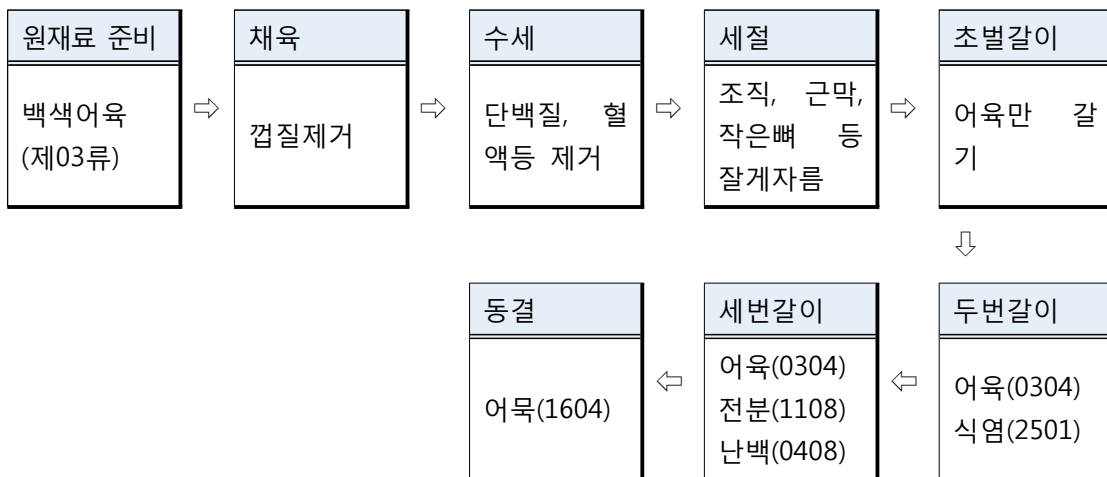
(기본해설) 제16류에는 소시지, 햄버거, 밀폐용기에 넣은 수산식품 등 조제식품이 분류된다. 이 류의 원산지 판단은 육류(제2류)나 어류(제3류)로부터 이 류의 조제식품을 생산하면 2단위 세번의 변경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훈제한 갑각류(제0306호), 훈제한 연체동물(제0307호), 훈제한 수생무척추동물(제0308호)로부터 제1605호의 조제식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입한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45%를 넘지 않아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어묵)

✓ 품명:생선묵(Fish cake) ✓ 세번: 1604.20.4090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어묵의 제조과정도>



제16류의 물품 중에서 해외시장으로 수출규모가 상품은 어묵이다. 생선묵의 제조는 백색어육을 식염, 전분, 난백 등의 부재료를 첨가하여 갈아서 응고시켜 만든다.

어묵은 제1604호에 속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이다. 그러므로 어묵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재료인 어육(제3류), 전분(제11류), 난백(제4류)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조과정을 거치더라도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45%를 넘지 않는다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701	사탕수수 당이나 사탕무당과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 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캐러멜 당
1703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 할 때에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2. 제17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1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1701990000(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1702909000, 1704909000(설탕과자)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1701990000(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이며 전년대비 16.2%가 감소하였다.

HS 제1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701990000	104,793	-18.6	87,819	-16.2
2	1702909000	7,998	46.5	12,269	53.4
3	1704909000	6,120	25.1	11,829	93.3
4	1704902090	7,951	45	9,136	14.9
5	1704902010	1,235	42.8	1,584	28.2
6	1704100000	1,392	44.6	1,110	-20.3
7	1704902020	81	1093.9	105	29.5
8	1702903000	76	2547.4	99	30.1
9	1701142000	64	165.3	38	-41.2
10	1702402000	19	508.7	33	72.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29,820		124,111	

3. 제17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17류	한중 FTA	5
	양허제외	12
	APTA	2
합계		19
APTA 활용실익 세번		
1704.10.00, 1704.90.00		

중국은 제17류에 총19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17류에 속하는 다수의 품목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한중 FTA나 APTA를 활용할 수 없다. 한중 FTA 활용가능 품목은 5개 세번, APTA 가능 품목은 2개 세번이 존재한다.

4. 제1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17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17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1701호부터 제1703호에 속하는 사탕수수당, 당류 등은 완전생산기준이므로 사탕수수(제12류)를 수입하여 이로부터 사탕수수수당(제1701호)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탕수수(제12류)가 생산되지 않으므로 중국산 사탕수수를 수입하여 누적기준에 의해 역내 생산 재료로 간주되어야 제17류의 제품들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사탕수수가 생산되므로 국내의 사탕수수를 원재료로 하여 제17류의 제품들을 생산하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제18류 코코아와 코코아 조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whole)인 것이나 파쇄한 것으로서 생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802	코코아의 껍데기.껍질과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804	코코아 버터[지(fat)와 유(oil)]
1805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

2. 제18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1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1806311000(블록 형태의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1806901000(초콜릿과 초콜릿과자), 1806201000 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1806311000(블록형태의 초콜릿과 초콜릿과자)이며 전년대비 94.6%가 증가하였다.

HS 제1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806311000	1,829	-52.2	3,559	94.6
2	1806901000	1,760	53.1	2,544	44.5
3	1806201000	4,682	27.5	2,054	-56.1
4	1806321000	1,009	112.4	1,425	41.3
5	1806909090	288	283	169	-41.4
6	1806209090	133	163.5	145	9.2
7	1806100000	174	-22.6	77	-55.7
8	1806329000	11	-88.7	62	450.1
9	1805000000	8	94.2	50	499.3
10	1806902920	-	0	47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9,905		10,161	

3. 제18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18류	한중 FTA	7
	APTA	4
합계		11
APTA 활용실익 세번		
1806.20.00, 1806.31.00, 1806.32.00, 1806.90.00		

중국은 제18류에 총11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18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7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4개의 세번은 APTA 협정세율을 통한 특혜관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4. 제1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1801~18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18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50)

(구성분석) 제18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18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 및 코코아 조제품이 분류된다. 제1801호~제1802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동 호는 코코아 콩과 코코아의 껍데기나 껍질로 완전획득 되거나 다른 류에 해당하는 품목에서 이류로 변경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803호~제1805호는 코코아 페이스트, 버터, 분말 등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코코아 콩(제1801호)를 수입하여 코코아 분말을 만들면 류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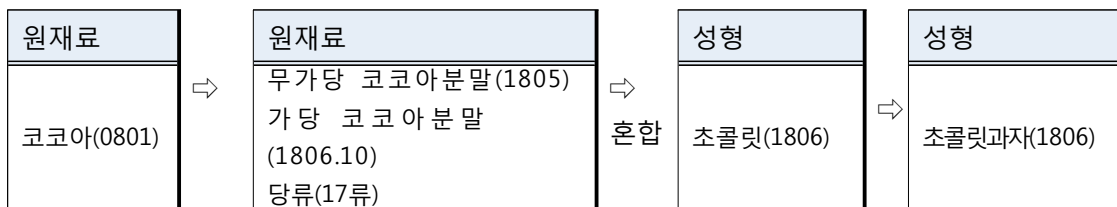
제1806호는 초콜릿과 코코아 조제품이 분류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코코아 가루(제1806.10호)를 수입하여 초콜릿(제1806.32호)을 만들면 2단위 세번변동은 발생하지 않지만,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 품명: ✓ 세번: 1806.20.1000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코코아(HS 제0801호)를 수확하여 씨를 빼낸 뒤 며칠 동안 발효한 후 말리기·씻기·볶기·갈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초콜릿 리큐어라고 하는 페이스트를 얻으며, 이 페이스트를 압착시켜 코코아분말(HS 제1805호)을 얻고 이를 혼합 및 성형하여 초콜릿 과자(HS 제1806호)를 만든다.

< 초콜릿과자 생산공정 >



한-중 FTA는 초콜릿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코코아 가루(제1805호)와 당류(제17류)를 수입하여 초콜릿을 생산하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설탕이 첨가된 코코아 가루(제1806.10호)를 수입하여 초콜릿(제1806.32호)을 만들어도 동일한 류로 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2가지 경우 모두 비원산지재료가치가 상품가치의 50%를 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19류 곡물 · 고운가루 · 전분이나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901	맥아추출물, 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 · 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질로 속을 채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 · 마카로니 · 누들 · 라자니아 · 뇨키 · 레비오리 · 카넬로니와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쿠스쿠스(조제 여부를 불문한다)
1903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s) 모양 · 낱알 모양 · 진주 모양 · 무거리(siftings)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904	곡물이나 곡물 생산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의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가루 ·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5	빵 · 파이 · 케이크 ·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성찬용 웨이퍼(wafers)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 실링웨이퍼(sealing wafers) · 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이와 유사한 생산품

2. 제19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1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1901101010(조제분유), 1905901090(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1905901040(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1901101010(조제분유)이며 전년대비 24.6%가 증가하였다.

HS 제1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901101010	75,405	33.7	93,974	24.6
2	1905901090	38,723	22.7	47,516	22.7
3	1905901040	37,536	8.3	41,802	11.4
4	1902301010	34,563	-8.5	38,777	12.2
5	1905310000	10,727	249.2	10,301	-4
6	1905909090	11,351	-11.3	6,152	-45.8
7	1902301090	5,124	42.5	5,112	-0.2
8	1904109000	2,190	13.9	3,475	58.7
9	1902200000	4,367	170	2,067	-52.7
10	1904101000	1,205	30.2	1,966	63.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35,084		265,436	

3. 제19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19류	한중 FTA	17
	양허제외	2
	APTA	4
합계		23
APTA 활용실익 세번		
1902.30.30, 1905.31.00, 1905.32.00, 1905.90.00		

중국은 제19류에 총23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19류에는 2개의 양허 제외 품목이 존재하고 APTA 활용실익이 있는 품목은 4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그 외 17개 세번은 모두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4. 제1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19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C(ex. ch4)
1901.20 1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1902~19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구성분석) 제19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제1901.10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기본으로 하되 제4류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1901.10호는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으로 곡분을 주요 재료로 하여 제조된다. 이 호는 우유가 함유되는 제품과 그렇지 않는 제품으로 구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우유가 함유되는 제품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되 제4류의 낙농품은 원산지상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유를 수입하여 조제분유를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우유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다른류의 재료를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901.20호는 베이커리제품에 사용되는 반죽으로 버터함유량이 25%이상인 물품과 그 외의 물품으로 구분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류의 낙농품과 제10류 및 제11류의 쌀제품은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라면, 국수 등이 포함되는 제1902호와 제1903호의 타피오카 역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제11류에 해당하는 밀, 밀가루 등을 역외국에서 수입하여 역내에서 파스타나 국수를 만드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제1901호의 전분을 역외에서 수입하여 제1902호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2단위 세번변경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1904호 및 제1905호는 콘플레이크와 베이커리 제품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10류 또는 제11류의 곡물이나 곡분을 수입하여 상품을 제조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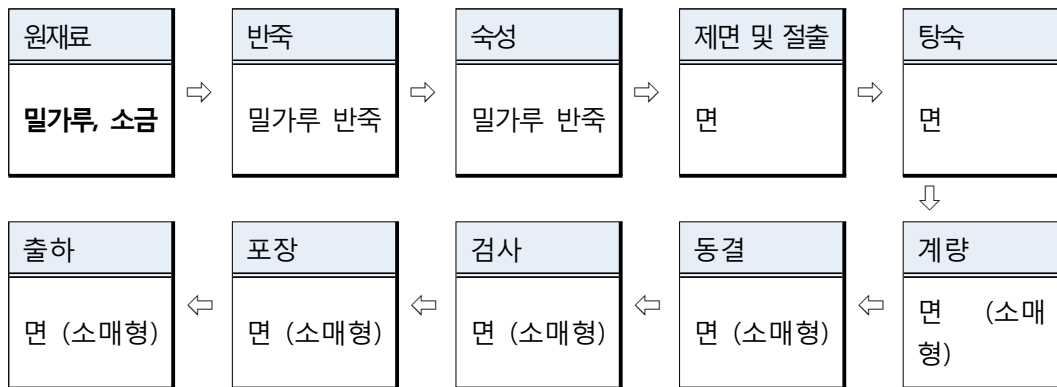
- ✓ 품명: 라면
- ✓ 세번: 1902.30.1010
-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라면 제품은 일반적으로 인스턴트 면류의 형태로 판매되며 소맥분으로 1차 가공된 라면과 기타 소스류가 가미된 스프가 동봉되어 있다. 라면은 일반적으로 밀가루와 전분, 비타민 등 면의 재료를 배합하여 가늘고 긴 형태로 압연한 후 기름에

튀기는 공정을 거쳐 제조한다.

< 인스턴트라면 생산공정 >



< 인스턴트라면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밀가루	1101.00	밀가루가 주성분인 라면이 전체 완제품 배합비율의 70% 이상을 차지
설 탕	1701	정백당으로 스프의 맛을 증진시키기 위해 첨가
소 금	2501.00	천일염의 정제한 정제염으로 라면과 스프의 조미를 위해 완제품의 7% 정도 함유
멸치분	0305.10	건조상태의 멸치육으로 건더기 스프에 분말형태로 첨가
스 프	2103.90	라면과 동봉된 스프

한-중 FTA는 인스턴트라면(HS 제1902.3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므로 위의 표에서 제시된 원재료의 세번이 2단위 기준으로 최종재인 라면의 세번과 다르므로 나열된 모든 원재료가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2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4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며,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2006호의 생산품은 제외한다)
2005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생산품은 제외한다)
2006	설탕으로 저장 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실껍질과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 것(drained).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7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s)·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와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s)(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주정의 첨가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첨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제20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20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2008301000(유자),2009901090(혼합 주스의 기타의 품목),2008199000(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 중 기타의 품목)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2008301000(유자)이며 전년대비 5.7%가 감소하였다.

HS 제20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 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008301000	23,427	6.1	22,081	-5.7
2	2009901090	4,749	219.9	13,073	175.3
3	2008199000	423	-61.9	6,976	1547.5
4	2008999000	4,980	13.8	4,247	-14.7
5	2005209000	151	48.4	1,258	733.8
6	2008119000	18	-82.9	1,095	5849
7	2007999000	789	401	760	-3.6
8	2007991000	167	56.6	437	162.4
9	2009901010	236	8393.8	312	32.2
10	2008309000	737	44	304	-58.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8,946		52,924	

3. 제20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20류	한중 FTA	92
	APTA	8
합계		100

APTA 활용실익 세번

2008.19.10, 2008.19.91, 2008.19.92, 2008.19.99
2009.81.00, 2009.89.15, 2009.89.19, 2009.89.20

중국은 제20류에 총100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20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92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8개의 세번은 APTA 활용실익이 있는 품목으로 확인된다.

3. 제2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20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20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C(ex. ch7)
2002~20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200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2007.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20호 및 제0805.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C (ex 0805.20, 0805.90)
2007.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2008.11 2008.19 2008.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2008.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20호 및 제0805.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C (ex 0805.20, 0805.90)
2008.40~ 2008.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2009.11~ 2009.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2009.31 2009.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20호 및 제0805.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C (ex 0805.20, 0805.90)
2009.41~ 2009.8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2009.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20호 및 제0805.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C (ex 0805.20, 0805.90)

(구성분석) 제20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특정 호는 예외적으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 할 것으로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한-중 FTA는 제20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3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②와 ③을 제외한 모든 제20류
- ②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제7류의 원재료는 원산지재료일 것을 요하는 경우: 2001.90
- ③ 2단위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제0805.20호(감귤)와 제0805.90호(기타 감귤류 과실)의 원재료는 원산지재료일 것을 요하는 경우: 2007.91, 2008.30, 2009.31, 2009.39, 2009.90

제20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2단위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이 적용되므로 제

7류나 제8류의 채소 및 과실 등을 역외에서 수입하여 조제식품을 생산하면 2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001.90호(기타의 채소를 초산 처리한 것)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함께 제7류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산처리 원재료인 기타의 채소(제7류)는 원산지재료 사용하여야 한다. 결국 이에 해당하는 기타의 채소는 완전 생산 될 것으로 풀이된다.

감귤이나 감귤류의 기타과실을 원재료로 하여 만들어지는 제20류의 물품들(2007.91, 2008.30, 2009.31, 2009.39, 2009.90)에 대하여 한-중 FTA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함께 감귤 및 감귤류 기타과실은 원산지재료를 사용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귤을 이용한 잼, 주스, 기타조제품의 경우 감귤은 역내에서 완전생산된 것만 사용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제2008호에 분류되는 오렌지, 감귤, 자몽, 레몬, 라임 외의 기타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을 이용한 잼, 주스, 기타 조제품 역시 해당 원료과실은 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유자청 ✓ 세번: 2008.30.1000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20호 및 제0805.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유자청은 유자를 채썰어 꿀이나 설탕 등과 섞은 뒤 3~4개월 보관하여 만든다. 이때 설탕이나 꿀 외에 정제수, 구연산, 비타민 C 등이 추가될 수도 있다.

유자청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므로 주요 재료인 유자(0805.90호), 설탕(제17류), 꿀(제0409호)을 역외에서 수입하여 유자청을 생산하여도 2단위 세번이 변경된다.

그러나 제0805.90호의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유자를 역외에서 수입한 경우 유자청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2101	커피·차나 마테(mate)의 추출물.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나 마테(mate)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그 밖의 볶은 커피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에센스와 농축물
2102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 조제한 베이킹파우더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105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2. 제21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2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2106904010(김), 2106909099(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의 기타의 품목), 2101111000(인스턴트커피)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2106904010(김)이며 전년대비 49%가 증가하였다.

HS 제2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106904010	41,760	44.2	62,227	49
2	2106909099	18,098	27.5	26,438	46.1
3	2101111000	31,033	126	20,177	-35
4	2101129010	12,864	12.8	15,962	24.1
5	2103909090	15,141	46	14,723	-2.8
6	2105001090	5,917	3.7	8,340	41
7	2103901030	4,287	96.8	3,876	-9.6
8	2101121000	5,865	-75.9	3,225	-45
9	2101309000	1,446	216.2	2,870	98.5
10	2106903029	2,506	71.4	2,641	5.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66,990		186,120	

3. 제21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21류	한중 FTA	17
	양허제외	1
	APTA	5
합계		23
APTA 활용실익 세번		
2101.20.00, 2103.90.10, 2103.90.90, 2106.90.50, 2106.90.90		

중국은 제21류에 총23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21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7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한편 제21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5개의 세번이 존재하므로 한중FTA와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비교하여 보다 효과가 높은 것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제2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21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인스턴트커피, 간장 등 소스, 아이스크림, 인삼차, 조제김 등이 분류되는 제2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2101호는 인스턴트커피나 차가 분류되고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커피나 차(제9류)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인스턴트커피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102호는 효모와 베이킹파우더 등으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입하여 역내에서 이 호의 효모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이 된다.

제2103호에는 여러 성분으로 만들어진 소스류가 분류된다. 제2103.10호~제2103.30호는 간장, 토마토소스, 겨자소스로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이 호에 속하는 상품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이 된다. 예를 들어 토마토 페이스트(제2002.90호)를 수입하여 토마토케첩(제2103.20호)를 만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103.90호에는 기타의 소스가 분류되는데 주로 장류와 마요네즈, 카레 등이 이에 속한다. 고추장과 된장은 다른 류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이 된다. 그 밖에 이 호에 속하는 소스는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

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을 인정된다. 그러므로 제2103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혼합소스를 만드는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없다.

제2104호는 수프와 브로드 및 이들의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이호의 물품을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이 된다.

제2105호는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제2106호는 기타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호의 물품은 제4류의 낙농품이나 제1901.90호의 낙농조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4단위 세번이 변동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인삼을 이용한 조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역시 인삼이나 인삼추출액(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은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조제 김)

✓ 품명: 조제 김 ✓ 세번: 2106.90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조미김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마른 김	1212.21	조제김의 주요 재료
실리카 겔	2811.22	조제김의 방습제 기능을 하는 재료
참기름	1516.20	마른 김에 첨가하는 재료
정제염	2501.00	마른 김에 첨가하는 재료
포장지	3921.90	포장재료

한-중 FTA는 조제김이 분류되는 제2106.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위와 같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표와 같은 조제김의 주요원재료 구성을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해보면 제시된 원재료를 모두 수입하여 한국에서 생산하여도 완제품인 조제김의 4단위 세번(제2106호)와 원재료들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제22류 음료·주류와 식초

제22류에는 ‘음료·주류와 식초’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9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얼음과 눈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일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
2203	맥주(맥아로 만든 것)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 포도즙(grape must)(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의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206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은 불문한다)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s)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9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2. 제22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2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2202909000(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2202902000(과즙음료), 2203000000(맥주)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2202909000(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이며 전년대비 15.1%가 증가하였다.

HS 제2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202909000	29,409	-8	33,848	15.1
2	2202902000	23,453	19.1	32,055	36.7
3	2203000000	14,121	66.5	19,364	37.1
4	2208904000	9,534	13.5	7,788	-18.3
5	2202101000	4,478	232.2	5,607	25.2
6	2201100000	723	-8.6	3,534	388.6
7	2202901000	1,267	78	2,137	68.7
8	2206002030	1,991	34.8	1,949	-2.1
9	2208709000	74	298.1	952	1191.5
10	2209009000	823	61.6	840	2.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90,061		111,992	

3. 제22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22류	한중 FTA	25
	무관세	1
	APTA	2
합계		28
APTA 활용실익 세번		
2202.90.00, 2208.90.90		

중국은 제22류에 총28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22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25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22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2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4. 제2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2201~22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2203~2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2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구성분석) 제22류는 음료와 주류가 분류된다. 이 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2201호는 모든 종류의 물이 분류되고, 제2202호는 설탕이나 감미료 등이 첨가된 다양한 종류의 음료가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음료는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 예를 들어 물(제2201호)을 수입하여 감미료를 첨가하여 음료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이 된다. 또한 우유를 함유하는 음료의 경우 낙농품(제4류 또는 제1901.90호)을 수입하여 음료를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203호부터 제2207호 까지는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분류된다. 이들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 주류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포도주(제2204호)와 레모네이드(제2202호)를 수입하여 이를 혼합하여 주류를 만든 경우 원산지 상품이 된다.

제2208호에는 위스키, 코냑, 소주와 같은 기타의 주류가 분류된다. 이 호 역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주정(제2207호)를 수입하여 이를 물로 희석하여 소주를 만드는 경우 소주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긴 잔재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제23류에는 ‘식품공업에서 생긴 잔재물³⁾과 웨이스트, 조제 사료’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9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2301	육 · 설육(屑肉)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지 박(greaves)
2302	밀기울 · 쌀겨와 그 밖의 잔재물[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이나 채두류(菜豆類)의 선별 · 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잔재물.비트펄프(beetpulp).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양조나 증류할 때에 생기는 찌꺼기(dregs)와 웨이스트(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한다)
2304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잔재물(분쇄한 것이나 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한다)
2305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잔재물(분쇄한 것이나 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한다)
2306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형의 잔재물(분쇄한 것이나 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하며, 제 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를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7	포도주 리스(lees), 생주석(argol)
2308	사료용 식물성 물질 · 식물성 웨이스트(waste) · 식물성 잔재물과 부산물(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2. 제23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2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2309909090(사료용 조제품), 2301209000(어분), 2309903090(사료 첨가제)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2309909090(사료용 조제품)이며 전년대비 7.5% 감소하였다.

3) 제23류 표제에서 ‘residues’를 ‘잔재물’이라 하고, 각 호에서 ‘박류(粕類)나 박(粕)’이라 하였다. 다른 류와는 달리 류의 표제에 맞춰 잔재물이라 한다. 잔재물은 쌀을 가공하고 남은 찌꺼기인 쌀겨나 참깨에서 참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 등을 말한다. 관세율표에서 ‘residues’를 여러 가지(잔재물,잔유물,박 등)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잔재물(잔유물)’로 통일해서 사용하겠다.

HS 제2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 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309909090	2,631	0	2,433	-7.5
2	2301209000	1,785	335.2	1,766	-1.1
3	2309903090	982	-24.4	1,108	12.9
4	2309902010	104	-9.6	141	35.1
5	2309902099	170	6.2	114	-33.1
6	2309903020	56	-32.4	69	21.7
7	2309901030	-	0	61	0
8	2304000000	-	0	43	0
9	2309901099	2	792.9	38	1780
10	2309101000	17	-44.9	22	25.3
해당 류 총 수출금액		5,747		5,811	

3. 제23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23류	한중 FTA	29
	APTA	1
합계		30
APTA 활용실익 세번		
2309.90.90		

중국은 제23류에 총30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23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29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개의 세번은 APTA 활용실익이 큰 품목으로 나타난다.

4. 제2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2301~2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2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23류는 동식물성 원료를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주로 분류된다. 2단위 및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2301호부터 제2308호까지는 동식물성 원료를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물질들이다. 이 호의 물품은 다른 류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면 원산지상품

으로 인정된다.

제2309호는 개 사료나 고양이 사료와 같이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된다. 제2309.10호는 소매용의 개나 고양이 사료로 제2301호~제2308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한 경우 원산지 상품이 된다. 제2309.90호에 해당하는 사료 역시 제4류의 낙농품과 제1901.90호의 우유 등을 수입하여 역내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1. 품목분류 체계

제24류에는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을 분류하며, 다음 표와 같이 3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2401	잎담배, 담배 부산물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와 껴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403	그 밖의 제조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담배추출물과 에센스

2. 제24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2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2402201000(필터담배), 2401209000(잎담배) 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2402201000(필터담배)이며 전년대비 0.2%가 증가하였다.

HS 제2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402201000	8,986	-49.5	9,007	0.2
2	2424000000	7,349	-29.6	6,997	-4.8
3	2401209000	183	0	201	9.6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6,518		16,205	

3. 제24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24류	양허제외	9
	APTA	3
합계		12
APTA 활용실익 세번		
2401.10.10., 2403.11.00, 2403.19.00		

중국은 제24 류에 총12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24류에 속하는 품목의 대부분인 9개 세번은 양허제외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APTA 양허세번은 3개 존재한다. 따라서 제24류는 한-중 FTA 활용실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제2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24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24류는 잎담배와 제조담배 등이 분류되고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2401호에는 잎담배와 담배부산물(가)이 분류되는데 자연 상태인 원형 식물로부터 채취한 잎으로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므로 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2402호~2403호는 시가와 그 밖의 제조담배가 분류된다. 만약 제2401호의 담배를 수입하여 이를 균질화 하고 재구성하여 이 호에 속하는 담배를 생산할 경우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될 수 없다.

제5부 광물성 생산품(제25류~제27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하소(煨燒)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제5부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석회와 시멘트
	제26류	광·슬래그(slag)와 회(灰)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석회와 시멘트

1. 품목분류 체계

제25류에는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석회와 시멘트’를 분류하며, 다음 표와 같이 29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과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바닷물
2502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503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과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504	천연흑연
2505	천연모래[착색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6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slabs) 모양 여부를 불문한다]
2507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煨燒) 여부를 불문한다]

2508	그 밖의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 · 홍주석 · 남정석과 규선석[하소(煨燒) 여부를 불문한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어tm(dinas earths)
2509	초크(chalk)
2510	천연인산칼슘·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과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chalk)
2511	천연황산바륨(중정석), 천연탄산바륨(독중석)[하소(煨燒) 여부를 불문하며, 제2816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2512	규조토[예: 키젤구어(kieselguhr) · 트리폴라이트(tripolite)와 다이아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煨燒) 여부를 불문하며, 겔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13	부석, 금강사, 천연커런덤 · 천연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연마재료(열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2514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15	대리석 · 트래버틴 · 에코신와 그 밖의 석비(石碑)용이나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겔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16	화강암 · 반암(斑巖) · 현무암 · 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이나 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2517	자갈 · 왕자갈 · 쇄석(碎石)[콘크리트용 · 도로포장용 · 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리스트(ballast) 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싱글(s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slag) · 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재료와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을 알갱이 · 파편 · 가루 모양으로 한 것(열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2518	백운석[하소(煨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응결백운석
2519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熔融)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그 밖의 산화물의 소량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 여부를 불문한다)
2520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s)[하소(煨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21	석회석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2522	생석회(生石灰) · 소석회와 수경성 석회(제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3	포틀랜드(portland)시멘트 · 알루미나(aluminous)시멘트 · 슬랙(slag)시멘트 · 수퍼설페이트(supersulphate)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시멘트[착색하거나 클링커(clinkers)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24	석면
2525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 운모 웨이스트(waste)
2526	천연동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활석
2528	천연붕산염과 그 정광[하소(煨燒)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염수로부터 분리한 붕산염을 제외한다], 천연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29	장석(feldspar), 백류석(leucite), 하석(nepheline)과 하석섬장암(nepheline syenite), 형석(fluorspar)
253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성 물질(mineral substances)

※ 2002년도에 제2527호는 삭제

2. 제25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2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2503000000(유황), 2530909099(기타 광물성 물질), 2517499000(자갈)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2503000000(유황)이며 전년대비 14.6%가 증가하였다.

HS 제2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503000000	85,840	41.8	98,407	14.6
2	2530909099	2,388	254	3,600	50.8
3	2517499000	3,147	53.6	2,920	-7.2
4	2526200000	3,319	166.7	2,806	-15.4
5	2501009010	816	225.3	1,733	112.4
6	2506103000	424	502.3	947	123.2
7	2518200000	656	14.4	714	8.8
8	2501009090	797	-55.9	673	-15.6
9	2505100000	12	252.7	666	5653.7
10	2530909020	218	82.5	533	144.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04,415		118,086	

3. 제25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25류	한중 FTA	86
	무관세	4
합계		90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25류에 총90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25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86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4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25류에는 APTA 양허품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APTA 활용실익 또한 없다.

4. 제2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250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2502~25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51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518.20 2518.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251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51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252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520.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2521~25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525.10 252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525.3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2526~2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25류에는 소금과 황, 토석류, 기타광물, 석고와 석회·시멘트로 분류되고 완전생산기준과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소금(제2501호)과 운모의 웨이스트(제2525.30호)는 완전생산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체약당사국 내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하소하지 않거나 소결하지 않은 백운석(제2518.10)호를 수입하여 제2518.20

호 또는 제2518.30호의 상품을 생산하거나, 천연 마그네사이트(제2519.10호)를 수입하여 기타의 마그네슘을 생산하는 경우, 제2520.10호의 석고를 수입하여 플라스틱(제2520.20호)을 생산하는 경우 6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외에 제25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완제품과 다른 호의 비원산지재료를 가공하여 해당호로 변경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제26류 광·슬래그와 회

1. 품목분류 체계

제26류에는 ‘광·슬래그(slag)⁴⁾와 회’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21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2601	철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2602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2603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2604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2605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2606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2607	납광과 그 정광(精鑛)
2608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2609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261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2611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2612	우라늄광이나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2614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2615	니오븀(niobium)광·탄탈륨(tantalum)광·바나듐(vanadium)광이나 지르코늄(zirconium) 광과 이들의 정광(精鑛)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2617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2618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2619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4) 슬래그는 일반적으로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로 광재(鑛滓)라고도 한다. 슬래그에는 다른 금속이나 비소가 함유되어 있어 금속이나 비소의 회수나 금속화합물의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슬래그의 일반적인 정의보다 제26류에서는 폭 넓게 적용하고 있다.(제26류 주 제3호 참조)

2620	슬래그(slag) · 회와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2621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kelp)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 제26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2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2603000000(구리광), 2614009000(티타늄광), 26080 00000(아연광)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2603000000(구리광)이며 전년대비 277.3% 증가하였다.

HS 제2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 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603000000	24,672	130.4	93,101	277.3
2	2614009000	12,273	-4.3	3,616	-70.5
3	2608000000	3,267	-62.9	2,123	-35
4	2619003000	1,600	-87	1,763	10.2
5	2620400000	2,300	-4.8	1,188	-48.3
6	2613900000	7,975	18	563	-92.9
7	2604000000	5	-99.1	525	9584.8
8	2601119000	-	0	432	0
9	2601112000	8,064	-40.5	248	-96.9
10	2613100000	-	-100	187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63,541		104,421	

3. 제26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26류	한중 FTA	15
	양허제외	1
	무관세	28
합계		44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26류에 총44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26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5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28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양허제외 품목이 1

개 존재하므로 이 품목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편 제26류에는 APTA 양허품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APTA 활용실익 또한 없다.

4. 제2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2601~26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2618~262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26류에는 광물성 생산품 가운데 수은, 귀금속, 비금속 및 방사성원소를 채취하기 위한 야금 공업용의 금속광과 정광이 분류되며, 철강제조 시 생기는 슬랙, 드로스, 스케일링 및 웨이스트 등과 도시쓰레기 조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이 포함된다. 한-중 FTA는 제26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광(鑛)이 분류되는 제2601호~제2617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완제품과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 생산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광물의 특성상 다른 호 또는 류로부터 생산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수집되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1. 품목분류 체계

제27류에는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제2716호의 전기에너지는 HS 협약의 체약국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호(optional heading)이다.

품목번호	품 명
2701	석탄,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s)과 이와 유사한 고체연료
2702	갈탄(응결 여부를 불문하며, 흑옥은 제외한다)
2703	토탄(토탄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 여부를 불문한다)
2704	코크스와 반성(半成)코크스(semi-coke)(석탄·갈탄이나 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 여부를 불문한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2705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2706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2707	오일(oils)과 그 밖의 고온 콜타르(coal tar)의 증류물, 이와 유사한 생산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708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2709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나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본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오일(waste oils)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2	석유젤리, 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탈린(micro-crystalline)석유왁스·슬랙왁스(slack wax)·오조케라이트(ozokerite)·갈탄(lignite)왁스·토탄(peat)왁스·그 밖의 광물성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생산품(착색 여부를 불문한다)
2713	석유코크스·석유역청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2714	천연의 역청(瀝靑)과 아스팔트, 역청질 혈암·유모혈암(oil shale)과 타르샌드(tar sands), 아스팔타이트(asphaltites)와 아스팔트질의 암석(asphaltic rocks)
2715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아스팔트·천연역청·석유역청·광물성 타르나 광물성 타르피치를 기본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mastics)과 컷백(cut-backs)]
2716	전기에너지

2. 제27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2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2713200000(석유역청), 2710124000(나프타), 2710192020(제트연료유)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2713200000(석유역청)이며 전년대비 26.4%가 감소하였다.

HS 제2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713200000	1,443,406	13	1,062,558	-26.4
2	2710124000	941,451	-25.3	1,028,191	9.2
3	2710192020	2,211,591	-33.4	707,656	-68
4	2710195020	854,624	57.4	635,573	-25.6
5	2710193000	266,853	-19.3	261,834	-1.9
6	2710194030	650,848	-37.9	211,657	-67.5
7	2707500000	388,209	24.6	203,904	-47.5
8	2707300000	274,366	498	170,556	-37.8
9	2710121000	31,064	0	120,919	289.3
10	2711190000	72,519	-5.3	69,708	-3.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7,799,086		4,892,998	

3. 제27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27류	한중 FTA	59
	양허제외	1
	무관세	5
	APTA	2
합계		67
APTA 활용실익 세번		
2711.19.10, 2713.20.00		

중국은 제27류에 총62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27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59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5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1개의 양허제외 품목이 존재하고, APTA 양허품목은 2개 분포하고 있다

4. 제2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2701~27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710.12 2710.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2710.20 2710.91 2710.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711~27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석탄, 석유와 같은 광물성 연료가 분류되는 제27류는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2701호~제2703호 및 제2709호는 석탄, 갈탄, 토탄, 석유로 지중에서 채굴 등의 방법으로 생산한다.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만 생산과정의 특징상 원료와 제품이 동일하므로 완전생산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제2701.20호와 같이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조개탄의 경우 역외에서 무연탄(2701.11) 또는 유연탄(2701.12)을 수입하여 연탄 형태로 제조하는 경우 동일한 호의 재료로 생산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결국 역내의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704호~제2708호는 석탄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코크스, 석탄가스, 광물성 타르, 고온콜타르 증류물 등이 분류된다. 이 호의 원산지결정 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므로 역외에서 석탄(2701)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증류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이 호의 물품들을 생산하면 4단위 세번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707.10호~제2707.91호 등의 벤젠 및 나프탈렌은 콜타르(제2706호)를 고온으로 증류하여 화합물을 첨가하여 생산한다. 이때 원재료인 콜타르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증류공정을 거쳐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일 호(제2707호) 내의 다른 소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석유가스(제2711호)의 경우 우선 제2711.11호~제2711.13호의 액화가스는 동일 소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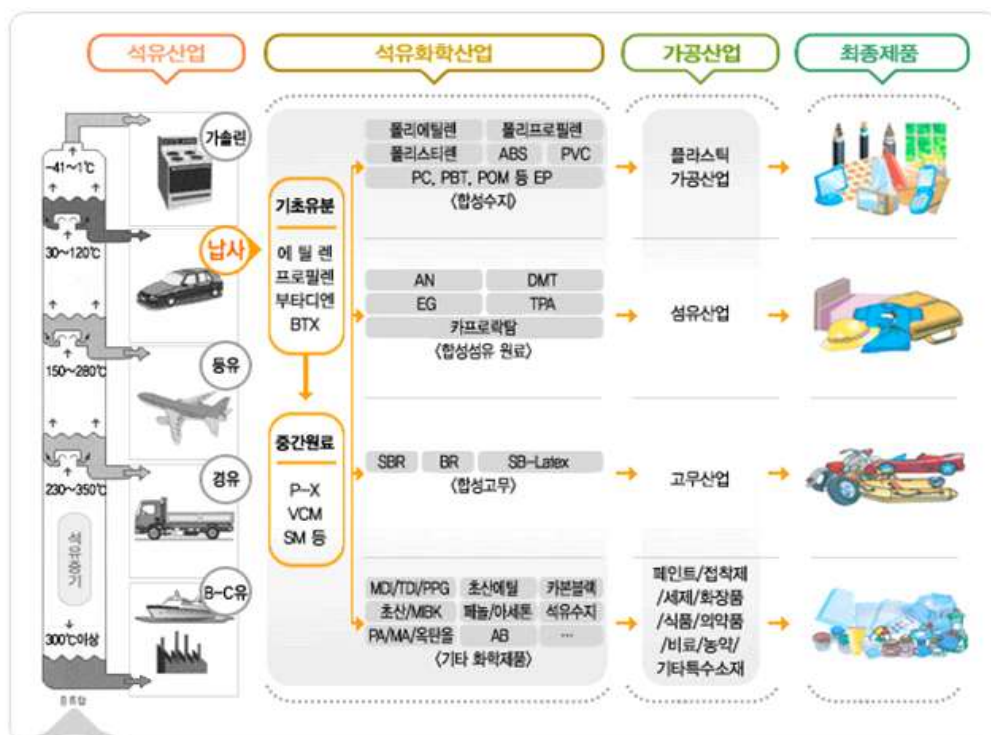
천연가스는 통상 액화상태(제2711.11)로 수입된 후 가스상태(제2711.21호)로 되는데 이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2711.2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요하기 때문이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제트 연료유)

✓ 품명: 제트연료유 ✓ 세번: 2710.19-2020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등유 및 제트연료는 원유(HS 제2709호)를 가열하여 생산하는데 LPG는 -42~1°C, 휘발유 및 나프타는 30~120°C, 등유 및 제트연료유는 150~280°C, 경유는 230~350°C, 아스팔트 및 잔사유는 300°C 이상에서 생산된다.

< 제트연료유 생산과정 >



한-중 FTA는 제트연료유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소호에 속하지 않는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열 등의 공정을 거쳐 제트연료유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소호(제2710.19호)에 속하는 재료를 역외에서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협정은 세번변경기준외에 역내에서 특정한 공정을 수행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중 FTA는 이러한 특정공정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에 의해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역외산 원재료 조달시 상품과 세번의 동일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28류~제38류)

제6부	제28류	무기화합물,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 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제29류	유기화합품
	제30류	의료용품
	제31류	비료
	제32류	유연용이나 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es),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 스틱(mastics), 잉크
	제33류	정유(essentials oils)와 레지노이드(resinoids), 조제향료,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용 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제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 용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s), 효소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물품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28류 무기화합물, 귀금속·희토류(稀土類) 금속·방사성원소나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1. 품목분류 체계

① 원소

품목번호	품 명
2801	플루오르(fluorine) · 염소(chlorine) · 브롬(bromine)과 요드(iodine)
2802	황[승화황(昇華黃) · 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 황(colloidal sulphur)
2803	탄소(카본블랙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2804	수소 · 희(稀)가스(rare gase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5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스칸듐(scandium)과 이트륨(yttrium)(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수은

② 무기산⁵⁾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⁶⁾

품목번호	품 명
2806	염화수소(염산), 클로로황산
2807	황산, 발연황산
2808	질산, 황질산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10	붕소의 산화물, 붕산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③ 비금속 할로겐화합물과 황화합물

품목번호	품 명
2812	비(非)금속 할로겐화합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3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5) '무기산(inorganic acids)'이란 염소·황·질소·인 등 비금속을 함유하는 산기(酸基)가 수소(H)와 결합하여 생긴 산으로 염산(HCl, 제2806호), 황산(H₂SO₄, 제2807호), 질산(HNO₃, 제2808호), 인산(H₃PO₄, 제2809호) 등을 말한다. 탄산(H₂CO₃)도 무기산으로 취급한다.

6) '산화물'이란 산소와 다른 원소와의 이원(二元)화합물을 지칭하며, 다른 원소가 비금속이면 비금속산화물이라 하고, 금속이면 금속산화물이라 한다. 따라서 CO₂, SO₂, SiO₂(제2811호)는 비금속산화물에 해당하고, CrO₂, MnO₂, Fe₂O₃ 등은 금속(크롬·망간·철)산화물에 해당한다.

④ 무기염기와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과 금속과산화물

품목번호	품 명
2814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2816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 수산화물과 과산화물
2817	산화아연, 과산화아연
2818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9	산화크롬과 수산화크롬
2820	산화망간
2821	산화철과 수산화철, 어스컬러(earth colours)[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_2O_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2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2823	산화티타늄
2824	산화납, 연단(red lead)과 오렌지 납(orange lead)
2825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 그 밖의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과 금속과산화물

⑤ 무기산과 금속의 염⁷⁾과 과산화염

품목번호	품 명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 · 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2827	염화물 ·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요드화물과 산화요드화물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아염소산염, 하이포아브롬산염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7) ‘염’이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로 산의 H+가 다른 양이온으로 치환된 물질이나 염기의 OH-가 다른 음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을 말한다.

2830	황화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31	아이티온산염(dithionites)과 술폭실산염(sulphoxylates)
2832	아황산염(sulphites), 티오황산염(thiosulphates)
2833	황산염, 명반(alums),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4	아질산염(nitrites), 질산염(nitrates)
2835	포스피네이트(phosphinates)(하이포아인산염) · 포스포네이트(phosphonates)(아인산염)와 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7	시아나화물 · 산화시아나화물과 시안착염
2839	규산염, 상관습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2840	붕산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2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 제2838호는 삭제

⑥ 기타

품목번호	품 명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s)
2844	방사성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생산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2845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46	희토류(稀土類)금속 · 이트륨 · 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
2847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48	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인철(ferrophosphorus)은 제외한다)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50	수소화물 · 질화물 · 아지드화물 · 규화물과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2852	무기나 유기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⁸⁾ 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아말감은 제외한다)

2853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공기(희가스가 제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압축공기, 아말감(귀금속의 아말감은 제외한다)

※ 제2851호 삭제

2. 제28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2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2804610000(규소), 2841909000(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09201090(반도체 제조용 인산)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2804610000(규소)이며 전년대비 21.8%가 증가하였다.

HS 제2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804610000	663,359	102.5	807,667	21.8
2	2841909000	100,043	-8.3	142,548	42.5
3	2809201090	16,797	2124	33,930	102
4	2803009019	41,123	7	27,708	-32.6
5	2841902010	27,234	-33.3	26,515	-2.6
6	2802001000	21,681	14.5	24,932	15
7	2812909000	12,732	5.8	18,422	44.7
8	2817001000	15,149	11.3	16,877	11.4
9	2821101000	23,664	5.8	16,298	-31.1
10	2842909000	14,586	28.8	13,290	-8.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119,055		1,315,588	

3. 제28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28류	한중 FTA	306
	양허제외	1
	APTA	5
합계		312
APTA 활용실익 세번		
2803.00.00, 2815.11.00, 2815.12.00, 2828.10.00, 2850.00.90		

중국은 제28류에 총312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28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306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

- 8) 소호 제2852.10호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이란 제28류 주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나 제29류 주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유기나 무기의 수산화합물을 말한다.(제28류 소호 주 제1호)

해관세의 효과가 있고 APTA 적용이 가능한 품목은 5개로 나타난다. 특히 제28류에는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지 않은 양허제외품목이 1개 존재한다.

4. 제2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2801~28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840.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840.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SH (ex 2840.19)
2840.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840.1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SH (ex 2840.11)
2840.20 2840.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841~284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84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530.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 2530.90)
2847~285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28류의 대부분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일부 세번이 제외규정을 포함하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존재한다.

(기본해설) 제28류의 품목은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비원산지 원재료와 제품의 4단위 호가 서로 다르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제2840.11호의 무수물 사붕산이나트륨과 제2840.19호의 기타 사붕산이나트륨은 6단위 세번변경이 충족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되, 각각의 원재료인 제2840.19호와 제2840.11호의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제2846호의 희토류금속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원재료인 희토류금속(제2805호)을 수입하여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을 제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제2530.90호에 분류되는 희토 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소호의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 품명: 폴리실리콘
- ✓ 세번: 2804.61-0000
-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폴리실리콘은 규소함량 99.99% 이상인 덩어리(lump)상의 silicon metal로 용도는 태양열전지 제작에 사용된다. 기본적인 제조공정은 천연규석이나, 순도 99.9%의 규소를 수입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여 생산한다.

폴리실리콘 생산의 주요 원재료는 제25류의 천연규석 또는 제2804호의 규소이다. 한-중 FTA는 폴리실리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천연규석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주요한 공정들을 거쳐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 충족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고순도의 규소를 역외에서 수입하여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경우 4단위세번이 동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폴리실리콘의 제조공정 >



제29류 유기화합물

1. 품목분류 체계

제29류에는 ‘유기화합물’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3개의 절에 속한 42개 호로 구성되어 있다.

① 탄화수소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품목번호	품 명
2901	비환식탄화수소
2902	환식탄화수소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 여부를 불문한다)

② 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품목번호	품 명
290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06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③ 페놀 · 페놀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품목번호	품 명
2907	페놀, 페놀알코올
2908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④ 에테르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 · 3원고리의 에폭시드 · 아세탈과 헤미아세탈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품목번호	품 명
2909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	3원고리(three-membered ring)의 에폭시드 ·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 · 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1	아세탈 · 헤미아세탈(hemiacetals)(그 밖의 산소관능의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⑤ 알데히드관능화합물

품목번호	품 명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의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2913	제2912호의 생산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⑥ 케톤관능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품목번호	품 명
2914	케톤과 퀴논(그 밖의 산소관능의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⑦ 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 유도체

품목번호	품 명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추가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⑧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과 이들의 염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품목번호	품 명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

	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를 제외한 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⑨ 질소관능화합물

품목번호	품 명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3	제4암모늄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phosphoaminolipids)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7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
2928	히드라진이나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2929	그 밖의 질소 관능화합물

⑩ 유기·무기화합물 · 헤테로고리화합물 · 핵산과 그들의 염과 술폰아미드

품목번호	품 명
2930	유기-황화합물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2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
2935	술폰아미드

⑪ 프로비타민 · 비타민과 호르몬

품목번호	품 명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937	호르몬 ·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s) · 트롬복산(thromboxanes)과 류코트리엔(leukotrienes)(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s)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⑫ 글리코시드와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품목번호	품명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2939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⑬ 그 밖의 유기화합물

품목번호	품명
294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제2938호와 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941	항생물질
2942	그 밖의 유기화합물

2. 제29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2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2902430000(파라-크실렌), 2902500000(스티렌), 2901220000(프로펜(프로필렌))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2902430000(파라-크실렌)이며 전년대비 1.6%가 증가하였다.

HS 제2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902430000	4,342,855	7.8	4,412,186	1.6
2	2902500000	2,185,728	11	1,277,805	-41.5
3	2901220000	1,729,589	9.8	936,536	-45.9
4	2901210000	1,018,569	-20.3	619,154	-39.2
5	2905310000	499,721	2.6	444,598	-11
6	2902200000	310,519	-43.7	412,038	32.7
7	2917361000	595,903	-67.7	196,602	-67
8	2926100000	337,528	-13.7	176,499	-47.7
9	2902300000	474,439	-19.9	170,756	-64
10	2907231000	238,109	-17.1	158,514	-33.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3,352,820		10,069,056	

3. 제29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29류	한중 FTA	509
	양허제외	26
	APTA	3
합계		538
APTA 활용실익 세번		
2902.50.00, 2917.36.11, 2917.36.19		

중국은 제29류에 총538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29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509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APTA 적용이 가능한 품목은 3개로 나타난다. 특히 제29류에는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지 않은 양허제외품목이 26개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제2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2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29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29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필렌글리콜(제2905호)은 기초원재료인 석유(제2709호)를 가공하여 제조하기도 하고 프로필렌 옥사이드(제2910호)를 가공하여 생산하기도 한다. 이때 두 원료 모두 수입하여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므로 프로필렌글리콜은 원산지 지위를 얻을 수 있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크실렌)

✓ 품명: 크실렌 ✓ 세번: 2902.43-0000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크실렌(디메틸벤젠)은 수소원자 두 개가 두 개의 메틸기로 치환된 벤젠의 유도체이며 3종류의 이성체로서 오르토-크실렌·메타-크실렌·파라-크실렌이 있다. 크실렌은 무색 인화성 액체로서 콜타르경유(제27류)에서 얻어진다.

크실렌 생산의 원재료는 제27류의 콜타르로 한-중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는 원재료를 역외에서 수입하여 크실렌을 생산하여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데 무리가 없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30류 의료용품

1. 품목분류 체계

제30류에는 ‘의료용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001	장기(臟器) 요법용의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2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이나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하거나 얻어지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생산품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4	의약품[혼합 여부를 불문하고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5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2. 제30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30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3002101000(포장된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 3004909900(의약품), 3004209900(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의 기타의 품목)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3002101000(포장된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이며 전년대비 19.4%가 증가하였다.

한편 ‘15년 기준 3002903090(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의 경우 전년대비 1,702.6%로 급증하였다.

HS 제30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002101000	37,624	17.5	44,920	19.4
2	3004909900	26,970	30.7	36,002	33.5
3	3004209900	28,751	4.9	27,486	-4.4
4	3005904000	8,730	-8.5	9,101	4.3
5	3004399000	1,365	0	8,928	554.1
6	3002903090	226	420.9	4,075	1702.6
7	3002904000	2,930	13.4	2,527	-13.7
8	3005109000	320	-35.6	2,340	630.6
9	3006101020	291	-77.8	2,251	673.3
10	3003909900	125	4.7	1,804	1344.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14,432		147,955	

3. 제30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30류	한중 FTA	77
	무관세	2
합계		79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30류에 총 79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30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77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무관세 품목이 2개 존재한다. APTA 적용이 가능한 품목은 없다.

4. 제3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3001~3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3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 3003)
3005 3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30류는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다만 제 3004호의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특정 원재료는 원산지재료

만 사용토록 제한한다.

(기본해설) 장기 및 그 추출물(제3001호)와 백신 등(제3002호), 의약품(제3003호)은 4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지위를 얻는다. 일부 협정은 제3006.92호에 해당하는 폐(廢) 의료용품은 원산지재료만 사용 토록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 중 FTA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제품과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제3004호는 소매의약품으로 제3003호의 의약품을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한 것이다. 소매의약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을 기본으로 하고 제3003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3003호의 의약품으로 소매 포장하여 제3004호를 만들 경우 제3003호의 의약품은 원산지재료이어야만 원산지지위를 얻을 수 있다.

제3005호~제3006.70호에는 탈지면·반창고, 혈액형 분류 시약, 검사용 조영제, 치과용 충전제, 구급상자 등이 속한다. 이들 물품은 4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31류 비료

1. 품목분류 체계

제31류에는 ‘비료’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101	동물성 비료나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이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동물성이나 식물성 생산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3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4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정제(tablets)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2. 제31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3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3102109000(질소비료), 3105590000(질소와 인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3104909000(칼륨비료)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3102109000(질소비료)이며 전년대비 110,742.9%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HS 제3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102109000	1	-84.3	958	110742.8
2	3105590000	1,092	30.7	725	-33.6
3	3104909000	6	-96.7	553	9824.9
4	3105200000	129	23	511	294.7
5	3105909000	372	-52.8	398	7
6	3102210000	86	228.9	190	119.9
7	3101003000	26	1285.7	156	508
8	3104309000	133	0	54	-59.1
9	3102101000	33	-28.8	30	-8
10	3104200000	-	-39.3	24	28134.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904		3,629	

3. 제31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31류	한중 FTA	26
	양허제외	2
	APTA	1
합계		29
APTA 활용실익 세번		
3102.10.00		

중국은 제31류에 총31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31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26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2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31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1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4. 제3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31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31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31류에는 비료가 분류되는데 재료와 완성품의 4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4단위가 다른 비원산지재료는 사용이 가능하다.

제32류 유연용이나 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3201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3202	합성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조제유연제(천연유연제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의 효소계 조제품
3203	식물성 착색제나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추출물을 포함하고 수탄(animal black) ⁹⁾ 은 제외한다],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유기형광증백제나 합성유기루미노퍼(luminophores)(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205	레이크안료,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생산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s)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207	조제안료·조제유백제(乳白劑)·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slips)·액체상태 러스터(lusters)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이나 유리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프리트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8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과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본재료로 하여 비수성 매질(non-aqueous medium)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9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과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본재료로 하여 수성 매질(aqueous medium)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1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래커와 디스토퍼를 포함한다), 가족의 완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3211	조제드라이어
3212	비수성 매질(non-aqueous medium)에 분산시킨 안료(금속가루·금속플레이크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 상태인 것으로 한

	정한다), 스탬프용 박(foils),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3	화가용 · 학생용 · 간판도장공용 · 색조수정용 · 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 (정제 모양인 것 · 튜브들이 · 병들이 · 접시들이와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4	유리 접합용 퍼티(putty) · 접목용 퍼티(putty) · 수지시멘트 · 코킹(caulking)화합물 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s),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 · 실내벽 · 마루 · 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5	인쇄용 잉크 · 필기용 잉크 · 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 제32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3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3207304000(은으로 만든 것), 3208909019(페인트와 바니시(vernish), 3207309000(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기타의 품목)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3207304000(은으로 만든 것)이며 전년대비 22.5% 증가하였다.

HS 제3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207304000	214,062	-25.1	262,219	22.5
2	3208909019	94,728	-7.8	100,020	5.6
3	3207309000	96,068	-26.1	76,397	-20.5
4	3208901020	30,629	77	43,708	42.7
5	3206500000	39,043	-2.8	41,894	7.3
6	3208201019	23,289	3.2	21,099	-9.4
7	3214101090	27,465	12.1	20,584	-25.1
8	3208201030	10,988	17.4	19,311	75.7
9	3204170000	20,676	-16.1	18,645	-9.8
10	3206499000	17,074	29.5	17,003	-0.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800,859		823,881	

9) 수탄(animal black)은 제3802호로 분류한다.

3. 제32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32류	한중 FTA	58
	양허제외	1
	APTA	4
합계		63
APTA 활용실익 세번		
3206.49.11, 3206.49.19, 3206.49.90, 3215.19.00		

중국은 제32류에 총63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32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58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32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4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4. 제3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32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32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32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 이 적용되므로 염료재료와 완성염료의 4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페인트)

✓ 품명: 페인트 ✓ 세번: 3208.90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인트는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 또는 유기안료 또는 레이크안료) 또는 금속 플레이크나 금속분을 전색제(결합제가 비수매질에 분산 또는 용해되어 있다)에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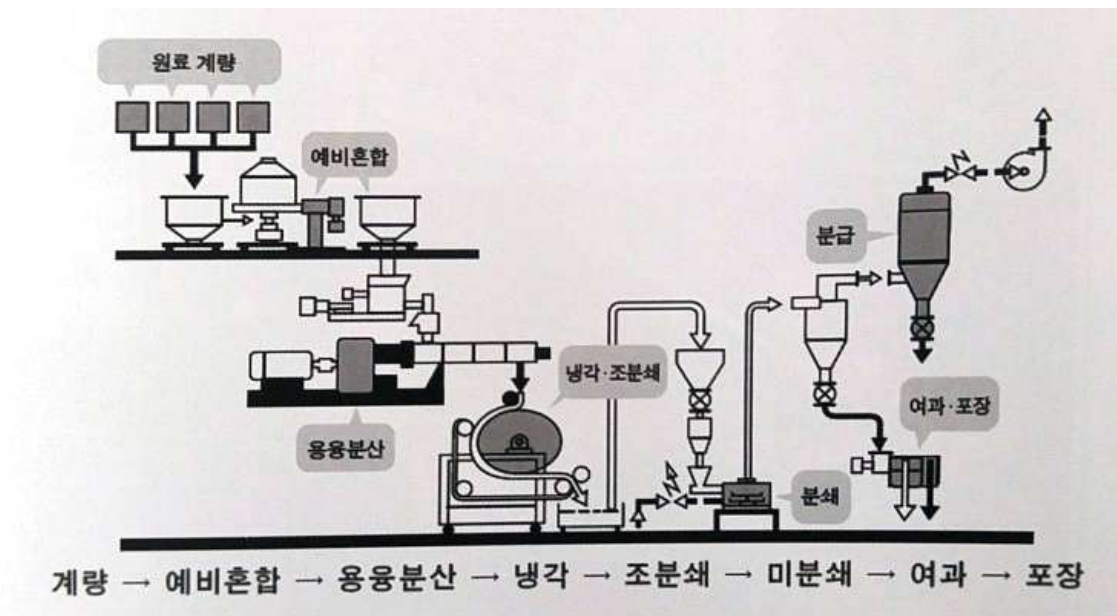
산시킨 물품이다.

결합제는 페놀수지·아미노수지·열경화성 또는 기타 아크릴 중합체·알키드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비닐중합체·실리콘·에폭시드 수지 합성고무와 같은 합성중합체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셀룰로오스 또는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들어지며, 피막생성제이다.

기타 특별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타물질·예를 들면 건조제(주로 코발트·망간·연 또는 아연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농화제(알루미늄비누와 아연비누)·계면활성제·희석제 또는 충전제(황산바륨·탄산칼슘·활석 등)와 피막방지제 (예: 부탄온 옥심)가 전색제에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

용제 희석제와 페인트 및 에나멜의 원료 배합비는 그 용도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몇 종류의 안료와 몇 종류의 결정제를 함유하고 있다.

< 페인트의 생산공정 >



< 안료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안 료	3206.11	착색을 가능하게 해 주는 원료
계면활성제	3402.11	안료의 분산제로 사용
폴리프로필렌	3902.10	프로필렌을 중화하여 얻는 열가소성 수지
인조왁스	3404.90	화학적으로 생산된 인조왁스

페인트의 원료는 수지(resin), 안료(pigment), 용제, 첨가제(surfactants)이다.

페인트의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안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와 안료의 세번을 파악하여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페인트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페인트 생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는 제시된 바와 같이 수지(제39류), 안료(제3202호~제3207호)와 기타의 첨가제이다. 원산지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이므로 페인트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4단위가 다른 경우 모든 원재료가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되더라도 안료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화장품이나 화장용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3301	정유[콘크리트(concretes)와 앵설루트(absolutes)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의 제거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resinoids),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농축물(냉흡수법이나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s)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s)
330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해당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본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3	향수와 화장수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pedicure) 제품류
3305	두발용 제품류
3306	구강이나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rs)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실내용 조제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 제33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3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3304991000(기초화장용제품류), 3304999000(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3307909000(면도용 제품류 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3304991000(기초화장용제품류)이며 전년대비 88%가 증가('14년:250,053천 달러→'15년:470,135천 달러)하였다.

HS 제3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304991000	250,053	96.1	470,135	88
2	3304999000	218,346	95.8	441,736	102.3
3	3307909000	16,685	120.5	61,578	269.1
4	3305100000	30,452	68.9	59,125	94.2
5	3304992000	25,482	68.8	53,241	108.9
6	3306100000	8,722	47.9	22,322	155.9
7	3305909000	9,055	26.3	18,786	107.5
8	3304209000	5,861	267.1	8,083	37.9
9	3307302000	3,171	253	7,471	135.6
10	3304101000	4,532	597	6,444	42.2
해당 류 총 수출금액		597,756		1,189,485	

3. 제33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33류	한중 FTA	27
	양허제외	6
	APTA	9
합계		42
APTA 활용실익 세번		

3303.00.00, 3305.10.00, 3305.90.00, 3306.10.10., 3306.10.90

3307.10.00, 3307.20.00, 3307.30.00, 3307.90.00

중국은 제33류에 총42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33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27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6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33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9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4. 제3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3301.12~ 33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33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 1211.20, 1302.19)
3302~3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33류에는 정유와 레지노이드(제3301호), 조제향료(제3302~3303호), 화장품류(제3304~3305호), 위생 및 화장용품류(제3306~3307호)등이 분류된다.

한-중 FTA는 제3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이 류에 속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제3301.90호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비원산지 원재료와 4단위 세번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제 3301.90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되, 주요 원재료로 사용되는 인산(제 1211.20호)와 인삼추출물(제1302.19호)는 반드시 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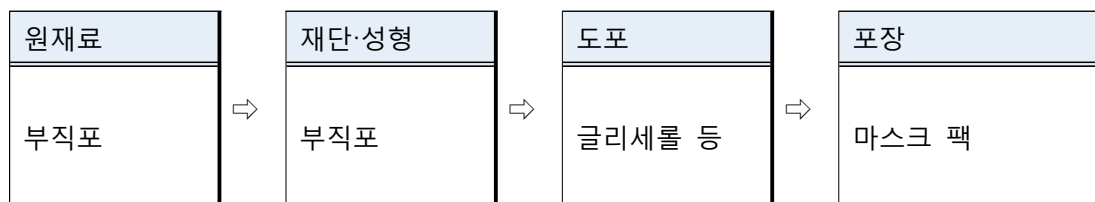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마스크 팩 ✓ 세번: 3307.90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마스크 팩은 피부 관리를 위해 피부미용제가 도포된 마스크로서 피부의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긴장시켜 탄력을 주거나 혹은 모공을 정확해 청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마스크 팩의 주요 원재료로서 얼굴 형상의 부직포와 피부미용제로 글리세롤, 스쿠알렌, 프로필렌글리콜 등의 화학물질이 주로 사용된다. 마스크 팩은 일반적으로 눈과 코 입 모양의 구멍이 나 있는 얼굴 형상의 부직포에 피부 미용제를 도포하여 만든다.

< 마스크 팩의 생산공정 >



< 마스크 팩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부 직 포	5603.91	마스크 팩의 본체가 되는 부직포
글리세롤제	2905.45	모발이나 피부의 수분을 보급하는 작용
스쿠알렌	2901.29	상어의 간유 추출물
프로필렌글리콜	2905.32	습기를 흡수하여 수분을 보유하는 효과

한-중 FTA상 마스크 팩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원재료의 4단위 세번과 마스크팩의 4단위 세번이 달라지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앞서 소개된 기본적인 원재료 내역을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해 보면, 원재료의 4단위 세번이 각각 제5603호, 제2905호, 제2901호로 마스크팩의 4단위 세번(제3307호)과 모두 다르므로 이와 같은 비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하였다면 마스크팩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제시된 원재료를 중국외의 국가에서 모두 수입하여 하여 한국에서 마스크팩을 제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제34류 비누 · 유기계면활성제 · 조제세제 · 조제윤활제 · 인조왁스 · 조제왁스 · 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 · 양초와 이와 유사한 제품 · 조형용 페이스트 · 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을 기본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34류에는 ‘비누·유기계면 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 왁스·광택이 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제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을 기본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 생산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 · 케이크 모양이나 주형 모양으로 한정하며, 비누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 생산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wadding) · 펠트(felt)와 부직포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계면활성제 ·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의 함유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3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절삭제 · 볼트나 너트 방출제 · 방청제나 부식방지제와 이형(離型)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oil)처리나 가지(grease)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3405	신발용 · 가구용 · 마루용 · 차체용(coachwork) · 유리용이나 금속용의 광택제와 크림 · 연마페이스트 · 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 ·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 · 워딩(wadding) · 펠트(felt) · 부직포 · 셀룰러 플라스틱이나 셀룰러고무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6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3407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이나 판 모양·말굽모양·막대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틱(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2. 제34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3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3401300000(피부세척 용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 3405400000(조제연마페이스트(paste)·조제연마가루와 그밖의 연마용조제품), 3404200000(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피부세척용유 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이며 전년대비 208.7%가 증가하였다.

HS 제3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401300000	7,765	178	23,967	208.7
2	3405400000	14,675	72	22,371	52.4
3	3404200000	37,635	-1.4	19,720	-47.6
4	3402139000	15,071	-6.3	17,556	16.5
5	3402190000	11,010	24.7	16,322	48.3
6	3403999000	16,380	3.4	14,009	-14.5
7	3401119000	13,749	190.3	13,710	-0.3
8	3404901090	10,984	-4	12,392	12.8
9	3402201000	8,519	22.5	10,370	21.7
10	3405909000	7,363	342.1	10,312	40.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26,699		235,593	

3. 제34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34류	한중 FTA	23
	양허제외	2
	APTA	2
합계		27
APTA 활용실익 세번		
3402.20.10, 3402.20.90		

중국은 제34류에 총27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34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23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2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34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2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4. 제3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34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34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34류에 속하는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401.11호의 화장비누는 다양한 화학성분을 조합하여 제조하는데 대체로 29류에 속하는 원재료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요 원재료가 제29류로 화장비누(제3401호)와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클렌징 폼을 예로 들면 클렌징 폼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제3401호에 속하지 않는 재료라면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완제품과 원재료의 4단위 세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클렌징 폼을 생산하는데 제3402.90호의 원재료를 사용한다면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폼클렌징 ✓ 세번: 3401.30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폼클렌징의 주요 원재료 >

품명	HS	품명	HS
	2210.10	면포방지제	2802.00
깨면활성제	2915.90	습윤제	1520.00
산도조절제	2915.20		

폼클렌징은 세안용 화장품으로 최근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중 FTA는 폼클렌징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HS 4단위 기준에서 원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달라지도록 계약당사국에서 제조·가공공정이 수행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

능하다

그러므로 폼클렌징이 분류되는 제3401호에 속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제조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제시된 원재료의 예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면 모든 원재료의 세번이 폼클렌징과 4단위 기준으로 상이하므로 원재료를 모두 수입하여 생산하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1. 품목분류 체계

제35류에는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501	카세인 · 카세인산염(caseinates)과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s)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3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s) 모양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 여부를 불문한다]와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s)[제3501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s)는 제외한다]
3504	펩톤(peptones)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 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징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 · 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재료로 한 글루(glues)
3506	조제글루(glues)와 그 밖의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s)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생산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s)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7	효소,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

2. 제35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3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3506910000(고무제의 접착제), 3506102000(플라스틱을 기본재료로 한 것), 3506999000(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 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3506910000(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재료로 한 접착제)이며 전년대비 4.9%가 감소하였다.

HS 제3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506910000	79,165	16.1	75,273	-4.9
2	3506102000	37,697	11.4	30,563	-18.9
3	3506999000	8,610	-20.7	10,632	23.5
4	3506109000	6,728	-46.9	9,442	40.3
5	3507909000	1,563	45	2,427	55.3
6	3506101000	2,610	233	2,207	-15.4
7	3505109090	2,443	306.4	1,728	-29.3
8	3502110000	-	0	452	0
9	3506991000	172	496	378	119
10	3504002090	38	-85.2	142	273.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39,777		133,587	

3. 제35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35류	한중 FTA	17
	APTA	4
합계		21
APTA 활용실익 세번		
3506.91.10, 3506.91.20, 3506.91.90, 3506.99.00		

중국은 제35류에 총21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35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7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4개의 세번은 APTA 활용실익이 큰 품목으로 나타난다.

4. 제3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구성분석) 한-중 FTA에서 제35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카세인 기타품목(제3501.90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이 적용된다.

(기본해설) 제35류에 속하는 대부분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카세인 기타품목(제3501.90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므로 비원산지재료의 투입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변성전분이 분류되는 제3505.10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되 전분(제1108호)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변성전분을 생산할 때 원재료인 전분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3505호에 속하지 않는 재료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데 무리가 없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35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350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3502~3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35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 1108)
35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3506~3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제36류 화학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36류에는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601	화약(propellent powders)
3602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3603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3604	불꽃제품 · 신호용 조명탄 · 레인로켓(rain rockets) · 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3605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3606	페로세륨과 그 밖의 발화성 합금(모양 여부를 불문한다), 이 류의 주 제2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2. 제36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3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3606100000(흡연용ライター 액체연료), 3606909090(페로세륨)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3606100000(흡연용ライター 액체연료)이며 전년대비 61.7%가 감소하였다.

HS 제3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606100000	254	-3.2	97	-61.7
2	3606909090	-	0	45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54		142	

3. 제36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36류	한중 FTA	11
합계		11
APTA 활용실익 세 번		
없음		

중국은 제36류에 총11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36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3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3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36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의 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화약, 폭약, 불꽃놀이 제품 등이 포함된 제36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36류에 속하는 화약 등은 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물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3701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평면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나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packs)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702	롤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나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3	사진인화지·판지와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4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와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5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이나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707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글루(glues)·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 제37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3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3707901090(포토레지스트), 3705909090(천문용 등의 현상한 사진필름), 3707909200(조색제)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3707901090(포토레지스트)이며 전년대비 61.7%가 증가하였다.

HS 제3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707901090	113,846	114.1	184,144	61.7
2	3705909090	60,821	82.3	64,015	5.3
3	3707909200	54,326	7.3	43,656	-19.6
4	3707901010	36,050	107	37,920	5.2
5	3705901000	37,985	35.8	34,385	-9.5
6	3707909900	7,264	872.8	8,012	10.3
7	3701991000	3,821	43.8	3,105	-18.7
8	3702983000	712	-11.6	784	10
9	3707902990	404	-88.7	579	43.1
10	3702399090	297	0	578	94.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17,476		379,093	

3. 제37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37류	한중 FTA	46
	양허제외	13
	무관세	4
합계		63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37류에 총63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37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46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4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13개의 양허제외 품목이 존재한다.

4. 제3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3701~37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3707)
3704~3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37류는 4단위 세번변경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한-중 FTA는 제37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

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3701~제3703호를 생산함에 있어 제3707호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3707호의 재료는 반드시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토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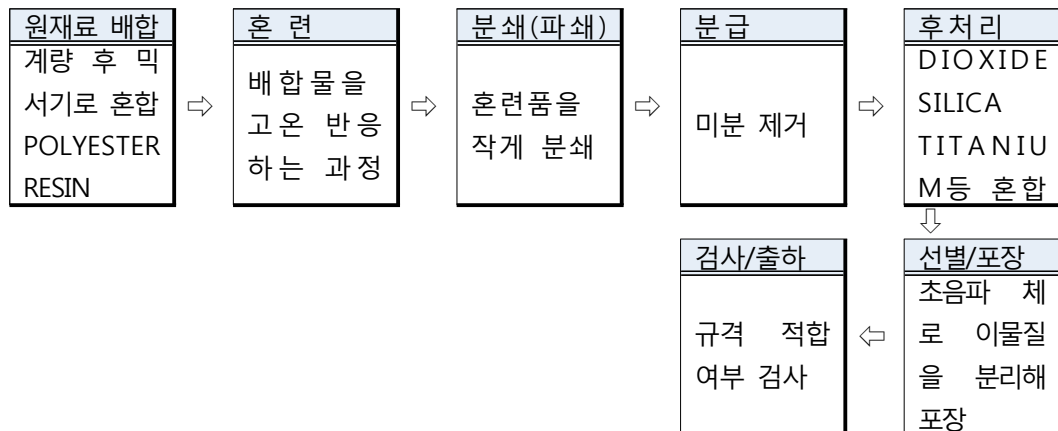
✓ 품명: 토너 ✓ 세번: 3707.90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프린터용 토너는 복사기 또는 레이저 인쇄기에서 잉크 대신 사용되는 검은색 탄소 가루. 가열 또는 압력에 의해 종이에 흡착되도록 함으로써 정보를 인쇄한다.

토너는 플라스틱제 “카트리지”에 2종 이상의 사진용 물질을 혼합 또는 복합하여 만든 조제품인 “조색제(Toners)”가 담겨 있는 물품으로서 복합기 내부에 장착된 모터의 작동으로 발생된 동력에 의해 홀더가 회전운동을 하고 카트리지는 그 홀더에 끼워져 피동적으로 회전하며 복합기와 연결이 되도록 양 끝단이 특별히 제작되었으나 기어·교반장치 등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교체되는 소모성 물품이다.

토너의 제조과정은 우선 원재료를 계량 후 믹서기로 혼합한다. 배합한 재료를 혼련기에 투입하여 혼련하고 식힌 후 1차 및 2차 분쇄를 거친다. 2차 분쇄 후 재료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3차 분쇄하여 분급하며, 분급한 재료를 후 처리제를 투입한 후 믹싱하여 메쉬를 통해 제품을 선별하고 제품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에 주입하거나 소매 포장하여 완성한다.

< 토너의 제조과정 >



< 토너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합성유기 착색제	3204.19	토너의 주요 원재료
dioxide silica	2811.22	
카본 블랙	2803.00	
스틸렌 수지	3903.99	
CCA bontron	2918.23	
아크릴 폴리머	3906.90	
안료	2821.10	

앞서 제시된 토너의 원재료를 예로 원산지를 판단해보도록 한다. 토너의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토너 생산에 사용되는 비 원산지 재료의 4단위 세번이 토너의 4단위 세번(제3707호)과 다르면 토너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위에 예로 제시한 원재료의 세번은 모두 토너의 4단위 세번과 상이하다. 따라서 위의 원재료들을 수입하여(즉, 비원산지재료를) 생산하여도 상품에 사용된 재료와 상품의 세번이 상이하여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토너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1. 품목분류 체계

제38류에는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2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s) · 블록 · 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3803	톨유(tall oil)(정제 여부를 불문한다)
3804	목재펠트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하거나 당류를 제거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리그닌 술포산(lignin sulphonates)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3805	검(gum)테레빈유 · 우드(wood)테레빈유나 황산(sulphate)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terpenic oils)(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dipentene),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para-cymene),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6	로진(rosin).수지산(rosin acids)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s), 런검(run gums)
3807	목타르(wood tar), 목타르유(wood tar oils) · 목크레오소트(wood creosote), 목나프타, 식물성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 · 수지산이나 식물성피치(pitch)를 기본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3808	살충제 · 살서제(취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생산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 조제품으로 한 것이나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 심지 · 양초와 파리 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9	완성가공제 · 염색촉진용이나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 · 드레싱과 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생산품과 조제품(섬유공업 · 제지공업 · 가죽공업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조제품, 납불임용 · 땀질용이나 용접용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불임용 · 땀질용이나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s)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이나 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1	안티녹제(anti-knock) · 산화억제제 · 검화억제제(gum inhibitors) · 점도향상제 · 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이나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

	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이나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3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3814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s)(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나 바니시 제거제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과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6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생산품은 제외한다)
3817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나 제2902호의 생산품은 제외한다)
381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doped)된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doped)된 화학화합물
3819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癭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癭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820	부동(不凍)조제품과 조제 제빙액(de-icing fluids)
3821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이나 동물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culture media)
3822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나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s),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합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3826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癭靑油)를 함유하지 않았거나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제38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3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3824909090(주물 조형용 조제 점결제), 3824907600(액정용 조제품), 3818001000(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 된(doped)화학원소)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3824909090(주물 조형용 조제 점결제),이며 전년대비 15%가 감소하였다.

HS 제3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824909090	274,428	19.4	233,237	-15
2	3824907600	141,382	46.7	175,762	24.3
3	3818001000	110,855	-8	105,599	-4.7
4	3809910000	53,125	3.6	53,281	0.3
5	3808929000	50,091	386.5	52,458	4.7
6	3824907100	26,659	-17.6	21,251	-20.3
7	3808919000	48,744	22.6	20,289	-58.4
8	3812302000	16,945	5.6	17,734	4.7
9	3814001090	18,397	-0.4	16,246	-11.7
10	3810109000	19,791	-15.7	16,055	-18.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982,242		899,219	

3. 제38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38류	한중 FTA	101
	무관세	3
	APTA	3
합계		107
APTA 활용실익 세번		
3808.91.11, 3808.91.12, 3808.91.19		

중국은 제38류에 총107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38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01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3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38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3개의 세번이 존재하므로 한중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비교하여 보다 효과가 높은 것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제3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확인요망)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3801~38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3825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38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38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38류는 매우 다양한 화학공업생산품이 분류된다. 화학공업에 의한 폐기물(제3825호)를 제외한 모든 제38류의 품목은 한중 FTA상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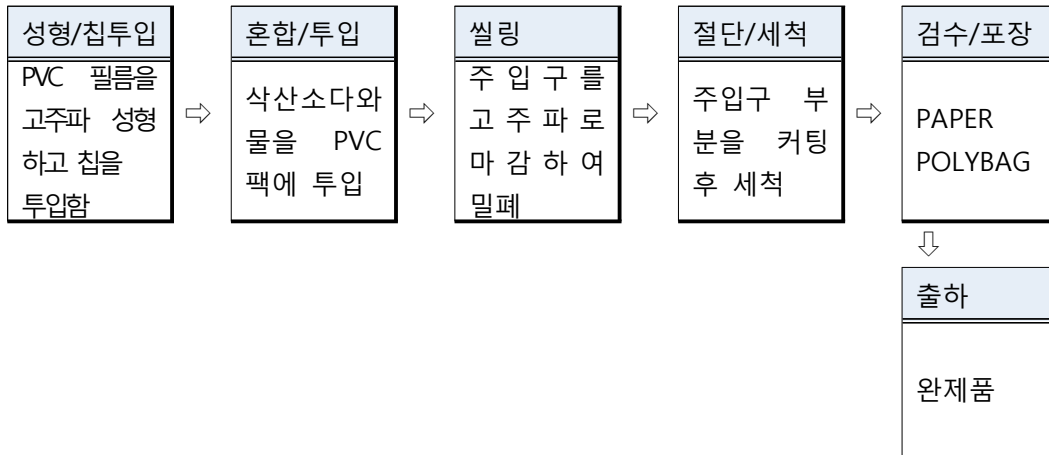
화학공업에 의한 폐기물(제3825호)는 완전생산기준을 택하여 폐기물의 원산지판단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는 폐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을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면서 화학공업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제28류~제37류, 제40류~제90류를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하였다. 결국 두 협정 모두 폐기물의 원산지규정 표현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의미는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핫팩 ✓ 세번: 3824.90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핫팩은 스팀이나 뜨거운 물수건을 이용하는 팩으로 체온이 내려갔을 때 주로 사용되며, 의료목적으로 저체온증의 환자에게 이용되기도 하는 등 활용성이 매우 높다.

< 핫팩의 제조과정 >



햇팩의 제조과정은 PVC 필름을 일정한 모양대로 고주파하여 팩을 만든 후 칩을 투입한다. 식산소다와 물의 혼합물에 열을 가하여 일정비율로 준비한 후 혼합물을 PVC 팩에 투입한다. 액주입구를 고주파로 마감하여 밀폐시키고 주입구 부분을 모양에 맞게 커팅하고 세척한다. 이후 제품을 검수하여 폴리백과 포장지에 포장한다.

< 햇팩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이소프로필 알콜	2905.12	토너의 주요 원재료
황상디에틸	2920.90	
유기계면활성제	3402.13	
스테아린산	3823.11	
PVC 필름	3920	
폴리백	3923.29	
활성탄	3802	

햇팩의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위에서 햇팩의 일반적인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확인하였다. 햇팩은 제3824.90호에 분류되므로 사례에서 제시된 원재료의 4단위 세번과 비교하여 원산지를 판단하면 모든 원재료의 4단위 세번이 햇팩과 모두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위에 제시된 원재료 모두 비원산지재료라고 하더라도 햇팩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제40류)

제7부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절에 속한 2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① 일차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명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1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팜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4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②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과 반제품·완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917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갈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2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3925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2. 제39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3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3902100000(폴리프로필렌), 3907400000(폴리카보네이트), 3901209000(폴리에틸렌의 기타의 품목)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3902100000(폴리프로필렌)이며 전년대비 16.3%가 감소하였다.

HS 제3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902100000	926,964	12.3	775,591	-16.3
2	3907400000	722,247	3.4	738,706	2.3
3	3901209000	919,611	-11.7	708,196	-23
4	3903300000	813,429	-6.4	653,925	-19.6
5	3919900000	609,850	-9.2	546,012	-10.5
6	3901300000	507,057	153	497,388	-1.9
7	3902300000	737,580	-15.1	447,027	-39.4
8	3923100000	299,949	6.4	345,415	15.2
9	3920620000	239,395	-23.4	262,297	9.6
10	3901109000	279,341	9.3	259,385	-7.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0,314,075		9,062,486	

3. 제39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39류	한중 FTA	119
	양허제외	14
	APTA	31
합계		164

APTA 활용실익 세번

3901.10.00, 3901.20.00, 3901.30.00, 3902.30.90, 3903.11.00, 3906.10.00
 3906.90.10, 3916.20.10, 3916.20.90, 3917.39.00, 3919.90.10, 3919.90.90
 3920.10.10, 3920.10.90, 3920.30.00, 3920.43.00, 3920.49.00, 3920.51.00
 3920.61.00, 3920.62.00, 3920.94.00, 3921.13.10, 3921.13.90, 3921.19.10
 3921.19.90, 3921.90.30, 3921.90.90, 3923.10.00, 3923.40.00, 3923.90.00, 3925.20.00

중국은 제39류에 총164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39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19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4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39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31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4. 제3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3901~39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3915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3916~39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한-중 FTA는 제39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였다. 다만 제391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해설) 한-중 FTA는 제39류에 속하는 품목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다른 호에 속하는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제38류에서처럼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역외산 재료의 유입가능성을 차단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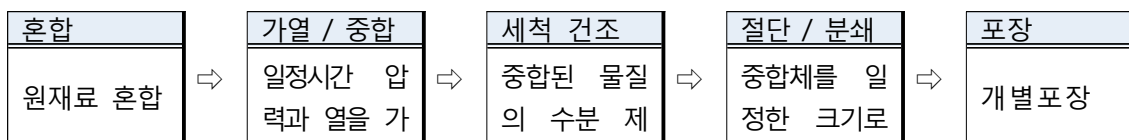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폴리스티렌)

✓ 품명: 폴리스티렌 ✓ 세번: 3903.30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스티렌을 중합하여 만든 열가소성의 수지로 무색투명하다. 유전체로서 또 전기 절연물로서 매우 양호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폴리스티렌이라고도 하는데 동축 케이블의 중심 도체의 지지물, 광학 렌즈 등에 사용된다.

폴리스티렌을 제조는 원재료를 중화하기 전에 물에 용해시켜 준비공정을 거친 후 주요 원재료인 스티렌 단량체를 투입하여 중합반응을 일으키고 세척과 탈수, 건조공정을 거친다. 이 단계에서 반응시 넣었던 잔존물들을 제거한 후 일정한 크기로 분쇄하고 여기서 Pentane의 방출을 막기 위해 코팅을 한다. 이후 개별포장 후 완제품을 완성한다.

< 스티렌의 주요 제조공정 >



	함	거	절단 / 분쇄 함	
				↓
				출하
				완 제 품

폴리스티렌의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제시된 사례에서 폴리스티렌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를 나열하였다. 상품의 원산지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원재료의 지위를 ‘원산지재료’인지 ‘비원산지재료’인지 구분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각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알수 없지만 폴리스티렌의 원산지를 판단함에는 무리가 없다.

< 폴리스티렌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styrene monomer	2902.50	폴리스티렌의 주요 원재료
pentane	2901.10	
acrylo-nitrile monomer	2926.10	
fatty soap	3401.20	
methyl methacrylate	2916.14	

왜냐하면 폴리스티렌의 4단위 세번(제3903호)와 원재료의 4단위 세번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품과 비원산지재료의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여야 하는데 위의 사례에서 모든 원재료 세번이 상품세번과 달라 사례의 원재료는 모두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폴리스티렌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40류에는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4011호와 제4002호는 수출 비중이 매우 높으나, 제4001호(천연고무)는 수입이 절대적으로 많다.

품목번호	품 명
4001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울(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3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4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4005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6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관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링]
4007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008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4009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10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 타이어 트레드(tread), 타이어 플랩(flap)
4013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4014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젓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15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7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2. 제40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40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4002190000(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4002209000(부타디엔 고무(BR)), 4002709000(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4002190000(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4002209000(부타디엔 고무(BR))이며 전년대비 24.1%가 감소하였다.

HS 제40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002190000	211,579	-19.5	160,502	-24.1
2	4002209000	146,386	-25.6	125,811	-14.1
3	4002709000	128,214	6.7	105,586	-17.6
4	4002590000	63,808	-6.2	63,123	-1.1
5	4016930000	50,380	28.6	58,459	16
6	4016999000	47,221	1.5	51,476	9
7	4005101000	40,978	11.1	46,165	12.7
8	4002110000	57,428	33.9	43,088	-25
9	4016991090	22,996	15.8	24,314	5.7
10	4002510000	18,394	26.2	15,719	-14.5
해당 류 총 수출금액		888,972		782,015	

3. 제40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40	한중 FTA	107
40	양허제외	2
40	무관세	1
40	APTA	2
합계		112
APTA 활용실익 세번		
4001.21.00, 4001.29.00		

중국은 제40류에 총112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40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07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2개의 양허제외 품목과 2개의 APTA 양허품목이 있다.

4. 제4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400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4002~4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4004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4005~40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40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천연고무(제4001호)와 웨이스트(제4004호)의 경우에만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40류에는 천연고무, 천연고무와 유사한 천연검, 합성고무 라텍스 및 재생고무 등의 일차제품과 웨이스트, 스크랩 등과 고무류의 기타 제품들이 분류된다.

우선 제4001호와 제4004호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비원산지 재료와 제품의 4단위 호가 서로 상이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천연고무와 웨이스트는 완전생산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역내에서 재배 및 수확하여 획득한 것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가스켓 ✓ 세번: 4016.99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가스켓은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 헤드 사이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엔진의 각 부위를 밀봉하여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 등이 새어 나오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가스켓의 주요 원재료는 고무(4002호)와 가황촉진제(제2930호)로 고무를 가황하여 개별 엔진 모양에 맞게 생산한다.

가스켓에 대해 한-중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투입되는 모든 비원산지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상이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투입되는 모든 원재료가 비원산지물품이라 하더라도 완제품과 동일한 세번의 물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제8부 원피 · 가죽 · 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요구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제43류)

제8부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1. 품목분류 체계

제41류에는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1개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생 것 ·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parchment-dreed)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102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 ·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가공(parchment-dreed)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이나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4103	그 밖의 원피(생 것 ·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가공(parchment-dreed)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이나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 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6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7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동물의 가죽(파치먼트가공(parchment-dressed)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2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3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4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가죽(patent leather)과 적층한 페이턴트 가죽(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가죽(metallised leather)
4115	컴퍼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s) 모양이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컴퍼지션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 2002년도에 제4108호부터 제4111호까지의 4개 호는 삭제

2. 제41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4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4107920000(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114201000(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4112000000(양가죽)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4107920000(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114201000(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이며 전년대비 1.1% 증가하였다.

HS 제4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107920000	169,995	-0.1	171,784	1.1
2	4114201000	28,160	18.9	24,238	-13.9
3	4112000000	17,579	-34.5	19,436	10.6
4	4107990000	20,217	-25.7	16,914	-16.3
5	4107190000	14,402	0.8	12,510	-13.1
6	4107120000	11,867	-10.5	6,717	-43.4
7	4104190000	6,745	30.7	4,048	-40
8	4115100000	3,603	206.3	3,987	10.7
9	4107910000	5,560	47.2	2,431	-56.3
10	4101502000	837	0	2,350	180.6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91,373		271,084	

3. 제41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41류	한중 FTA	50
	APTA	10
합계		60
APTA 활용실익 세번		
4104.11.11., 4104.11.19., 4104.11.20., 4104.19.11, 4104.19.19, 4104.19.20, 4104.49.90, (유연처리한 소의 원피) 4105.10.90, 4105.30.00 (유연처리한 양의 원피), 4112.00.00		

중국은 제41류에 총60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41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50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0개의 세번은 APTA 활용실익이 큰 품목으로 나타난다.

4. 제4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4101~4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411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4115.2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41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41류에는 모피를 제외한 원피와 가죽이 분류된다. 소, 양, 기타의 원피가 분류되는 제4101호~제4103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이다. 따라서 제4101호 소의 원피를 제0102호의 소로부터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경 이 충족된다. 다만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제4101호)를 수입하여 털을 깎은 후 그 원피(제4101호)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4104.11~4104.19호의 유연 처리한 소의 원피(습윤상태의 것)는 제4101호(소의 원피)로부터 생산된다. 동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소의 원피를 수입하여 습윤상태의 유연 처리한 소의 원피를 생산하면 이는 제4101 호에서 제4104호로 4단위 세번변경이 되었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제4104.41~4104.49호의 유연 처리한 소의 원피(건조 상태)는 제4104.11 호 또는 제410.19호의 원피를 건조하면 완성되는 물품으로 습윤 상태의 소 원피 (제4104.11호~제4104.19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건조하여도 비원산지재료와 물품 의 4단위 세번이 제4104호로 동일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 품명: 그레인 스플릿 ✓ 세번: 4107.92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가죽제조과정에서 스플릿(split)이란 원피를 두 층 또는 세 층씩 상하로 분할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분할하지 않은 원래 두께의 통가죽은 풀 그레인(full grain)이라 부르며, 털이 붙어 있는 표면층을 분할하여 가공한 것은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은면혁)이라고 하며, 은면층 아래의 육면층을 가공한 것을 스플릿(split, 스플릿)이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완성가공을 거친 소가죽의 주요 원재료는 유연처리한 소의 원피이다.

< 그레인 스플릿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유연 처리한 소의 원피	4104	소의 원피를 유연 처리 가공한 것

가죽의 가공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수행된다.

① 준비단계 : 가죽생산에 불필요한 원피의 성분들인 털, 지방, 가용성 단백질 등을 제거하고 단백질 섬유의 망상조직만을 남겨 놓는 공정

② 유연처리 및 크러스트 처리 단계 : 단백질 섬유의 망상조직에 유제약품을 반응시켜 일정한 섬유조직을 만드는 공정.

③ 완성가공 단계 : 유연처리가 끝난 섬유조직에 충실감, 색깔, 유연성 및 윤활감을 주어 사람이 즐겨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표면을 마무리하는 공정

< 소가죽 생산 공정 >

원피	유연처리, 크러스트처리	완성가공
생것, 염장, 건조, 석회처리, 산처리, 기타 보존처리한 원피(탈모.스플릿여부 불문)	유연제(식물성탄닌, 크로뮴염, 합성화학약품 등) 처리	유연.신장.박연.타연.경화.도포.은면가공 또는 각인.윤택.연마.왁스처리.흑염.그레이징.광택처리.날염 등 완성가공
HS 제4101호~제4103호	⇒ 건조처리(크러스트처리) HS 제4104호~제4106호	HS 제4107호, 제4112호~제4113호

동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투입되는 모든 비 원산지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상이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투입되는 원재료인 소의 원피(HS 제4101호)를 수입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유연처리등 가죽을 만드는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인 그레인 스플릿(HS 제4107호)을 제조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마찬가지로 유연처리 등 일차 가공된 원피(HS 제4104호)의 경우에도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입하여 추가가공을 통해 그레인 스플릿(HS 제4107호)을 생산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42류에는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201	동물용 마구(고삐 줄·끈·무릎받이·재갈·안장용 방석·안장에 다는 주머니·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종류는 불문한다)
4202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executive-cases)·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 케이스·권총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시트(sheets)·방직용 섬유재료·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나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 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이나 컴퍼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205	그 밖의 제품[가죽이나 컴퍼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206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s skin)·방광이나 건(腱)의 제품

※ 2007년도에 제4204호는 삭제

2. 제42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4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4202121010(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4202211090(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205001900(그밖의 가죽제품)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4202121010(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이며 전년대비 20.7%가 감소하였다.

HS 제4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202121010	8,385	100.3	6,645	-20.7
2	4202211090	5,691	70.6	6,178	8.6
3	4205001900	8,693	20.7	6,060	-30.3
4	4202111090	4,527	147.4	2,830	-37.5
5	4205001190	1,765	33	1,838	4.1
6	4202122000	1,274	-16.7	1,703	33.7
7	4202922000	1,790	-15.5	1,614	-9.9
8	4202921090	3,754	-53	1,611	-57.1
9	4202311090	2,155	47.1	1,484	-31.1
10	4202221010	1,346	53.1	1,338	-0.6
해당 류 총 수출금액		53,648		41,421	

3. 제42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43류	한중 FTA	17
	양허제외	1
	APTA	8
합계		26
APTA 활용실익 세번		
4201.00.00, 4202.12.10., 4202.21.00, 4202.29.00		
4202.31.00, 4202.32.00, 4202.39.00, 4203.21.00		

중국은 제42류에 총26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42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7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42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이 가능한 8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4. 제4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42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42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42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41류의 가죽을 수입하여 마구(제4201호), 핸드백 등 가죽제품(제4202호), 가죽의류(제4203호), 공업용가죽제품(제4204호), 기타의 가죽제품(제4205호)을 생산하여 캐나다로 수출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43류에는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 표43과 같이 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301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꼬리부분·발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제4102호나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4302	모피(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꼬리부분·발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303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4304	인조모피와 그 제품

2. 제43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4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4303101100(밍크의 것), 4302192000(사향뒤쥐의 것), 4302193000(여우의 것)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4303101100(밍크의 것)이며 전년대비 14.7% 감소하였다.

HS 제4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303101100	788	-63.9	672	-14.7
2	4302192000	210	0	476	126
3	4302193000	587	0.4	411	-30
4	4303101200	189	-31.2	355	87.8
5	4303102920	533	10.2	303	-43.3
6	4303101300	415	-16.7	230	-44.5
7	4303101600	246	-18.8	222	-9.8
8	4304002000	81	33.3	140	72
9	4303102600	41	-23.6	123	197.3
10	4303102200	74	1208.2	103	39.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487		3,394	

3. 제43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43류	한중 FTA	20
합계		20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43류에 총20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43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4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4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43류는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43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모피(제4301호)를 수입하여 모피(제4302호), 모피의류(제4303호)를 역내에서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인조모피와 그 제품(제4304호)를 생산하고 이를 중국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세공물과 지조세공물 (제44류~제46류)

제9부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1. 품목분류 체계

제44류에는 ‘목재와 그 제품, 목탄’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21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401	떨나무(통나무.목편.작은 가지.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모양의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s)·펠릿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2	목탄[(셸(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3	원목[꺾절이나 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4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split poles), 뽕죽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s)[지팡이·산류(傘類)·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제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휼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4405	목모(wood wool), 목분(wood flour)
4406	궤도용 침목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평삭한 것이나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나 엔드-조인트(end-jointed)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용 단판과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평삭(平削)한 것이나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나 엔드-조인트(end-jointed)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9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s)과 프리즈(friezes)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나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축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나 엔드-조인트(end-jointed)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1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riented strand board, OSB)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wafer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11	섬유판(fibre-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3	고밀도화 목재[블록(blocks) 모양·플레이트(plates) 모양·스트립(strips)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4	목재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415	목재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s)·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재로 만든 케이블드럼(cable-drums), 목재로 만든 팔레트(pallets)·박스팔릿과 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팔레트 칼라(pallet collars)
4416	목재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s)·텍(tubs)과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널(staves)을 포함한다]
4417	목재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신발의 목제골
4418	목재로 만든 건축용 건구(建具)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s)·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9	목재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420	마르케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inlaid) 목제품, 목재로 만든 신변장 식용품용이나 칼붙이와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caskets)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小像]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재로 만든 가구
4421	그 밖의 목제품

2. 제44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4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4407107000(가문비 나무), 4415200000(팔릿(pallet)등, 4408909380(무늬목)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4407107000(가문비 나무)이며 전년대비 42.3% 증가하였다.

HS 제4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407107000	1,570	37.2	2,235	42.3
2	4415200000	725	23.3	935	29
3	4408909380	660	-6.2	461	-30.1
4	4418100000	424	-16.8	339	-19.9
5	4421909000	366	-20.1	339	-7.2
6	4415100000	705	-5.1	225	-68.1
7	4411142090	16	-13.9	179	1048
8	4412327000	-	0	156	0
9	4407930000	154	1	97	-37
10	4408109960	28	0	90	220.7
해당 류 총 수출금액		6,462		6,133	

3. 제44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44류	한중 FTA	80
	양허제외	23
	무관세	73
합계		176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44류에 총176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44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80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73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44류에는 양허제외 품목이 23개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제4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4401~44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4404~4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44류는 2단위 및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4401호~제4403호는 땔나무, 목탄, 원목이 분류되는데 이들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06류의 살아있는 수목의 상태에서 벌채하거나 절단하여야 동물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완전생산기준의 의미로 풀이된다.

그 외 제44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45류에는 ‘코르크(cork)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501	천연코르크(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의 웨이스트, 부순 코르크·알갱이 모양 코르크나 잘게 부순 코르크
4502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거칠게 각을 만든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모양·판 모양·시트(sheets) 모양이나 스트립(strips) 모양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s) ¹⁰⁾ 을 포함한다]
4503	천연코르크의 제품
4504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와 응집코르크의 제품

2. 제45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4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4504100000(응집 코르크), 4502000000(천연 코르크(cork)), 4504900000(기타의 품목)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4504100000(응집 코르크)이며 전년대비 138.5% 증가하였다.

HS 제4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504100000	35	0	83	138.5
2	4502000000	-	0	4	1999.5
3	4504900000	18	-12	1	-94.5
해당 류 총 수출금액		53		88	

10) 일반적으로 블랭크(blanks)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성된 제품과 같이 분류한다. 그러나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는 코르크의 제품(제4503호나 제4504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코르크의 반제품으로 제4502호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제4502호의 용어에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통칙 제2호 가목보다 통칙 제1호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물론 가장자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마개용 코르크는 제4503호나 제4504호로 분류한다.

3. 제45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45류	한중 FTA	5
	무관세	3
합계		8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45류에 총8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45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5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3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45류에는 APTA 양허품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APTA 활용실익 또한 없다.

4. 제4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4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45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45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코르크 제품에 4단위 호의 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가 부여된다. 예를들어 천연코르크(제4501호)를 잘라서 코르크제품(제4502호)을 만드는 단순공정이라 하더라도 호의 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1. 품목분류 체계

제46류에는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2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601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생산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조물재료.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를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생산품(시트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과 같이 최종 제품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602	바구니세공물(basketware)·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2. 제46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4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4601291000(매트류), 4602111000(바구니), 4602119000(대나무로 만든 것)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4601291000(매트류)이며 전년대비 295% 증가하였다.

HS 제4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601291000	7	2210.3	28	295
2	4602111000	-	0	7	0
3	4602119000	-	0	6	0
4	4602112000	-	-100	2	0
5	4602199000	-	-100	1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7		44	

3. 제46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46	한중 FTA	24
합계		24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46류에 총24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46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4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4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4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46류는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4601호의 쉬트상의 조물제품은 06류의 식물을 수입하여 이로부터 조물재료를 생산하면 2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만, 동일한 제46류에 속하는 물품을 수입하여 재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4602호의 농세공품 및 지조세공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조물재료(제4601호)를 수입하여 농세공품 등(제4602호)를 생산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종이와 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47류~제49류)

제10부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 종이나 판지의 제품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와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이프문서와 도면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 품목분류 체계

제47류에는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701	기계목재펄프
4702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4705	기계적 펄핑(pulping)과 화학적 펄핑(pulping)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4706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4707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 제47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4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회수한 종이류로 4707900000, 4707100000, 4707200000등이 있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4707900000(기타의 종이)이며 전년대비 24.9% 증가하였다.

HS 제4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707900000	38,245	46.4	47,751	24.9
2	4707100000	8,315	-43.5	7,890	-5.1
3	4707200000	194	109.7	4,037	1978.6
4	4707300000	1,358	-62.5	1,918	41.2
5	4703212000	40	-84.7	1,115	2715.3
6	4705000000	364	-35.9	259	-28.8
7	4706200000	172	287	122	-29.2
8	4703292000	307	-95.5	35	-88.7
9	4706932000	1	0	12	762.7
10	4706912000	-	0	-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8,996		63,139	

3. 제47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47	무관세	21
합계		21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47류에 총21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47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무관세 품목으로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이 없다.

4. 제4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4701~47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4707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47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47류에 속하는 물품은 제4707호 를 제외하고는 모두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회수한 종이나 판지, 즉 종이의 웨이스트나 스크랩이 분류되는 제4707호는 역내에서 완전생산될 것을 규정하여 역외산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48류에는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의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22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 제4815호는 삭제

품목번호	품 명
4801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모양으로 한정한다)
4802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인쇄용이나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종이[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한다], 손으로 만든 종이와 판지
4803	화장지나 안면용 티슈스톡·타월이나 냅킨스톡(napkin stock)·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 것(crinkled)·올록볼록한 것(embossed)·구멍을 뚫은 것(perforated)·표면착색·표면장식이나 인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롤 모양이나 시트모양으로 한정한다]
4804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2호나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5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806	황산지·내지지(耐脂紙)·트레이싱지(tracing papers, 透寫紙)·글라신지(glassine papers)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7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808	물결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주름지거나(creped).구겨지거나(crinkled)·올록볼록하거나(embossed)·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9	카본지·셀프복사지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세트플레이트(offset plates)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0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제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로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이나 인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1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s)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이나 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나 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2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 블록(blocks).필터 슬래브(slabs)와 필터 플레이트(plates)
4813	꺾린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소책자(booklets)나 튜브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814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창용 투명지
4816	카본지·셀프복사지·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플레이트(offset plates)(상자에 든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817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합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pouches).지갑과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8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s)·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로 만든 상자·포장대와 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제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2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제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s)·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나 그 밖의 것)·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의 앨범과 책 커버
4821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 여부를 불문한다)
4822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로 만든 보빈(bobbins)·스풀(spools)·콕(cops)과 이와 유사한 권취용 제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823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2. 제48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4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4810131000(인쇄용·필기용 종지와 판지), 4810191000(인쇄용·필기용 종지와 판지), 4811590000(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지와 판지)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4810131000(인쇄용·필기용 종지와 판지), 4810191000(인쇄용·필기용 종지와 판지)이며 전년 대비 1.5%로 소폭 감소하였다.

HS 제4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810131000	28,318	-14.5	27,897	-1.5
2	4810191000	20,724	-21	21,483	3.7
3	4811590000	22,484	-15.5	20,599	-8.4
4	4801000000	18,833	-56.1	19,535	3.7
5	4819200000	9,309	-18.4	12,142	30.4
6	4823909090	15,537	-10.6	12,107	-22.1
7	4818900000	5,887	92.6	8,839	50.1
8	4810929000	5,255	5308392.9	8,131	54.7
9	4810139000	7,974	3.5	7,659	-4
10	4821100000	8,469	-21.4	7,303	-13.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18,328		211,373	

3. 제48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48	한중 FTA	9
48	양허제외	107
합계		116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48류에 총116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48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07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이고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9개에 불과하다.

4. 제4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4801~48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48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 48.09)
4817~48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48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48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롤상의 복사지(제4809호)를 잘라서 복사지(제4816호)를 만드는 비교적 간단한 공정의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때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4816호의 카본지나 셀프복사지의 경우 4단위 호가 다른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만 롤이나 시트형의 카본지나 셀프복사지(제4809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므로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와 그 밖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자문서와 도면

1. 품목분류 체계

제49류에는 ‘인쇄서적·신문·회화와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와 도면’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1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901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s)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날장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902	신문·잡지와 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4903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4904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905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4906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의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 복사나 카본 복사한 것 ¹¹⁾
4907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이나 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somanias)]
4909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이나 안내용으로 그림·봉투나 장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91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2. 제49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4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4901999000(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 등의 인쇄물), 4908909000(전사지의 기타의 품목), 4911990000(기타의 인쇄물) 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4901999000(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 등의 인쇄물)이며 전년대비 30%가 증가하였다.

11) 제4906호로 분류되는 도안은 제4906호의 용어와 HS 해설서에 의거 ‘손으로 그렸거나 쓴 원본·감광성 종이에 사진 복사한 것과 카본 복사한 것만이 분류되는 것이며, 원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컴퓨터에 의해 생산된 원본은 제4911.91호로 분류되는 것이다.(관세청 분류 47280-640, 1997. 9. 10)

HS 제4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901999000	1,745	-26.6	2,268	30
2	4908909000	339	2.2	1,475	335.2
3	4911990000	1,287	106.1	1,133	-11.9
4	4911100000	1,613	32.1	885	-45.1
5	4901109000	217	3533.7	711	227.5
6	4908100000	537	91.9	357	-33.4
7	4908901000	16	-99.1	276	1612.7
8	4910001000	138	-26.8	202	46.4
9	4903000000	314	69.1	180	-42.8
10	4902909010	44	-82.8	133	203.5
해당 류 총 수출금액		7,063		8,252	

3. 제49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49류	한중 FTA	11
	무관세	14
합계		25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49류에 총25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49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1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4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49류에는 APTA 양허품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APTA 활용실익 또한 없다.

4. 제4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4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49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49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48류의 종이를 수입하여 인쇄물을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인쇄물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FTA활용실익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제63류)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14개 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에서 'yarn'은 실이나 사(絲)란 단어를 적절히 사용한다.

제11부	제50류	견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제52류	면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제56류	워딩·펠트와 부직포, 특수사, 끈·코디지(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개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천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제60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제63류	그 밖의 방직용 섬유 제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와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 제품, 냅마

제50류 견

1. 품목분류 체계

제50류에는 ‘견(silk)’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002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5003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004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005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006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5007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2. 제50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50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5007202090(견직물), 5007209000(기타의 견직물), 5007202020(사틴)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5007202090(견직물)이며 전년대비 11.4%가 감소하였다.

HS 제50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007202090	2,297	-17.8	2,035	-11.4
2	5007209000	1,474	-13.2	1,274	-13.6
3	5007202020	1,447	95.5	942	-34.9
4	5007202030	896	-21.8	673	-24.9
5	5007909000	969	45.4	608	-37.3
6	5007904000	204	436.7	198	-3.2
7	5007903000	82	52.8	115	40.7
8	5007902000	49	14836.1	2	-95.4
9	5004000000	359	2.9	1	-99.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7,777		5,848	

3. 제50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50류	한중 FTA	28
합계		28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50류에 총28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50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5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5001 50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5003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5004 50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5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 및 제50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 50.04 or 50.05)
5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50류는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완전생산기준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누에고치(제5001호)와 생사(제5002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완전생산기준으로 풀이된다. 누에고치 이전의 원료단계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류변경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누에고치는 역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생사(제5002호)는 누에고치에서 뽑는데 역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누에고치를 수입하여 생사를 뽑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이라 할 수 없다. 결국 역내에서 완전생산한 누에고치에서 생사를 뽑을 경우에만 원산지상품이 된다

견웨이스트(제5003호)는 완전생산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역내에서 완전생산된 견제품으로 부터의 웨이스트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견사(제5004호), 견방사(제5005호)와 같은 사(絲)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생사(제5002호)를 수입하여 견사(제5004호)를 만드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견사(제5004호)를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해도 동일한 호에 분류되므로 이때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매용 견사(제5006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되, 원재료인 견사(제5004호)와 견방사(제5005호)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견직물이 분류되는 제5007호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이다. 우선 실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견직물을 짜는 경우 호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생지상태의 견직물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는 경우 동일한 제5007호에 분류되어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할 수 없다. 그러나 가공공정기준에 의해서 생지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염색 및 날염등의 공정을 완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1. 품목분류 체계

제51류에는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섬수모)이나 거친 털(조수모),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3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명
5101	양모[카드(carded)하지도 코움(combed)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ed)하지도 코움(combed)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03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5104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5105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ed)하거나 코움(combed)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ed)한 단편 모양의 양모를 포함한다]
5106	카드(carde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7	코움(combe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ed)하거나 코움(combed)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11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gimped)한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 여부를 불문한다]
5111	직물[카드(carde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112	직물[코움(combe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113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 제51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51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5112191000(코움한 양모 직물), 5111191000(카드한 양모직물), 5112111000(코움한 양모직물)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5112191000(코움한 양모직물)이며 전년대비 19.1%가 증가하였다.

HS 제5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112191000	6,028	2.7	7,180	19.1
2	5111191000	4,117	29.8	4,418	7.3
3	5112111000	2,247	4.6	4,044	79.9
4	5112200000	3,443	93.1	3,525	2.4
5	5111200000	3,840	89.3	2,739	-28.7
6	5111900000	4,366	62.2	2,403	-45
7	5112900000	2,089	8.4	2,380	13.9
8	5111111000	1,787	-2.2	2,116	18.4
9	5112300000	2,660	252	1,733	-34.9
10	5111300000	938	-36	1,545	64.7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7,221		37,082	

3. 제51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51류	한중 FTA	48
	양허제외	9
	APTA	2
합계		59
APTA 활용실익 세번		
5112.11.00, 5112.19.00		

중국은 제51류에 총59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51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48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9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51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2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4. 제5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구성분석) 제51류는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 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양모(제5101호~5105호)의 경우 완전생산기준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코움하지 않은 양수모(제5101호, 제5102호)와 그 웨이스트(제5103호)는 완전생산기준으로 역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어야한다. 따라서 한국 또는 중국 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되고 이로부터 양모를 획득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카드·코움하지 않은 양모(제5101호)를 수입하여 카드·코움하는 경우(제5105호)에는 2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 양수모의 가아넷스톡(제5104호)나 카드·코움한 양수모(제5105호)도 역내에서 완전생산 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양모사 및 섬수모사(제5106호~5108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양모(제5101호, 제5105호)를 수입하여 양모사를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소매용 양모사 및 섬수모사(제5109호)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되 특정원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코움한 양모사(제5106호~5107호)를 수입하여 소매용(제5109호)으로 만드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모직물이 분류되는 제5111호~제5113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되 특정원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우선 실(제5106호~제5109호)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모직물(제5111호~제5113호)을 짜는 경우 호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생지의 모직물(제5111호~제5113호)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는 경우 동일한 호에 분류되어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할 수 없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5101~5103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5104~5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5106~51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51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ex51.06, 51.07, 51.08; or RVC(40))
5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5111~51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및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ex. 51.06~51.13, 52.05~52.12, ch54, 55.09~55.16; or RVC(40))

제52류 면

1. 품목분류 체계

제52류에는 ‘면’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2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201	면[카드(carded)하지도 코움(combed)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202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203	면[카드(carded)하거나 코움(combed)한 것으로 한정한다]
5204	면 재봉사(소매용 여부를 불문한다)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12	그 밖의 면직물

2. 제52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5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5205231000(면사), 5205241000(면사), 5205221000(면사)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5205231000(면사)이며 전년대비 2.5%가 증가하였다.

HS 제5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205231000	36,269	-10.7	37,176	2.5
2	5205241000	14,976	-36.1	15,462	3.2
3	5205221000	17,812	-29.7	14,780	-17
4	5210310000	8,440	-2.3	9,812	16.3
5	5212220000	7,272	-20	7,017	-3.5
6	5208390000	6,097	-10.4	5,556	-8.9
7	5206231000	8,806	19.1	5,293	-39.9
8	5210390000	5,836	-8.7	4,721	-19.1
9	5208520000	4,449	25	4,149	-6.7
10	5212230000	2,630	92.6	4,059	54.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63,273		144,141	

3. 제52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52류	한중 FTA	107
	양허제외	2
	APTA	20
합계		129
APTA 활용실익 세번		
5205.11.00, 5205.12.00, 5205.13.00, 5205.14.00, 5205.15.00, 5205.21.00		
5205.22.00, 5205.23.00, 5205.24.00, 5205.32.00, 5205.42.00, 5206.11.00, 5206.12.00,		
5206.15.00, 5208.52.00, 5210.11.00, 5210.31.00, 5210.39.00, 5211.31.00, 5211.39.00		

중국은 제52류에 총129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52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07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2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52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20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4. 제5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구성분석) 제52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면(제5201호~5203호)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은 역내에서 재배 및 수확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면사(제5204호~55206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면

을 수입하여 면사를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소매용 면사(제5207호)의 경우 제5205호 및 제5206호의 면사를 수입하여 소매용으로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들 호의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매용 면사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면직물이 분류되는 제5208호~제5212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다. 우선 면의 함유량이 85%이상인 면직물(제5208호)을 생산할 때 모사(毛絲)또는 모직물(제5106호~제5113호), 인조섬유(제54류, 제5509호~제5516호)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원재료들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만약 이러한 재료들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5201~5203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5204~5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52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 및 제52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ex. 52.05, 52.06; or RVC(40))
52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4류 및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ex. 51.06~51.13, ch54, 55.09~55.16; or RVC(40))
5209~5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1. 품목분류 체계

제53류에는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0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아마·대마와 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5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 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노일(noils)과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6	아마사
5307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 섬유사
5308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paper yarn)
5309	아마직물
5310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 섬유의 직물
5311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직물, 종이실(paper yarn)로 만든 직물

2. 제53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5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5309290000(아마 함유량 85%미만 아마직물), 5309190000(아마 함유량 85%이상 아마직물), 5311001000(라마의 것)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5309290000(아마 함유량 85%미만 아마직물)이며 전년대비 20.7%가 감소하였다. 특히, 5311001000(라마의 것)은 전년대비 210.5% 증가하였다.

HS 제5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309290000	1,697	31	1,345	-20.7
2	5309190000	439	-32.7	846	92.6
3	5311001000	189	-59.4	586	210.5
4	5311009000	126	90.5	157	24
5	5306202000	31	1968.3	77	145.1
6	5308901000	-	-100	51	0
7	5309110000	25	-44.3	46	85
8	5306102000	-	0	30	0
9	5311003000	18	0	28	52.1
10	5306101000	-	-100	24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555		3,233	

3. 제52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53류	한중 FTA	43
합계		43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53류에 총43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53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5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5301~5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5306~5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53류는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마 및 기타 식물성 섬유(제5301호~5305호)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마섬유는 02류의 아마경을 수입하여 섬유를 획득하는 경우 2단위 세번변경이 충족된다. 그러나 생아마(제 5301.10호)를 수입하여 코옴한 아마를 만드는 경우에는 동일한 류에 속하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생 아마는 원산지재료여만 원산

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제5306호~5308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섬유(제5301호~5305호)를 수입하여 실을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직물이 분류되는 제5309호~제5311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우선 실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직물을 짜는 경우 호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생지의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는 경우 동일한 호에 분류되어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것

1. 품목분류 체계

제54류에는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8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 여부를 불문한다)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	재생.반(半)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재생.반(半)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5	재생.반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와 재생.반(半)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6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	재생.반(半)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2. 제54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5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5407612000(염색한 것), 5402451010(나일론사), 5402479000(폴리에스테르사)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5407612000(염색한 것)이며 전년대비 11.2%가 감소하였다.

HS 제5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407612000	87,281	-17.9	77,481	-11.2
2	5402451010	30,055	-15.5	35,789	19.1
3	5402479000	29,321	-26.3	27,998	-4.5
4	5407420000	35,107	-18.8	27,426	-21.9
5	5407692000	29,394	-18.6	22,689	-22.8
6	5407520000	34,419	-6.5	21,634	-37.1
7	5407922000	24,198	-10.2	18,853	-22.1
8	5407614000	25,409	0.4	18,838	-25.9
9	5402110000	17,920	96	18,799	4.9
10	5407729000	24,190	-17.7	18,764	-22.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548,241		474,135	

3. 제54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54류	한중 FTA	99
	양허제외	14
합계		113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54류에 총113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54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99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4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4. 제5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5401~54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5407 54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 제5206호,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 제5509호 및 제55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ex. 51.06~51.10, 52.05~52.06, 54.01~54.02, 54.04, 54.06, 55.09~55.10; or RVC(40))

(구성분석) 제54류는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54류에는 인조필라멘트가 분류되는데, 제5401호~제5406호까지는 각종 실이 분류되고 제5407호~제5408호에는 직물이 분류된다.

우선 인조섬유로 만들어진 실(제5401호~제5406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등 다른 류의 물품을 수입하여 인조필라멘트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면(제5201호~제5203호)이나 합성필라멘트트위 등(제5501호~제5507호)을 수입하여 인조필라멘트를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다른 호의 물품을 수입하여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7호)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양모사(제5106호~제5110호) 면사(제5205호~제5206호), 인조필라멘트사(제5401호~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 또는 합성, 재합성 또는 반합성 스펀덱스 섬유사(제5509호~제5510호)를 수입하여 이를 섞어 직조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 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단위 세번변경기준 외에 부가가치기준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위에 열거된 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생산하는 경우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나일론 직물)

- ✓ 품명: 나일론 직물
- ✓ 세번: 5407.42
-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 제5206호,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 제5509호 및 제55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나일론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합성섬유로 1938년 미국 듀폰사(社)의 캐로더스(Carothers)에 의해 발명되었으며 폴리아미드계에 속한다. 나일론이라 함은 폴리아미드계 합성 섬유에 붙여진 일반명인데, 나라별로 또는 생산회사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거미줄보다 가늘고 마찰에 강하며 인장강도가 다른 섬유보다 월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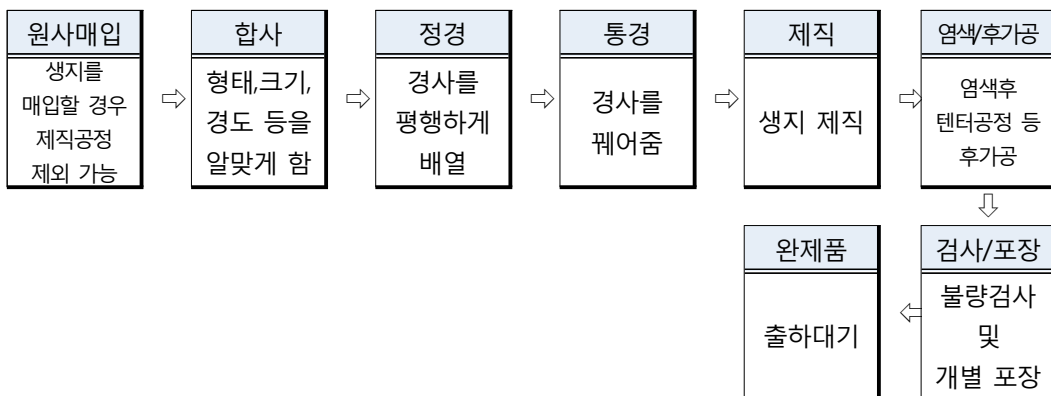
나일론직물의 주요자재 내역과 제조공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한중 FTA는 나일론 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제외세번을 포함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거나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일론 직물 생산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인데 아래 표와 같이 제 5402호의 합성필라멘트 사를 투입할 경우 제외세번에 해당되어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만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비원산지 사를 투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사와 비원산지 사를 혼합하여 역내부가가치 40%이상을 충족할 수 있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일론의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연번	HS	세부품명
1	3204	염료
2	5402	합성필라멘트사, 100% 나일론 사
3	5407	합성필라멘트직물, Woven Fabrics
4	3809.91	완성가공제, 발수제
5	4819	박스
6	4822.90	보빈
7	3402.90	유기계면활성제, 조제/탈호제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1. 품목분류 체계

제55류에는 ‘인조스테이플섬유’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5502	재생.반(半)합성필라멘트 토우(tow)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	재생.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노일(noils)·실 웨이스트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7	재생.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 여부를 불문한다)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10	재생.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3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4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516	재생.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2. 제55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5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5512191000(염색한 것), 5503209090(폴리에스테르의 것 중 기타의 품목), 5503201000(이형단면인 것)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5512191000(염색한 것)이며 전년대비 5.8%가 감소하였다.

HS 제5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512191000	48,306	4.9	45,526	-5.8
2	5503209090	71,190	-6.9	42,235	-40.7
3	5503201000	46,909	31.7	40,355	-14
4	5503900000	26,697	83.5	24,067	-9.9
5	5515999000	16,483	-8.9	17,800	8
6	5501301000	12,947	-38.9	10,950	-15.4
7	5503301090	29,330	6.6	7,605	-74.1
8	5515119000	5,605	35.9	7,000	24.9
9	5502002010	2,572	-58	5,256	104.4
10	5512192000	3,545	82	5,004	41.2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54,691		274,073	

3. 제55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55류	한중 FTA	126
	양허제외	5
	APTA	2
합계		133
APTA 활용실익 세번		
5502.00.90, 5512.11.00		

중국은 제55류에 총133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55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26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5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55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2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4. 제5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5501~55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401호부터 제54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ex. 54.01~54.06; or RVC(40))
5505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5506 55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401호부터 제54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ex. 54.01~54.06; or RVC(40))
5508~5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 및 제5506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ex.52.05~52.07, 54.01~54.02, 54.04, 54.06, 55.06~55.11; or RVC(40))
5512~55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ex.51.06~51.13, 52.05~52.12, 54.01~54.02, 54.04, 54.06, 54.08, 55.09~55.16; or RVC(40))

(구성분석) 제55류는 완전생산기준, 2단위 및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55류에는 인조스테이플섬유가 분류된다. 제5501호~제5507호까지는 각종 섬유(fiber)가 분류되고 제5508호~제5511호까지 실(yarn)이, 제5512호~제5516호에는 직물(fabric)이 분류된다.

우선 인조로 만들어진 섬유(fiber)(제5501호~제5507호. 단 제5505호는 제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제외세번을 포함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등 다른 류의 물품을 수입하여 합성스테이플섬유 등을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인조필라멘트사(제5401호~제5406호)를 수입하여 합성스테이플 섬유 등을 생산하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해당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 역내에서 40%이상의 역내부가가

치가 발생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웨이스트(제5505호)는 완전생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호의 물품을 수입하여 합성스테이플 섬유사 등(제5508호~제5511호)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면사(제5205호~제5207호), 인조필라멘트사(제5401호~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 또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사(제5506호~제5511호)를 수입하여 이를 섞어 직조하는 경우 이들 사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수입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역내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다른 호의 물품을 수입하여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제5512호~5516호)의 직물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특히 양모사 및 직물(제5106호~제5113호) 면사 및 면직물(제5205호~제5212호), 인조필라멘트사 및 직물(제5401호~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제5408호) 또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사 및 직물(제5509호~제5516호)를 수입하여 이를 섞어 직조하는 경우 이들 원재료는 원산지재료일 것을 요구하므로 역시 역내부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 품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 세번: 5503.20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401호부터 제54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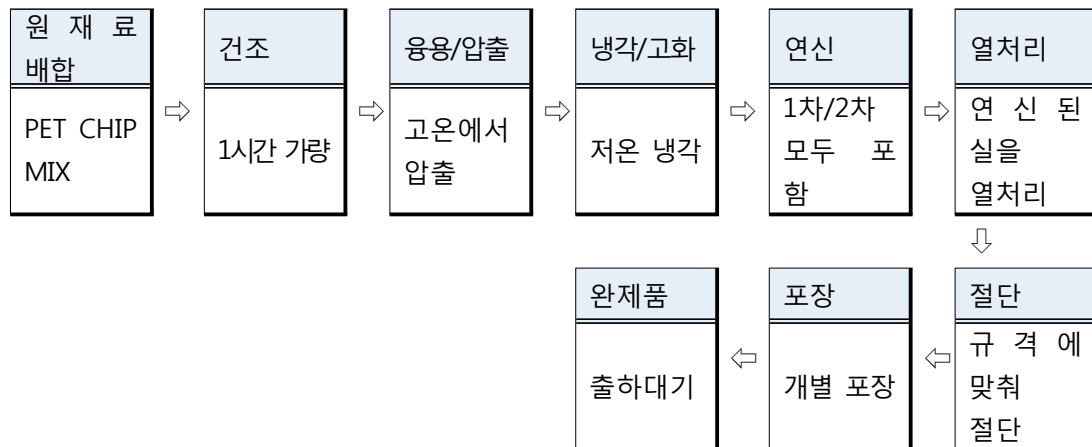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는 합성섬유 중 길이가 짧은 단섬유로 특히, HS 제 5503.20호에 속하는 물품은 카드나 코움 등 방적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말하며, 폴리에스테르로 이루어진 섬유를 말한다.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은 수많은 구멍으로 된 방사구를 통하여 방출되어 제조되는데, 수많은 방사구로부터 방출된 필라멘트(장섬유)는 토우(섬유다발)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이 토우는 짧은 길이로 절단되어 솜 모양으로 정제된 후 스테이플섬유로 가공된다.

<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생산공정별 형태 >

종 류	종 류	종 류	종 류
			
칩(폴리에스터 원료)	합성필라멘트 토우	아크릴 스테이플	인조섬유의 웨이스트
			
재생 등 필라멘트 토우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아크릴 톱	방적처리된 스테이플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생산공정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폴리에스테르	3907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원재료가 되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유연제	3402.90	섬유유연제
합성필라멘트사	5401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원재료가 되는 실
합성필라멘트 토우	5501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원재료가 되는 토우
염료	3204	섬유를 염색하는데 사용하는 유색유기화합물의 색소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fiber)(제5503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제외세번을 포함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등 다른 류의 물품을 수입하

여 합성스테이플섬유 등을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이때 동일 류에 속하는 토우(제5501호~제5502호)를 수입하여 합성스테이플 섬유(제5503호)를 생산한다면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 할 수 없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앞의 표에서 사례로 제시한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한다면 제외 세번으로 규정된 합설필라멘트사(제5401호)와 합성필라멘트 토우(제5501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공정을 거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다만 세 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재료라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최소허용 기준의 정도만큼은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들 재료가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된다면 세번변경기준이 아닌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이상 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56류 워딩·펠트와 부직포, 특수사, 끈·코디지·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56류에는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특수사, 끈·코디지(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 표56과 같이 9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flock).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s)]
5602	펠트(felt)(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4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제 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5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606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405호의 것과 짐프한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607	끈·코디지(cordage)·로프와 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여부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8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코디지(cordage)나 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된 어망과 그 밖의 제품으로 된 그물
5609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코디지(cordage)·로프나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제56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5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5603141000(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5603940000(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5603121000(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5603141000(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것)이며 전년대비 5.6%가 증가하였다.

HS 제5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603141000	20,933	-17.1	22,106	5.6
2	5603940000	33,314	27.8	22,066	-33.8
3	5603121000	16,144	31.1	12,463	-22.8
4	5603920000	13,435	15.2	9,506	-29.2
5	5607500000	10,134	-4.1	9,125	-10
6	5601220000	8,057	11.1	8,281	2.8
7	5603139000	10,052	15.8	7,220	-28.2
8	5603119000	8,236	-31.7	6,905	-16.2
9	5603111000	9,406	43	5,489	-41.6
10	5607490000	7,083	52.4	5,158	-27.2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68,210		138,321	

3. 제56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56류	한중 FTA	37
	양허제외	1
	APTA	2
합계		40
APTA 활용실익 세번		
5603.12.10., 5603.14.10		

중국은 제56류에 총40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56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37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56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2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4. 제5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5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 제5503호 및 제5506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ex. 52.05~52.07, 54.02, 54.04, 55.01, 55.03, 55.06 ~55.16; or RVC(40))

(구성분석) 제56류는 제외세번을 포함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워딩,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제5601호~제5606호)를 수입하여 끈, 케이블 등 제품(제5607호~제5609호)를 생산하면 2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면사(제5205호~5207호), 인조필라멘트(제5402호, 제5404호~제5406호), 인조스테이플섬유(제5508호~제5511호)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1. 품목분류 체계

제57류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ed)하거나 플록(flocked)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켈렘(Kelem)·슈맥(Schumacks)·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만든 러그(rugs)를 포함한다]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ed)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터프트(tufted)하거나 플록(flocked)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5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 제57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5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5703200000(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5703300000(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705000000(기타의 양탄자류와 바닥깔개) 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5703200000(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이며 전년대비 3.7%가 감소하였다. 특히, 5705000000(기타의 양탄자류와 바닥깔개) 역시 전년대비 189.9%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HS 제5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703200000	25,263	-4.7	24,325	-3.7
2	5703300000	1,798	-10.2	2,766	53.8
3	5705000000	44	-83.6	128	189.9
4	5702320000	40	-38.2	58	44.8
5	5703900000	-	-99.6	49	46010.4
6	5702910000	-	0	46	0
7	5702420000	27	38.9	41	52
8	5702490000	2	-5.5	17	889.8
9	5701900000	130	32.5	15	-88.4
10	5702310000	-	0	11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7,339		27,463	

3. 제57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57류	한중 FTA	27
합계		27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57류에 총27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57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5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5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408호 및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ex. 52.05~52.07, 54.01~54.02, 54.04, 54.07 ~ 54.08, 55.08~55.16; or RVC(40))

(구성분석) 제57류는 제외세번을 포함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57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2단위 세번변경 기준

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류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면사(제5205호~5207호), 인조필라멘트(제5401호~5402호, 제5404호, 제5407호~제5408호), 인조스테이플섬유(제5508호~제5516호)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제외세번을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동일한 류에 속하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 자수천

1. 품목분류 체계

제58류에는 ‘특수직물, 터프트(tufted)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rstries), 트리밍(trimming), 자수천’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1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801	파일(pile)직물과 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2	테리타월(terry towelling)직물과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ed)한 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803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5804	튤(tulles)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스트립(strips)이나 모티프(motifs)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5805	고블랭직·플랜더스직·오뷔송직·보베직.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와 자수 가공한 태피스트리[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806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bolducs)]
5807	방직용 섬유로 만든 레이블(labels)·배지(badges)와 이와 유사한 제품[원단 상태·스트립(strips)이나 특정의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8	원단 상태의 브레이드(braids),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tassels)·폼퐁(pompons)과 이와 유사한 제품
5809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810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s)모양이나 모티프(motifs)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811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2. 제58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5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5801900000(그밖의 섬유로 만든 것), 5810920000(인조섬유로 만든 것), 5801372000(절단된 것)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5801900000(그밖의 섬유로 만든 것)이며 전년대비 37.2%가 감소하였다.

HS 제5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801900000	8,618	117.4	11,826	37.2
2	5810920000	7,443	14.1	6,762	-9.2
3	5801372000	12,023	-11.2	6,127	-49
4	5804210000	8,971	8.9	5,519	-38.5
5	5804103000	4,281	-14.6	4,838	13
6	5807101000	5,844	-21.3	4,307	-26.3
7	5806320000	3,043	-30.7	2,184	-28.2
8	5807901000	792	-25.5	1,356	71.3
9	5808100000	776	128.8	926	19.3
10	5806103000	662	120.7	662	0.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58,423		49,107	

3. 제58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58류	한중 FTA	67
합계		67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58류에 총67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58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5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5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408호 및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ex. 52.05~52.07, 54.01~54.02, 54.04, 54.07~54.08, 55.08~55.16; or RVC(40))

(구성분석) 제58류는 제외세번을 포함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58류 역시 제57류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 하다 따라서 다른 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류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면사(제5205호~5207호), 인조필라멘트(제5401호~5402호, 제5404호, 제5407호~제5408호), 인조스테이플섬유(제5508호~제5516호)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제외세번을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동일한 류에 속하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59류에는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1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나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4	리놀륨(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905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7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5908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나 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s)과 백열가스 맨틀(mantles)용 관(tubular) 모양의 편물(침투 여부를 불문한다)
5909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하거나 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5910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911	방직용 섬유 생산품과 방직용 섬유 제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으로 한정한다)

2. 제59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5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5903200000(폴리우레탄의 것), 5911109000(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의 기타의 품목), 5903100000(폴리(염화비닐)의 것) 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5903200000(폴리우레탄의 것)이며 전년대비 14.3%가 감소하였다.

HS 제5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903200000	142,570	-5.9	122,164	-14.3
2	5911109000	12,666	-10.9	24,221	91.2
3	5903100000	16,024	12.9	21,092	31.6
4	5902200000	23,067	-14.1	20,541	-11
5	5903900000	28,182	0.4	18,952	-32.8
6	5902100000	7,212	-0.2	7,260	0.7
7	5907009000	22,060	-41.4	6,984	-68.3
8	5911320000	4,955	-1.2	4,472	-9.7
9	5911900000	4,583	-8.8	2,989	-34.8
10	5906100000	2,073	12.6	2,682	29.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68,335		234,734	

3. 제59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59류	한중 FTA	34
	양허제외	1
	APTA	7
합계		42
APTA 활용실익 세번		
5903.10.20., 5903.10.90, 5903.20.20, 5903.20.90, 5903.90.20, 5903.90.90, 5907.00.90		

중국은 제59류에 총42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59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34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59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7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4. 제5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5901 59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7호, 제5408호 및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e x 52.05~52.07, 54.07~54.08, 55.12~55.16; RVC(40))
59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407호, 제5408호 및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e x 54.07~54.08, 55.12~55.16; RVC(40))
5904~59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7호, 제5408호 및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e x 52.05~52.07, 54.07~54.08, 55.12~55.16; RVC(40))

(구성분석) 제59류는 제외세번을 포함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기본적으로 제59류의 물품을 생산할 때 다른 류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면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개별 품목마다 제외세번이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서적 장정용 식물(제5901호), 타이어코드 식물(제5902호), 플라스틱 등을 도포한 식물(제5903호~제5908호), 호스등(제5909호), 공업용 섬유제품(제5911호)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59류에 속하지 않는 류의 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 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5903호 플라스틱피복식물을 제외한 제59류에 속하는 물품 모두 면사(제5205호~5207호), 인조필라멘트(제5407호~제5408호), 인조스테이플섬유(제5512호~제5516호)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5903호 플라스틱 피복식물은 면사(52류)를 제외세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입하여 사용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제외세번을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동일한 류에 속하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 ✓ 품명: 타이어 코드 직물
- ✓ 세번: 5907.00
-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7호, 제5408호 및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타이어코드 (Tyre Cord)란 타이어의 내구성과 주행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무 내부에 들어가는 섬유재료의 보강재이며, 타이어 제조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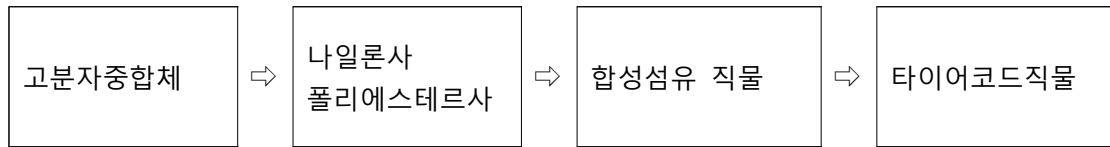
타이어코드는 병렬된 필라멘트 경사가 위사에 의해 일정한 간격으로 잡아매어져 있는데, 경사는 항상 고강력의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사, 폴리에스테르사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사로 되어 있고 위사는 기타 다른 사로 구성되며 넓은 간격의 위치에서 오로지 경사를 지탱하도록 되어 있다.

타이어코드의 주요 재료로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등이 사용되는데, 현재 자동차용 래디얼타이어코드의 재료로는 형태안정성이 우수하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폴리에스테르코드가 90%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나일론코드는 강도와 내열성 등에 강점이 있어 트럭이나 버스, 중장비나 항공기의 바이어스 타이어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타이어에도 주로 사용된다.

용도에 따라 비포장도로용, 일반승용차용, 고속주행용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비포장 도로용 타이어에는 나일론 타이어코드를 일반 승용차에 많이 사용되는 래디얼 타이어(포장도로용)에는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를 고속 주행용 차량(유럽 아우토반 등)에는 레이온 타이어코드를 주로 사용한다.

< 타이어코드직물 생산공정 >



타이어코드직물은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만든 나일론사, 폴리에스테르사, 레이온사를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작한 직물이다.

<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직물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나일론사	5402	강도와 내열성이 강한 타이어코드 사
폴리에스테르	5404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이어코드 사
비스코스레이온	5403	고속 주행용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코드 사
합성필라멘트직물	5407	각종사를 이용하여 만든 직물

한-중 FTA는 타이어코드 직물에 제외세번을 포함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59류 이외의 물품으로부터 타이어코드직물로 변경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위의 원재료 내역상 제5407호의 재료는 제외세번에 해당되므로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제5407호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소허용기준에 충족할 만큼 미미한 수준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수입한 제5407호의 비중이 최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60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1. 품목분류 체계

제60류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명
6001	파일(pile)편물[롱파일(long pile)편물과 테리(terry)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02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제6001호나 제6002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5	경편물(warp knit fabrics)[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 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2. 제60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60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6004100000(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5%이상), 6006320000(기타편물), 6005320000(경편직 직물)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6004100000(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5%이상)이며 전년대비 10.8%가 감소하였다.

HS 제60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004100000	159,367	-12.2	142,187	-10.8
2	6006320000	115,053	-26.4	86,504	-24.8
3	6005320000	71,463	5.5	63,925	-10.5
4	6006220000	22,536	-16.7	17,471	-22.5
5	6001920000	24,666	-46.8	11,833	-52
6	6006340000	16,589	-41	11,296	-31.9
7	6006900000	5,283	-14.3	7,869	49
8	6001102000	7,557	10.9	5,872	-22.3
9	6006420000	7,302	-41.7	5,564	-23.8
10	6006310000	5,259	-19.2	2,897	-44.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59,161		373,470	

3. 제60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60류	한중 FTA	49
	APTA	11
합계		60
APTA 활용실익 세번		
6001.10.00, 6001.92.00, 6002.90.30, 6002.90.40, 6005.32.00, 6006.21.00, 6006.32.00 6006.33.00, 6006.34.00, 6006.42.00, 6006.90.00		

중국은 제60류에 총60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60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49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1개의 세번은 APTA 활용실익이 큰 품목으로 나타난다.

3. 제6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6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408호, 제5501호, 제5503호 및 제5506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ex, 54.01~54.02, 54.04, 54.07~54.08, 55.01, 55.03, 55.06~55.16; or RVC(40)

(구성분석) 제60류는 제외세번을 포함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0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류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조필라멘트(제5401호~5402호, 제5404호, 제5407호~제5408호), 인조스테이플섬유(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제5516호)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제외세번을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동일한 류에 속하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 ✓ 품명: 메리야스 편물
- ✓ 세번: 6004.10.0000
-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408호, 제5501호, 제5503호 및 제5506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메리야스(Knitted fabric)란 편성기계로 짠 편물로 경사나 위사로서 교착시켜 제직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Loop)를 계속하여 편조된 직물을 말한다.

최근에는 메리야스란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니트로 통용되고 있는데, 동물품은 합성필라멘트사(Polyester Yarn)로 편성한 편직물로 폭이 30cm를 초과하며 탄성사(Spandex Yarn)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인 것이다.

메리야스 편물의 주요 원재료는 폴리에스테르 사, 스팅크스 사와 염색을 위한 각종 염료 등이 포함되는데, 제60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주로 제50류~제55류에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재료 및 사(yarn)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되어 만들어진다.

< 메리야스편물 생산공정 >



< 메리야스 편물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폴리에스테르 사	5402.62	합성필라멘트사로 67데시텍스 미만의 폴리에스테르
스판덱스 사	5402.44	폴리우레탄(Pu) 사
염료	3204.15	건염염료로 날염공정에 사용
표백조제물	3402.90	표백제 비이온계면활성제, 탄산나트륨, 고탄산나트륨, 유기킬레이트로 구성된 백색계 분말상
섬유염색농축액	3809.10	섬유의 날염용 호료로 염색촉진용의 염색캐리어, 드레싱으로 섬유공업 완성가공제

한-중 FTA의 경우 제외세번을 포함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시한 원재료 내역을 바탕으로 할 때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투입되는 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2단위 기준에서 다르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다만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재료 폴리에스테르 사와 스판덱스 사(제5402호)를 수입한 경우 최소허용기준내의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최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의해서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 품목분류 체계

제61류에는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61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s) · 카코트(car-coats) · 케이프(capes) · 클록(cloaks) · 아노락(anoraks)(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s) · 윈드재킷(wind-jackets)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3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s) · 카코트(car-coats) · 케이프(capes) · 클록(cloaks) · 아노락(anoraks)(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s) · 윈드재킷(wind-jackets)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 · 앙상블(ensembles) · 재킷 · 블레이저(blazers)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 · 앙상블(ensembles) · 재킷 · 블레이저(blazers)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 ·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로 한정한다)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 · 브리프(briefs) · 나이트셔츠 · 파자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 · 페티코트(petticoats) · 브리프(briefs)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negligees)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9	티셔츠 · 싱글리트(singlets)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0	저지(jerseys) · 풀오버(pullovers) · 카디건(cardigans) · 웨이스트코트(waistcoats)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1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2	트랙슈트 · 스키슈트와 수영복(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3	의류(제5903호 · 제5906호나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4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5	팬티호스(panty hose) · 타이즈(tights) · 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7	그 밖의 의류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의류나 의류 부속품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제61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6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6109101000(면으로 만든 티셔츠), 6109909090(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의 기타의 품목), 6109909010(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의 기타의 품목 중 티셔츠)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6109101000(면으로 만든 티셔츠)이며 전년대비 22%가 증가하였다.

HS 제6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109101000	20,995	6.4	25,605	22
2	6109909090	5,042	1004.6	13,478	167.3
3	6109909010	2,378	123	13,335	460.7
4	6110301000	7,321	-5.5	6,829	-6.7
5	6109903010	4,608	-13.6	4,797	4.1
6	6110110000	4,475	-27.1	4,683	4.7
7	6110909000	2,948	58.4	3,399	15.3
8	6110200000	2,291	51.1	3,111	35.8
9	6104320000	3,767	-0.8	3,069	-18.5
10	6106100000	4,018	-4.7	2,809	-30.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96,742		124,064	

3. 제61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61류	한중 FTA	67
	APTA	65
합계		132
APTA 활용실익 세번		
6101.30.00, 6101.90.10, 6101.90.90, 6102.10.00, 6102.30.00, 6102.90.00, 6103.10.10., 6103.10.20., 6103.10.90, 6103.22.00, 6103.23.00, 6103.29.10, 6103.29.90, 6103.31.00, 6103.32.00, 6103.33.00, 6103.39.00, 6103.41.00, 6103.43.00, 6103.49.00, 6104.13.00, 6104.19.10, 6104.19.90, 6104.23.00, 6104.29.10, 6104.29.90, 6104.31.00, 6104.33.00, 6104.39.00, 6104.41.00, 6104.43.00, 6104.44.00, 6104.49.00, 6104.51.00, 6104.52.00, 6104.53.00, 6104.59.00, 6104.61.00, 6104.63.00, 6104.69.00, 6105.20.00, 6105.90.00, 6106.20.00, 6106.90.00, 6107.12.00, 6107.22.00, 6107.99.10, 6108.11.00, 6108.22.00, 6108.32.00, 6108.92.00, 6110.20.00, 6110.30.00, 6111.30.00, 6112.12.00, 6112.19.00, 6112.20.90, 6112.31.00, 6112.39.00, 6112.41.00, 6112.49.00, 6113.00.00, 6115.22.00, 6115.96.00, 6116.93.00		

중국은 제61류에 총132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61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67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65개의 세번은 APTA 활용실익이 큰 품목으로 나타난다.

4. 제6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6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구성분석) 제61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과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1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우선 2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상품과 동일한 류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봉제 또는 기타의 결합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편성방식에 의한 생산인 경우에는 제61류를 제외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여 양말을 생산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61류에 해당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 품목분류 체계

제62류에는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s) · 카코트(car-coats) · 케이프(capes) · 클록(cloaks)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s) · 윈드재킷(wind-jackets)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s) · 카코트(car-coats) · 케이프(capes) · 클록(cloaks)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s) · 윈드재킷(wind-jackets)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 · 앙상블(ensembles) · 재킷 · 블레이저(blazers)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62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 · 앙상블(ensembles) · 재킷 · 블레이저(blazers)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62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 · 셔츠와 셔츠블라우스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s)와 그 밖의 조끼 · 언더팬츠 · 브리프(briefs) · 나이트셔츠 · 파자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s)와 그 밖의 조끼 · 슬립 · 페티코트(petticoats) · 브리프(briefs)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negligees) · 목욕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9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6210	의류(제5602호 · 제5603호 · 제5903호 · 제5906호나 제5907호의 식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6211	트랙슈트(track suits) · 스키슈트(ski suits) · 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6212	브래지어 · 거들 · 코르셋(corsets) · 브레이스(braces) · 서스펜더(suspenders) · 가터(garters)와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213	손수건
6214	숄(shawls)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mantillas) · 베일(veils)과 이와 유사한 제품

6215	넥타이류
6216	장갑류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나 의류 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62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6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6217100000(부속품), 6217900000(부분품), 6201931000(합성섬유로 만든 것)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6217100000(부속품)이며 전년대비 17%가 감소하였다.

HS 제6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217100000	44,848	-20.8	37,231	-17
2	6217900000	37,536	4.6	33,295	-11.3
3	6201931000	12,204	0.8	11,222	-8
4	6206900000	13,662	110.7	10,886	-20.3
5	6204430000	11,458	0.4	10,809	-5.7
6	6204330000	17,785	17.3	9,585	-46.1
7	6202110000	7,465	-14.8	7,780	4.2
8	6202131000	3,586	-29.4	7,507	109.4
9	6203310000	5,283	-12	6,364	20.5
10	6202931000	6,232	-34	5,788	-7.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65,860		248,284	

3. 제62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62류	한중 FTA	85
	APTA	82
합계		167

APTA 활용실익 세번

6201.11.00, 6201.13.10, 6201.13.90, 6201.19.00, 6201.91.00, 6201.93.10, 6201.93.90, 6201.99.00, 6202.11.00, 6202.13.10, 6202.13.90, 6202.19.00, 6202.91.00, 6202.93.10, 6202.93.90, 6202.99.00, 6203.11.00, 6203.12.00, 6203.19.10, 6203.19.90, 6203.23.00, 6203.29.10, 6203.29.20, 6203.29.90, 6203.31.00, 6203.39.10, 6203.39.90, 6203.41.00, 6203.43.10, 6203.43.90, 6203.49.10, 6203.49.90, 6204.11.00, 6204.13.00, 6204.19.10, 6204.19.90, 6204.21.00, 6204.23.00, 6204.29.10, 6204.31.00, 6204.33.00, 6204.39.10

6204.39.90, 6204.41.00, 6204.43.00, 6204.44.00, 6204.49.10, 6204.49.90, 6204.53.00,
 6204.61.00, 6204.62.00, 6204.63.00, 6204.69.00, 6205.30.00, 6205.90.10, 6205.90.20,
 6205.90.90, 6206.10.00, 6206.20.00, 6206.40.00, 6206.90.00, 6207.11.00, 6208.21.00,
 6210.10.10., 6210.10.30., 6210.20.00, 6210.30.00, 6210.40.00, 6210.50.00, 6211.11.00
 6211.12.00, 6211.20.90, 6211.33.10, 6211.33.20, 6211.33.90, 6211.39.10, 6211.39.20,
 6211.39.90, 6211.43.10, 6211.43.90, 6211.49.10, 6211.49.90

중국은 제62류에 총167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62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85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82개의 세번은 APTA 활용실익이 큰 품목으로 나타난다. 제62류의 물품들은 한중 FTA와 APTA 활용실익 비중이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개별 품목에 따라 관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게 유리한 협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제6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6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구성분석) 제62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2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우선 2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상품과 동일한 류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봉제 또는 기타의 결합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편성방식에 의한 생산인 경우에는 제62류를 제외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여 생산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62류에 해당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예를들어 제6217호의 견장을 수입하여 제6201호의 남성용 방한 외투에 부착하는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견장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최소허용기준에 의해 비원산지재료가 일부 허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 품명: 드레스
- ✓ 세번: 6204.43
-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408호, 제5501호, 제5503호 및 제5506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 원피스는 보통 제54류 및 제55류의 직물을 재단 및 봉제하여 만든다. 주로 폴리에스테르제의 직물(제5407호)과 아세테이트 직물(5516호)을 이용하여 재단하고 봉제를 통해 원피스를 제작하게 된다.

한-중 FTA는 여성용 원피스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제외세번을 포함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합성섬유 직물과 봉제에 사용되는 실(제54류~제55류)을 수입하여 이를 역내에서 재단 및 봉제가공을 거쳐 원피스를 완성하는 경우 수입 원재료의 2단위 세번과 완성품의 세번이 상이하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제6204.43호의 드레스는 한-중 FTA와 APTA 협정중에서 양허개방도가 더 높은 APTA를 활용하는 것이 관세상의 이익에서는 더 유리하다. 하지만 APTA는 부가가치기준에 의해서만 원산지를 판단하고 한-중 FTA는 세번변경기준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원산지 관리 실정에 맞게 원산지 판단이 유용한 협정이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제63류 그 밖의 방직용 섬유 제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와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냅마

1. 품목분류 체계

제63류에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 제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와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냅마’를 분류하며, 세 개의 절에 속한 10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①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s)
6302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
6303	커튼[드레이프(drapes)를 포함한다].실내용 블라인드(blinds),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s)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305	포장용 빈 포대
6306	방수포(tarpaulins).차양(awnings)과 차일(sunblinds), 텐트, 돛[보트.세일보트(sailboard)나 랜드크라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s)을 포함한다]

② 세트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6308	러그(rugs)용 · 태피스트리(tapestries)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이나 서비에트(serviettes)용 직물과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 유무를 불문한다)나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③ 사용하던 의류와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냅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6309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
6310	냅마(사용하던 것이나 신제품으로 한정한다)와 끈 · 코디지(cordage) · 로프나 케이블의 스크랩(scrap)과 끈 · 코디지(cordage) · 로프나 케이블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 제63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6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6307909000(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의 기타의 품목), 6307100000(마루담이 포, 접시담이포, 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6307901000(신발류끈)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6307909000(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의 기타의 품목)이며 전년대비 9.8%가 감소하였다.

HS 제6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307909000	19,306	-14.1	17,421	-9.8
2	6307100000	1,982	7.2	4,405	122.2
3	6307901000	1,553	-5.7	1,601	3.1
4	6305390000	2,729	6.4	1,591	-41.7
5	6303920000	1,551	71.5	1,536	-1
6	6302600000	268	199.7	544	102.7
7	6305330000	356	34.5	485	36.2
8	6310100000	774	10.7	444	-42.6
9	6309000000	646	108.1	417	-35.4
10	6302910000	157	-20.3	412	163.2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1,470		31,118	

3. 제63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63	한중 FTA	101
합계		101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63류에 총101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63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6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6301~63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631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63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310호를 제외한 제63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들어 모포, 린넨제품(제6301호~제6302호)의 경우 모직물(제5111호~제5113호), 면직물(제5208호~제5212호), 기타 식물성직물(제5310호~제5311호) 등 각종 직물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면 2단위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제6310호의 념마 및 스크랩은 완전생산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체약국에서 수집되고 선정포장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6309호의 구제의류는 역외국에서 수입한 것과 역내에서 수집한 것을 혼합하여 선정포장한다면 2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할 수 없고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제6310호와 차이가 있다.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인모(人毛)제품(제64류~제67류)

제12부에는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s)·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羽毛]와 그 제품, 조화(造花), 인모(人毛)제품’을 분류하며, 다음 표64-1과 같이 제64류부터 제67류까지 4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2 부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s).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造花), 인모(人毛)제품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제64류는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그(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6402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이나 콤포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이나 콤포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5	그 밖의 신발류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 쿠션(heel cushions)과 이와 유사한 제품, 각반.레깅스(leggings)와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

2. 제64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6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6406909090(신발류 부분품), 6406101000(갑피), 6406102000(부분품)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6406909090(신발류 부분품)이며 전년대비 9.1%가 감소하였다.

HS 제6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406909090	33,943	-37.9	30,859	-9.1
2	6406101000	24,526	-13.9	29,465	20.1
3	6406102000	26,745	5	24,946	-6.7
4	6404199000	8,158	55.6	6,487	-20.5
5	6403999000	4,451	14.3	6,155	38.3
6	6406201000	3,981	1.4	4,250	6.7
7	6402999000	2,068	216.5	2,685	29.9
8	6404110000	283	-85.6	1,289	354.8
9	6405200000	201	3.8	933	364.4
10	6405900000	1,326	32.8	890	-32.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12,395		113,498	

3. 제64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64류	한중 FTA	16
	APTA	27
합계		43
APTA 활용실익 세번		
6401.10.10., 6401.10.90, 6401.92.10, 6401.92.90, 6401.99.00, 6402.12.00, 6402.19.00, 6402.20.00, 6402.91.00, 6402.99.10, 6402.99.21, 6402.99.29, 6404.11.00, 6404.19.10, 6404.19.90, 6404.20.10, 6404.20.90, 6405.10.10., 6405.10.90, 6405.20.00, 6405.90.10, 6405.90.90, 6406.10.00, 6406.90.10, 6406.90.91, 6406.90.92, 6406.90.99		

중국은 제64류에 총43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64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6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27개의 세번은 APTA 활용실익이 큰 품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제64류의 품목은 한중 FTA보다 APTA활용 실익이 큰 경우가 더 많으므로 한중 FTA의 단계적 관세를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4. 제6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64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64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4류는 다양한 종류의 신발(제6401호~제6405호)와 신발의부분품(제6406호)로 분류된다. 특히 제6406호는 신발의 주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갑피, 안창, 힐쿠션 등이 분류된다. 제64류의 모든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6406호의 신발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신발을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6406호 신발부분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고무, 플라스틱, 가죽과 같은 다른 류의 재료들을 수입하여 갑피 등을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동에 무리가 없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제65류에는 ‘모자류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명
6501	모체[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는 것으로서 모자챙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송(manchons)[슬릿망송(slit manchons)을 포함한다]
6502	모체[각종 재료의 스트립(strips)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성형하지 않은 것이나 모자챙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은 것이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04	모자와 그 밖의 헤드기어(headgear) ¹²⁾ [각종 재료의 스트립(strips)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이나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05	모자와 그 밖의 헤드기어(headgear)[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과 원단 상태[스트립(strips)상태는 제외한다]의 레이스·펠트(felts)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직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이나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안을 댄 것이나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06	그 밖의 헤드기어(headgear)(안을 댄 것이나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07	헤드밴드(head-bands)·내장재·커버·해트 파운데이션(hat foundations)·해트 프레임(hat frames)·챙과 턱 끈

※ 2007년도에 제6503호는 삭제

2. 제65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6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6507000000(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턱끈), 6505009090(기타의 품목), 6505009021(운동모)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6507000000(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턱끈)이며 전년대비 28.8%가 감소하였다.

HS 제6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12) 현행 관세율표에서는 ‘모자’라고 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hats and other headgear’로 되어 있어 이와 같이 표기하였다. 제65류 표제는 ‘headgear’로 ‘모자류’라 하였다.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507000000	7,412	-18.8	5,279	-28.8
2	6505009090	1,028	91.6	1,397	35.8
3	6505009021	717	2.3	1,359	89.5
4	6505001000	1,498	106.2	1,263	-15.7
5	6505009029	983	39.9	1,055	7.3
6	6506100000	192	122.5	260	35.4
7	6506999000	571	-0.8	208	-63.6
8	6506910000	30	-69.5	94	212.6
9	6504000000	12	26.7	87	618.2
10	6505009011	64	-64.1	75	17.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2,559		11,136	

3. 제65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65류	한중 FTA	13
합계		13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65류에 총13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65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6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6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65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5류에는 모자와 모자의 부속품이 분류된다. 제65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6502호의 모체를 수입하여 성형하거나 차양을 붙여서 모자(제6504호)를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66류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 ·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제66류에는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s) ·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3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명
6601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 · 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6602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s)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6603	제6601호나 제6602호의 제품의 부분품 · 트리밍(trimmings)과 부속품

2. 제66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6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6601999000(산류(傘類)), 6602001000(지팡이), 6603900000(부분품·트리밍(trimming)·부속품의 기타의 품목)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6601999000(산류(傘類))이며 전년대비 488.2%가 급증하였다.

HS 제6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601999000	133	-47.9	780	488.2
2	6602001000	61	-29.6	50	-17.4
3	6603900000	59	45.9	48	-18.3
4	6601991000	3	-51.6	39	1195.2
5	6602009000	10	-71.2	5	-43.7
6	6601992000	-	-100	5	0
7	6601910000	24	-75.6	4	-82.6
8	6603200000	1	10	1	-54.6
9	6601100000	-	0	-	40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91		932	

3. 제66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66류	한중 FTA	6
합계		6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66류에 총6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66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6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6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66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6류에는 우산과 지팡이 및 그 부속품이 분류된다. 제66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6503호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성형하여 우산(제6601호)이나 지팡이(제6602호)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다.

제67류 조제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造花),인모(人毛)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67류에는 ‘조제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인모(人毛, 사람머리카락)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명
6701	새의 깃털(羽毛)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quills)와 깃촉(scapes)은 제외한다]
6702	인조(人造)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人造) 꽃·잎이나 과실로 만든 제품
6703	인모(人毛)(정돈·표백하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그 밖의 동물의 털(animal hairs)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6704	가발·가수염·눈썹과 속눈썹·스위치(switches)와 이와 유사한 것[인모(人毛)·동물의 털(animal hairs)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인모(人毛)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제67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6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6703001090(인모), 6704900000(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 6704194000(가속눈썹)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6703001090(인모)이며 전년대비 4.1%가 감소하였다.

HS 제6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703001090	2,432	2.7	2,332	-4.1
2	6704900000	1,934	-4.1	1,041	-46.2
3	6704194000	154	-58.4	390	154.1
4	6702909000	10	-28.4	131	1242.2
5	6704205000	91	12793.2	120	32
6	6704201000	37	2213.4	73	97.7
7	6704199000	3	-42.8	32	838.5
8	6704202000	215	114.1	18	-91.4
9	6704193000	-	0	15	0
10	6703009000	4	-43.7	14	26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899		4,190	

3. 제67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67류	한중 FTA	11
합계		11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67류에 총11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67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6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6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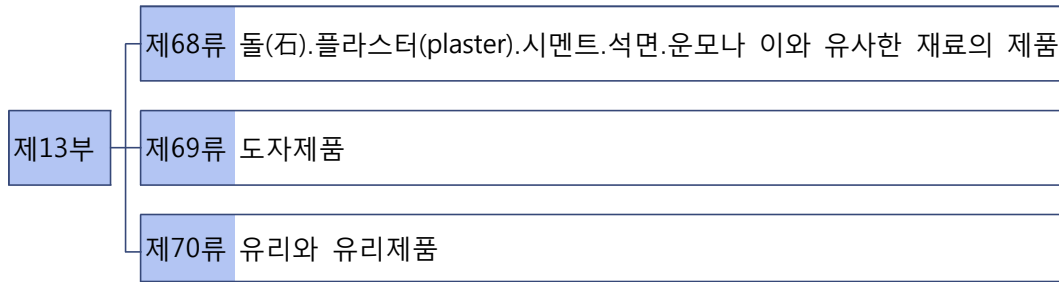
(구성분석) 제67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7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모(제6701호), 조화(제6702호), 인모(제6703호), 가발(제6704호)의 경우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인모(제6703호)를 수입하여 가발(제6704호)을 만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3부 돌(石)·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
자제품, 유리·유리제품(제68류~제70류)**

제13부에는 ‘석(石)·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유리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3개 류로 구성되어 있다



1. 품목분류 체계

제68류에는 ‘돌[石].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
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6801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6802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
6803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6804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 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6805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6806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쿨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

	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7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6808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섬유·짚·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6809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제품
6810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1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직물·의류·모자·신발·개스킷(gasket)](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6811호와 제681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3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롤·스트립(strip)·세그먼트·디스크(disc)와 셔(washer)·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그 밖의 광물성 재료·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4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 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제68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6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6815102000(탄소섬유), 6815109000(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의 기타의 품목), 6805100000(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재료로 한 것)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6815102000(탄소섬유)이며 전년대비 11.2%가 감소하였다.

HS 제6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815102000	30,711	21.6	27,280	-11.2
2	6815109000	14,272	1.7	17,928	25.6
3	6805100000	19,615	5.1	16,956	-13.6
4	6804210000	10,080	32.7	14,867	47.5
5	6805300000	7,252	20	9,104	25.5
6	6815101000	15,353	50.6	7,485	-51.2
7	6805200000	6,057	-37.7	7,402	22.2
8	6815990000	1,247	-11.9	4,310	245.6
9	6806909000	5,932	116	3,394	-42.8
10	6813810000	3,596	29.7	2,889	-19.7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28,411		125,423	

3. 제68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68류	한중 FTA	69
	양허제외	6
	APTA	2
합계		77
APTA 활용실익 세번		
6802.10.10., 6802.10.90		

중국은 제68류에 총77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68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69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6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68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2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4. 제6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6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68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8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면섬유의 의류 등 제품(제6812.50호)의 경우 당해호 내부에 속하는 소호의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6단위 세번변경은 발생하지만 4단위세번은 동일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69류 도자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69류에는 ‘도자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절에 속한 1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① 규산질의 화석분말이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6901	벽돌 · 블록 · 타일과 그 밖의 도제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 · 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6902	내화벽돌 · 내화블록 · 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s) · 도가니 · 머플(muffles) · 노즐 · 플러그 · 서포트(supports) · 회분접시(cupels) · 관(tubes) · 덮개(sheaths)와 막대(rod)](규산질의 화석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② 그 밖의 도자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6904	도자로 만든 건축용 벽돌 · 바닥 깔개용 블록 · 서포트타일(support tiles)이나 필러타일(filler tiles)과 이와 유사한 것
6905	기와 · 굴뚝 통 · 굴뚝 갓 · 굴뚝용 내장재 · 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로 만든 건설용품
6906	도자로 만든 관(管) · 도관(導管) · 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6907	도자로 만든 판석과 포장(鋪裝)용 · 노용(爐用)이나 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로 만든 모자이크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뒷면의 보강 여부를 불문한다)
6908	도자로 만든 판석과 포장(鋪裝)용 · 노용(爐用)이나 벽용 타일(유약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로 만든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의 보강 여부를 불문한다)
6909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이나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로 만든 항아리 · 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6910	도자로 만든 설거지통 · 세면대 · 세면대용 받침 · 목욕통 · 비데 · 수세식 변기통 · 수세식변기용 물통 · 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1	자기(porcelain or china)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
6912	도자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자기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6913	도자로 만든 작은 조각상(小像)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914	도자로 만든 그 밖의 제품

2. 제69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6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6909190000(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의 기타의 품목), 6909120000(모스경도가 9이상인 물품), 6914909000(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의 기타의 품목)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6909190000(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의 기타의 품목)이며 전년대비 104.7%가 증가하였다.

HS 제6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 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909190000	46,023	156.2	94,210	104.7
2	6909120000	7,112	110	7,776	9.3
3	6914909000	6,676	6.3	6,050	-9.4
4	6903209000	2,831	-23.7	4,021	42.1
5	6903909090	2,728	29	3,112	14.1
6	6903109000	376	46.5	1,788	375.7
7	6912009000	2,124	-14.9	1,619	-23.7
8	6911109000	1,576	123	1,006	-36.2
9	6912001090	855	-3.6	745	-12.9
10	6909110000	409	546	721	76.6
해당 류 총 수출금액		78,069		126,178	

3. 제69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69류	한중 FTA	29
	APTA	4
합계		33
APTA 활용실익 세번		
6908.10.00, 6911.10.11., 6911.10.19., 6911.90.00		

중국은 제69류에 총33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69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29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4개의 세번은 APTA 활용실익이 큰 품목으로 나타난다.

4. 제6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6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69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9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6907호의 도자제 판석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유약을 시공하여 제 6908호의 도자제 제품으로 완성하면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70류에는 ‘유리와 유리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9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7001	깨진 유리(cullet)와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유리 괴(mass)
7002	유리로 만든 구(球)[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s)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3	주입법(鑄入法)과 롤법(rolled)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s)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s)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4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6	제7003호·제7004호나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8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multiple-walled insulating units)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010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s)·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ampoules)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이나 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1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밸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전구·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4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7015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 여부를 불문한다) 유리 [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segments)
7016	압축하거나(pressed) 주형한(moulded) 유리로 만든 포장용(鋪裝用) 블록(blocks)·슬래브(slabs)·벽돌·스퀘어(squares)·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세공품(뒷면의 보강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s)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s)·패널(panels)·플레이트(plates)·셸(shells)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包)유리
7017	실험실용·위생용이나 약제용 유리제품(눈금 유무를 불문한다)
70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s)·모조진주·모조귀석이나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소상(小像)과 램프에 사용되는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s)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
702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2007년도에 제7012호는 삭제

2. 제70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70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7006004000(액정디스플레이용), 7005291099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 7007191000(안전유리)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7006004000(액정디스플레이용)이며 전년대비 5.3%가 증가하였다.

HS 제70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006004000	111,251	0	117,105	5.3
2	7005291099	56,689	13.8	50,226	-11.4
3	7007191000	78,926	50.7	43,133	-45.4
4	7003191000	-	-100	33,762	14366690
5	7004901000	2,267	1541	17,183	657.9
6	7020001011	11,116	34.8	12,462	12.1
7	7020001019	8,893	32.3	9,784	10
8	7019110000	7,552	49.3	8,187	8.4
9	7005292099	342	188.8	5,742	1579.4
10	7002209000	3,690	55.5	5,355	45.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56,949		353,941	

3. 제70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70류	한중 FTA	81
	양허제외	3
	무관세	1
	APTA	3
합계		88
APTA 활용실익 세번		
7009.92.00, 7011.20.10, 7011.20.90		

중국은 제70류에 총88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70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81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3개의 양허제외 품목이 존재하고, APTA 양허품목은 3개 분포하고 있다.

3. 제7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700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7002~7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70류는 완전생산기준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70류에 속하는 대부분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리제품의 원재료인 유리시트(제7004호~ 제7006호를 수입하여 제 7007호의 안전유리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예를들어 제7019.52호의 폭이 30cm 초과하는 유리섬유 직물을 수입하여 제 7019.51호의 폭이 30cm 이하인 품목을 만들면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판유리 ✓ 세번: 7005.29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판유리는 생산은 규사와 소다회, 석회석과 파유리 등의 원재료를 분해해서 섞어준 후 고온에서 용해를 한다. 그 후 틀에 유리물을 부어 모양을 만드는 성형공정을 거친 후 서서히 냉각시켜 굳혀준다. 냉각되어 모양이 갖춰진 유리기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포장을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유리생산에 사용되는 주요원재료는 규사(제2505호), 소다회(제3824호), 석회석(제2521호), 파유리(제7001호)등이다.

한-중 FTA는 판유리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기본적인 핵심 원재료들을 모두 수입하여 역내에서 판유리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4부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제71류)

제71류 제14부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1. 품목분류 체계

① 천연진주나 양식진주와 귀석이나 반귀석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명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이나 등급을 매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썬 것·장착하거나 세트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썬 것을 포함한다)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장착되거나 세트된 것은 제외한다)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이나 등급을 매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썬 것·장착되거나 세트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썬 것을 포함한다)
7104	합성한 것이나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이나 등급을 매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썬 것·장착되거나 세트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썬 것을 포함한다)
7105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이나 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②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명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 모양이나 가루 모양으로 한정한다)
7107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인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 모양이나 가루 모양으로 한정한다)
7109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인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 모양이나 가루 모양으로 한정한다)
7111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이나 금(반가공인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신변장식용품·금세공품·은세공품과 그 밖의 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4	금세공품이나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5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7116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합성한 것이나 재생한 것)의 제품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7118	주화

2. 제71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7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7108131010(반도체제조용), 7103100000(원석, 단순히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7106911000(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이상인 것)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7108131010(반도체제조용)이며 전년대비 7.3%가 증가하였다.

HS 제7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108131010	36,928	-13.7	39,612	7.3
2	7103100000	10,256	35.9	20,779	102.6
3	7106911000	1,402	-39.9	14,954	966.7
4	7106923000	27,954	11.4	11,803	-57.8
5	7106100000	7,788	13.3	7,413	-4.8
6	7105102000	5,532	-8.5	5,143	-7
7	7117199000	3,394	-34.7	2,683	-21
8	7104901090	18,128	110.8	2,342	-87.1
9	7113192000	2,366	-21.7	2,218	-6.3
10	7112919000	-	-100	1,408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31,536		123,196	

3. 제71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71류	한중 FTA	33
	양허제외	8
	무관세	32
	APTA	17
합계		90
APTA 활용실익 세번		
7102.39.00, 7103.91.00, 7103.99.10, 7103.99.20, 7103.99.30, 7103.99.40, 7103.99.90, 7113.11.10, 7113.11.90, 7113.19.11, 7113.19.21, 7113.19.29, 7113.19.91, 7113.19.99, 7113.20.10, 7113.20.90, 7117.90.00		

중국은 제71류에 총90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71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33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32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8개의 무관세 품목이 존재하고, APTA 양허품목은 17개 분포하고 있다.

3. 제7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구성분석) 제71류는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71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진주(제7101호), 다이아몬드 원석(제7102.10호, 제7102.21호), 귀석 및 반귀석의 원석(제7103.10호)등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표현상으로 2단위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석의 경우 재료와 상품의 세번이 동이하므로 완전생산기준으로 풀이가 된다.

그 외 공업용에 해당하는 원석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다른 소호의 재료를 역외에서 수입하여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제 7103.10호에 속하는 단순톱질한 귀석원석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여 생산하는 경우 제7103.91~제 7103.99호로 변경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금(제7108호)의 경우 화폐용이 아닌 가공하지 않은 금(제7108.12호)을 역내에서

가공하는 경우 6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귀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제7112호)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므로 역내에서 채굴되거나 수집된 것이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7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7102.10 7102.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7102.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710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7102.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71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7103.91 7103.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71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104.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710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7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106.10 71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106.9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7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108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71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7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112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7113~71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제72류~제83류)

제15부	제72류	철강
	제73류	철강의 제품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8류	납과 그 제품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s), 이들의 제품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제83류	비금속(卑金屬)로 만든 각종 제품

제72류 철강

1. 품목분류 체계

① 일차재료,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의 생산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명
7201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피그(pig) · 블록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
7202	합금철(ferro-alloys)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 생산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 생산품[덩어리(lumps) · 펠릿(pellets)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분의 99.94인 철[덩어리(lumps) · 펠릿(pellets)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7205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과 철강으로 한정한다]

② 철과 비합금강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 압연(熱間壓延)한 것으로 한정하고, 입히거나(clad) ·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 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입히거나(clad)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입히거나(clad)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입히거나(clad)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입히거나(clad)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熱間壓延)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 · 열간압연(熱間壓延) · 열간인발(熱間引拔)이나 열간압출(熱間壓出)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延)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③ 스테인리스강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 모양으로 한정한다]와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熱間壓延)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④ 그 밖의 합금강과 합금이나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압연(熱間壓延)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기타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hollow drill bars)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

2. 제72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7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7210491090(폭 60cm이상 도금 판), 7209179000(냉간압연 판), 7210491010(폭 60cm이상 도금 판)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7210491090이며 전년대비 13.6%가 감소하였다.

HS 제7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210491090	402,869	57.4	347,921	-13.6
2	7209179000	363,878	-6.7	247,502	-32
3	7210491010	281,666	63.5	200,503	-28.8
4	7208519000	263,845	33	175,469	-33.5
5	7210309000	199,792	-12.6	160,460	-19.7
6	7225509000	118,646	69.3	140,798	18.7
7	7208511000	194,704	4.9	114,343	-41.3
8	7210690000	119,475	-0.6	112,217	-6.1
9	7225929091	23,112	1196.2	104,060	350.2
10	7225110000	42,246	-51.2	84,386	99.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865,606		3,077,458	

3. 제72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72류	한중 FTA	175
	양허제외	23
	무관세	4
	APTA	16
합계		218
APTA 활용실익 세번		
7208.54.90, 7209.16.10, 7209.16.90, 7209.17.10, 7209.17.90, 7209.18.10, 7209.18.90		
7209.27.00, 7209.90.00, 7217.30.10, 7217.30.90, 7221.00.00, 7222.11.00, 7222.19.00		
7222.30.00, 7225.11.00		

중국은 제72류에 총218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72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75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4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23개의 양허제외 품목이 존재하고, APTA 양허품목은 16개 분포하고 있다.

4. 제7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구성분석) 제72류는 완전생산기준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72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한-중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광석을 수입하여 선철과 페로얼로이드(제7201호~제7203호)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이 된다. 그리고 제7204호의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완전생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내에서 생산된 철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잉곳(제7206호)를 수입하여 반제품(제7207호)를 생산하는 경우 잉곳은 제외세번으로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엄격한 결정기준을 택하고 있다. 제7208호의 열간압연판과 제7209호의 냉간압연판 역시 원재료가 되는 제7206호, 제7207호, 제7208호를 제외세번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재료를 사용해야하는 매우 엄격한 규정이다.

이외에도 철강, 스테인리스강, 합금강 등의 경우에도 판, 봉, 선을 생산하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세번들은 제외세번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엄격한 규정으로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결국 제72류에 속하는 판, 봉, 선 제품들의 경우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하는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택하고 있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7201~72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204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7205~7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2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72.06)
7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06호 및 제72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72.06, 72.07)
7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ex.72.08)
7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08호 및 제72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 72.08, 72.09)
7212~72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2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3호 및 제721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72.13, 72.14)
7216~72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72.18)
7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8호 및 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72.18, 72.19)
7221~72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225.11~ 7225.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2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72.24)
7225.50 7225.91 ~722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226.11~ 722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24호 및 제722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72.24,72.25)
7226.92 722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227~7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 품명: 철강판
- ✓ 세번: 7208.51
-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06호 및 제72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철을 만드는 단계는 크게 제선, 제강, 압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선공정은 쉽게 말해 철광석을 녹여서 쇳물로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철의 원료인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하여 용광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단한 덩어리의 상태로 사전처리를 한다. 이렇게 사전처리한 재료들을 용광로에서 녹여 쇳물을 만들게 된다.

다음으로 제강공정은 녹인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철을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쇳물을 토피토카라고 불리는 장치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의 쇳물로 만들고 개별 철강제품에 맞도록 정밀하게 조정을 진행한다. 이후 액체 상태인 쇳물을 일정한 틀에 흘려보내 두꺼운 널빤지 형태의 슬래브(Slab), 직사각형의 막대형태의 블룸(bloom), 가늘고 긴 막대형태의 빌렛(billet)으로 만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압연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압연공정은 다양한 종류의 철강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다. 슬래브를 가열하여 회전하는 roll사이를 통과시키면 얇고 긴 형태의 철만으로 만들 수 있다. 보통 압연공정을 마친 제품들을 열연제품과 냉연제품으로 구분한다. 열연제품은 주로 건축자재 및 산업용 파이프로 사용되고, 냉연제품은 일반가정용품, 자동차 플레임등에 사용된다.

한-중 FTA는 철강판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제외세번을 포함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열연철강판의 생산에 사용되는 주재료인 제7206호의 잉곳과 제7207호의 철강반제품(슬래브, 블룸)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압연과정을 거쳐 철강판을 생산하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호에 속하는 철강판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산소플라즈마 등의 단순 절단을 하는 경우 불인정공정에 해당하고 세번변경기준 역시 충족할 수 없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한-중 FTA는 철강판의 주요 원재료를 제외세번으로 규정하여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여야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매우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73류 철강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천공이나 조립 여부를 불문한다), 용접된 형강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s) · 체크레일(check-rails)와 치형레일(rack rails) ¹³⁾ · 스위치블레이드(switch blades) · 교차구류(crossing frogs) · 전철봉(point rods)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s) · 침목(크로스타이) · 이음매판(fish-plates) · 좌철(chairs) · 좌철뿔(chair wedges) · 밑판(sole plates)(베이스플레이트) · 레일클립 · 받침판(bedplates) · 격재(ties)와 궤조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7303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프로파일(hollow profiles)
7304	철강(주철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프로파일(hollow profiles)[무계목(無繼目, 이음매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 · 리벳(riveted)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프로파일(hollow profiles)[예: 오픈 이음매(open seam)이나 용접 · 리벳(riveted)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7307	철강으로 만든 관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s) · 엘보(elbows) · 슬리브(sleeves)]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 수문 · 탑 · 격자기둥(lattice masts) · 지붕 · 지붕틀 · 문과 창.이들의 틀과 문지방 · 셔터 · 난간 ·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플레이트(plates) · 대(rods) · 봉 · 형강 · 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9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의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가열장치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하거나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의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가열장치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하거나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311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 · 로프 · 케이블 · 엮은 밴드 · 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3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銑, 철조망), 철강으로 만든 대(hoop)나 평선을 꼰 것(가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꼰 이중선으로서 울타리 용으로 사용하는 것
7314	철강으로 만든 클로드(cloth)[엔드리스밴드(endless bands)를 포함한다] · 그릴 · 망 · 울타리,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7315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7316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7317	철강으로 만든 못 · 압정 · 제도용 핀 · 파형 못 · 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제품[두부(頭部)가 다른 재료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을 제외한다]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와 볼트 · 너트 · 코치스크루(coach screws) · 스크루 훅(screw hooks) · 리벳(rivets) · 코터(cotters) · 코터핀(cotter-pins) · 와셔(washers)(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제품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 · 수편침 · 돛바늘 · 코바늘(crochet hooks) · 자수용 천공 수침과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 판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 · 레인지 · 화상 · 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바비큐(barbecues) · 화로 · 가스풍로 · 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7322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 · 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wool),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 패드(polishing pads) ·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4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2. 제73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7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7326909000(철강으로 만든 그밖의 제품의 기타의 물품), 7308909000(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7318152000(볼트)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7326909000(철강으로 만든 그밖의 제품의 기타의 물품)이며 전년대비 4.7%가 증가하였다.

HS 제7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326909000	286,888	30.3	300,388	4.7
2	7308909000	145,248	25.7	122,010	-16
3	7318152000	78,209	8.5	79,614	1.8
4	7311003000	35,947	-3.3	55,178	53.5
5	7307999000	25,130	14.2	36,116	43.7
6	7312102099	42,368	4	34,245	-19.2
7	7318160000	23,166	14.3	28,330	22.3
8	7310290000	19,820	-3.6	24,028	21.2
9	7315120000	24,453	13.6	21,690	-11.3
10	7309000000	18,304	-72.3	18,288	-0.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052,536		1,077,291	

3. 제73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73류	한중 FTA	145
	양허제외	15
	APTA	8
합계		168
APTA 활용실익 세번		
7318.15.10, 7318.15.90, 7320.20.90, 7321.81.00, 7323.93.00, 7325.99.90, 7326.20.10 7326.20.90		

중국은 제73류에 총168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73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45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5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73류에는

13) 제7302호에서 척레일은 보호레일이나 안전레일로 알려진 것으로 횡단이나 커브에서 차량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랙레일에 고정시킨 것이다. 치형레일은 급경사진 노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톱니가 있는 궤조를 말한다.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8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4. 제7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7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73류는 4단위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73류에 속하는 물품은 모두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호에 속하는 철강제품을 수입하여 제7308호의 다리, 지붕틀, 문틀과 같은 철강제 구조물을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비주철제의 관이 분류되는 제7304호의 경우 제7304.49호의 기타 합금강제의 관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7304.41호에 속하는 냉간압연제품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7315호의 철강으로 만든 체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체인의 부분품(제7315.19호, 제7315.90호)을 수입하여 체인을 생산하는 경우 수입한 부분품은 최소허용기준의 인정 범위만큼만 사용이 가능하다.

철강으로 만든 스토프 및 레인지(제7321호)와 철강제의 위생용품(제7324호) 역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동일호에 속하는 제7321.90호와 제7324.90호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체인과 마찬가지로 최소허용기준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사용된 경우에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7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종합적으로 풀이해 보면 기본적으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도록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택하고 있다. 다만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같은 물품이 상품과 동일한 호(4단위)에 속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품목분류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다소 원산지결정기준이 엄격한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철강제의 로프)

✓ 품명: 철강제 로프 ✓ 세번: 7312.10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한-중 FTA는 철강제의 로프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철강제의 로프는 통상 도금 또는 비도금한 철선을 원재료로 하여 신선, 연선, 크로싱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

주요 재료는 아연도금한 스틸선(제7217.20호), 아연도금하지 않는 스틸선(제7217.10호) 등으로 로프와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7401	구리의 매트(mattes), 시멘트구리(cement copper)(침전구리, precipitated copper)
7402	정제하지 않은 구리, 전해정제용의 구리 양극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04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405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s)
7406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s)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s)
7408	구리의 선
7409	구리의 판(plates)·시트(sheets)와 스트립(strips)(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이나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411	구리로 만든 관(管)
7412	구리로 만든 관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s)·엘보(elbows)·슬리브(sleeves)]
7413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415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제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지는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s)와 볼트(bolts)·너트(nuts).스크루 훅(screw hooks)·리벳(rivets)·코터(cotters)·코터핀(cotter-pins)·와셔(washers)[스프링와셔(spring washers)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제품
7418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polishing pads)·글러브(gloves)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419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2. 제74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7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7403110000(음극과 음극의 형재), 7410110000(정제한구리로 만든것), 7404000000(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7403110000(음극과 음극의 형재)이며 전년대비 8.4%가 증가하였다.

HS 제7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403110000	746,605	-28.4	809,225	8.4
2	7410110000	115,325	2.4	113,459	-1.6
3	7404000000	143,758	-15.5	106,070	-26.2
4	7407210000	106,853	6.5	93,548	-12.5
5	7409219000	65,563	15.3	58,882	-10.2
6	7410211000	82,552	16.7	54,917	-33.5
7	7413000000	28,668	41.6	48,314	68.5
8	7408110000	41,933	-64.8	41,573	-0.9
9	7408190000	36,271	-5.4	36,491	0.6
10	7409119000	28,878	-16.7	25,715	-1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618,675		1,575,678	

3. 제74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74류	한중 FTA	76
	양허제외	3
	APTA	1
합계		80
APTA 활용실익 세번		
7419.99.99		

중국은 제74류에 총80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74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76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3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74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1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3. 제7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7401~7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404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7405~7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 74.07)
7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 T H (e x . 74.09
7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4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1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 T H (e x . 74.11
7413~7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74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7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구리선(제7408호), 구리 박(제7410호), 구리로 만든 관 연결구류(제7412호)의 경우 제외세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제외세번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리봉(제7407호)을 수입하여 구리 선(제7408호)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수 없고, 구리봉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리로 만든 관 연결구(제7412호) 역시 구리관(제7411호)를 수입하여 연결구류를 만드는 경우 제7411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한편 구리케이블(제7413호)을 생산할 때 주재료인 구리선(제7408호)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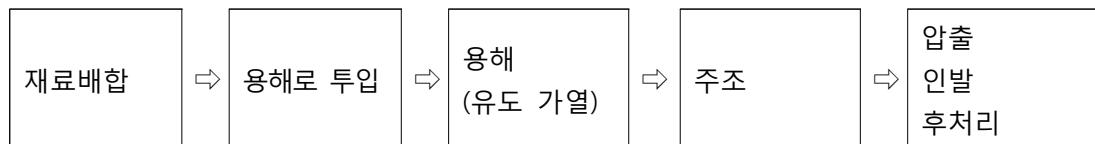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황동 봉 ✓ 세번: 7407.21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황동봉은 환봉 및 육각봉의 형태로 주로 구리와 아연, 납, 주석, 철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 및 기계부품과 각종 밸브, 전자부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절삭·가공·주조성 등 기계적 성질이 양호하고 내부식성·내해수성이 뛰어나며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 및 강도가 크고 친환경적인 특성이 있다.

황동봉은 주로 황동 잉곳으로부터 생산되나 스크랩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구리와 아연, 납 등을 혼합하여 만든다.

< 황동봉 생산공정 >



< 황동봉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황동스크랩	7404.00	황동 봉/선재/판 절삭·절단 후 생성된 설, 분, 판, 절봉 등의 형태의 스크랩
황동잉곳	7403.21	동-아연 합금의 황동
구리캐소드	7403.19	정제한 동으로 음극과 음극의 형재
아연잉곳	7901.11	아연 함유량이 99.99% 이상인 아연괴
납	2607.00	납

황동봉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 740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제7407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므로, HS 4단위 기준에서 세번이 다른 황동스크랩(HS 제7404호), 납(HS 제2607호) 등 주요 원재료를 수입하여 계약당사국 내에서 황동봉을 생산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7501	니켈의 매트(matted) ·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7502	니켈의 괴(塊)
7503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504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s)
7505	니켈의 봉 · 프로파일(profiles)과 선(線)
7506	니켈의 판 · 시트(sheets) · 스트립과 박(箔, foil)
7507	니켈로 만든 관이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s) · 엘보(elbows) · 슬리브(sleeves)]
7508	니켈로 만든 그 밖의 제품

2. 제75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7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7502200000(니켈합금), 7506101000(판 · 시트(sheet) · 스트립), 7508909000(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 중 기타의 품목)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7502200000(니켈합금)이며 '14년의 경우 수출실적이 전무하였으나, '15년에는 4,469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7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502200000	-	-100	4,469	0
2	7506101000	4,457	-13.9	2,196	-50.7
3	7508909000	1,762	-20.5	1,678	-4.8
4	7505220000	1,588	-10.3	1,642	3.4
5	7501201090	1,300	0	1,233	-5.2
6	7502109000	175	33.9	1,227	600.1
7	7508902020	1,112	107.2	673	-39.5
8	7504001000	898	-26.9	342	-61.9
9	7502101000	351	-3.2	247	-29.8
10	7506201000	1,333	60	209	-84.3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3,901		14,326	

3. 제75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75류	한중 FTA	24
합계		24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75류에 총24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75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7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7501~75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503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7504~75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75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75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니켈의 괴(제7502호)를 수입하여 니켈 봉(제7505호) 인켈판(제7506호) 니켈 관(제7507호) 등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한-중 FTA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두고 있는데 니켈의 웨이스트도 동일하다.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7601	알루미늄의 괴(塊)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603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s)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s)
7605	알루미늄의 선(線)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s)와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7	알루미늄의 박(箔, foil)[인쇄한 것이나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9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s)·엘보(elbows)·슬리브(sleeves)]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기둥(lattice masts)·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plates)·봉(rod)·프로파일(profiles)·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1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가열장치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가열장치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613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얇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polishing pads)·글러브(gloves)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2. 제76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7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7606120000(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16999090(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의 기타의 물품), 7615109020(식탁 용품·주방용품)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7606120000(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이며 전년대비 4.3%가 감소하였다.

HS 제7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606120000	352,884	8.4	337,844	-4.3
2	7616999090	82,914	20.2	74,161	-10.6
3	7615109020	13,541	-4.2	16,664	23.1
4	7607199000	19,088	6.5	14,778	-22.6
5	7608200000	18,365	6.2	13,854	-24.6
6	7604210000	2,448	749.9	12,309	402.9
7	7607209000	10,690	33.5	10,859	1.6
8	7610100000	1,268	216.7	8,211	547.8
9	7607191000	12,926	-33	7,847	-39.3
10	7610909000	815	-92.2	7,816	859.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613,705		588,485	

3. 제76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76류	한중 FTA	44
	양허제외	1
	APTA	8
합계		53
APTA 활용실익 세번		
7604.29.10, 7606.11.29., 7606.11.99, 7606.12.20		
7606.12.30., 7606.12.51, 7606.12.59, 7616.99.10		

중국은 제76류에 총53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76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44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76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8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4. 제7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7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602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7603 76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6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ex. 76.04)
7606~76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ex. 76.08)
7610~76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6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6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ex. 76.05)
7615~76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76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76류의 대부분의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알루미늄 괴(제7601호)를 수입하여 봉(제7604호), 선(제7605호), 판(제7606호), 관(제7608호) 등을 생산한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제7602호)는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알루미늄 선(제7605호), 알루미늄 관연결구류(제7609호), 알루미늄 케이블 알루미늄 관연결구류(제7609호)와 케이블(제7614호)의 경우 주요 원재료인 봉(제7604호), 관(제7608호), 선(제7605호)을 제외세번으로 하여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만약 주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들 재료의 비중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알루미늄 시트 ✓ 세번: 7606.12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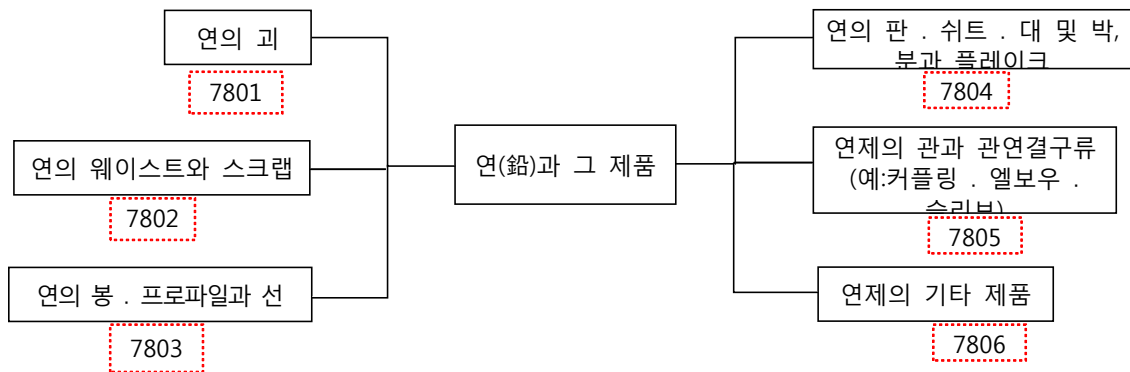
알루미늄 시트는 일반적으로 원료를 용광로에서 용해하여 주조하고 평면형태로 면삭과정을 거친다음 규질화처리를 한다. 이후 열감압연 및 냉간압연후 소둔하여 절삭하고 포장과정을 거치게 된다.

알루미늄 시트를 생산하는 재료는 주로 알루미늄 바(제7604.29호)로 이를 용해하여 일련의 공정을 통해 시트를 생산한다.

한-중 FTA는 알루미늄 시트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완제품과 4단위 기준에서 세번이 상이한 비원산지 원재료를 수입하여 계약당사국에서 금형 및 주조 등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결국 알루미늄 바(제7604호)를 역외에서 모두 수입하여도 역내에서 압연공정 등을 통해 시트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므로 역외산 원재료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풀이할 수 있다.

제78류 납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2. 제78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7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7801992090(납의 괴의 기타의 품목), 7804111000(시트(sheet)·스트립), 7806003030(선(線)) 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7801992090(납의 괴의 기타의 품목)이며 전년대비 21,558.8%로 급증하였다.

HS 제7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801992090	5	0	1,147	21558.8
2	7804111000	734	-8.4	312	-57.4
3	7806003030	438	-15.6	212	-51.5
4	7806009000	79	-10.1	54	-31.1
5	7806001000	14	19.3	20	43
6	7806003010	43	362.7	17	-59.3
7	7806002000	-	0	1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 제78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78	한중 FTA	9
합계		9
APTA 활용실익 세 번		
없음		

중국은 제78류에 총9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78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7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7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802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7804~7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78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납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제7802호)를 제외한 모든 78류의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납의 판 및 쉬트(제7804호)는 두께가 일정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납의 박(제7804.11호)을 수입하여 가루나 플레이크(제7804.20호)가 생산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또는 제7804.11호의 박을 수입하여 동일 소호에 분류되는 뒷면을 덧대지 않는 형태의 박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7901	아연의 괴(塊)
7902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903	아연의 더스트(dust).가루와 플레이크(flakes)
7904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s)과 선(線)
7905	아연의 판.시트(sheets).스트립과 박(箔, foil)
7907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제7906호는 삭제

2. 제79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7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7901110000(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99.99이상인 것),7901201000(아연-알루미늄합금),7901120000(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미만인 것)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7901110000(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이상인 것)이며 전년대비 636.5%가 증가하였다.

HS 제7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901110000	25,074	-69.2	184,658	636.5
2	7901201000	24,832	-17.3	26,676	7.4
3	7901120000	12,564	71.7	12,450	-0.9
4	7907009090	5,625	54.3	4,468	-20.6
5	7904003000	2,078	-11.3	1,015	-51.2
6	7907002020	706	-18.5	888	25.7
7	7901209000	54	-50.8	232	330.2
8	7902000000	639	18.6	144	-77.6
9	7903901000	146	-83.9	106	-27.8
10	7903100000	5	0	48	909.6
해당 류 총 수출금액		72,063		230,722	

3. 제79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79류	한중 FTA	12
합계		12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79류에 총12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79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7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79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7902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7903~79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79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웨이스트와 스크랩(제7902호)을 제외한 모든 제79류의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아연의 봉 및 선(제7904호) 등은 아연의 봉을 수입하여 선을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아연의 판 및 쉬트의 경우 제7905.20호의 박을 수입하여 동일 소호에 분류되는 뒷면을 덧대지 않는 형태의 박을 생산하는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8001	주석의 괴(塊)
8002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003	주석의 봉.프로파일(profiles)과 선(線)
8007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2007년도에 제8004호 · 제8005호 · 제8006호는 삭제

2. 제80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80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8007009000(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의 기타의 품목), 8001200000(주석합금), 8003002090(선(線)의 기타의 품목)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8007009000(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의 기타의 품목)이며 전년대비 13%가 감소하였다.

HS 제80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007009000	4,094	19.1	3,562	-13
2	8001200000	3,837	-4.2	2,757	-28.2
3	8003002090	4,591	-22.3	2,532	-44.8
4	8007003021	2,163	3.7	1,950	-9.8
5	8007001000	2,630	-2.7	1,783	-32.2
6	8003001090	2,270	2.7	1,509	-33.5
7	8003001010	125	-47.3	145	15.9
8	8001100000	39	-96.4	8	-80.2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9,749		14,246	

3. 제80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80	한중 FTA	11
합계		11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80류에 총11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80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8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8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002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8003 8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80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0류 역시 웨이스트와 스크랩(제8002호)을 제외하고는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석의 괴(제8001호)를 수입하여 주석의 봉 및 선(제8003호) , 기타 주석 제품(제8007호)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주석의 봉을 수입하여 동일 호에 속하는 주석 선을 생산하다면 4단위 세번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s), 이들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2	몰리브데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	탄탈룸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5	코발트의 매트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6	비스무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0	안티몬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1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2	베릴륨 · 크롬 · 게르마늄 · 바나듐 · 갈륨 · 하프늄 · 인듐 · 니오븀(컬럼븀) · 레늄 · 탈륨과 이들 금속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3	서멧(cermets)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2. 제81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8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8113000000(서멧(cermet)과 그제품), 8104909000(마그네슘과 그 제품), 8103900000(탄탈룸과 그 제품)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8113000000(서멧(cermet)과 그제품)이며 전년대비 18.6%가 감소하였다.

HS 제8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113000000	25,369	-3.7	20,642	-18.6
2	8104909000	4,203	285825.1	7,360	75.1
3	8103900000	6,891	40.1	6,552	-4.9
4	8102969000	6,477	-4.3	6,385	-1.4
5	8107900000	8,206	-9.3	4,773	-41.8
6	8108901000	4,627	70.9	3,767	-18.6
7	8108909000	3,526	27.8	3,562	1
8	8109909000	1,822	161.1	3,485	91.3
9	8102990000	4,392	74	3,394	-22.7
10	8101961000	4,230	-7.6	3,335	-21.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01,216		74,539	

3. 제81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81류	한중 FTA	73
	양허제외	2
합계		75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81류에 총73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81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73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2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4. 제8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8101.10 8101.94 8101.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01.97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8101.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02.10 8102.94 ~8102.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02.97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8102.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0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03.3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810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04.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04.2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8104.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04.90		
8105.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05.3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81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1. 비스무트 등: CTSH; 2. 웨이스트와 스크랩: WO
8107.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07.3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810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08.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08.3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8108.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09.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09.3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810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1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10.2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811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망간과 그 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1. 망간 등: CTSH; 2. 웨이스트와 스크랩: WO

811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12.13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8112.19 8112.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12.22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8112.29 8112.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12.52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8112.5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12.9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비금속 괴와 가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	1. 비금속 괴와 가루: CTSH; 2. 웨이스트와 스크랩: WO
8112.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1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서멧(cermet)과 그 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	1. 서멧 등: CTSH; 2. 웨이스트와 스크랩: WO

(구성분석) 제81류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1류에 속하는 웨이스트 및 스크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6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소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8101.94호의 텅스텐 괴를 수입하여 기계적으로 타발하고 이를 압연 또는 인발에 의해서 시트, 바, 형재 또는 선(제8101.99호) 가공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날이·스펀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8201	수(手)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도끼·빌훅(bill hooks)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草切機)·올타리 전단기(剪斷機)·제재용(製材用) 썰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 공구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이나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3	줄·플라이어(pliers)[절단용 플라이어(pliers)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 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pipe-cutters)·볼트크로퍼(bolt croppers)·천공편치와 이와 유사한 수(手)공구
8204	수동식 스패너(spanners)와 렌치(wrenches)[토크미터렌치(torque wrenches)를 포함하나 탭 렌치(tap wrenches) ¹⁴ 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 유무를 불문한다)
8205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s),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s)·클램프(clamps)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anvils), 이동식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s)
8206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8207	수(手)공구용(동력작동식 여부를 불문한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스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편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이나 스크루드라이빙용(screw driving)][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壓出)용 다이(dies)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8208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8209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s)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21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나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211	칼(톱니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날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s)로서 스트립(strips)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213	가위 · 재단용 가위.이와 유사한 가위와 이들의 날
8214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 · 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 · 토막용(choppers) 칼과 다지기용(mincing) 칼 · 종이용 칼],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 줄을 포함한다)
8215	스푼 · 포크 · 국자 · 스키머(skimmers) · 케이크서버(cake-servers) · 생선용 칼 · 버터용 칼 · 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2. 제82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8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8207301000(프레싱(pressing)용), 8209001040(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8209001090(공구용 팁의 기타의 품목)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8207301000(프레싱(pressing)용)이며 전년대비 27.3%가 증가하였다.

HS 제8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207301000	160,820	81.9	204,644	27.3
2	8209001040	43,132	-3.9	45,311	5.1
3	8209001090	40,237	-3.9	39,774	-1.1
4	8207909000	24,977	-1.7	33,466	34
5	8207702000	12,344	15.4	13,223	7.1
6	8207302000	28,910	141.4	10,159	-64.9
7	8212200000	6,240	49.3	7,231	15.9
8	8207901000	10,490	17.5	7,072	-32.6
9	8207401000	5,862	-27.6	6,646	13.4
10	8207309000	17,469	315.2	5,608	-67.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31,813		433,002	

3. 제82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82류	한중 FTA	73
	양허제외	6
	APTA	3
합계		82
APTA 활용실익 세번		
8207.30.00, 8213.00.00, 8214.10.00		

14) 탭 렌치는 제8205호로 분류한다.

중국은 제82류에 총82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82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73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6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82류에는 APTA 협정관세 활용이 가능한 3개의 세번이 존재한다.

4. 제8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8201~82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2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8207~82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215.10 821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8215.91 821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82류는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2류의 비금속제의 공구는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판단된다. 따라서 완성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한-중 FTA는 공구세트(제8206호)와 주방용품 세트(제8215.10~제8215.20호)에 대해서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8215.10호의 주방용품 세트에 스푼, 포크, 국장, 집게 등 음식물조리용기구(제8210호)와 칼(제8211호)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들물품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세트전체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 품명: 프레스싱 펀치 ✓ 세번: 8207.30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프레스싱·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구에는 금속판의 냉간프레스 또는 스탬핑용의 펀치와 다이스, 드롭(drop) 단조용(鍛造用) 다이스, 공작기계용 등의 천공용다이스와 절단용다이스 및 펀치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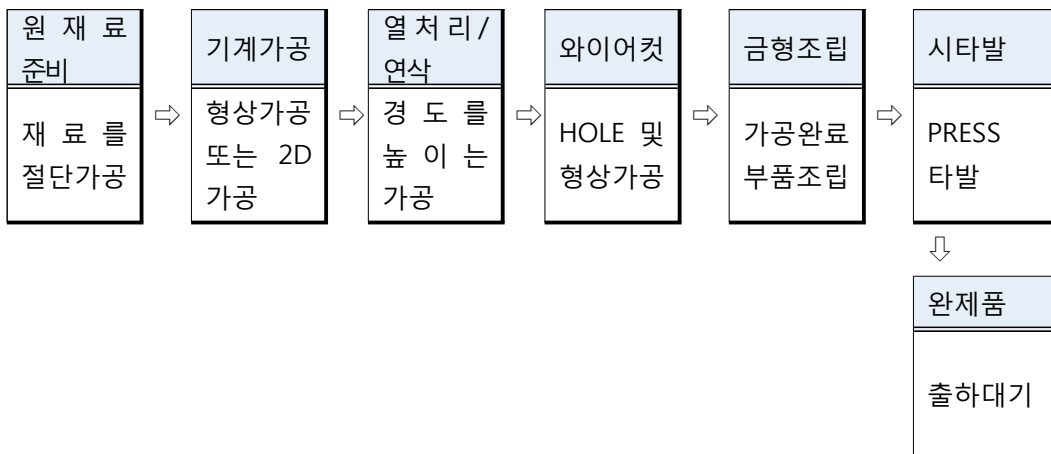
다이스란 “단조(鍛造), 드로잉 가공, 압출가공 또는 프레스 가공 등 금속의 소성가공(塑性加工)에 사용하는 틀[型]”로 정의하고 있다.

프레스싱 펀치의 주요 원재료는 철강판과 텅스텐 파우더이다.

< 프레스싱 펀치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철 강 판	7211.14	프레스싱 펀치를 지지하고 공구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철판
텅스텐 파우더	8101.10	프레스싱 펀치를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인 탄화텅스텐 분말

< 프레스싱 펀치 생산공정 >



한-중 FTA는 프레스용 공구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프레스 펀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철강판과 텅스텐 파우더를 주재료로 금형가공하여 생산한다.

투입되는 주요 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할 때 비원산지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므로 제7211호 및 제8101호의 재료를 모두 수입하여 역내에서 프레스 펀치를 생산하여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83류 비(卑)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8301	비(卑)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이나 전기작동식), 비(卑)금속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비(卑)금속으로 만든 열쇠
※8302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제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卑)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s)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캐스터(casters)와 비(卑)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3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갑(armoured)하거나 보강한 금고·스트롱박스(strong-boxes)와 스트롱룸(strong-rooms)용 문과 저장실·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8304	비(卑)금속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s)·페이퍼 레스트(paper rests)·펜 트레이(pen trays)·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305	비(卑)금속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립·레터코너(letter corner)·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卑)금속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s in strips)(예: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
※8306	비(卑)금속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卑)금속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小像)과 그 밖의 장식품, 비(卑)금속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卑)금속으로 만든 거울
8307	비(卑)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튜브링(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308	비(卑)금속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s)·버클걸쇠(buckle-clasps)·훅(hooks)·아이(eyes)·아일릿(eyelets)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양·핸드백·여행구나 그 밖의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卑)금속으로 만든 관리벳(tubular rivets)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s), 비(卑)금속으로 만든 구슬과 스팅글(spangles)
8309	비(卑)금속으로 만든 전(栓)·캡과 뚜껑[병마개·스크루캡(screw caps)과 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병용 캡슐·나선형 마개·마개용 커버·실(seals)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8310	비(卑)금속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symbols)(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8311	비(卑)금속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생산품 [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이나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卑)금속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2. 제83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8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8301200000(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8301600000(부분품), 8311209000(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플럭스(flux)를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의 기타의 품목)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8301200000(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이며 전년대비 3.1%가 감소하였다.

HS 제83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301200000	98,689	92	95,617	-3.1
2	8301600000	38,440	-52	31,111	-19.1
3	8311209000	27,787	17.7	29,887	7.6
4	8302100000	32,387	-14.8	23,561	-27.3
5	8302300000	23,879	73.3	23,520	-1.5
6	8301401010	11,600	126.9	20,173	73.9
7	8302420000	6,403	9598	16,972	165.1
8	8308909000	8,913	26.2	9,584	7.5
9	8311309090	9,621	-26	8,003	-16.8
10	8302499000	21,905	720.1	6,532	-70.2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21,167		296,025	

3. 제83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83류	한중 FTA	37
	양허제외	1
합계		38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83류에 총38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83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37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4. 제8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8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83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3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소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8301호에 분류되는 자물쇠 및 열쇠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와 상품간에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제8301호는 동호에 분류되는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부분품(제8301.60호)도 동일호에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품(제8301.60호)를 수입하여 자물쇠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이때에는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8305호의 사무용품과, 제8308호의 버클 등의 경우에도 부분품이 완제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므로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최소허용기준 범위내에서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초과한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자동차 시트용 힌지 ✓ 세번: 8307.30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자동차의 의자 고정을 위한 자동차 시트용 힌지(Hinges)는 자동차 의자의 측면에 부착되어 등받이를 움직일 때 이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 시트용 힌지는 비금속제의 것으로 플레이트와 커버 및 기타 부분품으로 만들어진다.

<자동차 시트용 힌지의 주요 원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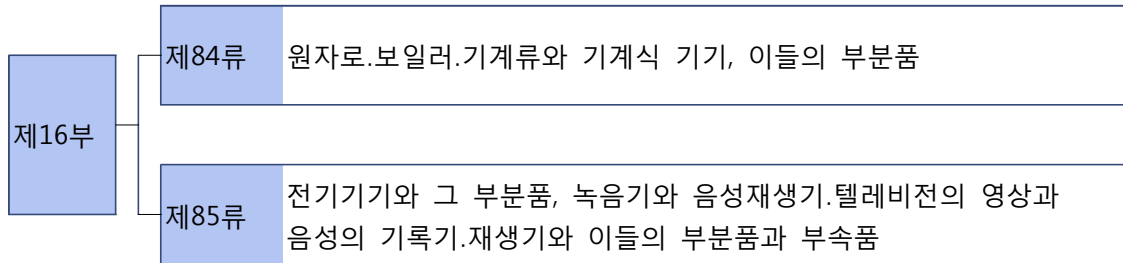
품 명	HS	설 명
힌지 플레이트	8302.10	자동차용 의자 고정을 위한 부분품
커 버	8302.10	자동차용 의자 고정을 위한 부분품
샤 프 트	7326.90	자동차용 의자 고정을 위한 철강제 부분품
스 프 링	7320.10	자동차용 관상 스프링
너 트	7318.16	각 부분품의 결합을 위한 너트

한-중 FTA는 제8302호의 제품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투입되는 모든 비원산지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상이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제시된 원재료들이 자동차 시트용 힌지의 제조에 투입된다고 가정해 볼 때 상기 제품의 경우 힌지 플레이트(HS 제8302.10호) 및 커버(HS 제8302.10호)는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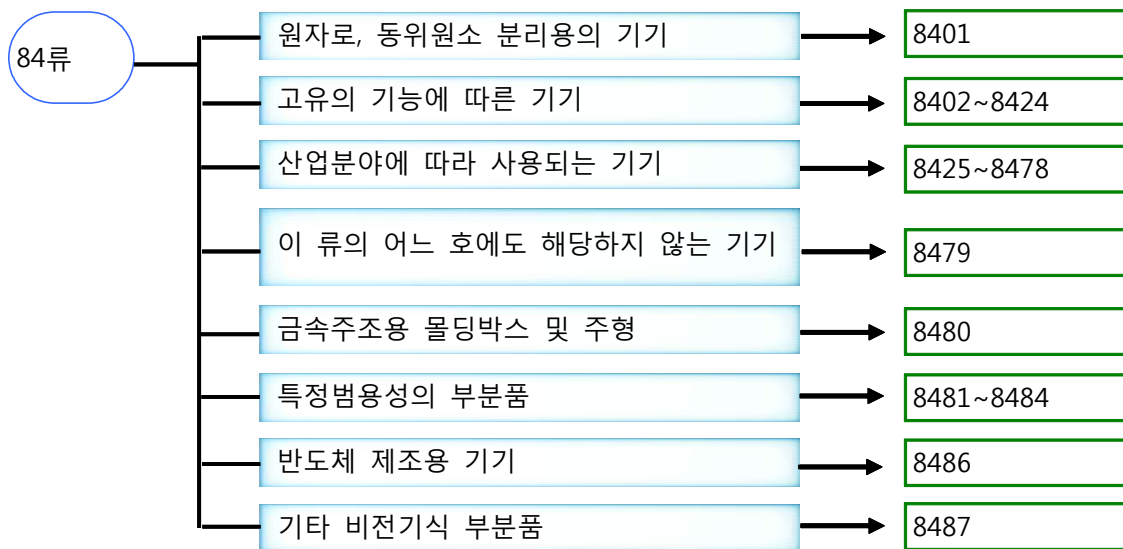
다만, 최소허용기준의 특례를 이용할 경우 힌지 플레이트(HS 제8302.10호) 및 커버(HS 제8302.10호)의 가격이 상품가격의 10% 미만일 경우 해당물품은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원산지물품의 사용이 가능하다.

제16부 기계류, 전기기기,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4류~제85류)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기계식 기기, 이들의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2. 제84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8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8471702090(기억장치의 기타의 품목), 8473304060(디램모듈), 8479899099(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의 기타의 품목)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8471702090(기억장치의 기타의 품목)이며 전년대비 10.9%가 증가하였다.

HS 제8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471702090	1,783,819	31.8	1,977,950	10.9
2	8473304060	1,398,261	72.4	1,203,983	-13.9
3	8479899099	778,172	-21.6	912,733	17.3
4	8409911000	616,536	4.1	589,660	-4.4
5	8408103000	520,775	6.7	446,068	-14.3
6	8486309090	185,358	8	369,895	99.6
7	8479909090	319,701	8.2	341,414	6.8
8	8486403090	212,117	27.5	310,590	46.4
9	8486204000	223,144	28.9	293,514	31.5
10	8473309090	239,401	-34.4	272,829	1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4,695,887		15,123,769	

3. 제84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84류	한중 FTA	649
	양허제외	82
	무관세	134
	APTA	134
합계		999

APTA 활용실익 세번

8402.12.00, 8404.10.10., 8404.10.20., 8404.90.10, 8407.34.10, 8407.34.20, 8408.10.00, 8408.20.10, 8408.20.90, 8409.91.10, 8409.91.91, 8409.91.99, 8409.99.91, 8411.12.90, 8412.31.00, 8413.81.00, 8414.30.11, 8414.30.12, 8414.80.20, 8414.80.30, 8414.90.20, 8418.61.20, 8418.69.20, 8418.69.90, 8419.39.10, 8419.39.90, 8421.21.10, 8421.21.91, 8421.21.99, 8421.29.10, 8421.39.10, 8421.39.24, 8421.39.29, 8421.39.30, 8421.39.90, 8422.30.10, 8422.30.21, 8422.30.29, 8426.19.10, 8426.19.21, 8426.19.29, 8426.19.30, 8426.19.41, 8426.19.42, 8426.19.43, 8426.19.49, 8426.19.90, 8428.10.10, 8428.39.10, 8428.39.20, 8429.52.11, 8431.39.00, 8431.43.90, 8437.80.00, 8439.99.00, 8441.20.00, 8441.80.10, 8441.80.90, 8443.11.00, 8443.13.11, 8443.13.12, 8443.13.13, 8443.13.19, 8443.13.90, 8444.00.20, 8444.00.30, 8444.00.40, 8444.00.50, 8444.00.90, 8445.11.90, 8445.19.00, 8446.21.10, 8446.30.50, 8447.90.90, 8450.11.90, 8450.12.00, 8450.90.10, 8451.10.00, 8452.10.10., 8452.10.91, 8452.10.99, 8452.21.10, 8452.21.20, 8452.21.30, 8452.21.90, 8452.29.00, 8454.30.10, 8454.30.22, 8454.30.29, 8455.10.10., 8455.10.20, 8455.10.30., 8455.10.90, 8455.21.10, 8455.21.20, 8455.21.30, 8455.21.90, 8455.90.00, 8457.10.10, 8457.10.30., 8457.10.91, 8457.10.99, 8459.69.10, 8459.69.90, 8462.10.10, 8462.39.10, 8462.39.20, 8462.39.90, 8462.91.10, 8462.91.90, 8462.99.10, 8462.99.90, 8466.20.00, 8469.00.20, 8477.59.10, 8477.59.90, 8478.10.00, 8479.10.90, 8480.41.10,

8480.41.20, 8480.41.90, 8480.49.00, 8481.80.21, 8481.80.29, 8481.80.31, 8481.80.39
 8482.80.00, 8483.10.19, 8483.40.20, 8483.40.90, 8486.40.21, 8486.40.22, 8486.40.39,
 8486.90.10

중국은 제84류에 총999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84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649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34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82개의 양허 제외 품목이 존재하고, APTA 양허품목은 134개 분포하고 있다.

4. 제8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8401.10 ~8401.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02.11~ 840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0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04.10 840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0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06.10 ~8406.8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07~8409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40)
8410.11 ~8410.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11.11 ~8411.8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11.91 841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12.10 ~8412.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13.11 ~8413.8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13.91 8413.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14.10 ~841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15.10 ~8415.8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16.10 ~8416.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17.10 ~841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18.10 ~8418.6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18.91 ~841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19.11 ~8419.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2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20.91 8420.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21.11 ~8421.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21.91 842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22.11 ~8422.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23.10 ~8423.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24.10~ 8424.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25~84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28~8431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40)

8432.10 ~8432.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33.11 ~843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34.10 843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3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3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3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36.10 ~843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36.91 843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37.10 843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3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38.10 ~8438.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39.10 ~8439.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39.91 843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4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4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41.10 ~844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4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42.40 8442.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43.11 ~8443.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43.91 8443.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44~8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50.11 ~8450.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51.10 ~845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5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52.10 ~845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5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53.10 ~8453.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5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54.10 ~845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5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55.10 ~ 845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55.30 845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56.1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40)
8456.20 8456.30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45)
8456.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40)
845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컴퓨터 수치제어(CNC) 시스템은 제8537호 또는 제903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CTH and RVC(50) and special rule
845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컴퓨터 수치제어(CNC) 시스템은 제8537호 또는 제903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CTH and RVC(50), and special rule
845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58.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컴퓨터 수치제어(CNC) 시스템은 제8537호 또는 제903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CTH and RVC(50), and special rule
845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5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59.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컴퓨터 수치제어(CNC) 시스템은 제8537호 또는 제903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CTH and RVC(50), and special rule
8459.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59.31 ~8459.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컴퓨터 수치제어(CNC) 시스템은 제8537호 또는 제903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CTH and RVC(50), and special rule
8460.11 ~8460.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컴퓨터 수치제어(CNC) 시스템은 제8537호 또는 제903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CTH and RVC(50), and special rule
846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CTH and RVC(45)
8461.20 846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CTH and RVC(45)
8461.40 8461.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컴퓨터 수치제어(CNC) 시스템은 제8537호 또는 제903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CTH and RVC(50), and special rule
846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CTH and RVC(45)
846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컴퓨터 수치제어(CNC) 시스템은 제8537호 또는 제903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CTH and RVC(50), and special rule
8463~8466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45)
8467.11 ~8467.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67.91 ~846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68.10 ~8468.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6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69~847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74.10 ~847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7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75.10 ~8475.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7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76.21 ~8476.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7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77.10 ~847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7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7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7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79.10 ~8479.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7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81.10 ~848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8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82.10 ~8482.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82.91 848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83.10 ~848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8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8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86.10 ~8486.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48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48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84류는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한-중 FTA는 제84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84류에 속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규정한 특징이 있다. 우선 84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기본적으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제84류의 품목분류 구조가 동일한 호에 완성품과 부분품이 함께 분류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재료 구성이 복잡하고 정밀도가 높은 기계류에 대해서는 원산지판단이 용이하도록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8401.40호의 원자로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8401.10호~제8401.30호의 원자로를 생산하면 6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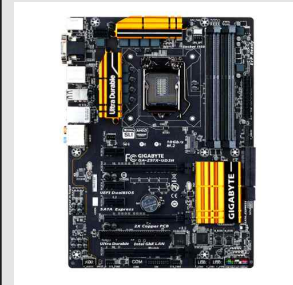
제8402.90호의 보일러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8402.11호의 보일러를 생산하는 경우 역시 6단위 세번이 변동되었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84류의 대부분의 품목들은 제8402호의 해설과 유사하게 원산지 판단이 가능하다. 즉 동일한 호에 속하는 부분품을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할 경우 6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충족시키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 품명: 메인보드
- ✓ 세번: 8473.30
-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메인보드는 판넬에 다양한 집적회로를 부착하여 생산한다. 메인보드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

< 메인보드의 주요 원재료 >

연번	품 명	HS
1	판넬	7410.22
2	초소형 회로칩	8548.90
3	전자지적회로	8542.90
4	다이오드	8541.10
5	트랜지스터	8541.90

한중 FTA는 메인보드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인 보드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들은 제74류와 제85류의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원재료를 모두 역외에서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에 무리가 없다.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3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하는 제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ecks)·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s), 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s)
8506	일차전지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여부를 불문한다)
8508	진공청소기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내장(內藏한 것 ¹⁵)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10	면도기·이발기와 모발제거기[전동기를 내장(內藏)한 것으로 한정한다]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이나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와 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장비(제8539호의 제품은 제외한다). 윈드스크린 와이퍼(windscreen wipers)·제상기(defrosters)와 제무기(demisters)(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장비는 제외한다)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dielectric loss) ¹⁶ 을 포함한다],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dielectric loss) 재료가열기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식(magnetic pulse)이나 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의 납땜이나 용접용 기계와 장치(절단기능 유무를 불문한다), 금속이나 서멧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계와 장치
8516	전기식의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장치와 토양가

	열장치,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s),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이나 수신용 장치(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이나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장치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나 제8528호의 송신용이나 수신용 장치는 제외한다)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9	음성녹음용이나 음성재생용 장치
8521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장치(비디오튜너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
8522	제8519호부터 제8521호까지의 장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트 스테이트(solid-state,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그 밖의 매체[기록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matrices)과 마스터(masters)를 포함하되, 제37류의 생산품은 제외한다)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장치(수신장치나 음성녹음장치나 음성재생장치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6	레이더장치·항행용 무선장치와 무선원격조절장치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장치[음성녹음장치·음성재생장치나 클록(clock)을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8	텔레비전 수신 장치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장치(라디오 방송용 수신 장치·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이나 재생용 장치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9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장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0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이나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장비·안전장비나 교통관제장비(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전기장치(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2	축전기[고정식·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s)와 전위차계(potentiometers)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4	인쇄회로(printed circuits)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전기식 장치[예: 개폐기 · 퓨즈 · 피뢰기 · 전압제한기 · 서지억제기(surge suppressors) · 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전기식 장치(예: 개폐기 · 계전기 · 퓨즈 · 서지억제기(surge suppressors) · 플러그 · 소켓 · 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 ·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용 커넥터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 패널 · 콘솔 · 데스크(desks)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장치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90류의 기기나 장치와 수치제어장치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 장치는 제외한다)
8538	부분품(제8535호 · 제8536호나 제8537호의 장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unit lamps)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arc-lamps)
8540	열전자관 · 냉음극관이나 광전관[예: 진공관 · 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 · 수은 아크정류관 · 음극선관 · 텔레비전용 촬상관(攝像管, camera tubes)]
8541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로 조립되거나 패널로 만들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2	전자집적회로
8543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전기식 기계와 장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 · 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8545	탄소전극 · 탄소브러시 · 램프용 탄소 · 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 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8546	애자(碍子, electrical insulators)(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8547	전기식 기계·기기나 장비용으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 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卑)금속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548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계류나 장치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007년도에 제8520호 · 제8524호는 삭제

2. 제85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8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8542321010(디램), 8542311000(모노리식(monolithic)집적회로), 8517701029(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중 기타의 품목)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8542321010(디램)이며 전년대비 4.4%가 증가하였다.

HS 제8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542321010	9,376,877	50.3	9,790,849	4.4
2	8542311000	4,318,031	108.9	7,225,484	67.3
3	8517701029	5,140,361	35	5,470,564	6.4
4	8531909000	4,105,513	-20.4	4,157,379	1.3
5	8542323000	2,538,169	61	3,465,192	36.5
6	8538909000	1,842,347	2.7	2,619,481	42.2
7	8542313000	2,790,292	-50.6	1,604,273	-42.5
8	8543709090	2,296,590	2	1,457,685	-36.5
9	8542321030	1,888,084	67	1,416,822	-25
10	8541402090	1,127,080	-14.1	1,020,557	-9.5
해당 류 총 수출금액		51,178,105		52,661,069	

3. 제85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85류	한중 FTA	257
	양허제외	42
	무관세	150
	APTA	64
합계		513
APTA 활용실익 세번		
8502.13.10, 8502.13.20, 8504.23.11, 8504.23.12, 8504.23.13, 8504.40.14, 8504.40.20, 8504.90.19, 8504.90.20, 8504.90.90, 8507.10.00, 8507.20.00, 8507.80.30, 8507.80.90		

15) “내장(self-contained)”이란 면도기, 진공청소기, 시계와 같이 케이스 안에 동력(전동기)을 비롯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자급식(自給式)이라고도 한다. ‘갖춘 것’보다는 ‘내장한 것’이 의미전달이 보다 정확하다.

16) 제8514호에서 “유전손실(dielectric loss)”이란 유전체 재료에서 열로 전환된 전기적 에너지를 말한다. 따라서 이 열을 이용하는 방식의 노와 오븐이나 재료가열기는 이 호로 분류한다.

8512.30.11, 8512.30.19, 8512.30.90, 8517.70.40, 8519.20.00, 8519.81.19, 8519.81.21, 8519.81.29, 8519.81.39, 8519.89.90, 8521.90.11, 8521.90.12, 8521.90.19, 8521.90.90, 8522.90.10, 8522.90.31, 8522.90.39, 8522.90.91, 8522.90.99, 8525.80.11, 8528.49.10, 8528.59.90, 8528.69.10, 8528.71.10, 8528.71.80, 8528.72.11, 8528.72.12, 8528.72.19, 8528.72.21, 8528.72.22, 8528.72.29, 8528.72.31, 8528.72.32, 8528.72.39, 8528.72.91, 8528.72.92, 8528.72.99, 8529.90.42, 8529.90.81, 8529.90.82, 8529.90.83, 8537.10.11, 8537.10.19, 8537.10.90, 8537.20.10, 8537.20.90, 8538.10.10, 8538.10.90, 8544.11.00, 8544.49.21

중국은 제85류에 총513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85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257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50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42개의 양허 제외 품목이 존재하고, APTA 양허품목은 64개 분포하고 있다.

3. 제8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8501~85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05.11 8505.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505.20 85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06.10 ~8506.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506.50 85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507.10 ~850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508.11 ~8508.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08.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09.40 8509.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0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10.10 ~8510.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10.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12.10 85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512.30 8512.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55)
851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514.10 ~8514.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5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515.11 ~851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516.10 ~8516.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1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17.11 ~8517.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17.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18.10 ~8518.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18.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19 8521~8523 8525~85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32.10 ~853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5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533.10 ~8533.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5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5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5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36.10 ~8536.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36.61 ~853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53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and RVC(50)
8537.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3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540.11 ~8540.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854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540.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41.10 ~8541.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5)
854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42~854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48.10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854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85류는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완정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5류의 품목분류 구조 역시 제84류와 유사하게 동일한 호에 완성품과 부분품이 함께 분류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제85류의 특징에 따라 한-중

FTA는 부분품에 대해서는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RVC 40%)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하고 본품에 대해서는 동일호에 속하는 부분품을 수입하여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용이하도록 6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1000볼트 이하의 전기제어용 배전반 등(제8537.10호)에 대해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RVC 50%)을 모두 충족하는 결합기준을 채택하여 역외산 재료의 투입을 제한하는 매우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중 FTA가 일반적으로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제8548.10호) 역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받는다.

예를들어 제8503호의 발전기부분품을 수입하여 제8501호의 발전기를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입한 원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이 변동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8504.90호의 변압기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8504.10호의 안정기, 제8504.23호의 변압기, 제8504.32호~제8504.50호의 변압기를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부분품의 가격이 완성품의 가격의 40%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85류의 대부분의 품목들은 제8504호의 해설과 유사하게 원산지 판단이 가능하다. 즉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동일호에 속하는 특정 부분품을 수입하여 생산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시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 품명: 변환젠더(신호연결기) ✓ 세번: 8543.70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변환 젠더는 서로 다른 형태의 단자를 변환하여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영상 및 음성 신호 케이블의 단자를 다른 모양의 단자로 바꾸어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젠더의 주요 원재료는 레지스터 칩(제8532호), 연결케이블(제8544호), 세라믹 칩(제8523호), 동제의 코일(제7413호), 집적회로(제8542.32호) 등이다.

한-중 FTA는 변환젠더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주요 원재료를 모두 역외에서 수입하여 젠더를 생산하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상품이 될 수 있다.

만약 제시된 재료 외에 젠더와 동일한 호에 속하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만큼만 투입해야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장비 관련품(제86류~제89류)

제17부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장비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88류	항공기·우주선과 이들의 부분품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장비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炭水車)
8603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4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 여부를 불문한다][예: 공작차(workshops)·기중기차(cranes)·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s)·트랙라이너(trackliners)·검사차(testing coaches)와 궤도검사차(track inspection vehicles)]
8605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86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철도차량의 부분품
8608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이나 비행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용·안전용이나 교통관제용 장비, 이들의 부분품
8609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제86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8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8609001000(액체운반용), 8609009000(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기타의 품목), 8608001000(철도·궤도선로용장치물)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8609001000(액체운반용)이며 전년대비 55.2%가 증가하였다.

HS 제8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609001000	4,729	69	7,339	55.2
2	8609009000	4,952	5.9	5,483	10.7
3	8608001000	2,140	9688.7	3,511	64.1
4	8607199000	620	2372.2	852	37.5
5	8609002000	3,267	244.8	793	-75.7
6	8607110000	-	0	586	0
7	8606990000	7,251	0	538	-92.6
8	8609003000	110	0	339	208.1
9	8607910000	277	-10.1	315	13.8
10	8607120000	-	0	284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3,773		20,835	

3. 제86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86	한중 FTA	41
합계		41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86류에 총41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86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8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8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86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6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8607호의 철도차량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8603호~제8606호의 객차 등을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s)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4	화물자동차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ies) · 기중기차(crane lorries) · 소방차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 도로청소차 · 살포차 · 이동공작차 · 이동방사선차]
8706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9	공장 · 창고 · 부두나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10	전차(戰車)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s)를 포함한다]와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s)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사이드카(side-cars)
8712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자전거를 포함한다)
8713	신체장애이용 차량(모터의 유무나 기계구동식 여부를 불문한다)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5	유모차와 그 부분품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2. 제87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8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8708999000(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의 기타의 품목), 8708400000(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8708290000(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중 기타의 품목)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8708999000(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의 기타의 품목)이며 전년대비 15.4%가 감소하였다.

HS 제8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708999000	2,683,956	-3.9	2,270,352	-15.4
2	8708400000	1,438,470	35.1	1,686,592	17.2
3	8708290000	963,894	17	873,077	-9.4
4	8703239010	749,303	-31.5	443,019	-40.9
5	8703231010	644,325	68.1	277,285	-57
6	8703329010	279,104	71.7	180,892	-35.2
7	8708309000	169,945	0.9	145,643	-14.3
8	8708930000	105,234	23.2	112,049	6.5
9	8708940000	55,663	22.7	75,592	35.8
10	8708800000	52,407	17.7	71,827	37.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7,433,422		6,353,207	

3. 제87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87류	한중 FTA	169
	양허제외	22
	APTA	59
합계		250

APTA 활용실익 세번

8703.21.30, 8703.21.40, 8703.21.50, 8703.21.90, 8703.22.30, 8703.22.40, 8703.22.50, 8703.22.90, 8703.23.41, 8703.23.42, 8703.23.43, 8703.23.49, 8703.23.51, 8703.23.52, 8703.23.53, 8703.23.59, 8703.23.61, 8703.23.62, 8703.23.63, 8703.23.69, 8703.24.11, 8703.24.12, 8703.24.13, 8703.24.19, 8703.24.21, 8703.24.22, 8703.24.23, 8703.24.29, 8703.32.11, 8703.32.12, 8703.32.13, 8703.32.19, 8703.32.21, 8703.32.22, 8703.32.23, 8703.32.29, 8703.33.11, 8703.33.12, 8703.33.13, 8703.33.19, 8703.33.21, 8703.33.22, 8703.33.23, 8703.33.29, 8703.33.61, 8703.33.62, 8703.33.63, 8703.33.69, 8703.90.00, 8708.29.41, 8708.29.90, 8708.30.29, 8708.50.72, 8708.50.79, 8708.95.00, 8711.30.10, 8711.30.20, 8712.00.90, 8714.99.00

중국은 제87류에 총250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87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69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22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APTA 협정관세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59개이다.

4. 제8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8701~870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50)
87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and RVC(60)
8704~8705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50)
8706~87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708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50)
87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711~871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40)
87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8714~8716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40)

(구성분석) 제87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트랙터(제8701호)와 10인승 이상의 차량(제8702호), 화물차와 특수용토 차량(제8704호,제8705호)은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50%이상 충족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승용차(제8703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 60%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 매우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택하고 있다. 이는 양국의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전차 및 장갑차(제8710호)와 장애인용차량(제8713호)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택하지않고 4단위 세번변경기준만 채택한 특징이 있다. 전차의 경우 부분품이 동일한

호에 속하기 때문에 부분품을 수입하여 전차를 생산할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내에서는 역외산 부분품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안전벨트 부분품)

✓ 품명: 안전벨트 부분품 ✓ 세번: 8708.29 ✓ 원산지결정기준: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자동차 안전벨트의 출입부분에 부착되는 안전벨트용 플라스틱 성형품으로 안전벨트 부분품의 주요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

< 안전벨트 부분품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폴리프로필렌칩	3902.10	플라스틱 사출성형품의 원재료로써 PP칩
침쇄(Fastener)	8708.99	차체에 부착되어 안전벨트의 출입을 고정시키는 플라스틱 사출성형품
서열 라벨 테그	4821.10	서열 및 바코드 종이 라벨
캡	3926.90	제품 외부 전면 커버(플라스틱 사출물)

한-중 FTA는 제8708호에 분류되는 안전벨트 부분품의 경우 부가가치기준(50%) 단일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예시에서 제시된 제품을 모두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50%이상 발생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제8708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만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입원재료의 가격산정과 상품가격산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품목분류 구조의 특징상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대다수 인테 한-중 FTA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충족가능성이 낮은 세번변경기준은 배제하고 부가가치기준만으로 원산지를 판단토록 규정한 것이다.

제88류 항공기·우주선과 이들의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8801	기구와 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과 우주선 운반로켓
8803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4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achutes),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2. 제88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8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8803301000(비행기의 것), 8803200000(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8804001000(낙하산(조종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8803301000(비행기의 것)이며 전년 대비 41.2%가 증가하였다.

HS 제88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803301000	25,020	28	35,329	41.2
2	8803200000	1,130	108.9	2,776	145.7
3	8804001000	165	21.1	325	97.4
4	8804009010	4	2	5	21.5
5	8803901000	1	0	4	620
6	8803909000	47	-98.8	1	-98.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6,367		38,440	

3. 제88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88류	한중 FTA	16
	무관세	1
	APTA	1
합계		18
APTA 활용실익 세번		
8802.40.20		

중국은 제88류에 총18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88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6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8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APTA 협정관세 활용 가능한 세번은 1개 존재한다.

4. 제8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8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88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88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제88류에 속하는 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항공기 부분품(제8803호)를 수입하여 항공기등(제8801, 제8802호)를 생산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8804~제8805호에 속하는 낙하산 및 훈련장비 역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낙하산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804.90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낙하산을 생산하는 경우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8901	순항선(cruise ships) · 유람선 · 페리보트(ferry-boats) · 화물선 · 부선(barges)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8902	어선, 공작선(factory ships)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의 그 밖의 선박
8903	요트와 유람용이나 운동용의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4	예인선(tugs)과 푸셔크라프트(pushers craft)
8905	조명선 · 소방선 · 준설선 · 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解船渠, floating docks),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8906	그 밖의 선박(군함과 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7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 · 탱크 · 코퍼댐(coffer-dams) · 부잔교(landing-stages) · 부표(buoys) · 수로부표(beacons)]
8908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2. 제89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8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8901200000(탱커(tanker)), 8906900000(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의 기타의 품목), 8904001000(예인선)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8901200000(탱커(tanker))이며 전년대비 46.9%가 증가하였다.

HS 제89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901200000	286,813	36406.3	421,210	46.9
2	8906900000	567	2603.2	10,261	1710.7
3	8904001000	-	0	8,875	0
4	8901901000	136,780	-88.9	7,178	-94.8
5	8901902000	-	0	3,625	0
6	8907909000	3	-72.5	171	5518.6
7	8902001010	163	13048.2	65	-60.2
8	8903100000	31	49.4	42	33.2
9	8903999000	13	103.1	40	204.3
10	8903991000	11	0	12	1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24,391		451,480	

3. 제89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89류	한중 FTA	40
	양허제외	2
합계		42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89류에 총42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89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40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2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89류에는 APTA 양허품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APTA 활용실익 또한 없다.

4. 제8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8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60)

(구성분석) 제89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9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에서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류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폐선 직전의 중고 어선(제8902호)을 수입하여 기계장치등을 제거하고 해체용 선박으로 만들면 동일 류 내에서 세번변동이 없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면 이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 품명: 탱커
- ✓ 세번: 8901.20
-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선박의 일반적 건조과정을 보면 강재를 적치 후 절단하여 이를 조립하고 의장 및 도장 작업을 하여 마무리한다.

한-중 FTA는 탱커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역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선박을 제작하는 경우 제89류 외의 재료는 모두 비원산지재료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없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한-중 FTA는 다른 협정들과 비교할 때 선박의 부가가치기준을 60%로 높게 설정한 협정이므로 다소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고 선박을 수입하여 이를 수리하여 다시 제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 속하므로 원산지결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품 규정에 의한 원산지판단이 가능한지, 선박의 원재료 내역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기준 충족이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0류~제92류)

제18부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제92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살아있는 동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9001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polarizing)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구와 장치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구와 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9003	안경·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장착구와 이들의 부분품
9004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5	쌍안경·단안경.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구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9006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장치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7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기록장치나 재생장치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008	투영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장치와 장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우프(negatoscopes), 영사용 스크린
9011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이나 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장치(diffraction apparatus)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s)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es)와 그 밖의 항행용(navigation) 기기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기기[컴퍼스(compasses)는 제외한다], 거리측정기
9016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의 유무를 불문한다)
9017	제도용구·설계용구나 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의 진단장치·그 밖의 전기식 의료장치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장치,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장치,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 장치
902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trusses)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와 결합·볼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이나 감마선을 사용하는 장치(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용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장치·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제품을 포함한다)
9023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장치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9024	재료(예: 금속·목재·방직용 섬유재료·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계와 기기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9026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이나 검사용 기구와 장치(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나 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구와 장치(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분석기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측정이나 검사용 기구와 장치,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이나 검사용 기구와 장치(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s)

9028	기체·액체나 전기의 적산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calibrating meters)를 포함한다]
9029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s)
903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s)·스펙트럼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구와 장치(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구와 장치
9031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구·기기와 기계, 윤곽 투영기
9032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구와 장치
9033	제90류의 기계·기기·기구나 장치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002년도에 제9009호는 삭제

2. 제90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90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9013801990(액정 디바이스), 9013801130(텔레비전용의 것), 9013801930(텔레비전용의 것)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9013801990(액정 디바이스)이며 전년대비 2.4%가 감소하였다.

HS 제90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9013801990	6,092,520	-4.7	4,978,736	-18.3
2	9013801130	2,784,001	-9.7	4,139,295	48.7
3	9013801930	3,481,299	-20.8	2,554,297	-26.6
4	9013801140	2,793,379	-5.6	2,484,666	-11.1
5	9001200000	1,129,494	1.5	1,084,906	-3.9
6	9013801190	814,780	49	857,620	5.3
7	9001909000	512,049	-21	454,640	-11.2
8	9031809099	377,512	-6.4	399,090	5.7
9	9013909000	294,294	19.1	266,920	-9.3
10	9032899090	259,881	23.6	253,719	-2.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0,350,186		19,258,219	

3. 제90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90류	한중 FTA	189
	양허제외	19
	무관세	34
	APTA	17
합계		259
APTA 활용실익 세번		
9001.10.00, 9006.91.10, 9006.91.91, 9006.91.92, 9006.91.99, 9013.80.10, 9013.80.20 9015.80.00, 9018.12.91, 9018.12.99, 9018.19.49, 9022.12.00, 9031.80.10, 9031.80.31 9031.80.32, 9031.80.33, 9031.80.39		

중국은 제90류에 총259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90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189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34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19개의 양허제외 품목이 존재하고, APTA 양허품목은 17개 분포하고 있다.

4. 제9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9001~90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9013.10 901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9013.80 9013.90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45)
9014~90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9032.10 9032.20 9032.8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9032.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and RVC(50)
90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90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90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0류에 속하는 물품은 가지 원산지결정기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 둘째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 셋째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이다.

우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광섬유(제9001호)는 제7002호의 유리제품을 수입하여 제9001.10호의 광섬유를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경이 충족됨에 무리가 없고 따라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것이다. 9011.90호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9011.10호~제9011.80호의 광학현미경을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액정디바이스와 그 부분품(제9013.80호, 제9013.90호)의 경우 부가가치기준만 채택하고 있으므로 역외산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더라도 역내 부가가치가 45%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제9032.80호에 해당하는 자동제어용 기기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과 5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매우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택하고 있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보호필름 ✓ 세번: 9001.90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보호필름은 물품의 외부 전/후면을 보호하거나 장식할 수 있는 필름으로 흠집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호필름은 보호테이프(제3910호), 적층 pet(제3920호)를 주요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중 FTA는 보호필름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원재료를 모두 수입하여 생산하여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데 무리가 없다.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가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를 갖춘 클록(clocks)(제9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4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이나 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s)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s)
9105	그 밖의 클록(clocks)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나 동기(同期)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s)·타임레코더(time-recorders)]
9107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나 동기(同期)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9108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09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s)(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
9111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2	클록(clocks) 케이스와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3	휴대용 시계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4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2. 제91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9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9114900000(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중 기타의 품목), 9104004000(선박용), 9102119090(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기타의 품목)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9114900000(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중 기타의 품목)이며

전년대비 52%가 감소하였다.

HS 제91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9114900000	21,884	973.2	10,515	-52
2	9104004000	114	96.1	191	67.6
3	9102119090	21	-68.6	165	668.5
4	9102199090	2	-7.5	126	5307.6
5	9107009000	84	-43	112	34.2
6	9104001000	38	-71.3	88	133.1
7	9107001000	129	6.6	86	-33.3
8	9101290000	-	-100	72	0
9	9111800000	-	-90.1	72	53107.4
10	9106902000	37	-73.5	65	73.7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2,981		11,886	

3. 제91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91류	한중 FTA	52
	APTA	2
합계		54
APTA 활용실익 세번		
9108.19.00, 9111.20.00		

중국은 제91류에 총54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91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52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2개의 세번은 APTA 활용실익이 큰 품목으로 나타난다.

4. 제9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9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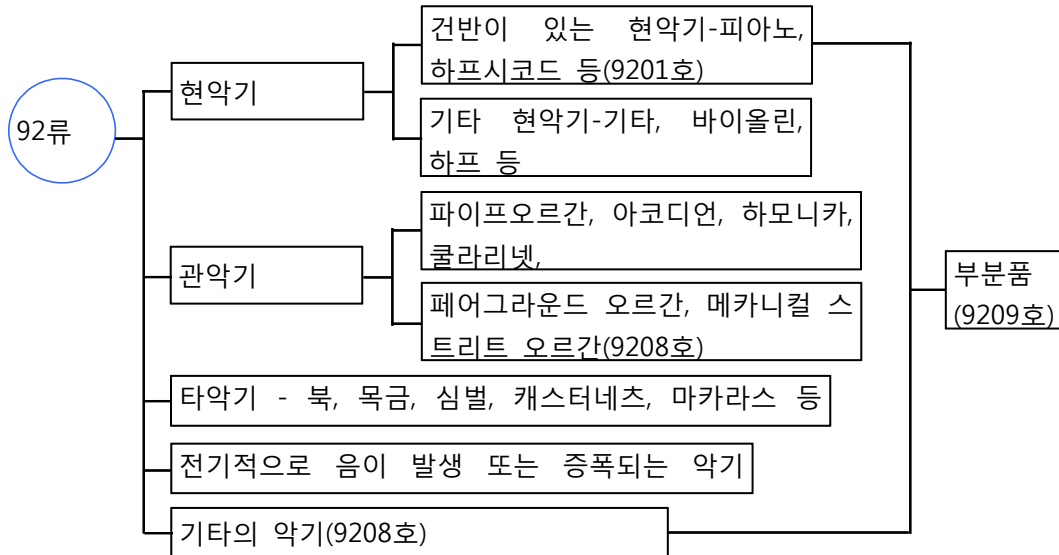
(구성분석) 제91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1류에 속하는 모든물품은 한-중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동일한 호이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9011.90호의 시계 배터리를 수입하여 제9011.10호의 무브먼트를 생산하는 경우 무브먼트의 원산지결정기준상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92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 품목분류 체계



2. 제92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9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9209920000(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207103000(피아노), 9209940000(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9209920000(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며 전년 대비 21.7%가 감소하였다.

HS 제92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9209920000	8,297	-13.9	6,495	-21.7
2	9207103000	4,532	1.7	5,996	32.3
3	9209940000	5,478	15.7	5,279	-3.6
4	9201109000	2,081	10.6	3,152	51.5
5	9201909000	2,369	39.2	1,555	-34.4
6	9209910000	329	-75.5	581	76.9
7	9209301000	621	-41.4	505	-18.6
8	9207901000	373	-8.1	194	-48.1
9	9202901000	103	243.6	157	51.6
10	9205901040	-	0	118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4,295		24,214	

3. 제 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92류	한중 FTA	20
	양허제외	2
합계		22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92류에 총22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92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20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2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4. 제9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9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92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2류에 속하는 모든 약기는 한-중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기부분품(제9029호)를 수입하여 각종 약기(제9201호~제9208호)를 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9부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3류)

제93류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9301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s) · 피스톨(pistols)과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2	리볼버(revolvers)와 피스톨(pistols)(제9303호나 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3	그 밖의 화기(firearms)와 폭약으로 점화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s) · 총구장전화기 ·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s)과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 공포탄용 피스톨(pistols)과 리볼버(revolvers) · 캡티브볼트형의 무통도살기(captive-bolt humane killers) · 줄발사총(line-throwing guns)]
9304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 · 공기총 · 가스총 · 경찰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6	폭탄 · 유탄 · 어뢰 · 지뢰 · 미사일.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 그 밖의 총포탄 · 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하는 와드(wads)를 포함한다]
9307	검류 · 창.이와 유사한 무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집

2. 제9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93류의 수출실적은 없다.

3. 제93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93류	한중 FTA	21
합계		21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93류에 총21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93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중 FTA 활용이 가능하고 APTA 활용가능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9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93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93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3류에 속하는 모든 무기는 한-중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기부분품(제9305호)를 수입하여 각종 무기(제9301호~제9304호)를 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0부 잡품(제94류~제96류)

제20부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ress supports)·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s)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6류	잡품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젖힘과 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4	매트리스서포트(matress supports), 침구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매트리스·이불·깃털이불·쿠션·푸프(pouffes)·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 셀룰러 고무나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9405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s)·스포트라이트(spotlights)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s)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406	조립식건축물

2. 제94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9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9401909000(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5409000(그 밖의 전기 램프와 조명기구의 기타의 품목), 9401902000(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중 금속으로 만든것)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9401909000(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이며 전년대비 3.3%가 증가하였다.

HS 제94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9401909000	264,782	10	273,428	3.3
2	9405409000	108,549	12.8	65,284	-39.9
3	9401902000	86,861	-36.2	54,488	-37.3
4	9405999000	27,588	-37.3	19,147	-30.6
5	9403209000	2,139	117.4	3,822	78.7
6	9403409000	3,841	68.5	3,631	-5.5
7	9406009090	4,328	62	2,818	-34.9
8	9404900000	1,890	55.1	2,645	39.9
9	9403709000	244	-41	2,453	903.5
10	9405103000	524	0	1,886	259.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513,537		447,262	

3. 제94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94류	한중 FTA	22
	양허제외	1
	무관세	35
	APTA	2
합계		60
APTA 활용실익 세번		
9404.29.00, 9406.00.00		

중국은 제94류에 총60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94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22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35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1개의 양허제외 품

목이 존재하고, APTA 양허품목은 2개 분포하고 있다.

4. 제9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94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94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4류에 속하는 모든 가구 등은 한-중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호에 속하는 부분품(제9401.90호)을 수입하여 의자(제9401.10호~제9401.80호)를 제작할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비원산지재료)이 부가가치기준의 조건(역내부가가치 40%이상)을 충족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의자외에 기타가구(제9403.10호~제9403.89호), 램프 및 조명기구(제9405.10호~제9405.60호)도 동일하다.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LED 조명)

✓ 품명: LED 조명 ✓ 세번: 9405.10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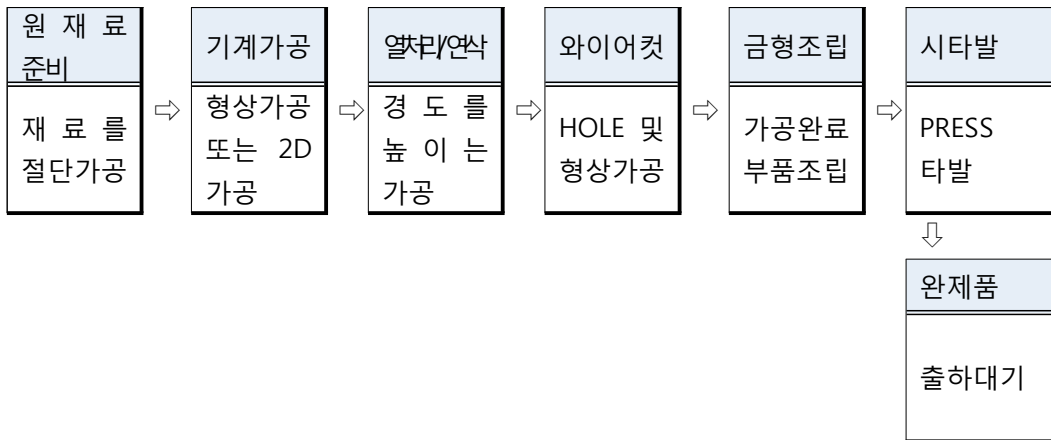
LED평판조명(LED Panel Lighting)은 LED Panel을 이용하여 주위를 밝히는 조명기기이다. LED는 p-n접합 다이오드의 일종으로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릴 때 단 파장광 (monochromatic light)이 방출되는 현상인 전기발광효과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이며, 본 물품은 이러한 LED빛을 이용하여 주위를 밝히는 조명기기이다.

LED 평판조명의 주요 원재료는 LED 모듈과 디퓨저 플레이트 등으로 다음과 같다.

< LED 평판조명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샤시(바닥)	9405.92	LED모니터 조립 시 함께 조립되는 부품으로 모니터의 액정과 Backlight Unit 후면 전체를 보호하는 부분품
LED모듈	9013.80	발광소자(LED)의 Color별 휘도와 각도 조절 장치
GLP(Light Guide Plate)	9002.90	백라이트 유닛(BLU)의 휘도와 균일한 조명기능을 구현하는 부품
디퓨저 플레이트	9001.90	폴리에스테르 상층부에 5내지 10 μ m 크기의 확산 역할
리플렉터	9001.90	전면은 PET재질로 된 발표성 백색수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면은 TiO ₂ PET에 접착시키기 위해 Primer층을 사용한 구조

< LED 평판조명 생산공정 >



한-중 FTA에서 LED 조명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다. 위에서 제시된 원재료 내역을 바탕으로 볼 때 제시된 원재료를 모두 수입해서 조명을 생산하는 경우 샤시(제9405.92호)의 4단위 세번이 완제품과 동일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샤시를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한 만약 샤시의 재료비 비중이 조명의 상품가격에서 10% 이하로 미미한 경우라면 최소허용기준에 의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샤시가 비원산지재료이고, 10%를 넘는 비중을 차지 한다면 부가가치 기준에 의해 원산지 판단을 할 수 있다. 샤시의 가격이 조명가격의 40%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95류 완구·게임용구와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9503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 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퍼즐
9504	비디오게임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5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이나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 풀(paddling pools)용품
9507	낚시대·낚시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 순회서커스용품과 순회동물원용품, 순회극장용품

※ 2007년도에 제9501호·제9502호는 삭제

2. 제95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9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9507909000(낚시대·낚시바늘 등), 9506990000(옥외게임용품), 9503003300(그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507909000(낚시대·낚시바늘 등)이며 전년대비 15.7%가 증가하였다.

HS 제95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9507909000	7,381	-7.7	8,539	15.7
2	9506990000	5,284	13.7	6,812	28.9
3	9503003300	1,945	116.2	4,553	134.1
4	9503003990	6,657	39.3	4,182	-37.2
5	9508900000	334	-62.5	4,056	1115.2
6	9506910000	1,933	8.4	3,348	73.2
7	9503003190	2,053	-18.8	2,490	21.3
8	9503001800	306	-4.7	1,769	477.6
9	9507300000	2,176	15.6	1,727	-20.6
10	9503003911	1,666	65.5	1,676	0.6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3,749		49,010	

3. 제95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95류	한중 FTA	28
	양허제외	1
	무관세	30
합계		59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95류에 총59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95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28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1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95류에는 무관세 품목이 30개 존재한다.

4. 제9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95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95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5류에 속하는 모든 완구 및 운동용구 등은 한-중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 호에 속하는 부분품(제9503.29호)을 수입하여 완구(제9503호)를 제작할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비원산지재료)이 부가가기기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완구 외에 골프채(제9506.31호)의 경우도 동일하다.

제96류 잡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9601	가공한 아이보리(ivory) · 뼈 · 귀갑(龜甲) · 뿔 · 가지진 뿔 · 산호 · 자개 ·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2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 · 스테아린(stearin) · 천연검·천연수지나 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s)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젤라틴의 제품
9603	비 · 브러시(기계 · 기구 ·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 ¹⁷⁾ · 자루걸레(mops)와 깃 먼지떨이, 비나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스퀴지(squeegees)[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s)는 제외한다]
9604	수동식 체와 수동식 어레미(riddles)
9605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 · 바느질용 · 신발용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9606	단추 ·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s) · 스냅파스너(snap-fasteners)와 프레스스터드(press-studs) · 단추의 몰드(moulds)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블랭크(blanks)
9607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s)와 그 부분품
9608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ped)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 · 철필형 만년필(stylograph pens)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s)이나 슬라이딩 펜슬(sliding pencils), 펜 홀더 · 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caps)과 클립(clips)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9	연필(제9608호의 펜슬은 제외한다) · 크레용 · 연필심 · 파스텔 · 도화용 목탄 · 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961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9611	날짜 도장(日附印) · 봉합용 스탬프 · 넘버링 스탬프(numbering stamps)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s)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組版)용 스틱과 조판(組版)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9612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상자들이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613	흡연용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기계식이나 전기식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라이터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4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을 포함한다)와 시가홀더·시가렛홀더와 이들의 부분품
9615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s)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curling pins)·컬링그립(curling grips)·헤어컬러(hair-curlers)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와 이들의 마운트(mounts)와 두부(頭部, heads), 화장품류나 화장용품의 분첩(powder-puffs)과 패드(pads)
9617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¹⁸⁾)
9618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lay figures),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9619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이와 유사한 제품(재료를 불문한다)

2. 제96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96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9619001010(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liner)), 9619009000(생리대, 기저귀 등), 9619001090(펠프 등으로 만든 기타의 물품)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9619001010(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liner))이며 전년대비 5.9%가 감소하였다. 이중 폭증한 품목은 9619009000(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의 기타의 품목)으로 전년대비 44,632.6%(‘14년:70천달러, ’15년:31,478 천달러)증가하였다.

HS 제96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17) 모터를 갖춘 청소기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

18) 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7020호에 분류한다.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9619001010	124,947	-16.4	117,632	-5.9
2	9619009000	70	32.5	31,478	44632.6
3	9619001090	5,108	194.9	12,418	143.1
4	9603210000	5,078	44.9	9,836	93.7
5	9616200000	4,042	187	6,263	54.9
6	9613800000	7,633	97.9	5,580	-26.9
7	9612102000	5,453	25.8	5,580	2.3
8	9607199000	5,624	22.2	4,415	-21.5
9	9603500000	3,889	38.9	3,516	-9.6
10	9607201000	2,550	-37.8	2,502	-1.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94,043		228,115	

3. 제96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96류	한중 FTA	62
	양허제외	3
	APTA	2
합계		67
APTA 활용실익 세번		
9603.30.10, 9607.19.00		

중국은 제96류에 총67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96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62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3개의 세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APTA 협정관세 활용이 가능한 세번은 2개 존재한다.

4. 제9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9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96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6류에 속하는 잡품은 한-중 FTA에서 기본적으로 한-중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담배라이터(제9613호)의 부분품(제9613.90호)을 수입하여 라이터를 제조하는 경우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비원산지재료)이 4단위 세번이 라이터와 동일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할 수 없다. 그러나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제97류)

제97류 예술품·수집과 골동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9701	회화·데생과 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2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와 석판화
9703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9704	우표나 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4907호의 것을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9705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과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6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제97류의 교역동향과 주요 수출품목

제9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물품은 9703001000(조각), 9701101000(회화), 9703002000(조상(彫像))등이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9703001000(조각)이며 전년대비 561.7%가 증가하였다.

HS 제97류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9703001000	282	-1.5	1,866	561.7
2	9701101000	229	-85.1	573	150.4
3	9703002000	16	-38.7	420	2557.3
4	9701900000	260	0	51	-80.2
5	9702002000	8	-78.9	1	-89.4
6	9706001000	-	-100	1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795		2,912	

3. 제97류의 한중 FTA 및 APTA 활용실익 분석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97류	한중 FTA	8
	무관세	2
합계		10
APTA 활용실익 세번		
없음		

중국은 제97류에 총10개의 8단위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 제97류에 속하는 8단위 세번 중 8개의 세번은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의 효과가 있고 2개의 세번은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다. 그리고 제97류에는 APTA 양허품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APTA 활용실익 또한 없다.

4. 제9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9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97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7류에 속하는 예술품 등은 한-중 FTA에서 기본적으로 한-중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중 FTA 수출 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2-1. 수출유망품목의 선정

중국으로 수출 시 한-중 FTA 활용 유망품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우선 2016년 1월~2월 간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신고한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이 중에서 2015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수출규모가 크고, 중국으로 수출시 FTA 관세 양허 품목으로서 특혜세율의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을 선별하였다. (이때 중국이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하였다)

[한- 중 FTA 산업별 수출유망 품목 선정기준]

1. 2016년 1~2월 한-중 FTA 활용기업
2. 2015년 수출실적 상위 내림차순
3. 중국측 양허품목(중국의 무관세 품목 제외)
4. 10대 산업별 수출상위 2개품목 선정

[한- 중 FTA 산업별 수출유망 품목 20선]

연번	산업	HSK	원산지결정기준
1	광산물	2710-19-5020	CTSH
2	광산물	2710.19-7120	CTSH
3	기계류	8708-99-9000	RVC(50)
4	기계류	9001-90-1000	CTH
5	농림수산물	2008-30-1000	CC, (ex, 0805.20, 0805.90)
6	농림수산물	2101.11-1000	CTH
7	생활용품	4202-92-1020	CTH
8	생활용품	7117.19-9000	CTH or RVC(40)
9	섬유류	5407-61-2000	CTH (ex 51.06-51.10 52.05-52.06 54.01-54.02 54.04-54.06 or 55.09-55.10) or RVC(40)
10	섬유류	6004-10-0000	CC, (ex 54.01-54.02, 54.04, 54.07-54.08, 55.01, 55.03, or 55.06-55.16) or RVC(40)
11	잡제품	6407.20-5000	CTH
12	잡제품	9004.90-1090	CTH or RVC(40)
13	전자전기제품	8538-90-9000	CTH or RVC(40)

14	전자전기제품	9032.89-9090	CTH + RVC(50)
15	철강금속제품	7326-90-9000	CTH
16	철강금속제품	7308.90-9000	CTH
17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3926-90-9000	CTH
18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3920-99-9090	CTH
19	화학공업제품	3804.61-0000	CTH
20	화학공업제품	3903-30-0000	CTH

2-2. 수출유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1. 광산물		제트연료유(HS2710.19-502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제트연료유	2710.19-502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원유	2709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한-중 FTA는 제트연료유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소호에 속하지 않는 원유(제2709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열등의 공정을 거쳐 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소호(제2710.19호)에 속하는 재료를 역외에서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협정은 세번변경기준외에 역내에서 특정한 공정을 수행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중 FTA는 이러한 특정공정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에 의해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역외산 원재료 조달시 상품과 세번의 동일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광산물		자동차 내연윤활유(HS 2710.19-712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자동차 내연윤활유	2710.19-712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윤활유 기유	2710.19-5020	비원산지
	윤활유 기유 첨가제	3811.21-0000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자동차 내연용 윤활유는 일반적으로 기유와 첨가제를 원재료로 하여 이를 혼합하여 생산한다. 한-중 FTA는 윤활유가 분류되는 제2710.19호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윤활유 제조의 핵심재료인 기유와 첨가제를 모두 역외에서 수입하여 윤활유를 생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유와 윤활유의 6단위 세번이 동일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다만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기유가 한-중 FTA에서 규정한 최소허용기준의 범위(FOB 가격의 10%)내에서만 사용되었다면 최소허용기준에 의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기유는 윤활유 생산 주재료이므로 최소허용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윤활유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번이 동일한 기유를 원산지재료를 사용하거나 중국산을 수입하여 누적기준에 의하여 역내생산 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윤활유 생산기업들은 원산지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유를 원산지재료로 조달하여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3. 기계류		차량용 콘솔박스(HS 8708.99-9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차량용 콘솔박스	8708.99-9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기타 부분품 1	8708.99-9000	비원산지
	기타 부분품 2	8708.99-9000	원산지
	기타 부분품 3	8708.99-9000	비원산지
	플라스틱 부분품 1	3926.90	원산지
	플라스틱 부분품 2	3926.90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중 FTA는 제8708.99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5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량용 콘솔박스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 내역을 살펴보면 콘솔 박스와 동일한 세번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부분품 1과 3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콘솔박스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이 아닌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세번의 동일성은 원산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콘솔박스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에서 규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상품가격과 재료비 가격을 각각 산정하여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한-중 FTA는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품가격-비원산지재료비)/ 상품가격 *100 따라서 비원산지재료인 기타부분품 1과 3, 플라스틱 부분품 2의 가격과 상품가격을 산정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하여 50%이상이 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 기계류		보호필름(HS 9001.9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보호필름	9001.9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보호테이프	3910	비원산지
	적층 pet	3920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한중 FTA는 보호필름이 분류되는 제9001.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필름은 물품의 외부 전/후면을 보호하거나 장식할 수 있는 필름으로 흠집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원산지판정	보호필름은 보호테이프(제3910호), 적층 pet(제3920호)를 주요 원재료로 구성되어있는데 한-중 FTA는 보호필름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원재료를 모두 수입하여 생산하여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데 무리가 없다.		
	결국 한-중 FTA는 보호필름을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역외에서 수입하여도 한국에서 필름 생산에 충분한 공정만 수행한다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완화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5. 농림수산물		인스턴트 커피(HS 2101.11-1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인스턴트 커피	2101.11-1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원두	0901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인스턴트 커피는 원두를 입고하여 품질검사 후 로스팅과정을 거쳐 추출에 알맞은 크기로 분쇄한다. 분쇄한 커피는 추출기에서 열수를 이용하여 추출한 후, 추출된 커피액을 농축한 다음 이를 다시 건조시켜 상품포장하는 과정으로 생산한다. 한-중 FTA는 인스턴트 커피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인스턴스 커피 생산에 사용되는 비원산지재료인 원두와 인스턴트 커피의 품목번호가 4단위가 상이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두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인스턴트 커피 생산과정을 거치는 경우 한-중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6. 농림수산물 유자차(HS 2008.30-1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유자차	2008.30-1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유자	0805.90	비원산지
	액상과당	1702.60	비원산지
	꿀	0409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20호 및 제 0805.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유자청은 유자를 채썰어 꿀이나 설탕 등과 섞은 뒤 3~4개월 보관하여 만든다. 이때 설탕이나 꿀 외에 정제수, 구연산, 비타민 C 등이 추가될 수도 있다. 유자청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주요 재료인 유자(0805.90호), 설탕(제17류), 꿀(제0409호)을 역외에서 수입하여 유자청을 생산하여도 2단위 세번이 변경된다. 그러나 제0805.90호의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유자를 역외에서 수입한 경우 유자청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7. 생활용품	노트북 케이스(HS 4202.92-102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노트북 케이스	4202.92-102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인조가죽	3920.99	비원산지
	페리티원단	5407.61	원산지
	소가죽	4107.99	비원산지
	pet plate	3920.62	비원산지
	자석	8505.11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노트북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가죽과 원단을 원하는 디자인을 설계하고 디자인에 따라 재단 및 봉제하여 생산한다. 한중 FTA는 노트북 케이스의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이 서로 달라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기 원재료 내역상 원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이 모두 상이하므로 비록 모든 재료를 역외에서 수입하여 생산하더라도 노트북 케이스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8. 생활용품		팬던트(HS 7117.19-9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메탈 팬던트	7117.19-9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메탈	7117.19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메탈 팬던트는 주재료인 메탈 판을 원하는 모양대로 성형하여 개별상품으로 만들어낸다. 한-중 FTA는 메탈 팬던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40%이상 역내부가가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재료인 메탈판과 상품의 4단위 세번이 동일한 물품으로 메탈판이 비원산지재료인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부가가치기준에 의해서 역내부가가치 발생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 원재료 조달시에 원산지 메탈판과 비원산지 메탈판을 혼용하여 조달함으로써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9. 섬유류		폴리에스테르 직물(HS 5407.61-2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폴리에스테르 직물	5407.61-2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합성필라멘트사 1	5402	비원산지
	합성필라멘트사 2	5402	원산지
	염료	3204	원산지
	발수제	3809.91	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 제5206호,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 제5509호 및 제55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원산지판정	한-중 FTA는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제외세번을 포함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폴리에스테르직물 생산에는 합성필라멘트사, 염료, 발수제가 주요재료로 사용되는데 사례의 경우 합성필라멘트사를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선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하면 합성필라멘트사가 제외세번으로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합성필라멘트사 1이 비원산지 재료이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수 없다. 다만 합성필라멘트사 1의 중량이 직물 총중량의 10%이하로 사용되었다면 최소허용기준에 의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0. 섬유류		메리야스 편물(HS 6004.10-0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메리야스 편물	6004.10-0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폴리에스테르사	5402.62	원산지
	스판덱스 사	5402.44	비원산지
	염료	3204.15	원산지
	표백조제물	3029	원산지
	섬유염색 농축액	3809.10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408호, 제5501호, 제5503호 및 제5506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원산지판정	한-중 FTA는 메리야스 편물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제외세번을 포함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원재료 중에서 스판덱스사는 제외세번으로 규정되어 있어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나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내의 미량만 사용되었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스판덱스사의 비중의 최소허용기준을 벗어난다면 부가가치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1. 잡제품		가속눈썹(HS 6704.20-5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가속눈썹	6704.20-5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원재료 1	5402.49	비원산지
	나일론	5404.19	비원산지
	파마지	5603.94	비원산지
	PVC 원단	3923.10	비원산지
	PET 원단	3923.10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한-중 FTA는 가속눈썹의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속눈썹은 나일론, 파마지, PVC 원단, PET 원단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눈썹모양으로 제작한다.		
	제시된 원재료의 HS 번호와 원산지지위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해보면 가속눈썹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가 비원산지재료이므로 모든 비원산지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변동여부로 원산지를 판단하여야한다. 비록 제시된 원재료가 모두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되었지만 상품과 4단위 세번이 모두 상이하므로 가속눈썹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데 무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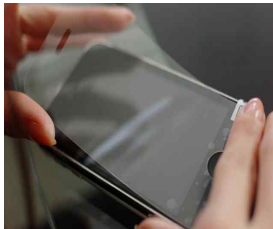
12. 잡제품		시력교정용 안경(HS 9004.90-109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시력교정용 안경	9004.90-109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안경테	9003.11-0000	비원산지
	안경알	9001.40-1000	비원산지
	볼트	7318.15-2000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한-중 FTA는 시력교정용 안경의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력교정용 안경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변동여부로 원산지를 판단하여야한다. 제시된 원재료가 모두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되었지만 상품과 4단위 세 번이 모두 상이하므로 시력교정용 안경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데 무리가 없다.		

13. 전자전기 터치스크린(HS 8538.90-9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터치스크린	8538.90-9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ITO glass	7005.10	비원산지
	ITO film	3920.62	비원산지
	은 화학제품	7106.10	비원산지
	PCB	8534.00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중 FTA는 터치스크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터치스크린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 내역을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해보면 모든 재료를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으나 상품과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동하였으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어려움없이 충족한다. 따라서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검토 하지않고 세번변경기준만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터치스크린과 동일한 호(제8538호)의 재료를 역외에서 수입하여 생산하였다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부가가치기준에 따라서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4. 전자전기 가스조절기(HS 9032.89-909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가스조절기	9032.89-909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조인트 암 반제품	7326.90	원산지
	스파이럴 볼트	7318.15	비원산지
	전기표시장치	8531.90	비원산지
	너트	7318.16	원산지
	플라스틱제 내부커버	3926.90	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한-중 FTA는 가스조절기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5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기준을 모두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		
	제시된 주요 원재료의 세번과 원산지지위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판단해 보면 우선, 비원산지재료인 스파이럴 볼트와 전기표시장치의 4단위 세번과 가스조절기의 세번이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다음으로 역내부가가치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하는데 한-중 FTA는 부가가치기준 계산방식으로 공제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법에 의하여 역내에서 50%이상의 부가가치가 함께 발생하여야 가스조절기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가스조절기의 경우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고려하고 상품가격에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재료의 경우 되도록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15. 철강금속 철강제의 로프(HS 7326.90-9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철강제의 로프	7326.90-9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아연도금 철선	7217.20	비원산지
	비도금 철선	7217.10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한-중 FTA는 철강제의 로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 기준을 선택하고 있다. 철강제의 로프는 아연도금 철선과 비도금 철선을 꼬아서 생산하는데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상품과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데 무리가 없다. 결국 한-중 FTA는 로프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들을 모두 역외에서 수입하여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에서 로프생산에 충분한 공정을 수행하였으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6. 철강금속 앵커(HS 7308.90-9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앵커	7308.90-9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철강판	7208.51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톱니형 앵커는 신축이음장치에 사용되는 것으로 평판압연 철강판을 이음모양에 맞도록 성형하여 제작한다. 다른 재료 없이 철강판만 주요 원재료로 하고 성형하는 제조공정이 주요 생산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공품이다. 한-중FTA는 동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앵커 제작에 사용되는 평판압연 철강판(제7208.51호)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는 공정을 수행하였다면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중 FTA는 앵커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한국에서 충분한 공정을 수행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7.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액정보호필름(HS 3920.90-909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액정보호필름	3920.99-909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폴리프로필렌	3902.10	비원산지
	케이스 종이	4819.50-9000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핸드폰 화면 보호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정보호필름의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액정보호필름은 필름지에 해당하는 폴리프로필렌을 모델규격에 따라 재단하고 이를 케이스에 포장하여 생산하다. 액정보호필름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 모두 비원산지재료이지만 액정보호필름과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액정보호필름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를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한국에서 충분한 공정을 수행하여 필름을 생산한다면 한-중 FTA에서 규정한 세번변경기준을 무리없이 충족할 수 있으므로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풀이할 수 있다.		

18.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핸드폰 케이스(HS 3926.90-9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핸드폰 케이스	3826.90-9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케이스 사출물	3926.90-9000	비원산지
	인쇄용 잉크	3215.19-0000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핸드폰 케이스는 플라스틱제의 케이스 사출물에 잉크를 이용하여 무늬를 형성하여 생산한다. 한-중 FTA는 핸드폰 케이스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출물과 잉크 모두 역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프린팅하여 완성품을 생산하더라도 재료와 완성품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한-중 FTA는 핸드폰 케이스의 주요재료를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한국에서 충분한 공정을 수행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무리가 없으므로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9. 화학공업		폴리실리콘(HS 3804.61-0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폴리실리콘	2804.61-0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규소	2804	원산지
	천연규석	제25류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폴리실리콘은 제25류의 천연규석 또는 제2804호의 규소를 주요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다. 한-중 FTA는 폴리실리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비원산지 원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을 상호 비교하여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천연규석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주요한 공정들을 거쳐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고순도의 규소를 역외에서 수입하여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이 동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규소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규소를 원산지재료를 사용하거나 중국산을 수입하여 누적기준에 의하여 역내생산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규소를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가 최소허용기준으로 인정한 범위 만큼은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폴리실리콘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20. 화학공업		폴리스티렌(HS 3903.30-0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폴리스티렌	3903.30-0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styrene monomer	2902.50	비원산지
	pentane	2901.10	비원산지
	acrylo-nitrile monomer	2926.10	비원산지
	fatty soap	3401.20	비원산지
	methyl methacrylate	2916.14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폴리스티렌의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제시된 사례에서 폴리스티렌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와 HS 번호, 원산지 지위를 바탕으로 폴리스티렌의 원산지를 판단해보도록 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품과 비원산지재료의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야 하는데 위의 사례에서 모든 원재료 세번이 상품세번과 4단위가 서로 상이하므로 사례의 원재료는 모두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폴리스티렌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데 어려움이 없다..		

2-3. 소결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망품목을 2016년 한-중 FTA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규모와 양허현황을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산업간 형평을 고려하여 MTI 1단위 기준 10대 산업별로 수출상위 2대 품목을 선정하여 총 20개 품목을 선별하고 이들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검토 하였다.

한-중 FTA 수출유망 품목 20선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산업별로 일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품목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완성품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단일 기준이므로 부가가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규정된 품목과 비교할 때 원산지기준 선택의 폭이 좁은 한계가 있다.

한-중 FTA 역시 여타의 FTA와 마찬가지로 1차산업이 분류되는 농림수산업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현상으로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료와 상품의 품목분류가 동일한 경우가 많은 농림수산업 특징상 이들 역시 완전생산기준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중 FTA는 개별 품목분류 마다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는 세번은 모두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한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FTA는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서 유일하게 웨이스트 및 스크랩 세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속품 등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특징이 있는 제84류와 제85류에 대해서는 원산지규정을 이원화한 특징이 있다. 즉 부분품이 분류되는 세번에 대해서는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RVC 40%)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하고 본품이 분류되는 세번에 대해서는 동일호에 속하는 부분품을 수입하여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용이하도록 6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출 유망품목 중에서 자동차 부분품(제8708.99)의 경우 유일하게 부가가치기준 단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부분품의 경우 구성부품이 매우 방대하고 동일한 호(제8708호)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유용하지 않다. 한-중 FTA에서는 이러한 품목의 개별 특징을 반영하여 부가가치기준 단일 기준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중 FTA와 중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와의 원산지결정 기준 비교분석

비교우위 품목의 FTA체결국간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의 원산지규정의 지위가 상대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우리나라가 협상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정도를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주력으로 수출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중국이 다른 국가와 맺은 FTA 중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적으로 FTA가 체결된 국가들 상호간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하였다.

[한-중 공통 체결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출처]

중-아세안	http://e-ska.kemendag.go.id/uploads/PSR%20(Product%20Specific%20Rules).pdf
중-칠레	http://fta.mofcom.gov.cn/chile/xieyi/xiedingfujian3_en.pdf
중-호주	http://fta.mofcom.gov.cn/Australia/annex/xdwb_fj2_en.pdf
중-페루	http://fta.mofcom.gov.cn/bilu/annex/bilu_fujian4_01_en.pdf
중-뉴질랜드	http://fta.mofcom.gov.cn/newzealand/doc/fujian/fujian_5_en.pdf

3-1. 한-중 상호 경합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3-1-1 수출입 상호경합품목의 선정

- 2015년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입 교역실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상위 100대 품목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상위 100대 품목을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세번(HS 6단위)으로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면서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실적이 수출실적보다 큰 7개의 품목을 선별 할 수 있었다.
- 對중국 주요 수출품임과 동시에 수입품에 해당하는 7개 물품의 실적과 한-중 FTA 상의 원산지결정기준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중 수출입 상호 경합품목의 교역규모와 원산지결정기준]

연번	HS 6단위	수출실적	수입실적	원산지결정기준
1	8542.39	\$671,191	\$717,057	CTH OR RVC(40)
2	8544.30	\$560,626	\$1,621,232	CTH OR RVC(40)
3	8536.69	\$377,508	\$391,771	CTH
4	7326.90	\$302,881	\$464,801	CTH
5	7208.51	\$289,812	\$585,248	CTH, except from heading 72.06 or heading 72.07
6	8481.80	\$185,928	\$310,118	CTSH
7	2841.90	\$171,813	\$226,203	CTH

3-1-2. 수출입 상호경합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반도체 , 전선, 인쇄회로용 커넥터 , 철강제 제품 , 평판압연제품, 밸브류, 산화금속산염 등이 한국과 중국이 상호간에 수출과 수입 모두 규모가 큰 품목에 해당한다. 대체로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규모보다 수입규모가 더욱 커서 역내에서 생산이 됨과 동시에 중국산의 수입규모도 큰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은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발달한 산업군에 속하고 생산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철강제 제품의 경우 주요원재료에 해당하는 철강잉곳을 원산지재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기초원자재 생산이 활발하므로 중국에 보다 유리한 원산지규정으로 보인다.

3-2. 중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와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분석

3-2-1. 중국시장내 수입경합품목 선정

- 중국시장 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통적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입시장 경쟁정도를 파악하기위해 대중 수입실적을 바탕으로 6개국의 수입규모를 상호 비교하였다.
- 특히 한-중 FTA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의 2015년 중국수출실적 상위 100대 품목 중에서 관세철폐 효과가 있는 품목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중국시장내 수입경합 품목 현황							
(단위: 천달러)							
연번	HS	한국	아세안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1	8538.90	2,720,234	145,664	14	1	3,889	521
2	8708.99	2,271,953	50,136	44	0	602	0
3	2710.19	2,145,313	637,988	0	0	885	12
4	9001.20	1,084,906	622	0	0	0	6
5	3304.99	965,609	9,411	0	0	34,216	1,726
6	2804.61	807,667	84,951	0	0	10	0
7	3903.30	653,925	230,649	1	0	19	0
8	9001.90	634,246	135,914	1	0	549	0
9	8544.30	560,626	33,065	0	0	236	140
10	3824.90	456,609	264,652	3	569	9,048	1,041
11	3902.30	447,027	246,320	0	0	9	0
12	2902.20	412,038	99,149	0	0	0	0
13	3207.30	339,168	0	0	0	0	0
14	7606.12	337,844	15,473	0	0	145	0
15	7326.90	302,881	53,703	6	25	8,117	896
16	7208.51	289,812	69	0	0	48	4
17	3707.90	274,799	4,421	0	0	0	0
18	9032.89	254,353	75,244	27	0	4,900	525
19	2707.50	203,904	1,717,428	0	0	0	0
20	7901.11	184,658	0	313	52,216	224,976	0
21	4107.92	171,784	190,524	5,173	0	273	3,146
22	2902.30	170,756	76,388	0	0	0	0

3-2-2. 중국시장 수입경합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 HS 8538.90(전기회로 등 부분품)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or RVC(40)	RVC(40)	RVC(40)	CTH	CTH	CTH

한-중 FTA는 제8538.90호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아세안 FTA와 중-칠레 FTA는 부가가치기준 단일 기준을 선택하고 페루,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을 채택하였다.

중국은 한국을 제외한 제3국은 단일기준을 선택한 반면 한국과의 FTA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을 다소 완화 시켰다.

□ HS 8708.99 (차량 부분품)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RVC(50)	RVC(40)	RVC(50)	CTH	CTH or RVC(50)	CTH

중국은 한국, 아세안, 칠레와의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반면 페루와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였다. 한편 호주와의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된 특징이 있다.

한국, 아세안, 칠레는 동일하게 부가가치기준만을 선택하고 있는데, 역내부가가치의 비율을 한국과 칠레는 50%수준으로 동일하고 아세안은 40%로 낮게 설정하여 3국 상호간에는 중-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이 다소 낮다.

세번변경기준만 선택한 페루 및 뉴질랜드 협정과 부가가치기준만을 규정한 한국 등의 협정 상호간의 엄격성은 만약 동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의 세번이 4단위에서 상이하다면 해당 원재료를 역외에서 조달하는것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부가가치기준에 의한다면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협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를 충족하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의 제한이 발생하므로 세번변경기준 보다는

부가가치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보다 높을 수 있다.

☐ **HS 9001.20 (편광재료의 판)**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RVC(40)	RVC(40)	CTH or RVC(50)	CTH	CTH

중국은 제9001.20호의 물품에 대하여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고 아세안 및 칠레와의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페루 협정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여 원산지 결정시 선택의 폭을 넓게하고 있다.

따라서 중-페루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엄격성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호주, 뉴질랜드)과 부가가치기준 협정(아세안, 칠레)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9001호의 제품은 제7002호의 유리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광섬유를 생산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따라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역외산 재료의 사용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 **HS code: 2804.61: (규소)**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RVC(40)	RVC(50)	CTH	CTH	CTH

제2804.61호의 규소에 대하여 중국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페루, 호주, 뉴질랜드)와 부가가치기준 선택협정(아세안, 칠레)으로 유형이 구분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게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과 부가가치기준 선택협정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고 있는 아세안과 칠레의 경우 역내부가가치 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비원산지재료의 투입가능성이 낮은 중-아세안 협정이 중-칠레 협정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 **HS code: 3903.30 (스티렌)**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RVC(40)	RVC(50)	CC	CTH	CTH

제3903.30호의 스티렌에 대하여 중국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페루, 호주, 뉴질랜드)와 부가가치기준 선택협정(아세안, 칠레)으로 유형이 구분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게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과 부가가치기준 선택협정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고 있는 아세안과 칠레의 경우 역내부가가치 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비원산지재료의 투입가능성이 낮은 중-아세안 협정이 중-칠레 협정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 상호간에는 페루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 채택협정보다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엄격하다.

☐ HS code: 2710.19: 기타 휘발유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SH	RVC(40)	RVC(40)	CTH or RVC(40)	CTH	CTH *
*or A change to any good of heading 2710 from anyother good of heading 2710, provided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such change is the product of a chemical reaction, atmospheric distillation or vacuum distillation.					

중국은 제2710.19호의 물품에 대하여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고 아세안 및 칠레와의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페루 협정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여 원산지결정시 선택의 폭을 넓게 하고 있다.

따라서 중-페루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엄격성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호주, 뉴질랜드)과 부가가치기준 협정(아세안, 칠레)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보다는 엄격한 유형이고, 뉴질랜드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함께 화학반응 등의 추가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더욱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 HS code: 8544.30: 절연전선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or RVC(40)	RVC(40)	RVC(50)	RVC(40)	CTH	CTH

중국은 제8544.30호의 물품에 대하여 호주, 뉴질랜드와는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고 아세안, 칠레, 페루와의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한국 협정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여 원산지결정시 선택의 폭을 넓게하고 있다.

따라서 중-한국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엄격성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호주, 뉴질랜드)과 부가가치기준 협정(아세안, 칠레, 페루)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 HS code: 3304.99: 기타 화장품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RVC(40)	RVC(50)	CTH or RVC(50)	CTSH	CTH

중국은 제3304.99호의 물품에 대하여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고 아세안 및 칠레와의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페루 협정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여 원산지결정시 선택의 폭을 넓게하고 있다.

따라서 중-페루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엄격성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호주, 뉴질랜드)과 부가가치기준 협정(아세안, 칠레)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 HS code: 9001.90: 기타의 렌즈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RVC(40)	RVC(40)	CTH or RVC(50)	CTH	CTH

중국은 제9001.90호의 물품에 대하여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고 아세안 및 칠레와의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페루 협정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여 원산지결정시 선택의 폭을 넓게하고 있다.

따라서 중-페루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엄격성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호주, 뉴질랜드)과 부가가치기준 협정(아세안, 칠레)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 **HS code: 3902.30: 프로필렌 중합체**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RVC(40)	RVC(50)	CC	CTH	CTH(정제 공정 제외)

제3902.30호에 대하여 중국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페루, 호주, 뉴질랜드)와 부가가치기준 선택협정(아세안, 칠레)으로 유형이 구분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게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과 부가가치기준 선택협정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고 있는 아세안과 칠레의 경우 역내부가가치 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비원산지재료의 투입가능성이 낮은 중-아세안 협정이 중-칠레 협정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 상호간에는 페루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 채택협정보다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엄격하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서 정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불충족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는데 제3902.30호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정제공정을 충족하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 **HS code: 2902.20: 벤젠**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RVC(40)	RVC(40)	CTSH	CTH(정제 공정 제외)	CTH(정제 공정 제외)

제2902.20호에 대하여 중국은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페루, 호주, 뉴질랜드)와 부가가치기준 선택협정(아세안, 칠레)으로 유형이 구분된다.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과 부가가치기준 선택협정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 상호간에는 페루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 채택협정보다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엄격하다. 다만 뉴질랜드 및 호주와의 협정에서 정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불충족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는데 제3902.30호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정제공정을 충족하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

정될 수 없다.

☐ **HS code: 7606.12: 알루미늄 판**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RVC(40)	RVC(40)	CTH or RVC(50)	CTH	CTH

중국은 제7606.12호의 물품에 대하여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선택하고 아세안 및 칠레와의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페루 협정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여 원산지 결정시 선택의 폭을 넓게하고 있다.

따라서 중-페루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엄격성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호주, 뉴질랜드)과 부가가치기준 협정(아세안, 칠레)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 **HS code: 7326.90: 철강제품**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RVC(40)	RVC(40)	CTH or RVC(50)	CTH	CTH

중국은 제7326.90의 물품에 대하여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선택하고 아세안 및 칠레와의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페루 협정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여 원산지 결정시 선택의 폭을 넓게하고 있다.

따라서 중-페루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엄격성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호주, 뉴질랜드)과 부가가치기준 협정(아세안, 칠레)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 **HS code: 3207.30: 조제안료**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RVC(40)	RVC(50)	CTSH or RVC(50)	CTH	CTH

중국은 제3207.30호의 물품에 대하여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선택하고 아세안 및 칠레와의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페루 협정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여 원산지 결정시 선택의 폭을 넓게하고 있다.

따라서 중-페루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엄격성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호주, 뉴질랜드)과 부가가치기준 협정(아세안, 칠레)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세안과 칠레 상호간에는 역내부가가치기준의 비중이 높은 칠레의 엄격성 정도가 아세안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 HS code: 9032.89: 자동조절기기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and RVC(50)	RVC(40)	RVC(40)	CTSH	CTSH	CTSH

한- 중 FTA는 제9032.89호에 대하여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아세안 FTA와 중-칠레 FTA는 부가가치기준 단일 기준을 선택하고 페루,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을 채택하였다.

중국은 한국을 제외한 제3국은 단일기준을 선택한 반면 한국과의 FTA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을 다소 완화 시켰다.

☐ HS code: 3824.90: 기타 화학공업제품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RVC(40)	RVC(40)	CTH or RVC(50)	CTSH	CTSH

중국은 제3824.90호의 물품에 대하여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고 아세안 및 칠레와의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페루 협정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여 원산지결정시 선택의 폭을 넓게하고 있다.

따라서 중-페루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엄격성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호주, 뉴질랜드)과 부가가치기준 협정(아세안, 칠레)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 상호간에는 한국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호주와 뉴질랜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여 보다 엄격한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HS code: 2707.50: 기타 방향족 혼합물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RVC(40)	RVC(40)	CTH or RVC(40)	CTH	CTH

중국은 제2707.50호의 물품에 대하여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선택하고 아세안 및 칠레와의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페루 협정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여 원산지 결정시 선택의 폭을 넓게하고 있다.

따라서 중-페루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엄격성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호주, 뉴질랜드)과 부가가치기준 협정(아세안, 칠레)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 HS code: 7901.11: 비합금 아연괴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RVC(40)	RVC(40)	CTH or RVC(50)	CTH	CC

중국은 제7901.11호의 물품에 대하여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선택하고 아세안 및 칠레와의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페루 협정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여 원산지 결정시 선택의 폭을 넓게하고 있다.

따라서 중-페루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엄격성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호주, 뉴질랜드)과 부가가치기준 협정(아세안, 칠레)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 HS code: 3707.90: 사진용 화학조제품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RVC(40)	RVC(40)	CTH or RVC(40)	CTSH	CTH

중국은 제3707.90호의 물품에 대하여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선택하고 아세안 및 칠레와의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페루 협정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여 원산지 결정시 선택의 폭을 넓게하고 있다.

따라서 중-페루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엄격성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호주, 뉴질랜드)과 부가가치기준 협정(아세안, 칠레)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 **HS code: 7208.51: 철강판**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ex,7206 or 7207)	RVC(40)	RVC(50)	CTH or RVC(50)	CTH	CTH

중국은 제7208.51호의 물품에 대하여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고 아세안 및 칠레와의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페루 협정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여 원산지 결정시 선택의 폭을 넓게하고 있다.

따라서 중-페루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엄격성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호주, 뉴질랜드)과 부가가치기준 협정(아세안, 칠레)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의 협정에서 주요원재료에 대하여 제외세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재료 사용제한을 두지 않은 다른 협정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엄격한 협정으로 풀이된다.

☐ **HS code: 4107.92: 그레인 스플릿 소가죽**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RVC(40)	RVC(40)	CTH	CTH	CTH

제4107.92호에 대하여 중국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페루, 호주, 뉴질랜드)와 부가가치기준 선택협정(아세안, 칠레)으로 유형이 구분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게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과 부가가치기준 선택협정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 **HS code: 2902.30: 톨루엔**

중-한국	중-아세안	중-칠레	중-페루	중-호주	중-뉴질랜드
CTH	RVC(40)	RVC(40)	CTSH	CTH(정제 공정 제외)	CTH(정제 공정 제외)

제2902.20호에 대하여 중국은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한국,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드)와 부가가치기준 선택협정(아세안, 칠레)으로 유형이 구분된다.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과 부가가치기준 선택협정 상호간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번변경기준 선택협정 상호간에는 페루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 채택협정보다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엄격하다. 다만 뉴질랜드 및 호주와의 협정에서 정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불충족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는데 제3902.30호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정제공정을 충족하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3-2-3. 소결

중국이 우리나라와 공통적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상호비교해 보았다.

중국이 체결한 FTA는 아세안과 칠레는 대체로 부가가치기준 단일 기준을 선택한 특징을 보이고 우리나라와 호주 및 뉴질랜드는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을 선택한 특징이 있다. 페루와의 협정은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된 규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선택기준을 규정한 중-페루 FTA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중-아세안, 중-칠레 협정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역내에서의 사용범위를 부가가치기준 단일기준에 의하여 조정하고 있으므로 페루협정보다는 강화되고 한국, 호주, 뉴질랜드 협정보다는 완화된 엄격성 정도를 보인다.

중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맺은 FTA에서 세번변경기준 단일 기준을 선택하여 동일한 세번단위에 속하는 비원산지재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제한하고(최소허용기준의 논외로 한다)있으므로 가장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V. 수출유망품목 한-중 FTA 활용가이드

1. 중국의 통관환경 분석¹⁹⁾

1) 중국의 통관 기본 절차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 이하 ‘海關法’에 근거해 중국은 대외개방 항구 및 세관의 감독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반드시 세관 설립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상황의 발생 시 국무원 혹은 그 수권기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의 미설립 지역에서 임시로 수입 혹은 수출이 가능하나 반드시 세관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국의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 단계는 일반적으로 세관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 등 4단계를 거친다.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 납부 대상 수출입화물 및 화물인출 후 일정기간 내 세관감독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은 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통관종료 등 5단계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중국의 관세체계

1992년 중국은 ‘상품명칭 및 코드 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를 바탕으로 관세 품목에 8자리 코드를 부여했다.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세계 해관 조직협회와 개정을 실시했고 2015년 4월 1일부로 세계해관조직의 수정에 따라 중국의 ‘상품명칭 및 코드제도 목록’(進出口稅則商品及品目註釋)을 수정한 뒤 발효했다. 중국에서 무역량이 비교적 크거나 증가율이 빠른 편인 상품에 대해서는 목록에 다시 추가했는데 8자리 HS코드는 2001년 7,111개에서 2016년 8,294개까지 증가했다.

중국의 관세율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최혜국세율	WTO 가입국, 중국과 관세호혜협정을 체결한 국가(또는 지역)의 상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경우, ‘최혜국세율’이 적용
잠정세율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의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임시’로 매겨지는 관세율
협정세율	관련 국가(또는 지역)이 중국과 타결한 무역협정 및 관세우대협정에

19) KOTRA ‘국가정보’

	따라 해당 국가(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협정세율이 적용
특혜세율	중국과 특수한 우대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지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는데 중국 국무원 또는 산하의 관련 부처(기관)가 지정한 국가(지역)에 적용
일반세율	상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
기타 관세	반덤핑세, 반보조금세, 세이프가드, 특별 세이프가드, ITA세율

출처 : KOTRA ‘국가정보’

중국 관세율은 개혁개방 이후 하락세를 타고 있다. 1991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했고, WTO 가입을 앞두고 2002년 1월 1일 평균관세율을 15.3%로 인하였다. 2003년 말 11%, 2004년 10.4%, 2005년에는 9.9%로 인하하였다. 2006년에는 9.9%를 유지하다가 2007년 이후 9.8%로 떨어졌다.

중국의 현재 자원, 에너지 상품의 관세율은 대부분 5% 미만이며, 원유, 석탄, 철광석 등 중점 주종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 면제가 실시되었다. 소비품의 관세율 역시 대폭 인하되었다. 최근, 관세율은 줄어드는 반면 중국 관세 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있다. 자원, 원재료 등의 초기상품의 수출입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고, 주요 전자 제품 설비 등의 완제품의 수출입 관세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의 공업품 중 초기상품, 중간제품과 완제품들의 평균 관세율은 각각 5.9%, 6.7%, 10.6%이고, 1996년 9.7%, 16%, 26.2%와 비교했을 때, 관세율의 대폭 인하도 있지만 구조적인 면에서 명확히 개선이 되어 비교적 합리적인 관세율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3) 중국의 수출입 통관

중국의 수출입 허가제도는 국가의 법률, 정책, 대외무역계획 및 국내시장 수요에 근거하여 수출입 경영자격, 경영범위, 교역국가별 정책, 수출입 상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제도를 가리키며 수출입 경영자격은 중국기업의 대외상당 및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상무부의 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전국범위의 대외무역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성(省) 혹은 기타 지방의 상무부문(상무부처)의 비준을 취득한 기업은 현지에서 대외무역업무를 취급한다. 수출입 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경영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국가의 수출입제한상품 및 분류관리상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그 통관 흐름은 다음과 같다.

對중국 수출입 통관 흐름도

구분	주요 내용
1	- 대외무역 경영자격 신청 미 자격자는 기타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수출입 가능, 외상투자기업의 자영 수출입은 별도 신청 요구하지 않음
2	- 통관등록 신청 통관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통관등록 신청 불필요
3	- 통관 전 수출입 쿼터 및 허가증 신청 쿼터 및 허가증 관리제품 해당 제품의 경우에 한함
4	- 무역계약 체결
5	- 외환수속 관련 업무처리
6	- 검사 및 검역대상 제품의 검사실시 및 보고
7	- 통관 후 신고확인 수속 진행 화물신고, 납세, 수검, 화물인출

출처 : KOTRA '국가정보- 수입규제제도

4) 중국의 비관세 장벽

중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은 아래 표와 같이 크게 자동수입허가관리, 쿼터 및 허가증 관리, 수출입상품의 분류관리, 통관절차의 비합리성 등이 있다.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2015년 '자동수입허가관리상품목록'과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및 그 제품, 양고기, 식용조류, 생유, 분유, 대두 등 식품과 철강,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등 45류 상품이 포함되었고 이들은 모두 자동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통관수속을 밟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여 한국을 포함한 해외기업들이 실제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중국의 비관세 장벽

구분	주요 내용
자동수입허가관리	수입업체는 해당 목록의 상품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자동수입허

	가증'을 취득해야 하고 자동수입허가증을 통해 통관수속을 밟아야 함
쿼터 및 허가증 관리	쿼터관리는 일정기간 내 특정상품의 수출입 수량 혹은 금액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리조치로서, 규정한 기한 및 쿼터 액을 초과하면 동종상품의 수출입을 제한
수출입상품의 분류관리	분류관리제품은 전문 수출입기업이 경영하거나 동종제품의 경영권이 있는 자회사가 모회사와 연합하여 거래를 추진하거나 지정회사가 경영해야 함
통관절차의 비합리성	중국 지역별 주요 해관 통관 시 해관별로 품목 분류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거나 세율의 자의적인 적용, 통관항 임의지정 등이 지속적으로 중국 해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일부 통관규정 변경 시 지방 해관으로 통보가 되지 않거나, 시차가 발생하여 통관상 애로를 겪거나 사전고지 없이 자동수입허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 한국을 포함한 해외기업들이 실제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출처 : KOTRA '국가정보- 수입규제제도

2. 원산지 절차 분야별 가이드

2-1. 원산지증명

1)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및 발급기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과 자율발급방식 두 종류가 있다. 기관발급방식의 경우 지정된 기관을 통해 인장이나 서명 등을 받는 방법이고, 자율발급방식의 경우 계약당사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직접 발급주체가 돼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한다. 한-중국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하였다.

양국은 자국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을 교환해야 하고, 발급기관 정보에 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상대국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7근무일 이후 또는 별도로 지정한 날부터 변동의 효력 발생한다.

2) 작성 방법

원산지 증명서는 ① 고유 증명번호, 발급기관의 인장 및 담당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② 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서술하고, ③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④ 인쇄된 형태로서 원본만이 인쇄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3) 특혜관세 신청

수입자는 수입신고시 서면으로 특혜관세를 신청 하며,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보유, 자국법령에 따라 제출해야한다. 다만 향후 자료교환 시스템이 구축되어 원산지 증명서 정보가 양국간에 교환될 경우, 양국은 이러한 제출 의무를 면제 가능(이 경우에도 양국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 필요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가능)하다. 만약 그러한 신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수입자는 즉시 정정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특혜관세 사후신청

수입자는 수입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해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관세 또는 보증금의 환급 신청(사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수입자는 수입시에 자국법령에 따라 세관당국에 미리 신고를 할 경우에만 사후신청이 가능하다.

5) 유효기간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 가능하며, 분실, 훼손, 절도 발생시에는 재발급도 가능하다.

6) 제출 면제

과세가격 기준 미화 700불 이하 물품 수입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전체 수입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 적용을 할 수 없다.

7)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한-중 FTA에서는 수입신고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상의 사소한 불일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은 5~30근무일 이내에 수입자로 하여금 이를 정정할 기회 부여하고 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한-중국 FTA 협정문 부속서 3-다)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국가:		증명서 번호: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 발급국 _____ (외쪽 설명을 참조합니다)				
2.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국가:						
3.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국가:						
4. 운송 수단 및 경로(아는 범위까 지 기재합니다) 출발일: 선박/항공/기차/차량 편명: 선포항: 하역항:		5. 비고:				
6. 물품 의 연번 (최대 20)	7. 포장의 포장 및 번 호	8.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	9. HS 번 호(6단위)	10. 원산 지 기준	11. 총중량, 수량(수량단위) 또는 그 밖의 단위(리터, m ³ 등)	12. 송장 번호 및 일자
13.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 이고, 모든 상품이 _____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_____ (수입국)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한다. (장소 및 일자, 권한 있는 서명권자의 서명)			14. 증명: 수행한 검사에 기초하여, 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며, 기술된 상품이 한국-중국 자유무역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하 다. (장소 및 일자, 권한 있는 기관의 서명 및 판인)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사용되는 지침

증명서 번호 : 권한 있는 기관이 부여한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

제1란 : 한국 또는 중국에 있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2란 :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두 명 이상의 생산자가 만든 상품이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생산자를 기재한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가능"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이라고 기재한다.

제3란 :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4란 : 운송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선적항 및 하역항을 명시한다.

제5란 :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가 이란에 기재된다. 증명서의 발행이 소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진정등본일 경우 "(날짜)에 발행된 (번호) 번 원본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등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제6란 : 물품의 연번을 기재하며,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제7란 : 포장에 운송표장 및 숫자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한다. 운송표장이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미지나 기호인 경우, "이미지 또는 기호(I/S)"를 명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표장이나 숫자 없음(N/M)"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제8란 : 포장의 수량 및 종류를 명시한다. 각 상품의 품명을 제공한다. 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 및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상품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포장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다.

제9란 : 제8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단위까 지 기재한다.

제10란: 수출자는 제10란에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에 기재된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WO, WP, PSR, OP)

제11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이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다.

제12란: 송장 번호 및 날짜가 이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 원본의 번호 및 날짜가 이란에 명시된다.

제13란: 이란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제14란: 이란은 권한 있는 기관의 권한 있는 인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관인을 찍는다.

2-2. 원산지 검증

한-중 FTA 협정문에 의하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한 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①수입자로부터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의 요청 ②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대하여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 ③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 요청, 또는 ④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그러한 절차가 있다.

1) 원산지 검증방식

원산지 검증방식으로는 수입국 관세행정기관이 수출국 세관에 요청해 수출국 관세행정기관이 검증을 주도하는 간접검증방식, 또는 수입국 관세행정기관이 상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직접검증방식이 있다. 한-중 FTA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증방식으로서 간접검증 및 직접검증(방문검증) 도입하였다.

-간접검증

간접검증과 관련하여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출국 세관당국에 간접검증 요청과 함께 검증 요청 이유,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출국 세관당국은 검증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증 결과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공하며, 수입국 세관당국은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산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수출국 세관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방문검증

한편, 방문검증 관련해서는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출국 세관당국이 동의할 경우 수출국 세관당국의 안내 하에 수출자, 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 실시가 가능도록 규정하였다. 수입국 세관당국은 검증 실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수출국 세관당국에 대해 서면 요청을 해야 하며, 수출국 세관당국은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단, 수출국 세관당국이 방문검증에 대해 동의하나 검증일을 연기(검증 예정일로부터 60일 이후까지만 연기 가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러한 의사를 방문검증에 대한 동의와 함께 수입국 세관 당국에 통보해야한다. 수출국 세관당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출국 세관공무원의 동행 하에 방문검증을 실시한다.

수입국 세관당국은 방문검증 결과를 수출국 세관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수출자, 생산자는 수출국 세관당국에 대해 이러한 검증결과에 대한 추가 의견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수입국 세관당국은 검증 중인 물품에 대해서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유보하나, 이 경우에도 특별히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 반출 허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특혜관세 배제

수입국 세관당국은 ① 수입자가 30일 내에 자료 제출 요청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② 수출국 세관당국이 6개월 이내에 간접검증 결과를 제공 하지 않는 경우, ③ 간접검증 또는 방문검증 결과가 원산지 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④ 수출국 세관당국이 방문검증을 거부하거나 방문검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3)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검증 과정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서명된 날로부터 3년간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의 원산지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입자의 경우 수입에 관한 서류를 자국법령에 따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보관하는 보관 대상 자료는 전자, 광학, 자기, 수기적 방법 등 자국법령에 따라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보관 가능하다.

FTA특례법상 보관 서류

분류	설명
수출자	·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수출신고필증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생 산 자	·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 계약서 · 제2호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수 입 자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

출처 :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3. 소결

현재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경제협력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양국 간 경제 및 산업 구조에 새로운 연결고리(New Linkage)를 서둘러 구축해야 하고, 여기에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협상이 전제될 경우 한·중 FTA가 하나의 매개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거시정책 동향과 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연구분석 기능을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확충 할 필요도 있다.

1. 한-베트남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및 해설

□ 주요내용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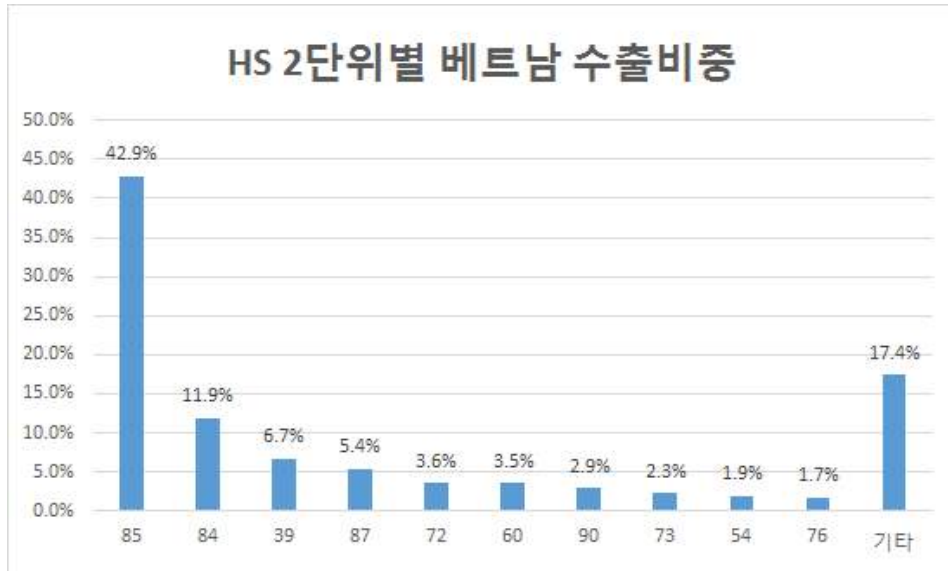
- 본 장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류별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류별로 품목분류구조, 수출동향, 대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해설,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간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으로 구성하였다.
- 류별 원산지결정기준의 분석을 위해 각 류별로 HS 4단위 또는 HS 6단위의 세부적 원산지결정기준 구성현황을 검토하고 주요 품목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의 의미를 해설토록 한다.
- 특히 대표 품목군으로 선정된 30대 HS 2단위 그룹에 대해서는 수출규모가 큰 1개(HS 10단위) 품목을 선별하여 원재료 및 제조공정 등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원산지결정기준 분석을 추가로 수록토록 한다.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및 해설 구성 예시]

1. 제84류 품목분류 체계
2. 제84류의 對베트남 수출동향
3. 제8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5. 제84류 대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대표품목의 선정

- 2015년 對베트남 총 수출실적은 약 278억 달러, 평균 수출실적은 2억 8천 6백만 달러로, 총수출 실적과 평균 수출실적의 괴리가 큰 것은 특정 산업 및 품목군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HS 2단위별 수출실적 기준으로 수출 집중도가 높은 상위 30대(HS2단위) 그룹을 대표 품목군으로 선정하였다.
- 수출상위 HS2단위 그룹 내에서는 하위 HS10단위 별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규모가 큰 품목을 대표품목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해 원산지결정기준을 해설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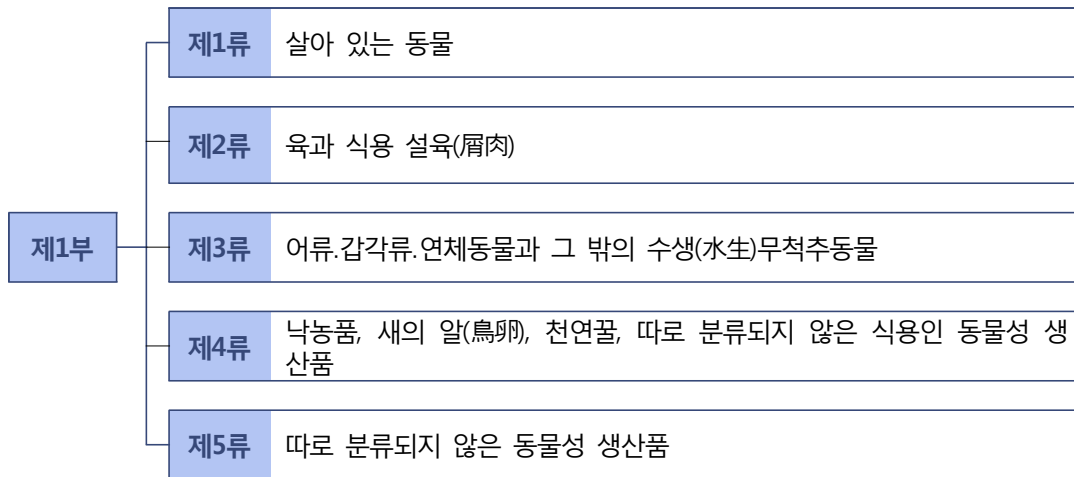
[2015년 對베트남 수출 상위 30대 HS2단위 현황]

(단위: 천달러)

연번	HS 2	수출실적	연번	HS 2	수출실적
1	85	11,905,137	16	38	228,649
2	84	3,291,894	17	32	227,766
3	39	1,865,550	18	41	209,915
4	87	1,487,671	19	48	190,468
5	72	990,831	20	29	186,604
6	60	977,129	21	40	144,560
7	90	801,428	22	30	144,126
8	73	629,784	23	79	122,176
9	54	532,709	24	82	117,582
10	76	466,713	25	52	94,061
11	74	413,276	26	24	93,239
12	27	358,508	27	58	88,236
13	62	345,727	28	64	86,248
14	59	239,693	29	56	85,579
15	55	233,183	30	96	83,881

제1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생산물(제1류~제5류)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屬)이나 종(種)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屬)이나 종(種)의 어린 것도 포함되며,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



제1류 살아있는 동물

1. 품목분류 체계

제1류에는 ‘살아 있는 동물’을 분류하며,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0101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
0102	소
0103	돼지
0104	면양과 산양
0105	가금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으로 한정한다) · 오리 · 거위 · 칠면조와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0106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2. 제0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01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0106191000(개)이었으나 실제 수출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01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106191000	0	250	1	185.7
해당 류 총 수출금액		0		1	

3. 제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1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한- 베트남 FTA 제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제1류의 전품목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1류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은 한-베트남 FTA 제3.1조의 가호 및 제 3.3조의 나호 및 다호의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동기준에 따르면 제1류에 분류되는 산동물은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일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01	WO	WO 1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는 제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을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다자협정으로 다른협정과 달리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는 특징이 있다. 한-아세안 FTA는 제1류에 대하여 ‘당사국’이라 하지 않고 ‘수출국’ 내에서 완전생산될 것으로 그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다.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1. 품목분류 체계

제2류에는 ‘육과 식용 설육(屑肉)’을 분류하며, 10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0201	쇠고기(신선하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5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	소 · 돼지 · 면양 · 산양 ·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의 식용설육(屑肉)(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屑肉)(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	그 밖의 육과 식용설육(屑肉)(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육과 식용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2. 제0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02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0207129000(절단하지 않은 냉동 닭), 0207141030(절단한 냉동 닭날개), 0207141010(절단한 냉동 닭다리)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0207129000(절단하지 않은 냉동 닭)의 '15년 수출실적은 16,626 천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0207451000(냉동 오리)의 '15년 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2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207129000	15,504	-5.9	16,626	7.2
2	0207141030	5,493	5,073.3	6,780	23.4
3	0207141010	2,680	-32.7	5,810	116.8
4	0207451000	324	-7.4	3,902	1,105.1
5	0207141090	1,315	3.4	1,672	27.2
6	0207452090	113	-63.5	939	729.5
7	0202201000	97	-65.7	867	793.7
8	0202300000	23	-89.6	725	3027.1
9	0210999020	366	-14.5	129	-64.7
10	0210991030	0	-100	35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5,915		37,485	

3. 제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2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한-베트남 FTA 제2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제2류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2류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은 한-베트남 FTA 제3.조의 가호 및 제 3.2조의 나호 및 다호의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동기준에 따르면 제2류에 분류되는 산동물로부터 획득한 고기는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로부터 획득 될 경우에, 즉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동물을 도축하여 얻은 고기등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02	WO	WO 1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는 제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을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다자협정으로 다른협정과 달리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는 특징이 있다. 한-아세안 FTA는 제1류에 대하여 ‘당사국’이라 하지 않고 ‘수출국’ 내에서 완전생산될 것으로 그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다.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301	활어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s)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s)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4	어류의 필레(fillets)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건조한 어류·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s)(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s)(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s)(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8	수생(水生)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s)(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제3류는 제0301호부터 제0308호 까지 총 8개의 호로 구성된다. 8개의 호를 크

게 분류하는 기준은 척추의 유무에 따라 수생척추동물인 어류는 제0301호에서 제 0305호까지, 수생무척추동물은 다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것으로 구분하여 제 0306호~제0308호가 이에 속한다.

2. 제0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03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0303420000(황다랑어), 0303430000(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0303420000(황다랑어)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58.6% 증가하였다. 특히, 0303430000(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의 경우 '15년 전년대비 실적이 대폭 증가하여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0303420000(참다랑어)과 대동소이한 실적을 나타냈다.

HS 제03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의 수출입동향(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303420000	10,494	52.2	16,641	58.6
2	0303430000	72	-98.5	16,103	22,410.6
3	0307491020	17,766	10.0	8,416	-52.6
4	0303902010	3,805	23,431.0	7,013	84.3
5	0303899099	4,715	-19.0	5,167	9.6
6	0303570000	2,786	2.5	3,948	41.7
7	0303896000	1,242	-57.9	3,375	171.7
8	0303670000	6,956	1,204.3	3,043	-56.3
9	0303897000	2,308	7.1	2,009	-13.0
10	0304879000	306	124.1	1,437	369.5
해당 류 총 수출금액		50,450		67,152	

3. 제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3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한- 베트남 FTA의 제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이다.

(기본해설) 어류가 분류된 제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이다. 한-베트남 FTA 제3.2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라호는 당사국 영토 또는 영해내에서 획득되는 어류등의 경우 수렵, 낚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 등의 방법으로 획득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바호는 당사국의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에서 획득한 어로상품이나 수산물
물이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획득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또한 사호에서는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
공 선박에서 사호에서 언급된 상품만 사용하여 가공한 상품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
정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는 제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대체로 ‘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 될 것으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다
자협정으로 ‘당사국’내의 완전생산과 ‘수출국 내에서’의 완전생산을 구분하고 있으
므로 이를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한편 제0305.56호의 건조한 어류에 대해서 한-베트남 FTA는 일반적인 완전생산
기준을 선택한 반면 한-아세안 FTA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여 큰 차이를 보인
다. 따라서 한-베트남 FTA에서는 역외산재료 사용이 불가하지만 한-아세안 FTA
는 원칙적으로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
치가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해주는 차이가 있다.

HS 4 단위	HS 6단위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0301~0304	030111~030459	WO	WO 1
0304	030461~030499	WO	WO
0305	030510	WO	WO 1
	030520	WO	WO
	030531~030542	WO	WO 1
	030543~030549	WO	WO
	030551	WO	WO 1
	030559	WO	RVC(40)
	030561~030563	WO	WO 1
	030564~030569	WO	RVC(40)
	030571~030579	WO	WO
0306	030611	WO	WO 1
	030612~030614	WO	WO
	030615	WO	WO 1
	030616~030619	WO	WO
	030621	WO	WO 1
	030622	WO	WO
	030624	WO	WO 1

	030625~030729	WO	WO
0307	030731~030741	WO	WO 1
	030749	WO	WO
	030751	WO	WO 1
	030759	WO	WO
	030760~030771	WO	WO 1
	030779	WO	WO
	030781	WO	WO 1
	030789	WO	WO
	030791	WO	WO 1
	030799	WO	WO
0308	030811	WO	WO 1
	030819	WO	WO
	030821	WO	WO 1
	030829~030890	WO	WO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 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생산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fats)과 기름(oils)(밀크에서 얻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s)
0406	치즈와 커드(curd)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저장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았거나 찐 것·성형한 것·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저장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409	천연꿀
041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2. 제0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04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0402219000(밀크와 크림), 0406101010(모차렐라 치즈)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0402219000(밀크와 크림)의 '14년 수출실적은 전무하였으나 '15년은 299천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0403101000(요구르트)의 '15년 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04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402219000	0	0	299	0
2	0406101010	238	-36.1	292	22.7
3	0402999000	34	-11.6	88	159.3
4	0403109000	34	56.8	43	28.5
5	0402211000	26	0	34	28.7
6	0406300000	14	0	13	-5
7	0401200000	4	0	9	164.3
8	0403101000	0	0	8	19432.5
9	0406200000	15	149.6	6	-61.4
10	0409000000	0	-100	3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65		20,406	

3. 제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040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0402.10 ~ 0402.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 45
0402.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04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우유성분 중 체약당사국 이외의 것이 우유성분 총중량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ex*) or RVC 45
0404 0405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0406.10 0406.2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040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우유성분 중 체약당사국 이외의 것이 우유성분 총중량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ex*) or RVC 45
0406.40 0406.9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0407 ~ 041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한- 베트남 FTA의 제4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비통축 무설탕 밀크와 크림(제0401호), 유장과 버터(제0404호, 제0405호), 치즈(제0406.30호 제외), 조란 및 천연꿀과 동물성 생산품(제0407호~제0410호)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사국’에서 출생 및 사육된 소로부터 얻어지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0402.29호의 밀크와 크림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다른 소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0403호와 제0406.30호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유를 수입하여 이들 물품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비원산지 우유성분의 함량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는 대체로 제04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완전생산준의 적용에 있어 한-아세안 FTA가 ‘당사국 내’ 완전생산과 ‘수출국 내’ 완전생산을 구분하는 물품이 있으므로 이들의 차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제0402호에 대해서는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한-아세안 FTA에선 완전생산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택하였으나 한-베트남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0401	040110	WO	WO 1
	040120	WO	WO
	040140~040150	WO	WO 1
0402	040210~040291	CC or RVC(45)	WO or RVC 45
	040299	CTSH	WO or RVC 45
0403	040310~040390	CTH* or RVC(45)	CTH* or RVC(45)
0404	040410	WO	WO or RVC 45
	040490~040620	WO	WO 1
0406	040630	CTH** or RVC(45)	CTH** or RVC(45)
	040640~041000	WO	WO 1
*products of Heading 04.03 do not contain materials of from milk imported from a non-Party over 50% by weight of the total raw material of from milk			
**products of Subheading 0406.30 do not contain materials of from milk imported from a non-Party over 50% by weight of the total raw material of from milk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501	인모(人毛)(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인모(人毛)의 웨이스트(waste)
0502	돼지(pigs' · hogs'.boars')의 뺏뺏한 털(bristles)과 헤어(hair), 오소리 털(hair)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hair),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4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 · 방광 · 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염장한 것 · 염수장한 것 ·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5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해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새의 솜털(청정 · 소독이나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
0506	뼈와 혼코어(horn-cores)[가공하지 않은 것.탈지(脫脂)한 것.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산(酸) 처리를 하거나 젤라틴을 제거(degelatinised)한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7	아이보리(ivory) · 귀갑(龜甲) · 고래수염과 그 털 · 뿔(horn) · 사슴뿔 · 발굽 · 발톱과 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8	산호와 이와 유사한 재료(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 · 갑각류나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 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10	용연향(ambergris) · 해리향(castoreum) · 시빗(civet)과 사향(musk),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 여부를 불문한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 2007년도에 제0503호와 제0509호는 삭제²⁰⁾

20) 1988년 HS 협약의 품목분류표 제정당시에 제0503호와 제0509호에는 특정한 생산품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무역거래량이 감소됨에 따라 해당 호를 삭제함으로 빈 번호가 되었다. 현재 이들은 모두 제0511호로 분류한다.

2. 제0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05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0505100000(우모), 0504003000(동물의 위), 0511999090(기타 비식용 동물성 생산품)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0505100000(우모)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55.8%나 감소하였다.

HS 제05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505100000	83,216	-19.3	36,812	-55.8
2	0504003000	713	-46.5	2,952	314.1
3	0511999090	589	-48.6	1,268	115.1
4	0504001090	6	-96.2	225	3688.1
5	0508002050	0	0	67	0
6	0505901000	193	29.2	43	-78
7	0508002020	15	-54.8	20	29.2
8	0508002010	0	0	11	0
9	0508002090	3	-46.6	10	220.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84,735		41,408	

3. 제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5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한- 베트남 FTA는 제5류의 품목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0501호~제0502호는 인모와 수모로 인모는 체약당사국 사람으로부터 채집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0502호에 속하는 수모의 경우 주로 산동물(제01류)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되므로 비원산지 산동물로부터 제0502호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수 없다.

제0504호는 동물의 내장이 분류되는데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므로 내장을 적출할 수 있는 원재료인 제1류는 체약국에서 완전생산 되어야 한다. 한- 베트남 FTA는 산동물의 완전생산기준으로 출생+사육을 요하므로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동물로부터 적출한 내장(제0504호)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0505호~제0506호는 동물의 깃털이나 뼈 등이 분류되는데 역시 완전생산기준

이 적용되므로 비원산지 동물(제01류)로부터 깃털이나 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0507호는 동호에서 분류하는 특정한 동물이나 어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뿔, 털, 발톱 등이 분류되는데 동 호의 원재료는 제1류와 제3류에 분류된다. 결국 제1류와 제3류를 역내에서 출생 및 사육한 동물에서 획득 하거나, 선박의 등록요건을 충족한 어류에서 획득할 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0508호~제0511호는 산호, 패각, 동물의 분비물, 기타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들이 분류된다. 산호의 경우 역내의 영역내에서 채취하거나 영해 밖에서 획득하는 경우 선박요건(당사국 등기/등록+국기게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패각이나 동물성 향료, 기타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들은 제1류 또는 제3류 로부터 생산되므로 비원산지 동물이나 어류로부터 동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05	WO	WO 1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는 제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을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다자협정으로 다른협정과 달리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는 특징이 있다. 한-아세안 FTA는 제1류에 대하여 ‘당사국’이라 하지 않고 ‘수출국’ 내에서 완전생산될 것으로 그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다.

제2부 식물성 생산품(제6류~제14류)

제2부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와 괴경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나 멜론의 껍질
	제9류	커피·차·마테와 향신료
	제10류	곡물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제12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이나 의약용 식물, 잎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lac), 검·수지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s)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6류 살아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601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과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것,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제 1212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0602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cuttings)와 접붙임용 가지(slips), 버섯의 종균
0603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건조한 것·염색한 것·표백한 것·침투한 것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4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풀·이끼와 지의(地衣)(신선한 것·건조한 것·염색한 것·표백한 것·침투한 것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제0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06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0602901010(난초)으로 '14년 수출실적은 전무하였으나 '15년은 147천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외 물품의 수출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06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602901010	0	0	147	0
2	0602901090	0	0	11	2429
3	0603131000	0	0	7	0
4	0602902091	4	0	5	19.8
5	0602902011	0	0	3	0
6	0602209000	0	0	1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		174	

3. 제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6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6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6류에 속하는 살아있는 식물은 완전생산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한-베트남 FTA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서 체약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 되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06	WO	WO 1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는 제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을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다자협정으로 다른협정과 달리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는 특징이 있다. 한-아세안 FTA는 제1류에 대하여 '당사국'이라 하지 않고 '수출국' 내에서 완전생산될 것으로 그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다.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와 괴경(塊莖)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2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kale)과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와 치커리(시커리엄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악(celeriac)·무와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	채두류(菜豆類)(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1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파쇄한 것이나 가루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714	매니옥·참뿌리·샬렙·돼지감자·고구마와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른 것인지 펠릿 모양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의 심(sago pith)

2. 제0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07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0709595000(신선한 팡이버섯)으로 '14년, '15년의 수출실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0712391030(건조 영지버섯), 0712902099(건조한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07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709595000	3,812	-17.7	1,708	-55.2
2	0712391030	54	-39	193	258.2
3	0701100000	153	-17.5	159	3.8
4	0709594010	81	112.3	89	9.7
5	0706901000	28	-57	61	118
6	0709599000	48	-16.7	47	-2
7	0704902000	12	-73.7	35	187.4
8	0706101000	0	0	34	0
9	0712902099	1	0	31	3620.6
10	0709593000	22	107.9	29	32.2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211		2,386	

3. 제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7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한- 베트남 FTA는 제7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완전생산기준 단일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7류에 속하는 식용의 채소 및 뿌리들에 대해 한- 베트남 FTA는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 베트남 FTA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식물성 물품의 완전생산기준은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배 및 수확'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역외국에서 종자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파종을 하고 재배 및 수확을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제7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이 한-호주 FTA에서처럼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원산지 판단은 유사하다. 예를들어 냉동, 건조, 저장처리 등이 포함되는 품목(제0710호~제0712호)의 경우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재료가 제0701호~0709호에 속하는 채소류 등이므로 동일한 류(2단위)에 속한다.

따라서 제0701호~제0709호에 속하는 재료들을 역외에서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 0710호~0712호에 속하는 물품의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결국 이들 재료를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므로 완전생산기준과 동일한 결과가 될 것이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07	WO	WO 1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는 제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을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다자협정으로 다른협정과 달리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는 특징이 있다. 한-아세안 FTA는 제1류에 대하여 ‘당사국’이라 하지 않고 ‘수출국’ 내에서 완전생산될 것으로 그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다.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나 멜론의 껍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801	코코넛·브라질너트(Brazil nuts)와 캐슈너트(cashew nuts)(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s)을 포함하며, 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구아버·망고와 망고스틴(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포도(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s)[파파야(papayas)](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사과·배와 마르멜로(quinces)(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와 슬로(sloes)(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0812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냉동·건조하거나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제0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08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0808300000(배)로 '15년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80.7%가 증가하였다. 이외에 0808100000(사과) 등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HS 제08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808300000	1,279	311.0	2,312	80.7
2	0808100000	153	-34.5	428	180.5
3	0810701000	137	-66.9	298	118
4	0806100000	151	149.7	161	6.5
5	0810500000	0	0	51	0
6	0813401000	8	0	38	376
7	0803100000	0	0	23	0
8	0813200000	8	0	20	153.4
9	0810100000	20	-10	10	-50.9
10	0813402000	0	0	7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756		3,348	

3. 제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0801.11 ~ 0801.3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0801.3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0802.1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080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0802.21 ~ 0802.9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0803 ~ 0814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한- 베트남 FTA는 제8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완전생산기준과 6단위 세 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8류에 속하는 모든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들은(껍질을 벗긴 캐슈넛과 아몬드 제외)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된다. 제08류의 물품은 주로 제6류에 해당하는 해당 식용수목으로부터 수확되는 것이다. 과실의 일반적 생산과정(묘목 식립- 재배-

수확) 따라서 비원산지 묘목(제6류)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재배하고 과실(제8류)을 수확 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될 것이다.

껍질은 벗긴 캐슈넛(제0801.32호)와 껍질을 벗긴 아몬드(제0802.12호)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캐슈넛(제0801.31호)와 아몬드(제0802.11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껍질을 벗기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완화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는 제08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을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다자협정으로 다른협정과 달리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는 특징이 있다. 한-아세안 FTA는 제1류에 대하여 ‘당사국’내에서의 완전생산을 규정한 품목과 ‘수출국’ 내에서 완전생산될 것으로 그 범위를 매우 좁게 한정된 품목이 구별하고 있다.

한편 한-베트남 FTA는 껍질을 벗긴 캐슈넛과 아몬드를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완화된 규정을 택한 반면 아세안과이 FTA는 완전생산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0801	080111~080122	WO	WO 1
	080131	WO	WO
	080132	CTSH	WO
0802	080211	WO	WO 1
	080212	CTSH	WO 1
	080221~080290	WO	WO 1
0803	0803	WO	WO
0804	080410~080420	WO	WO 1
	080430~080450	WO	WO
0805~0813	080510~081340	WO	WO 1
0813	081350	WO	WO
0814	0814	WO	WO 1

제9류 커피 · 차 · 마테와 향신료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 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0902	차류[향(flavoured)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0903	마테(mate)
0904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파쇄하거나 분쇄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5	바닐라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7	정향[과실 · 꽃과 꽃대로 한정한다]
0908	육두구(nutmeg) · 메이스(mace)와 소두구(cardamoms)
0909	아니스(anise) · 대회향(badian) · 회향(fennel) · 코리앤더(coriander) · 커민(cumin)이나 캐러웨이(caraway)의 씨, 쥬니퍼의 열매(juniper berries)
0910	생강 · 샤프란 · 심황(강황) · 타임(thyme) · 월계수 잎 · 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2. 제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9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0901210000(볶은 커피), 0904220000(잘게 부순 고추)등이며, 이외의 수출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0901210000(볶은 커피), 0902400000(홍차)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9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0901210000	34	11.4	934	2677.2
2	0904220000	452	155.3	794	75.8
3	0908120000	0	0	53	0
4	0901220000	14	352.7	46	236.2
5	0902100000	5	-13.5	31	520
6	0902400000	1	0	24	4384.2
7	0904120000	10	154.2	12	20.4
8	0902300000	3	0	7	122.5
해당 류 총 수출금액		519		1,901	

3. 제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0901.1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0901.1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5
0901.21 0901.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0901.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
0902~0903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0904.1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0904.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0904.21 0904.22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0905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0906.11 0906.19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0906.2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
0907 ~ 0909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0910.11 ~ 0910.3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0910.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0910.99	1. 타임(thyme) 및 월계수 잎: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기타: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타임: WO 기타: RVC 40

(구성분석) 제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2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0901호는 커피로 볶지 않은 커피와 볶은 커피, 그리고 기타의 대용물 3가지로 분류된다. 제0901.11호~제0901.12호는 볶지 않은 커피, 즉 생두가 분류된다. 생두는 카페인의 제거여부에 따라 제0901.11호와 제091.12호로 구분된다. 제0901.11호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된다. 생두(제9류)는 커피나무(제6류)로부터 생산되므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커피나무가 역내에서 재배되고 이 나무로부터 생두가 수확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원산지 커피나무 묘목 수입하여 체약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이로부터 커피열매를 수확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카페인이 제거된 생두(제0901.12호)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역외에서 생두를 수입하여 카페인을 제거하여 역내에서 45%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제0901.21호~제0901.22호는 볶은 커피로, 생두를 로스팅하여 생산한다. 따라서 생두를 수입하여 로스팅하거나, 볶은 커피를 수입하여 다시 볶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0901.90호는 원두커피나 볶은 커피로부터 커피의 각과 피 혹은 커피 대용물을 만들게 되는데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려면 원두커피(제9류)나 볶은커피(제9류)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이 될 수 있다.

차(제0902호)나 마태(제0903호)는 차나무(제6류)로부터 생산하므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려면 역내에서 재배된 차나무로부터 수확하여야 한다. 따라서 역외국가에서 수확한 차를 수입하여 건조시키고 소포장을 하는 것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0904호는 후추 및 고추류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후추나 고추 모두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열매로 특히 고추의 경우 건조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가 분류된다. 후추 및 고추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으로 역내에서 재배 및 수확되어야 한다. 다만 잘게 부순 후추(제0901.12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분말형태의 후추는 결국 통후추를 분쇄하여 생산되므로 동일한 류에 속하는 통후추를 수입하여 분말후추를 생산하면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원산지상품으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완전생산기준과 2단위세번변경기준 모두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제0904.21호~제0904.22호에는 신선한 고추(제0709호)를 건조하거나 잘게 부순 것이 분류된다. 신선한 고추를 수입하여 이를 역내에서 건조하거나, 건조한 고추

(제0904.21호)를 수입하여 이를 잘게 부쇄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경우(제0904.22호) 역내에서 재배 및 수확된 고추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0905호는 바닐라열매와 바닐라 가루가 분류된다. 바닐라 식물(제6류)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재배 및 수확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바닐라열매(제0905.10호)를 수입하여 이를 잘게 부수어 가루로 만드는 경우(제0905.20호) 역내에서 재배 및 수확된 것이 아니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0906호는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으로 제0906.11~19호는 부수지 않은 계피가 분류되고, 제0906.20호에는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계피가 분류된다. 부수지 않은 계피는 계피나무의 어린가지의 내피를 벗겨 생산하므로 역내에서 재배된 계피나무로부터 수확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제0906.20호의 부순 계피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부수지 않은 상태의 계피를 역외에서 수입하여 역내에서 분쇄하거나 분말을 내는 경우 역내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09류에 대하여 한-베트남 FTA 및 한-아세안 FTA는 대체로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볶은 커피에 대하여 베트남 FTA는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아세안 FTA는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한 차이를 보인다. 볶은 커피는 볶지않은 커피를 재료로 하여 생산되는데, 두 협정모두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가 기존의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한 것은 원산지판단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품가격과 재료가격의 산정에 복잡함이 있지만 세번변경기준을 활용할 경우 비원산지재료와의 세번만 비교하면 원산지판단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베트남 FTA상의 볶은 커피의 원산지결정기준(6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역외산 볶지않은 생두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매우완화된 기준으로 풀이된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0901	090111	WO	WO 1
	090112	RVC(45)	RVC(45)
	090121~090122	CTSH	RVC(45)
	090190	RVC(40)	RVC(40)
0902~0904	090210~090411	WO	WO 1

0904~0905	090412	CC	RVC(40)
	090421~0905	WO	WO 1
0906	090619	WO	WO 1
	090620	RVC(40)	RVC(40)
0907~0909	0907~0909	WO	WO 1
0910	091011~091030	WO	WO 1
	091091	CC or RVC(40)	RVC(40)
	091099	-타임, 월계수 앞: WO -기타: RVC(40)	-타임, 월계수 앞: WO1 -기타: RVC(40)

제10류 곡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001	밀과 메슬린(meslin)
1002	호밀
1003	보리
1004	귀리
1005	옥수수
1006	쌀
1007	수수
1008	메밀 · 밀리트(millet)이나 카나리시드(canary seeds), 그 밖의 곡물

2. 제1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10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10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005909000	7	0	7	10.4
2	1006201000	1	0	3	286
3	1006301000	2	-85.4	3	58.4
4	1008900000	0	0	1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0		14	

3. 제1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10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10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이다.

(기본해설) 제10류에 분류되는 곡물은 일반적으로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 상관없이 낱알형태 이고 껍질을 벗기지 않거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다만 쌀의 경우에는 현미나 정미된 것도 제10류에 분류된다. 그러므로 제10류에 분류되는 곡물들은 역내에서 재배되고 이로부터 수확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10	WO	WO 1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는 제10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을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다자협정으로 다른협정과 달리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는 특징이 있다. 한-아세안 FTA는 제1류에 대하여 ‘당사국’이라 하지 않고 ‘수출국’ 내에서 완전생산될 것으로 그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다.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101	밀가루나 메슬린(meslin)의 고운가루(flour)
1102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의 고운가루(flour)는 제외한다]
1103	곡물의 부순 알곡(groats) · 거친 가루(meal)와 펠릿(pellets)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d)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이나 거칠게 뿔은 것(제 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germ)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d) 모양인 것이나 잘게 부순 것
1105	감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 플레이크(flaked) · 알갱이와 펠릿(pellets)
1106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제0714호의 사고(sago) · 뿌리.괴경이나 제8류 생산품의 고운가루(flour) · 거친 가루(meal)와 가루(powder)
1107	맥아(볶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108	전분, 이눌린
1109	밀의 글루텐(건조 여부를 불문한다)

2. 제1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11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1107100000(맥아), 1108121000(옥수수 전분), 1101001000(밀가루)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1107100000(맥아)의 '14년 수출실적은 전무하였으나 '15년은 2,611천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11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 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107100000	0	0.0	2,611	0.0
2	1108121000	1328	-5.8	1183	-10.9
3	1101001000	604	132.6	559	-7.4
4	1102909000	21	92.8	13	-37.6
5	1103199000	8	0	12	45.5
6	1104199000	12	149.2	11	-9.2
7	1106100000	2	0	6	123.8
8	1108130000	2	0	5	187.8
9	1108199000	0	0	4	0
10	1105100000	2	0	3	24.3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979		4,407	

3. 제1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1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1102.2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1102.90	1. 쌀가루 및 호밀가루: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 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쌀가루 및 호밀가루 : WO -기타: CC(ex 1003,1006) OR RVC 40(ex 1003,1006)
1103.11 1103.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1103.19 1103.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 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CC(ex 1003,1006) OR RVC 40(ex 1003,1006)
1104.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or RVC4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104.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CC(ex 1003,1006) OR RVC 40(ex 1003,1006)
1104.22 ~ 1104.3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11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1105.2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1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110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1107.2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11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1109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1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11류는 제분공업의 생산품으로 주로 제10류의 곡물들을 제분하여 얻어진다. 따라서 완전생산기준을 택할 경우 역외국가에서 곡물(제10류)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분과정을 거쳐 제11류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베트남 FTA는 대체로 제11류의 물품 중에서 보리(제1003호)와 쌀(제1006호)을 수입하여 제11류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재료를 제외세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4. 한-아세안 FTA와 한- 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는 1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에 차이가 없다. 다만 완전생산기준에 있어 아세안은 ‘수출국’ 내에서의 완전생산을 규정하는 하는데 결국 1국내 완전생산이므로 한-베트남 FTA와 동일하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1101	110100	CC	CC
1102	110220	WO	WO 1
	110290	-쌀가루, 호밀가루: WO -기타: CC(ex, 1003, 1006) or RVC 40(ex, 1003,1006)	-쌀가루, 호밀가루: WO -기타: CC(ex, 1003, 1006) or RVC 40(ex, 1003,1006)
1103	110311~110313	CC or RVC(40)	CC or RVC(40)
	110319	CC(ex 1003,1006) or RVC 40(ex 1003,1006)	CC(ex 1003,1006) or RVC 40(ex 1003,1006)
	110320	CC(ex 1003,1006) or RVC 40(ex 1003,1006)	CC(ex 1003,1006) or RVC 40(ex 1003,1006)
1104	110412	CC or RVC(40)	CC or RVC(40)
	110419	CC(ex 1003,1006) or RVC 40(ex 1003,1006)	CC(ex 1003,1006) or RVC 40(ex 1003,1006)
	110422~110430	WO	WO 1
105	110510	CC or RVC(40)	CC or RVC(40)
	110520	WO	WO 1
1106	110610~110630	CC or RVC(40)	CC or RVC(40)
1107	110710	CC	CC
	110720	WO	WO 1
1108	110811~110820	CC or RVC(40)	CC or RVC(40)
1109	110900	WO	WO 1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이나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201	대두(파쇄 여부를 불문한다)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거나 파쇄 여부를 불문한다)
1203	코프라(copra)
1204	아마씨(파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05	유채[레이프(rape)나 콜자(colza)]씨(파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06	해바라기 씨(파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08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09	파종용 종자·과실과 포자
1210	홉 콘(hope cones)(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하거나 가루로 하거나 펠릿 모양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루플린(lupulin)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분쇄나 가루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s).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 여부를 불문한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1213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분쇄·압착하거나 펠릿 모양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14	스위드(swedes)·맹골드(mangolds)·사료용 뿌리채소류·건초·루우산(알팔파)·클로버·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s)·베치(vetches)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생산품(펠릿 모양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 제1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12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1207400000(참깨), 1212211010(건조한 김), 1212212010(건조한 미역)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1207400000(참깨)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48.9%가 감소했다.

HS 제12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207400000	2,815	346.1	1,438	-48.9
2	1212211010	500	-9.2	703	40.8
3	1212212010	443	135	662	49.6
4	1209919000	324	-41.3	476	46.8
5	1211202120	279	-6.4	248	-11.2
6	1209912000	57	12.2	173	200.7
7	1211201311	84	0	169	101.9
8	1209913000	125	-7.7	140	12.1
9	1211201391	154	0	116	-25
10	1211201190	81	250.9	64	-21.3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862		4,189	

3. 제1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1201 ~ 1207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12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1209 ~ 1214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12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12류에는 대두, 땅콩 등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 제1209호를 제외한 12류의 물품은 완전생산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역내에서 재배 및 수확된 원재료에서부터 생산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209호에 속하는 채유용 종자와 과실의 가루는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므로 제12류에 속하는 종자와 과실을 수입하여 가루로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고, 동일한 호에 속한 가루를 수입하여 다시 가루로 분쇄하는 경우에도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 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두 협정모두 12류의 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1208호의 가루에 대해 한-베트남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역외산 재료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원산지기준을 두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1201~1207	120110~120799	WO	WO 1
1208	120810~120890	CTH or RVC(40)	WO 1
1209~1214	120910~121490	WO	WO 1

제13류 락(lac), 검·수지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301	락(lac), 천연검·수지·검수지와 올레오레진(oleoresins)[예: 발삼(balsams)]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s)과 펙틴산염(pectates),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s)(변성 가공 여부를 불문한다)

2. 제1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13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1302191210(홍삼 추출물), 1302191290(홍삼의 기타 추출물)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1302191210(홍삼 추출물)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99.8%가 증가했다. 특히, 1302191290(홍삼의 기타 추출물), 1302199091(바닐라 올레오레진이나 바닐라 추출물)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13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302191210	702	17.8	1,403	99.8
2	1302191290	62	-71.1	449	626.3
3	1302199099	396	133.5	362	-8.5
4	1302191120	425	9.1	337	-20.6
5	1302320000	199	70.3	275	38.2
6	1302191110	376	163.8	246	-34.5
7	1302199039	0	0	102	0
8	1302390000	42	-26.2	68	59.7
9	1302191900	24	0	60	153.1
10	1302199091	1	0	30	2427.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227		3,332	

3. 제1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130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1302.11 ~ 1302.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13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C(ex,1211.20)
1302.20 ~ 1302.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구성분석) 제1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1301호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므로 역내에서 재배 및 수확된 재료로부터 생산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수 있다 식물성의수액과 엑스가 분류되는 1302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원재료가되는 식물들을 수입하여 추출물을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제1211.20호는 제외세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삼을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만 원산지상품이 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1301	130120~130190	WO	WO 1
1302	130211~130213	CC	WO 1
	130219	CC(ex, 1211.20)	WO 1
	130220	CC	WO 1
	130231	CC	RVC(70)
	130232~130239	CC	WO 1

한-아세안 FTA는 제13류를 완전생산기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베트남 FTA는 식물성 엑스등에 대해서 대체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여 매우 완화된 규정을 채택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한-베트남 FTA도 인삼을 원재료로 하는 엑스나 추출물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완전생산하도록 엄격하게 하였다.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造物)용 재료,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401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등나무·갈대·골풀·버드나무가지·라피아.청정·표백이나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껍질]
1404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 2007년도에 제1402호와 제1403호는 삭제²¹⁾

2. 제1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14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1404909000(기타 식물성 생산품)으로 나타났다으나 수출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14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404909000	19	41.2	143	636.5
2	1401909000	0	0	2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9		145	

3. 제1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140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14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구성분석) 제14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2단위세번변경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1401호는 주로 바구니와 같은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인 대나무, 등나무, 갈대, 버드나무 가지와 같은 것이 분류된다. 역내에서 재배하

²¹⁾ 제1402호와 제1403호는 무역거래량이 미미하여 2007년도 HS 제4차 개정에서 삭제하여 제1404호로 분류토록 하였다.

고 수확한 식물성 재료로부터 생산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므로 대나무 등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쪼개거나 인발하는 공정을 거쳐 대나무 상품을 만들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1404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제1404호의 원재료는 주로 식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다른류에 속하므로 이들을 수입하여 제1404호의 물품을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데 무리가 없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140110~140190	WO	WO 1
140420~140490	CC	WO 1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 모두 제14류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한-베트남 FTA는 제1404호의 기타의 식물생산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여 완전생산기준보다 역외산 재료의 투입이 용이하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제15류)

제15류 살아있는 동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501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지방(제0209호나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	소·면양이나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3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라드유(lard oil)·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올레오유(oleo-oil)·텔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혼합이나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1504	어류나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5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1506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나 목화씨유[棉實油]와 이들의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3	야자[코프라(copra)유·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4	유채유[레이프유(rape oil)나 콜자유(colza oil)나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	그 밖의 비취발성의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버유(jojoba oil)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인터에스테라화한 것·리에스테라화한 것이나 엘라이딘화한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7	마가린, 이 류의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8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처리하거나 불활성 가스 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1520	글리세롤[가공하지 않은 것(crude)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와 글리세롤 폐액(lyes)
1521	식물성왁스(트리글리세라이드는 제외한다)·밀납(beeswax).그 밖의 곤충납(waxes)과 경납(spermaceti)(정제하거나 착색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22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이나 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2. 제15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15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1517902000(쇼트닝), 1506009000(기타 동물성유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517909000(지방·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15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517902000	2,104	-25.2	1,882	-10.6
2	1506009000	2,086	21.9	1,731	-17.0
3	1517909000	80	333.7	844	956.6
4	1504109000	0	0	665	0
5	1515909090	417	-19.7	369	-11.4
6	1504200000	753	31.7	346	-54
7	1518002000	377	-31.1	281	-25.4
8	1515290000	304	1476.1	195	-35.9
9	1520000000	121	21.6	125	2.9
10	1515500000	55	285	81	45.7
해당 류 총 수출금액		6,297		6,519	

3. 제1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1501 ~ 15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15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1504.20 150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1505 ~ 15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15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1516.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151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151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15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1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152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152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15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15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한-베트남 FTA는 제15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제 1504.20호, 제1504.30호, 제1516.10호, 제1517.90호, 제1518호, 제1521.90호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은 동일한 류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제15류에 속하는 물개유지나 분획물(제1504호)을 수입하여 체약국 내에서 화학적 변형을 거쳐 제1516.10호의 상품을 생산할 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면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

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는 제15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CTH or RVC 40)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베트남 FTA는 일부품목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에서보다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변경한 특징이 있다.

제1515.50호의 경우 한-아세안FTA 에서는 제12류의 원재료를 제외세번으로 규정하여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하였으나 한-베트남 FTA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졌다. 제1517.10호의 경우 한-아세안 FTA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으로 엄격하였던 반면 한-베트남 FTA는 부가가치기준을 삭제하고 2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채택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1501~1503	1501~1503	CTH or RVC(40)	CTH or RVC(40)
1504	150410	CTH or RVC(40)	CTH or RVC(40)
	150420~150430	CC or RVC(40)	CTH or RVC(40)
1505~1514	150500~1514	CTH or RVC(40)	CTH or RVC(40)
1515	151511~151530	CTH or RVC(40)	CTH or RVC(40)
	151550	CTH or RVC(40)	CTH(ex, ch12) or RVC 40(es, ch12)
	151590	CTH or RVC(40)	CTH or RVC(40)
1516	151610	CC or RVC(40)	CTH or RVC(40)
	151620	CTH or RVC(40)	CTH or RVC(40)
1517	151710	CC	CC+RVC(40)
	151790	CC or RVC(40)	RVC(40)
1518	151800	CC or RVC(40)	CC+RVC(40)
1520	152000	CTH or RVC(40)	CTH or RVC(40)
1521	152110	CTH or RVC(40)	CTH or RVC(40)
	152190	CC or RVC(40)	CTH or RVC(40)
1522	152200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4부 조제식료품, 음료·주류와 식초,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제16류~24류)

제4부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코코아 조제품
	제19류	곡물·고운가루·전분이나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이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제22류	음료·주류와 식초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사료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1601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생산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생산품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식료품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s)과즙(juices)
1604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어류, 캐비아와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5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2. 제1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16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1604320000(캐비아 대용물), 1602491000(육류의 기타 조제품), 1601009000(소시지)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1604320000(캐비아 대용물)의 '14년 수출실적은 전무하였으나 '15년은 372천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1602491000(육류의 기타 조제품)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16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604320000	0	-100	372	0
2	1602491000	19	-53	301	1493.4
3	1601009000	178	29.1	249	40.1
4	1604204090	197	362.5	214	8.8
5	1602499000	135	863.7	205	52.4
6	1602399000	89	0	159	79.8
7	1604141019	222	629.4	146	-33.9
8	1605619000	148	0	143	-3.3
9	1605542091	36	0	95	166.4
10	1605591010	50	0	87	74.7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074		1,971	

3. 제1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16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160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1602.20 160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CTH(ex, ch1, ch2, ch5) RVC40(ex, ch1, ch2, ch5)
1602.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1602.39 1602.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1602.4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CTH(ex, ch1, ch2, ch5) RVC40(ex, ch1, ch2, ch5)
1602.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1602.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160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1603 ~ 16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구성분석) 제16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16류에는 소시지, 햄버거, 밀폐용기에 넣은 수산식품 등 조제식품이 분류된다. 한-베트남 FTA는 제16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류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제16류의 원산지 판단은 육류(제2류)나 어류(제3류)로부터 이 류의 조제식품을 생산하면 2단위 세번의 변경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제1602.20호, 제1602.31호, 제1602.42호의 경우 제1류, 제2류, 제5류의 원재료를 제외세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채택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삼계탕이 분류되는 1602.32호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여 원재료인 생닭을 수입하여 생산하여도 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완화된 원산지 기준으로 풀이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한-베트남 FTA는 제16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대체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택한 반면, 한-아세안 FTA는 제외세번을 포함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택하고 있다.

특히 한아세안 FTA는 제16류의 해당하는 물품 생산의 주요 원재료인 제1류, 제2류, 제5류를 광범위하게 제외세번으로 규정하고 있어 엄격한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하여 한-베트남 FTA는 이러한 광범위한 제외세번 규정을 지양하고 일부세번만 제외세번규정을 채택하여 한-아세안 FTA에 비하여 완화된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1601	160100	CC or RVC(40)	RVC(40)
1602	160210	CTH or RVC(40)	CTH or RVC(40)
	160220~160231	CTH(ex, ch1, ch2, ch5) or RVC 40(ex, ch1, ch2, ch5)	CTH(ex, ch1, ch2, ch5) or RVC 40(ex, ch1, ch2, ch5)
	160232	CC	RVC(60),(ex ch1,2,5)
	160239	CC or RVC(40)	CTH(ex, ch1, ch2, ch5) or RVC 40(ex, ch1, ch2, ch5)
	160241	CC or RVC(40)	RVC(40)
	160242	CTH(ex, ch1, ch2, ch5) or RVC 40(ex, ch1, ch2, ch5)	CTH(ex, ch1, ch2, ch5) or RVC 40(ex, ch1, ch2, ch5)
	160249	CC or RVC(40)	CTH(ex, ch1, ch2, ch5) or RVC 40(ex, ch1, ch2, ch5)
	160250	CTH or RVC(40)	RVC(40)
	160290	CC or RVC(40)	CTH(ex, ch1, ch2, ch5) or RVC 40(ex, ch1, ch2, ch5)
1603	160300	CC or RVC(40)	CTH or RVC(40)
1604	160411	CC or RVC(40)	CC or RVC(40)
	160412~160413	CC or RVC(40)	RVC(40)
	160414	CC or RVC(40)	CTH or RVC(40)
	160415	CC or RVC(40)	RVC(40)
	160416	CC or RVC(40)	CC(ex, ch3) or RVC 40(ex,

			ch3)
	160417~160432	CC or RVC(40)	CC or RVC(40)
1605	160510~160529	CC or RVC(40)	RVC(35)
	160530~160569	CC or RVC(40)	CC(ex, ch3) or RVC 40(ex, ch3)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701	사탕수수 당이나 사탕무당과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 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캐러멜 당
1703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 할 때에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2. 제1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17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1701990000(사탕수수당), 1704902090(기타 캔디류), 1702909000(기타의 당류)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704902010(드롭스)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17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701990000	3,299	-11.0	6,311	91.3
2	1704902090	2,752	39.7	2,794	1.6
3	1702909000	1,956	61.7	1,226	-37.4
4	1704902010	59	-69.7	635	980.1
5	1704909000	105	-36.7	169	61
6	1701910000	143	18.5	148	3.5
7	1702903000	70	18910	94	34.4
8	1704100000	81	1212.8	80	-0.8
9	1702301000	47	186.4	45	-3.6
10	1703909000	0	0	36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8,512		11,538	

3. 제1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17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C(ex,12)
17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17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9호 및 제17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ex, 0409,1702)
17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17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한-베트남 FTA는 제17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제1701호의 사탕수수당은 제외세번을 포함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12류(사탕수수)의 재료로부터 사탕수수당이 생산되므로 완전생산기준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당밀(제1703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 기준을 택하되, 주요 원재료를(제0409호, 제1702호)를 제외세번으로 규정하여 다소 엄격한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 모두 제17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베트남 FTA가 사탕수수당과 당밀에 대하여 제외세번을 규정함으로써 한-아세안 FTA보다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택한 특징을 보인다.

HS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1701	170112~170199	CC(ex, Ch 12)	CTH or RVC(40)
1702	170211~170290	CTH or RVC(40)	CTH or RVC(40)
1703	170310~170390	CTH(ex, 04.09,17.02)	CTH or RVC(40)
1704	170410~170490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18류 코코아와 코코아 조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whole)인 것이나 파쇄한 것으로서 생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802	코코아의 껍데기.껍질과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804	코코아 버터[지(fat)와 유(oil)]
1805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

2. 제1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18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1806901000(초콜릿과 초콜릿과자), 1803100000(코코아 페이스트) 등이며, 제18류의 수출실적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18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806901000	213	13.1	282	32.5
2	1803100000	99	-14.1	167	68.9
3	1806311000	232	229.6	85	-63.5
4	1806902999	0	0	59	0
5	1806321000	21	488.1	14	-31.3
6	1806903010	0	-100	11	0
7	1806201000	11	-86.8	7	-32.4
8	1806100000	6	27222.7	5	-9.5
9	1806909090	0	0	4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582		634	

3. 제1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1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18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18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 및 코코아 조제품이 분류된다.

제1803호~제1805호는 코코아 페이스트, 버터, 분말 등으로 코코아 콩(제1801호)를 수입하여 코코아 분말을 만들면 호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제1806호(초코렛과 코코아 조제품) 코코아 가루(제1806.10호)를 수입하여 초콜릿(제1806.32호)을 만들면 4단위 세번변동을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는 제18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18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19류 곡물·고운가루·전분이나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901	맥아추출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질로 속을 채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 뇨키·레비오리·카넬로니와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쿠스쿠스(조제 여부를 불문한다)
1903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s) 모양·난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siftings)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904	곡물이나 곡물 생산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 난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의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가루·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성찬용 웨이퍼(wafers)·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 웨이퍼(sealing wafers)·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이와 유사한 생산품

2. 제1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19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1901101010(조제 분유), 1905901090(기타 베이커리 제품), 1902301010(라면)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1901101010(조제분유), 1905901030(파이와 케이크) 등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05901090(기타 베이커리 제품), 1905901040(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등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HS 제19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1901101010	9,400	54.2	11,587	23.3
2	1905901090	6,612	-12.9	4,750	-28.2
3	1902301010	3,540	7.1	3,654	3.2
4	1905901040	3,077	-9.2	2,245	-27.0
5	1902301090	1137	-49.6	1032	-9.2
6	1905901030	353	330.8	845	139.3
7	1902200000	556	156.8	573	3
8	1902199000	984	-8.6	473	-51.9
9	1905310000	212	21.1	403	90.3
10	1901902010	380	-0.8	267	-29.6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6,251		25,829	

3. 제1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1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1902 19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1904.10 ~ 190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190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CTH(ex,10) or RVC40(ex,10)
1905.10 190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1905.31 1905.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or RVC4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905.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19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구성분석) 제19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한-베트남 FTA는 제19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1901호는 곡분 및 밀크의 조제품으로 곡분과 우유를 주요 재료로 하여 제조된다. 이 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제19류에 속하는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라면, 국수 등이 포함되는 제1902호와 제1903호의 타피오카 역시 제11류에 해당하는 밀, 밀가루 등을 역외국에서 수입하여 역내에서 파스타나 국수를 만드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1901호의 전분을 역외에서 수입하여 제1902호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이 충족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제1904.90호는 원재료가 되는 곡물(제10류)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에 있어 모두 제외세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곡물은 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택하고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는 제19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제19류 생산의 원재료인 제04류, 제10류, 제11류를 제외세번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원산지재료 사용을 엄격하게 규정하였는데, 한-베트남 FTA는 제1904.90호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제외세번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완화된 규정으로

수정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1901	190110	CC or RVC(40)	CTH(ex, 0401, 0402, 0403, 0404, ch10, ch11)
	190120	CC or RVC(40)	CTH(ex, ch10, ch11) or RVC 40 (ex, ch10, ch11)
	190190	CC or RVC(40)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WO - 기타: CTH(ex, 0401, 0402, 0403, 0404, ch10, ch11) or RVC 40(ex, 0401, 0402, 0403, 0404, ch10, ch11)
1902~1903	190211~190300	CTH or RVC(40)	CTH or RVC(40)
1904	190410~190430	CTH or RVC(40)	CTH or RVC(40)
	190490	CTH(ex, ch10) or RVC 40(ex, ch10)	-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낱알상의 쌀: CTH* or RVC(40) - 기타: CTH or RVC(40)
1905	190510~190520	CTH or RVC(40)	CTH or RVC(40)
	190531~190532	CC or RVC(40)	CC or RVC(40)
	190540	CTH or RVC(40)	CTH or RVC(40)
	190590	CC or RVC(40)	CC or RVC(40)
	*다만, 채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2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4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며,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2006호의 생산품은 제외한다)
2005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생산품은 제외한다)
2006	설탕으로 저장 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실껍질과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 것(draind).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7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s)·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와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s)(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주정의 첨가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첨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제2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20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2008192000(코코넛), 2005991000(김치) 등이며, 2005991000(김치), 2005999000(기타 채소조제품), 2008199000(기타 과실·견과류의 조제품) 등 대부분 물품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증가했다.

HS 제20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008192000	643	-5.5	615	-4.4
2	2005991000	275	9.4	396	44
3	2005999000	84	251.7	221	162.6
4	2008199000	29	0	195	578.4
5	2007991000	87	502	138	59.3
6	2008301000	102	19.1	93	-8.6
7	2007999000	93	107	47	-48.8
8	2009891090	78	739.2	45	-42.5
9	2001909090	71	6.8	35	-50.3
10	2008999000	21	535.8	29	39.6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483		1,814	

3. 제2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2001 ~ 20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0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C(ex, ch12)
2008.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C(ex, ch8)
200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CC(ex, ch8) or RVC40(ex, ch 8)
2008.30 ~ 2008.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008.93 ~ 2008.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2009.11 ~ 2009.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009.41 2009.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C(ex, ch8)
2009.50 ~ 2009.7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009.81 ~ 200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구성분석) 제20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한- 베트남 FTA는 제20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적용하거나,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0류의 물품은 주로 제7류, 제8류, 제12류 등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하는데, 한-베트남 FTA는 제8류의 과실과 제12류의 견과류를 제외세번으로 규정하여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하는 품목들이 있다.

특히 파인애플 조제품(제2008.20호)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던 제08류인 파인애플은 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야 하는 매우 엄격한 결정기준을 택하고 있다. 또한 파인애플주스(제2009.41호, 제2009.49호) 역시 원재료인 파인애플(제08류)은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파인애플을 원재료로 하는 조제식품은 원산지 판단에 주의가 필요하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는 제20류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버섯조제품(제2003.90호)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RVC 60)의 결합기준으로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한 반면, 한-베트남 FTA는 이를 완화하여 선택기준기분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죽순조제품(제2005.91호) 역시 한-아세안 FTA는 부가가치기준 단일기준을 규정하였으나 한-베트남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추가하여 선택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거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또한 김치(제2005.99호)에 대해서도 한-아세아 FTA에서는 김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 60%로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나 한-베트남 FTA는 이를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40%)로 완화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2001	200110~200290	CTH or RVC(40)	CTH or RVC(40)
2003	200310	CTH or RVC(40)	CTH or RVC(40)
	200390	CTH or RVC(40)	CTH+RVC(60)
2004	200410~200490	CTH or RVC(40)	CTH or RVC(40)
2005	200510~200580	CTH or RVC(40)	CTH or RVC(40)
	200591	CTH or RVC(40)	RVC(40)
	200599	CTH or RVC(40)	-김치: RVC 60 -기타: RVC 40
2006	200600	CTH or RVC(40)	RVC(45)
2007	200710~200799	CTH or RVC(40)	CTH or RVC(40)
2008	200811	CC (ex, ch12)	RVC 40 (ex, ch12)
	200819	CC(ex, ch8)	CTH(ex, 0802.31, 0802.32, 0802.40, 0802.90)
	200820	CC(ex, ch8) or RVC 40 (ex, ch8)	CC(ex, ch8) or RVC 40 (ex, ch8)
	200830~200891	CTH or RVC(40)	CTH or RVC(40)
	200893~200899	CC or RVC(40)	CC or RVC(40)
2009	200911~200939	CTH or RVC(40)	CTH or RVC(40)
	200941~200949	CC(ex, ch8)	CC(ex, ch8)
	200950~200979	CTH or RVC(40)	CTH or RVC(40)
	200981~200990	CC or RVC(40)	CC or RVC(40)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2101	커피·차나 마테(mate)의 추출물.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나 마테(mate)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그 밖의 볶은 커피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에센스와 농축물
2102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 조제한 베이킹파우더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105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2. 제2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21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2106909099(기타 조제식료품), 2106903029(기타 인삼제품류), 2106904010(김)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2106909099(기타 조제식료품)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49.9%가 증가했다. 또한 수출 상위 3개 물품의 수출실적이 증가하여 제21류의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HS 제21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106909099	5,929	-9.6	8,890	49.9
2	2106903029	3,376	11.1	4,306	27.6
3	2106904010	2,295	131.1	3,055	33.1
4	2106909010	2,810	8.3	2,539	-9.6
5	2105001090	1,965	-14.0	2,483	26.4
6	2101111000	3,021	203.4	2,470	-18.2
7	2103909090	1,840	0.7	1,515	-17.6
8	2103901030	752	265.7	979	30.2
9	2103909030	613	-48.1	718	17.1
10	2106903019	812	-41.9	687	-15.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3,413		27,642	

3. 제2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2101 ~ 21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1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10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 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CTH or RVC40(ex, 1211.20, 1212.20 *22), 1302.19)
21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1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10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 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CTH or RVC40(ex, 1211.20, 1212.20, 1302.19)

(구성분석) 인스턴트 커피, 간장 등 소스, 아이스크림, 인삼차, 조제김 등이 분류되는 제2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한-베트남 FTA는 제2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101호는 인스턴트 커피나 차가 분류되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22) HS2012기준으로 1212.20호에 해당하는 세번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기여부를 확인하여 협정문과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커피나 차(제9류)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103호에는 여러 성분으로 만들어진 소스류가 분류된다. 제2013.10호~제2103.30호는 간장, 토마토소스, 겨자소스로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이 호에 속하는 상품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이 된다. 예를 들어 토마토 페이스트(제2002.90호)를 수입하여 토마토 케첩(제2103.20호)을 만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메주가루(제2103.90호)를 수입하여 된장이나 고추장(제2103.90호)을 만드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기준 40%를 만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2104.20호와 2106.90호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여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인삼추출액(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도록 제외세번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는 대부분의 21류 품목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0%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2101.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0%규정하고 있으나 한-아세안 FTA는 원재료인 차나 마테(제0902호)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외세번을 규정하였으나 한-베트남 FTA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제2103.90호에 해당하는 장류와 혼합조미료의 원산지결정기준도 한-아세안 FTA는 주요 원재료는 제외세번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한 반면 한-베트남 FTA는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2101	210111~210112	CTH or RVC(40)	CTH or RVC(40)
	210120	CTH or RVC(40)	CTH(ex, 0902) or RVC 40(ex, 0902)
	210130	CTH or RVC(40)	CTH or RVC(40)
2102	210210~210230	CTH or RVC(40)	CTH or RVC(40)
2103	210310~210330	CTH or RVC(40)	CTH or RVC(40)
	210390	CTH or RVC(40)	-제2103.90.1030호의 고추장, 제2103.90.9030호의 혼합조미료, 제2103.90.9090호의 기타: CTH(ex, ch7, ch9) or RVC 40(ex, ch7, ch9)

			-기E: CTH or RVC(40)
2104	210410	CTH	CTH or RVC(40)
	210420	CTH; or RVC 40(ex, 1211.20, 1212.20, 1302.19)	CTH or RVC(40)
2105	210500	CTH or RVC(40)	CTH or RVC(40)
2106	210610	CTH or RVC(40)	CTH or RVC(40)
	210690	CTH; or RVC 40(ex, 1211.20, 1212.20, 1302.19)	CTH; or RVC40(ex, 1211.20, 1212.20, 1302.19)

제22류 음료·주류와 식초

제22류에는 ‘음료·주류와 식초’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9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얼음과 눈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일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
2203	맥주(맥아로 만든 것)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 포도즙(grape must)(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의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206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은 불문한다)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s)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9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2. 제2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22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2202909000(기타 음료), 2208904000(소주) 등이며, 수출실적이 높은 2202909000(기타 음료), 2208904000(소주), 2208301000(스카시 위스키) 등의 상위 물품의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특히, 2203000000(맥주)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22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202909000	3,296	29.9	5,483	66.3
2	2208904000	1,835	36.7	2,658	44.8
3	2208301000	803	30	1195	48.9
4	2202902000	661	109	908	37.3
5	2202109000	547	184.3	828	51.4
6	2202901000	658	-4.2	795	20.8
7	2203000000	60	432.5	427	614.5
8	2206002030	315	-6.9	392	24.6
9	2202101000	460	500.4	351	-23.6
10	2209001000	120	259.1	229	90.6
해당 류 총 수출금액		8,755		13,266	

3. 제2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2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20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202.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 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RVC 40(ex, 1211.20, 1302.19)
22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22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204.21 2204.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220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205 ~ 22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208.20 ~ 2208.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2208.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2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22류는 음료와 주류가 분류된다. 이 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2201호는 모든 종류의 물이 분류되고, 제2202호는 설탕이나 감미료 등이 첨가된 다양한 종류의 음료가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음료는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 예를 들어 물(제2201호)를 수입하여 감미료를 첨가하여 음료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이 된다. 또한 우유를 함유하는 음료의 경우 낙농품(제4류 또는 제1901.90호)을 수입하여 음료를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제2202.90호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되, 제1211.20호와 제1302.19호의 인삼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물을 수입하여 인삼엑기스를 희석하여 인삼음료를 만드는 경우 인삼엑기스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하고 물은 역내부가가치 40%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한-베트남 FTA는 제22류의 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대체로 동일한 원산지규정을 선택하고 있다. 다만 제2202.10호의 탄산수와 와 제2208.70호에 해당하는 인삼주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다.

탄산수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 단일기준으로 규정하였으나, 한-베트남 FTA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으로 규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선택폭을 넓혀 완화 시켰다.

인삼주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되 원재료인 인삼은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엄격하게 제한하였는데, 한-베트남 FTA는 이러한 제외세

번을 삭제하고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으로 크게 완화하였다. 따라서 한-베트남 FTA에서는 인삼이나 인삼추출액을 역외산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2201	2201	CTH or RVC(40)	CTH or RVC(40)
2202	220210	CTH or RVC(40)	RVC(40)
	220290	RVC 40(ex, 1211.20, 1302.19)	RVC 40(ex, 1211.20, 1302.19)
2203	220300	CC or RVC(40)	CC or RVC(40)
2204	220410	CTH or RVC(40)	CTH or RVC(40)
	220421	CC or RVC(40)	CC or RVC(40)
	220429	CC or RVC(40)	CC or RVC(40)
	220430	CTH or RVC(40)	CTH or RVC(40)
2205~2207	2205~2207	CTH or RVC(40)	CTH or RVC(40)
2208	220820~220860	CC or RVC(40)	CC or RVC(40)
	220870	CC or RVC(40)	RVC 40(ex, 1211.20, 1302.19)
	220890~2209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긴 잔재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제23류에는 ‘식품공업에서 생긴 잔재물²³⁾과 웨이스트, 조제 사료’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9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2301	육 · 설육(屑肉)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지 박(greaves)
2302	밀기울 · 쌀겨와 그 밖의 잔재물[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이나 채두류(菜豆類)의 선별 · 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잔재물.비트펄프(beetpulp).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양조나 증류할 때에 생기는 찌꺼기(dregs)와 웨이스트(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한다)
2304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잔재물(분쇄한 것이나 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한다)
2305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잔재물(분쇄한 것이나 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한다)
2306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형의 잔재물(분쇄한 것이나 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를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7	포도주 리스(lees), 생주석(argol)
2308	사료용 식물성 물질 · 식물성 웨이스트(waste) · 식물성 잔재물과 부산물(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2. 제2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23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2309909090(사료용 조제품), 2301209000

23) 제23류 표제에서 ‘residues’를 ‘잔재물’이라 하고, 각 호에서 ‘박류(粕類)나 박(粕)’이라 하였다. 다른 류와는 달리 류의 표제에 맞춰 잔재물이라 한다. 잔재물은 쌀을 가공하고 남은 찌꺼기인 쌀겨나 참깨에서 참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 등을 말한다. 관세율표에서 ‘residues’를 여러 가지(잔재물,잔유물,박 등)로 표기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잔재물(잔유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비식용의 옥·어류의 분), 2304000000(대두의 오일케이크)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2309909090(사료용 조제품)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특히, 2309903010(사료 첨가제)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미미했다.

HS 제23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309909090	15,499	0.0	16,704	7.8
2	2301209000	10,377	53.1	6,730	-35.1
3	2304000000	2,898	60.5	6,501	124.3
4	2309903090	1,387	17.2	1,346	-3.0
5	2309902099	533	655.8	376	-29.4
6	2309902091	320	503.9	232	-27.5
7	2309903010	40	-4.6	145	258.9
8	2309903020	164	65.6	119	-27.4
9	2309901099	208	549.3	79	-62.3
10	2309101000	19	551.8	70	267.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1,445		32,302	

3. 제2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23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3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2302 ~ 23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306.10 ~ 2306.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306.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	CC(ex, ch8) or RVC 40(ex, ch8)

	한다.	
2306.60 230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3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3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CC(ex, ch8) or RVC 40(ex, ch8)
23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23류는 동식물성 원료를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주로 분류된다. 2단위 및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한-베트남 FTA는 제23류의 대부분 품목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0%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과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를 역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무방하고, 만약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때는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301.20호의 어분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3류내의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제2306.50호(야자 유박)와 제2308호(사료용의 식물성물질)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제8류에 속하는 원재료는 제외세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한-베트남 FTA는 제23류의 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대부분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분(제2301.20호)와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제2309.90호)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다.

어분에 대하여 한-베트남 FTA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 기준을 채택한 반면 한-아세안 FTA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선택기준을 규정하였다.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FTA는 부가가치기준만 규정하였으나, 한-베트남 FTA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으로 규정하여 보다 규정을 완화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2301	230110	CTH or RVC(40)	CTH or RVC(40)
	230120	CC	CC or RVC(40)
2302~2305	230210~230500	CTH or RVC(40)	CTH or RVC(40)
2306	230610~230649	CTH or RVC(40)	CTH or RVC(40)
	230650	CC(ex, ch8) or RVC 40 (ex, ch8)	CC(ex, ch8) or RVC 40 (ex, ch8)
	230660~230700	CTH or RVC(40)	CTH or RVC(40)
2307	230700	CTH or RVC(40)	CTH or RVC(40)
2308	230800	CC(ex, ch8) or RVC 40 (ex, ch8)	CC(ex, ch8) or RVC 40 (ex, ch8)
2309	230910	CTH or RVC(40)	CTH or RVC(40)
	230990	CTH or RVC(40)	RVC(40)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1. 품목분류 체계

제24류에는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3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2401	잎담배, 담배 부산물
2402	시가·서루트·시가릴로와 껴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403	그 밖의 제조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담배추출물과 에센스

2. 제2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24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2402201000(필터 담배)으로 나타났다. 제24류의 베트남 수출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24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402201000	66,682	18.2	89,817	34.7
2	2424000000	2,410	4.8	3,363	39.5
3	2401201000	0	0	58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69,092		93,238	

3. 제2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240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24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4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4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CTH*
240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구성분석) 제24류는 잎담배와 제조담배 등이 분류되고 완전생산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2401호에는 잎담배와 담배부산물 등이 분류되는데 자연 상태인 원형 식물로부터 채취한 잎으로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므로 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2402.20호의 쉼련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되 단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2401호의 잎담배와 제2403호의 제조담배를 수입하여 필터담배(제2402.20호)를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하지만, 단서규정에 따라 제2403호의 재료는 물품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2401호의 잎담배에 대하여 아세안과 베트남 FTA 모두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2402.10호의 시가와 제2403호의 기타 제조담배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한 반면 한-베트남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2401	240110~240130	WO	WO 1
2402	240210	CTH	CTH or RVC(40)
	240220	CTH(제 2403 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CTH(제 2403 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40290	CTH or RVC(40)	CTH or RVC(40)
2403	240311~240399	CTH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 품명: 필터담배
- ✓ 세번: 2402.20
- ✓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4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담배제조는 원료가공과정, 궤련제조과정, 포장과정 3단계로 나누어진다. 원료가공 공정에서는 여러종류의 잎담배를 제품별 설정된 표준에 따라 투입하여 가습, 가향, 조화등 제품특성에 맞게 가공하고, 가공된 잎담배를 절각 각초를 제조하여 싸이로에 저장 조화시킨 후 공수 장치를 통하여 궤련공정에 공급한다.

원료가공 공정에서 공급된 각초를 궤련제조기에서 궤련지(각초를 싸는 종이)로 말아 막궤련(필터가 없는 담배)를 만들고 필터부착기에서 필터와 막궤련을 틱페이퍼로 말아 연결하여 필터담배를 제조 포장공정에 공급한다.

궤련공정에서 공급된 궤련을 갑포장기에서 은박지, 갑포장지로 20개비씩 포장하여 갑담배를 만들고 셀로판 포장기에서 OPP 필름 포장한 다음 포장기에서 10갑씩 포장하여 콘베어벨트로 운반 상자포장기에서 50포씩 포장하여 제품화한다.

필터담배의 주요 원재료는 잎담배(제2401호)와 필터(제54류)이다. 한-베트남 FTA는 담배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들 원재료는 역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공정을 거쳐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5부 광물성 생산품(제25류~제27류)

제5부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석회와 시멘트
	제26류	광 · 슬래그(slag)와 회(灰)
	제27류	광물성 연료 ·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석회와 시멘트

1. 품목분류 체계

제25류에는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석회와 시멘트’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29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과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바닷물
2502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503	황[승화황(昇華黃) · 침강황(沈降黃)과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504	천연흑연
2505	천연모래(착색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6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slabs) 모양 여부를 불문한다]
2507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煨燒) 여부를 불문한다]
2508	그 밖의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 · 홍주석 · 남정석과 규선석[하소(煨燒) 여부를 불문한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냐스 어트m(dinas earths)
2509	초크(chalk)
2510	천연인산칼슘·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과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chalk)

2511	천연황산바름(중정석), 천연탄산바름(독중석)[하소(煨燒) 여부를 불문하며, 제2816호의 산화바름은 제외한다]
2512	규조토[예: 키젤구어(kieselguhr) · 트리폴라이트(tripolite)와 다이아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煨燒) 여부를 불문하며, 겔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13	부석, 금강사, 천연커런덤 · 천연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연마재료(열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2514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15	대리석 · 트래버틴 · 에코신와 그 밖의 석비(石碑)용이나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겔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16	화강암 · 반암(斑巖) · 현무암 · 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이나 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2517	자갈 · 왕자갈 · 쇄석(碎石)[콘크리트용 · 도로포장용 · 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 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싱글(s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slag) · 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재료와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을 알갱이 · 파편 · 가루 모양으로 한 것(열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2518	백운석[하소(煨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응결백운석
2519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熔融)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그 밖의 산화물의 소량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 여부를 불문한다)
2520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s)[하소(煨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21	석회석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2522	생석회(生石灰) · 소석회와 수경성 석회(제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3	포틀랜드(portland)시멘트 · 알루미나(aluminous)시멘트 · 슬랙(slag)시멘트 · 수퍼설페이트(supersulphate)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시멘트[착색하거나 클링커(clinkers)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24	석면
2525	운모(조각을 포함한다), 운모 웨이스트(waste)
2526	천연동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활석
2528	천연붕산염과 그 정광[하소(煨燒)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염수로부터 분리한 붕산염을 제외한다], 천연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29	장석(feldspar), 백류석(leucite), 하석(nepheline)과 하석섬장암(nepheline syenite), 형석(fluorspar)
253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성 물질(mineral substances)

※ 2002년도에 제2527호는 삭제

2. 제2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25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2525200000(운모 가루), 2503000000(황), 2501009090(소금)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519909000(마그네사이트), 2523290000(시멘트) 등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으나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25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525200000	1,220	1,769.9	2,288	87.5
2	2503000000	1,366	45.7	1,144	-16.3
3	2501009090	637	-23.6	587	-7.9
4	2530909010	242	186.4	377	55.6
5	2519909000	4	-95.4	288	6866.2
6	2523290000	2	-85.1	280	12269.8
7	2513201010	422	192	251	-40.6
8	2523909000	95	-14.3	201	110.8
9	2526200000	322	147.7	168	-47.7
10	2520201000	160	80.6	166	3.7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470		5,750	

3. 제2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2501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2502 ~ 25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25류에는 소금과 황, 토석류, 기타광물, 석고와 석회·시멘트로 분류되고 완전생산기준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소금(제2501호)과 운모의 웨이스트(제2525.30호)는 완전생산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계약당사국 내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하소하지 않거나 소결하지 않은 백운석(제2518.10)호를 수입하여 제2518.20호 또는 제2518.30호의 상품을 생산하거나, 천연 마그네사이트(제2519.10호)를 수입하여 기타의 마그네슘을 생산하는 경우, 제2520.10호의 석고를 수입하여 플라스터(제2520.20호)를 생산하는 경우 6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외에 제25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완제품과 다른 호의 비원산지재료를 가공하여 해당호로 변경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2501호의 소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는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였지만 한-베트남 FTA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한-아세안 FTA 보다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250100	WO	CTH or RVC(40)
250200~253090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26류 광·슬래그와 회

1. 품목분류 체계

제26류에는 ‘광·슬래그(slag)²⁴⁾와 회’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21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2601	철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2602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2603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2604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2605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2606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2607	납광과 그 정광(精鑛)
2608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2609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261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2611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2612	우라늄광이나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2614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2615	니오븀(niobium)광·탄탈륨(tantalum)광·바나듐(vanadium)광이나 지르코늄(zirconium) 광과 이들의 정광(精鑛)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2617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2618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24) 슬래그는 일반적으로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로 광재(鑛滓)라고도 한다. 슬래그에는 다른 금속이나 비소가 함유되어 있어 금속이나 비소의 회수나 금속화합물의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슬래그의 일반적인 정의보다 제26류에서는 폭 넓게 적용하고 있다.(제26류 주 제3호 참조)

2619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2620	슬래그(slag) · 회와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2621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kelp)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 제2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26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2614001000(금홍석), 2613100000(몰리브덴광), 2611009000(텅스텐광)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621900000(기타 슬래그와 회), 2615100000(지르코늄광)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으나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26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614001000	952	109.5	894	-6.1
2	2613100000	366	64.2	551	50.5
3	2611009000	182	-68.6	495	171.2
4	2618000000	519	36.1	330	-36.3
5	2620990000	0	0	211	0
6	2609000000	107	7.7	194	81.1
7	2621900000	21	0	138	561.3
8	2615100000	0	-99.7	71	15656.8
9	2604000000	0	0	43	0
10	2614009000	0	0	12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147		2,939	

3. 제2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2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26류에는 광물성 생산품 가운데 수은, 귀금속, 비금속 및 방사성원소를 채취하기 위한 야금 공업용의 금속광과 정광이 분류되며, 철강제조 시 생기는 슬랙,

드로스, 스케일링 및 웨이스트 등과 도시쓰레기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이 포함된다. 한-베트남 FTA는 제26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광(鑛)이 분류되는 제2601호~제2617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완제품과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광물의 특성상 다른 호 또는 류로부터 생산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약당사국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수집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26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26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1. 품목분류 체계

제27류에는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제2716호의 전기에너지는 HS 협약의 체약국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호(optional heading)이다.

품목번호	품 명
2701	석탄,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s)과 이와 유사한 고체연료
2702	갈탄(응결 여부를 불문하며, 흑옥은 제외한다)
2703	토탄(토탄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 여부를 불문한다)
2704	코크스와 반성(半成)코크스(semi-coke)(석탄·갈탄이나 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 여부를 불문한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2705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2706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2707	오일(oils)과 그 밖의 고온 콜타르(coal tar)의 증류물, 이와 유사한 생산품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708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2709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나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본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오일(waste oils)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2	석유젤리, 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탈린(micro-crystalline)석유왁스·슬랙왁스(slack wax)·오조케라이트(ozokerite)·갈탄(lignite)왁스·토탄(peat)왁스·그 밖의 광물성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생산품(착색 여부를 불문한다)
2713	석유코크스·석유역청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2714	천연의 역청(瀝靑)과 아스팔트, 역청질 혈암·유모혈암(oil shale)과 타르샌드(tar sands), 아스팔타이트(asphaltites)와 아스팔트질의 암석(asphaltic rocks)
2715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아스팔트·천연역청·석유역청·광물성 타르나 광물성 타르피치를 기본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mastics)과 컷백(cut-backs)]]
2716	전기에너지

2. 제2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27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2710121000(자동차 휘발유), 2710195020(윤활유 기유), 2713200000(석유역청)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2710121000(자동차 휘발유), 2710193000(경유) 등의 수출실적 감소로 제27류 전체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HS 제27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710121000	235,233	-53.2	187,294	-20.4
2	2710195020	57,099	88.5	52,108	-8.7
3	2713200000	22,943	-26.7	27,017	17.8
4	2710193000	252,464	29.9	23,596	-90.7
5	2707500000	21,922	-7.3	21,487	-2.0
6	2710197120	9,621	22.8	11,030	14.6
7	2711130000	6,910	8.5	4,928	-28.7
8	2710197320	4,314	5.8	4,234	-1.8
9	2710197450	2,639	15.1	2,732	3.5
10	2710197900	1,070	21.4	2,600	143.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614,215		337,026	

3. 제2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2701 ~ 27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710.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2710.19 ~ 2710.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711 ~ 27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석탄, 석유와 같은 광물성 연료가 분류되는 제27류는 대체로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2701호~제2703호 및 제2709호는 석탄, 갈탄, 토탄, 석유로 지중에서 채굴 등의 방법으로 생산한다.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적용되지만 생산과정의 특징상 원료와 제품이 동일하므로 완전 생산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제2701.20호와 같이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조개탄의 경우 역외에서 무연탄(2701.11) 또는 유연탄(2701.12)을 수입하여 연탄 형태로 제조하는 경우 동일한 호의 재료로 생산하므로 세번변경기준에 의해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704호~제2708호는 석탄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코크스, 석탄가스, 광물성 타르, 고온콜타르 증류물 등이 분류된다.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므로 역외에서 석탄(2701)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증류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이 호의 물품들을 생산하면 4단위 세번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707.10호~제2707.91호 등의 벤젠 및 나프탈렌은 콜타르(제2706호)를 고온으로 증류하여 화합물을 첨가하여 생산한다. 이때 원재료인 콜타르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증류공정을 거쳐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일 호(제2707호) 내의 다른 소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천연가스는 통상 액화상태(제2711.11)로 수입된 후 가스상태(제2711.21호)로 되는데 이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710.12호의 경질유와 조제품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2710호에 속하는 다른 소호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2710.10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도록 원산지결정기준을 완화하였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27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제2710.12호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2710.12호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한 반면 한-베트남 FTA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여 보다 엄격성의 가진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270111~270900	CTH or RVC(40)	CTH or RVC(40)
271012	CTSH	CTH or RVC(40)
271019~271600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 품명: 제트연료유
- ✓ 세번: 2710.19-2020
- ✓ 원산지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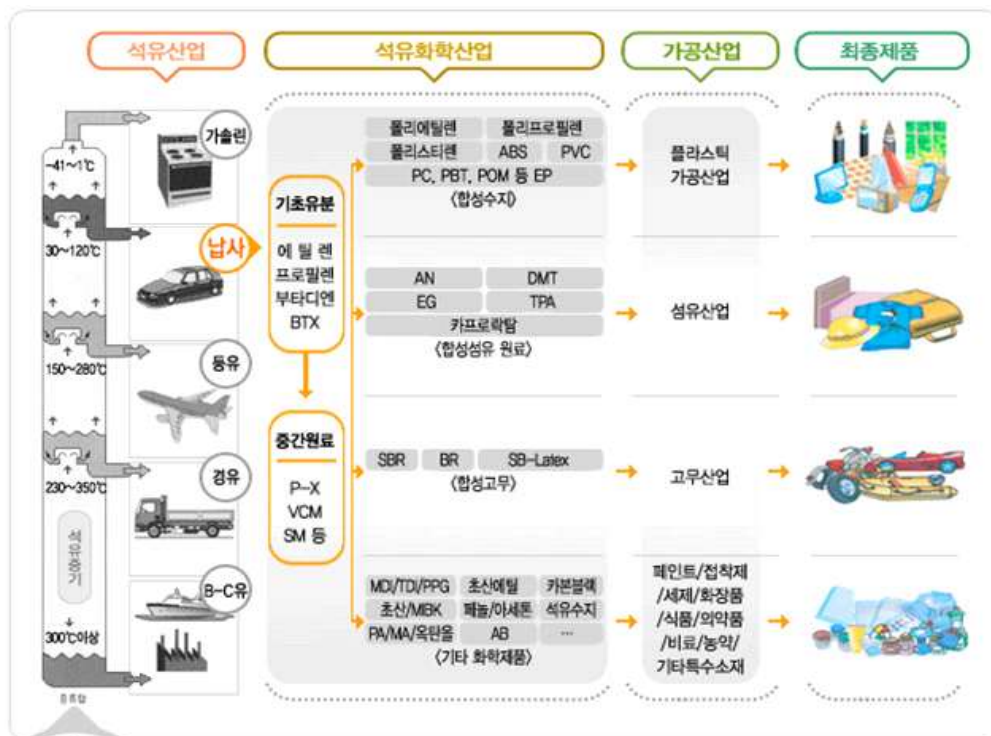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등유 및 제트연료는 원유(HS 제2709호)를 가열하여 생산하는데 LPG는 -42~1°C, 휘발유 및 나프타는 30~120°C, 등유 및 제트연료유는 150~280°C, 경유는 230~350°C, 아스팔트 및 잔사유는 300°C 이상에서 생산된다.

< 제트연료유 생산공정 >



제트연료유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우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HS 제2710호 이외의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2710호의 물품인 등유타입 제트 연료유(HS 제2710.19.2020호)가 생산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일부협정이 규정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호(제2710호)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특정한 공정(화학반응, 상압증류, 감압증류 등)을 수행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데, 한-베트남 FTA는 이러한 특수한 공정에 의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채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일한 호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28류~제38류)

제6부	제28류	무기화합물,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제29류	유기화합품
	제30류	의료용품
	제31류	비료
	제32류	유연용이나 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es),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s), 잉크
	제33류	정유(essentials oils)와 레지노이드(resinoids), 조제향료,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제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틱(plaster)를 기본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s), 효소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물품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28류 무기화합물, 귀금속·희토류(稀土類) 금속·방사성원소나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1. 품목분류 체계

① 원소

품목번호	품 명
2801	플루오르(fluorine) · 염소(chlorine) · 브롬(bromine)과 요드(iodine)
2802	황[승화황(昇華黃) · 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 황(colloidal sulphur)
2803	탄소(카본블랙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2804	수소 · 희(稀)가스(rare gase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5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스칸듐(scandium)과 이트륨(yttrium)(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수은

② 무기산²⁵⁾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²⁶⁾

품목번호	품 명
2806	염화수소(염산), 클로로황산
2807	황산, 발연황산
2808	질산, 황질산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10	붕소의 산화물, 붕산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③ 비금속 할로겐화합물과 황화합물

25) ‘무기산(inorganic acids)’이란 염소.황.질소.인 등 비금속을 함유하는 산기(酸基)가 수소(H)와 결합하여 생긴 산으로 염산(HCl, 제2806호), 황산(H₂SO₄, 제2807호), 질산(HNO₃, 제2808호), 인산(H₃PO₄, 제2809호) 등을 말한다. 탄산(H₂CO₃)도 무기산으로 취급한다.

26) ‘산화물’이란 산소와 다른 원소와의 이원(二元)화합물을 지칭하며, 다른 원소가 비금속이면 비금속산화물이라 하고, 금속이면 금속산화물이라 한다. 따라서 CO₂, SO₂, SiO₂(제2811호)는 비금속산화물에 해당하고, CrO₂, MnO₂, Fe₂O₃ 등은 금속(크롬.망간.철)산화물에 해당한다.

품목번호	품 명
2812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3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④ 무기염기와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과 금속과산화물

품목번호	품 명
2814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2816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 수산화물과 과산화물
2817	산화아연, 과산화아연
2818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9	산화크롬과 수산화크롬
2820	산화망간
2821	산화철과 수산화철, 어스컬러(earth colours)[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_2O_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2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2823	산화티타늄
2824	산화납, 연단(red lead)과 오렌지 납(orange lead)
2825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 그 밖의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과 금속과산화물

⑤ 무기산과 금속의 염²⁷⁾과 과산화염

품목번호	품 명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 · 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27) ‘염’이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로 산의 H+가 다른 양이온으로 치환된 물질이나 염기의 OH-가 다른 음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을 말한다.

2827	염화물 ·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요드화물과 산화요드화물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아염소산염, 하이포아브롬산염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2830	황화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31	아이티온산염(dithionites)과 술폭실산염(sulphoxylates)
2832	아황산염(sulphites), 티오황산염(thiosulphates)
2833	황산염, 명반(alums),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4	아질산염(nitrites), 질산염(nitrates)
2835	포스피네이트(phosphinates)(하이포아인산염) · 포스포네이트(phosphonates)(아인산염)와 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7	시아나화물 · 산화시아나화물과 시안착염
2839	규산염, 상관습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2840	붕산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2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 제2838호는 삭제

⑥ 기타

품목번호	품 명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s)
2844	방사성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생산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2845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46	희토류(稀土類)금속 · 이트륨 · 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
2847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48	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인철(ferrophosphorus)은 제외한다)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50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과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2852	무기나 유기 수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²⁸⁾ 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아말감은 제외한다)
2853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공기(희가스가 제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압축공기, 아말감(귀금속의 아말감은 제외한다)

※ 제2851호 삭제

2. 제2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28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2803009019(탄소), 2817001000(산화아연), 2823001000(산화티타늄)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2803009019(탄소)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20.4% 감소했다. 특히, 2805301000(세륨그룹), 2843309000(금 화합물)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28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803009019	15,024	16.0	11,960	-20.4
2	2817001000	5,132	25.2	5,759	12.2
3	2823001000	6,704	1.8	4,760	-29.0
4	2818200000	3,427	-19.3	4,063	18.6
5	2847009000	2,245	-12.0	3,302	47.1
6	2805301000	246	1,046.2	3,184	1,194.5
7	2807001090	1,267	12.2	2,984	135.6
8	2843309000	1	28,550.0	2,566	447,635.6
9	2808001090	2,430	5.6	2,515	3.5
10	2815120000	2,601	303.0	2,506	-3.7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9,077		43,599	

3. 제2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28) 소호 제2852.10호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이란 제28류 주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나 제29류 주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유기나 무기의 수산화합물을 말한다.(제28류 소호 주 제1호)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2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28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한-베트남 FTA는 제28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28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28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29류 유기화합물

1. 품목분류 체계

제29류에는 ‘유기화합물’을 분류하며, 다음 표29-1부터 표29-13까지 13개의 절에 속한 42개 호로 구성되어 있다.

① 탄화수소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품목번호	품명
2901	비환식탄화수소
2902	환식탄화수소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 여부를 불문한다)

② 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품목번호	품명
290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06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③ 페놀·페놀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품목번호	품명
2907	페놀, 페놀알코올
2908	페놀이거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④ 에테르·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3원고리의 에폭시드·아세탈과 헤미아세탈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품목번호	품명
2909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	3원고리(three-membered ring)의 에폭시드 ·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1	아세탈·헤미아세탈(hemiacetals)(그 밖의 산소관능의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⑤ 알데히드관능화합물

품목번호	품 명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의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2913	제2912호의 생산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⑥ 케톤관능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품목번호	품 명
2914	케톤과 퀴논(그 밖의 산소관능의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⑦ 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 유도체

품목번호	품 명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추가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⑧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과 이들의 염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품목번호	품 명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⑨ 질소관능화합물

품목번호	품 명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3	제4암모늄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phosphoaminolipids)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7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
2928	히드라진이나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2929	그 밖의 질소 관능화합물

⑩ 유기무기화합물 · 헤테로고리화합물 · 핵산과 그들의 염과 술폰아미드

품목번호	품 명
2930	유기-황화합물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2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
2935	술폰아미드

⑪ 프로비타민 · 비타민과 호르몬

품목번호	품 명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937	호르몬 ·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s) · 트롬복산(thromboxanes)과 류코트리엔(leukotrienes)(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s)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다]

⑫ 글리코시드와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품목번호	품 명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2939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⑬ 그 밖의 유기화합물

품목번호	품 명
294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제2938호와 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941	항생물질
2942	그 밖의 유기화합물

2. 제2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29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2905161000(2-에틸헥실알코올), 2929102000(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2902300000(톨루엔)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2905161000(2-에틸헥실알코올)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31.1% 감소했다. 또한, 제29류의 물품 대부분의 '15년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HS 제29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2905161000	35,260	5.1	24,311	-31.1
2	2929102000	21,630	34.7	21,208	-2.0
3	2902300000	35,299	-29.7	18,292	-48.2
4	2917399000	23,902	-8.1	17,271	-27.7
5	2929101000	12,528	-8.2	14,506	15.8
6	2917350000	15,350	-23.3	13,552	-11.7
7	2922413000	3,518	42.3	6,857	94.9
8	2927002100	5,587	20.8	6,539	17.0
9	2916124000	5,483	-11.2	4,995	-8.9
10	2915210000	5,505	81.1	4,655	-15.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64,062		132,186	

3. 제2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2901 ~ 29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921.11 2921.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921.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2921.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921.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2921.30 ~ 2921.5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92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922.12 2922.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2922.14 ~ 2922.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922.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2922.42 ~ 2922.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923.10 2923.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292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2924 ~ 294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29류는 4단위,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한-베트남 FTA는 제29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필렌 글리콜(제2905호)은 기초원재료인 석유(제2709호)를 가공하여 제조하기도 하고 프로필렌 옥사이드(제2910호)를 가공하여 생산하기도 한다. 이때 두 원료 모두 수입하여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므로 프로필렌 글리콜은 원산지 지위를 얻을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29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2901~2920	290110~292090	CTH or RVC(40)	CTH or RVC(40)
2921	292111~292119	CTH or RVC(40)	CTH or RVC(40)
	292121	CTSH or RVC(40)	CTSH or RVC(40)
	292122	CTH or RVC(40)	CTH or RVC(40)
	292129	CTSH or RVC(40)	CTSH or RVC(40)
	292130~292159	CTH or RVC(40)	CTH or RVC(40)
2922	292211	CTH or RVC(40)	CTH or RVC(40)
	292212~292213	CTSH or RVC(40)	CTSH or RVC(40)
	292214~292239	CTH or RVC(40)	CTH or RVC(40)

2923	292241	CTSH or RVC(40)	CTSH or RVC(40)
	292242~292250	CTH or RVC(40)	CTH or RVC(40)
	292310~292320	CTH or RVC(40)	CTH or RVC(40)
	292390	CTSH or RVC(40)	CTSH or RVC(40)
2924~2942	292411~294200	CTH or RVC(40)	CTH or RVC(40)

다.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 품명: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 ✓ 세번: 2929.10-9000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질소관능화합물의 일종인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는 ‘이소시아산 에스테르’와 동의어이며, 플라스틱, 접착제 등에 쓰이는 화학물질 중 하나로 폴리우레탄(Polyurethane)의 Hard segment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TMI (META) Unsaturated Aliphatic Isocyanate는 비닐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량체로, 3차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와 화학반응을 보이는 이종결합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소시아네이트는 NCO함량%와 관능지수, 즉 한 분자 내에 얼마나 많은 NCO기가 있는지에 의해 성질이 결정된다. 1884년 헨첼(Hentschel)에 의해 발견되었고 두 단계의 합성방법에 따라 생성된다.

- ① 1단계 : 포스젠(Phosgene)과 함께 1차 아민(Amine)을 반응시킴.
- ② 2단계 : 1단계 반응물질에서 염산(Hydrochloric Acid) 제거
- ③ 3단계 : 2단계 물질 상태에서 염화카바믹산(Carbamic Acid Chloride) 생성
- ④ 4단계 : 3단계 물질 상태에서 염산(Hydrochloric Acid) 제거
- ⑤ 5단계 :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 생성

이소시아네이트는 폴리우레탄 화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이들은 NCO관능기의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르며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이소시아네이트는

MDI(Diphenyl Methane Diisocyanate)와 TDI(Toluene Diisocyanate)이다. 이소시아네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는 포스젠(제2812호), 아민(제2825호~제2921호), 염화카바믹산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외에서 해당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화학반응의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원재료와 완성품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다.

제30류 의료용품

1. 품목분류 체계

제30류에는 ‘의료용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001	장기(臟器) 요법용의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2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이나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하거나 얻어지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생산품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4	의약품[혼합 여부를 불문하고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5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2. 제3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30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3004909900(기타 소매의약품), 3004209900(그 밖의 향생물질을 함유한 소매의약품), 3002200000(인체용 백신) 등으로 나타났다.

HS 제30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004909900	85,561	1.4	86,455	1.0
2	3004209900	17,951	-20.2	20,049	11.7
3	3002200000	12,848	-2.1	15,172	18.1
4	3002309000	2,401	52.9	3,393	41.3
5	3004101000	2,944	139.3	2,576	-12.5
6	3004509000	2,505	54.7	2,245	-10.4
7	3005109000	1,909	35.9	2,120	11.1
8	3002904000	2,085	-39.5	1,536	-26.3
9	3002102020	829	2.6	1,105	33.3
10	3004901000	754	-18.8	761	0.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29,787		135,412	

3. 제3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3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30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한-베트남 FTA는 제28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참고로 일부 협정은 제3006.92호에 해당하는 폐(廢) 의약품은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베트남 FTA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제품과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제3004호는 소매의약품으로 제3003호의 의약품을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한 것이다. 일부협정은 소매의약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을 기본으로 하고 제3003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도록 제외세번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제3003호의 의약품을 소매 포장하여 제3004호를 만들 경우 제3003호의 의약품은 원산지재료이어야만 원산지지위를 얻을 수 있는데 한-베트남 FTA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30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30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소매용 의약품 ✓ 세번: 3004.90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3004호에는 제3003호의 혼합의약품을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이 분류된다. 3004호는 사실 제3003호의 의약품을 판매 및 투여량에 적합하도록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제3003호의 완성된 의약품을 재료로 하여 생산한다.

소매용 의약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므로 역외에서 제3003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소매용으로 포장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31류 비료

1. 품목분류 체계

제31류에는 ‘비료’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101	동물성 비료나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이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동물성이나 식물성 생산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3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4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정제(tablets)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2. 제3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31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3105200000(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3105300000(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3105200000(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57.9% 증가했다. 특히, 3102210000(황산암모늄), 3102501000(질산나트륨)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31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105200000	27,414	1,142.6	43,284	57.9
2	3105300000	29,614	79.8	29,740	0.4
3	3105909000	121	-26.6	974	705.8
4	3102210000	70	-99.7	880	1148.6
5	3104301000	336	53.1	248	-26.1
6	3102509000	71	-8.1	231	224
7	3102501000	4	931.6	208	5393.1
8	3101002000	96	-57.5	156	62.5
9	3101003000	8	43.6	63	703.2
10	3105590000	15	-99.5	27	82.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57,749		75,811	

3. 제3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3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31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31류에는 비료가 분류되는데 재료와 완성품의 4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4단위가 다른 비원산지재료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는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31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31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32류 유연용이나 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1. 품목분류 체계

제32류에는 ‘유연용이나 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201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3202	합성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조제유연제(천연유연제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의 효소계 조제품
3203	식물성 착색제나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추출물을 포함하고 수탄(animal black) ²⁹⁾ 은 제외한다],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유기형광 증백제나 합성유기루미노퍼(luminophores)(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205	레이크안료,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생산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s)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207	조제안료·조제유백제(乳白劑)·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slips)·액체상태 러스터(lusters)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이나 유리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프리트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8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과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본재료로 하여 비수성 매질(non-aqueous medium)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9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과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본재료로 하여 수성 매질(aqueous medium)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1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래커와 디스토퍼를 포함한다), 가족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3211	조제드라이어
3212	비수성 매질(non-aqueous medium)에 분산시킨 안료(금속가루 · 금속플레이크를 포함하며, 페인트 · 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foils),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3	화가용 · 학생용 · 간판도장공용 · 색조수정용 · 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정제 모양인 것 · 튜브들이 · 병들이 · 접시들이와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4	유리 접합용 퍼티(putty) · 접목용 퍼티(putty) · 수지시멘트 · 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s),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 · 실내벽 · 마루 · 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5	인쇄용 잉크 · 필기용 잉크 · 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 제3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32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3208909019(비수성페인트), 3204170000(합성유기착색제), 3215190000(인쇄용 잉크)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3212100000(스탬프용 박)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32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208909019	43,290	115.0	39,503	-8.7
2	3204170000	22,782	47.0	21,512	-5.6
3	3215190000	15,943	0.4	18,462	15.8
4	3204160000	15,714	34.1	15,144	-3.6
5	3208201019	10,959	103.3	12,501	14.1
6	3204119000	9,094	45.5	12,379	36.1
7	3215909000	11,822	147.7	11,617	-1.7
8	3205001000	9,862	-17.5	11,249	14.1
9	3212100000	956	26.9	10,691	1,018.4
10	3214101090	9,608	63.6	10,260	6.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50,030		163,318	

3. 제3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29) 수탄(animal black)은 제3802호로 분류한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3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32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32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이 적용되므로 염료재료와 완성염료의 4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또는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32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32	CTH or RVC(40)	CTH or RVC(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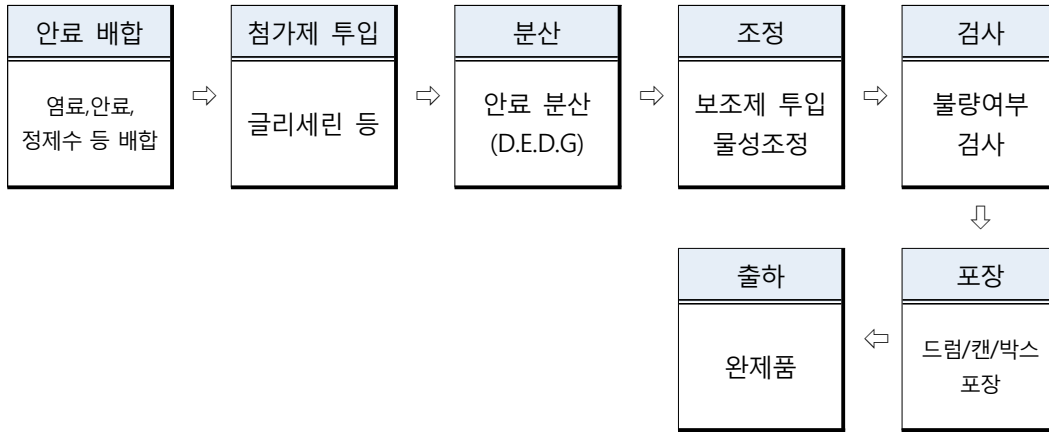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잉크 ✓ 세번: 3215.19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잉크는 필기나 인쇄 등에 사용하는 유색의 액체로 현재의 잉크는 필기용 잉크와 인쇄용 잉크로 크게 나뉘어진다.

필기용 잉크에는 기록용·증권용·기호용·제도용·스탬프 잉크 등이 있는데, 이 중 기록용 잉크는 타닌산이나 몰식자산(갈산) 수용액에 황산제일철을 첨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잉크라고 하면 거의 이것을 가리킨다. 인쇄용 잉크는 색소를 가진 안료와 이것을 종이에 고착시키는 매질이 주성분인 콜로이드상 또는 액상의 물질로 조제할 때 드라이어와 콤파운드 등을 섞어서 만든다.

잉크는 먼저 염료와 안료 및 첨가제, 정제수 등을 일정 비율로 배합하여 교반한다. 교반되어진 잉크는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탱크에 배출하고, 이를 자동주입기를 통해 소매용 용기에 주입하고 실링한 후 누수 이상 유무를 전수 검사한다.



연번	HS	세부품명	연번	HS	세부품명
1	2909	butyl carbitol	14	2811.22	amorphous fumed silica
2	3204	durazin viloet B, color pigment	15	2834.29	calciumnitrate
3	2905	ethylene glycol	16	2836.20	calcium carbonate
4	3824.90	disperse agent	17	2917.36	BIS 가소제
5	3402.13	surfinol-TG	18	2924.19	hydrocarbon resin
6	3904	poly vinyl chloride	19	2932.29	butyrolactone
7	3923.30	plastic bottle	20	2933.19	pyrrolidone
8	1507.10	soybean oil	21	2934.29	DC-193
9	1515.19	linseed oil	22	3202.13	BYK-024
10	1520.10	glycerin	23	3206.11	titanium dioxide
11	2201	물	24	3404.90	fatty amide wax
12	2710.19	ink solvent	25	3806.10	gum rosin
13	2803.00	carbon black	26	3910.00	CA600

잉크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다. 따라서 제시된 원재료 내역을 바탕으로 우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검토하면 해당 원재료가 모두 수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가 없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완제품과 동일한 호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에서는 인정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화장품이나 화장용품

1. 품목분류 체계

제33류에는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화장품류나 화장용품류’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301	정유[콘크리트(concretes)와 앵설루트(absolutes)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의 제거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resinoids),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농축물(냉습수법이나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s)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s)
330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해당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본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3	향수와 화장수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pedicure) 제품류
3305	두발용 제품류
3306	구강이나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rs)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실내용 조제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 제3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33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3304991000(기초화장용 제품류), 3304999000(기타 화장품), 3305909000(기타 두발용 제품류)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3304991000(기초화장품 제품류)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44.9% 증가했다.

HS 제33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304991000	18,933	74.4	27,432	44.9
2	3304999000	8,470	-36.5	6,016	-29.0
3	3305909000	3,878	-3.1	4,460	15.0
4	3304992000	3,340	13.6	4,164	24.7
5	3304101000	1,309	67.5	1,696	29.6
6	3302900000	1,903	-16.9	1,633	-14.2
7	3304911000	1,284	65.6	1,581	23.1
8	3305100000	1,314	13.2	1,448	10.2
9	3302101000	1,714	13.4	1,372	-19.9
10	3306100000	885	72.8	1,169	32.2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3,030		50,971	

3. 제3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3301.12 ~ 3301.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330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330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 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 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CTH(ex, 1211.20, 1302.90) or RVC40(ex, 1211.20, 1302.90)
3302 ~ 33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33류에는 정유와 레지노이드(제3301호), 조제향료(제3302~3303호), 화장품류(제3304~3305호), 위생 및 화장용품류(제3306~3307호)등이 분류된다.

한- 베트남 FTA는 제3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기본적으로 4단위, 6단위 세번변

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이 류에 속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비원산지 원재료와 4단위 세번이 상이하거나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제3301.30호의 레지노이드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레지노이드는 동일한 호에 속하더라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동일한 소호의 재료를 사용하였다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301.90호의 경우 주요 원재료로 사용되는 인산(제1211.20호)와 인삼추출물(제1302.19호)는 반드시 원산지재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33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3301	330112~330129	CTH or RVC(40)	CTH or RVC(40)
	330130	CTSH or RVC(40)	CTSH or RVC(40)
	330190	CTH(ex, 1211.20, 1302.19) or RVC 40(ex, 1211.20, 1302.19)	CTH(ex, 1211.20, 1302.19) or RVC 40 (ex, 1211.20, 1302.19)
3302~3307	330210~330790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제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을 기본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34류에는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 왁스·광택이 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제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을 기본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 생산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이나 주형 모양으로 한정하며, 비누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 생산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의 함유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3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나 부식방지제와 이형(離型)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oil)처리나 가지(grease)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3405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용(coachwork)·유리용이나 금속용의 광택제와 크림·연마페이스트·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플라스틱이나 셀룰러고무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6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3407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이나 판 모양·말굽모양·막대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틱(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2. 제3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34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3405400000(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3403191000(조제 절삭유), 3404200000(폴리 왁스) 등이었다. 또한,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3405400000(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4,572.9% 증가하였으며, 3403991000(기타 조제 절삭유) 역시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34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405400000	195	203.1	9,134	4,572.9
2	3403191000	1,155	120.9	6,202	436.8
3	3404200000	4,284	52.7	5,029	17.4
4	3402139000	3,173	5.9	4,970	56.6
5	3403991000	260	112.6	3,803	1,363.3
6	3402902000	3,388	-3.9	3,569	5.3
7	3402110000	1,683	26.6	3,071	82.5
8	3403999000	905	-30.2	2,761	205.2
9	3403194000	1,607	7.2	1,815	13.0
10	3402901000	1,520	26.9	1,603	5.5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8,170		41,957	

3. 제3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34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34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34류에 속하는 물품은 한-베트남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401.11호의 화장비누는 다양한 화학성분을 조합하여 제조하는데 대체로 29류에 속하는 원재료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요 원재료가 제29류로 화장비누(제3401호)와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내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34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34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1. 품목분류 체계

제35류에는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를 분류하며, 다음 표35와 같이 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501	카세인 · 카세인산염(caseinates)과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s)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3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s) 모양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 여부를 불문한다]와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s)[제3501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s)는 제외한다]
3504	펩톤(peptones)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 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 · 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s)
3506	조제글루(glues)와 그 밖의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s)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생산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s)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7	효소,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

2. 제3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35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3506910000(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3506999000(기타 조제접착제), 3506102000(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접착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3505209000(변성전분)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35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506910000	15,966	24.8	19,788	23.9
2	3506999000	8,428	125.4	7,789	-7.6
3	3506102000	3,623	-11.8	3,959	9.3
4	3503001010	4,594	79.1	2,944	-35.9
5	3506109000	1,557	13.8	1,892	21.5
6	3507909000	778	3.5	935	20.2
7	3506101000	176	194.8	177	0.2
8	3505209000	4	673.8	174	4499.2
9	3506991000	95	24.3	74	-22.8
10	3507901090	30	-0.8	65	115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5,251		37,797	

3. 제3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35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한- 베트남 FTA에서 제35류에 속하는 모든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한-베트남 FTA는 제35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내 이거나,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35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35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36류 화학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36류에는 ‘화학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601	화약(propellant powders)
3602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3603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3604	불꽃제품 · 신호용 조명탄 · 레인로켓(rain rockets) · 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3605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3606	페로세륨과 그 밖의 발화성 합금(모양 여부를 불문한다), 이 류의 주 제2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2. 제3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36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3606100000(발화성합금·조제연료)로 수출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36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606100000	271	42.4	261	-3.7
2	3606909090	0	0	1	972.5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71		262	

3. 제3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3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36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화약, 폭약, 불꽃놀이 제품 등이 포함된 제36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내이거나,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36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36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물품

1. 품목분류 체계

제37류에는 ‘사진용이나 영화용 물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701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평면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나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packs)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702	롤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나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3	사진인화지·판지와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4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와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5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이나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707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글루(glues)·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 제3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37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3701309200(인쇄회로기판용 플레이트), 3707909200(조색제), 3701991000(기타 평면상 필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3707909900(기타 사진용의 화학조제품)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으나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37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701309200	0	0	393	0
2	3707909200	259	-18.2	301	16.3
3	3701991000	0	0	283	0
4	3701309100	109	-49.1	184	68.6
5	3707909900	6	-94.5	181	2697.3
6	3707100000	45	265	163	263.2
7	3707902920	106	21.8	147	38.4
8	3707901090	78	170.2	92	17.6
9	3702419090	0	0	88	0
10	3702423000	0	0	68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603		1,900	

3. 제3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3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37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한-베트남 FTA는 제37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일부 협정(한-중국)은 다만 제3701~제3703호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제3707호의 재료를 제외세번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도록 제한 하고 있으나 한-베트남 FTA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37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37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1. 품목분류 체계

제38류에는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2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s) · 블록 · 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3803	톨유(tall oil)(정제 여부를 불문한다)
3804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하거나 당류를 제거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리그닌 술포산(lignin sulphonates)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3805	검(gum)테레빈유 · 우드(wood)테레빈유나 황산(sulphate)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terpenic oils)(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dipentene),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para -cymene),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6	로진(rosin).수지산(rosin acids)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 (rosin oils), 런검(run gums)
3807	목타르(wood tar), 목타르유(wood tar oils) · 목크레오소트(wood creosote), 목나프타, 식물성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 · 수지산이나 식물성피치(pitch)를 기본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3808	살충제 · 살서제(취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생산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 조제품으로 한 것이나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 심지 · 양초와 파리 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9	완성가공제 · 염색촉진용이나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 · 드레싱과 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생산품과 조제품(섬유공업 · 제지공업 · 가죽공업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조제품, 납불임용 · 땀질용이나 용접용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불임용 · 땀질용이나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s)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이나 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1	안티녹제(anti-knock) · 산화억제제 · 검화억제제(gum inhibitors) · 점도향상

	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이나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이나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3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3814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s)(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나 바니시 제거제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과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6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생산품은 제외한다)
3817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나 제2902호의 생산품은 제외한다)
381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doped)된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doped)된 화학화합물
3819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癭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癭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820	부동(不凍)조제품과 조제 제빙액(de-icing fluids)
3821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이나 동물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culture media)
3822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나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s),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3826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癭靑油)를 함유하지 않았거나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제3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38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3808929000(살균제), 3824909090(기타 화

학공업생산물), 3817000000(혼합알킬벤젠)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3808929000(살균제)의 '15년은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2.5% 증가했다.

HS 제38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808929000	37,267	1,989.6	41,939	12.5
2	3824909090	18,241	59.2	27,564	51.1
3	3817000000	24,878	10.1	18,488	-25.7
4	3808919000	20,615	-51.7	18,240	-11.5
5	3814001090	9,557	50.3	12,548	31.3
6	3809910000	8,338	5.9	9,560	14.6
7	3824400000	5,248	41.1	8,689	65.6
8	3824907100	2,893	71.2	7,797	169.5
9	3810101000	857	297.5	7,326	755.3
10	3812302000	6,176	6.2	6,961	12.7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34,070		159,112	

3. 제3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3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38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38류는 매우 다양한 화학공업생산품이 분류된다. 한-베트남 FTA는 제28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내이거나,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중 FTA는 화학공업에 의한 폐기물(제3825호)는 완전생산기준을 택하여 폐기물의 원산지판단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는 폐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을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면서 화학공업의 원재료가 될수 있는 제28류~제37류, 제40류~제90류를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하였다. 결국 두 협정 모두 폐기물의 원산지규정 표현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의미는 역내에서 완

전히 생산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한-베트남 FTA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38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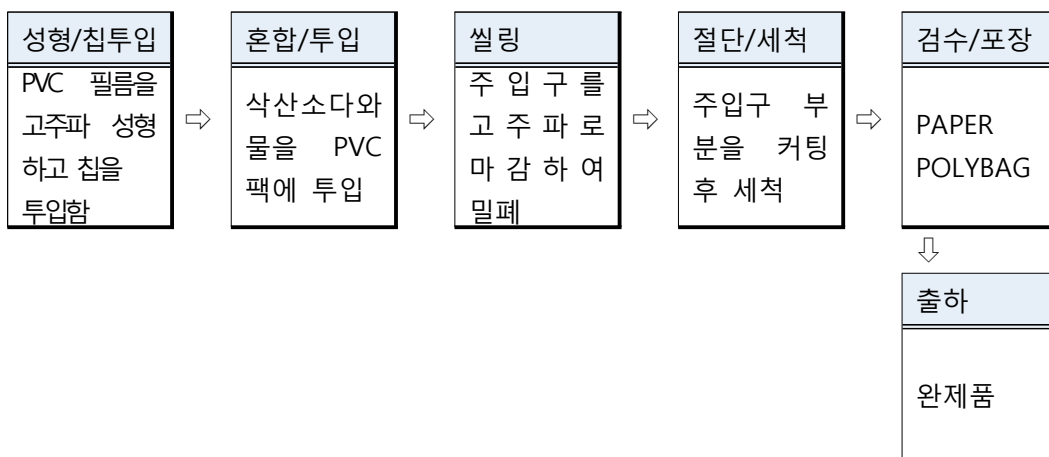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38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핫팩)

✓ 품명: 핫팩 ✓ 세번: 3824.90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핫팩은 스팀이나 뜨거운 물수건을 이용하는 팩으로 체온이 내려갔을 때 주로 사용되며, 의료목적으로 저체온증의 환자에게 이용되기도 하는 등 활용성이 매우 높다.

< 핫팩의 제조과정 >



핫팩의 제조과정은 PVC 필름을 일정한 모양대로 고주파하여 팩을 만든 후 칩을 투입한다. 식산소다와 물의 혼합물에 열을 가하여 일정비율로 준비한 후 혼합물을 PVC 팩에 투입한다. 액주입구를 고주파로 마감하여 밀폐시키고 주입구 부분을 모양에 맞게 커팅하고 세척한다. 이후 제품을 검수하여 폴리백과 포장지에 포장한다.

< 핫팩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이소프로필 알콜	2905.12	토너의 주요 원재료
황상디에틸	2920.90	
유기계면활성제	3402.13	
스테아린산	3823.11	
PVC 필름	3920	
폴리백	3923.29	
활성탄	3802	

핫팩의 한- 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다. 앞서 핫팩의 일반적인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확인하였다. 핫팩은 제 3824.90호에 분류되므로 사례에서 제시된 원재료의 4단위 세번과 비교하여 원산지를 판단하면 모든 원재료의 4단위 세번이 핫팩과 모두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위에 제시된 원재료 모두 비원산지재료라고 하더라도 핫팩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제40류)

제7부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 표39-2와 표39-3과 같이 두 개의 절에 속한 2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① 일차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1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숄파이드·폴리숄폰과 이 류의 주 제 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4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②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과 반제품·완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917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2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3925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2. 제3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39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3919900000(접착성 쉬트·테이프), 3902100000(폴리프로필렌), 3907600000(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2300000(프로필렌 공중합체)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3919900000(접착성 쉬트·테이프)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95.5% 증가했다.

HS 제39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3919900000	124,247	17.1	242,913	95.5
2	3902100000	176,278	-17.0	151,847	-13.9
3	3907600000	44,878	-2.4	128,582	186.5
4	3902300000	129,123	17.8	101,764	-21.2
5	3901209000	103,668	-0.6	89,791	-13.4
6	3901101000	94,864	60.7	85,488	-9.9
7	3907400000	53,912	42.2	68,833	27.7
8	3926909000	47,772	-1.5	66,393	39.0
9	3920620000	29,884	499.7	60,162	101.3
10	3901300000	54,951	83.9	58,303	6.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859,577		1,054,076	

3. 제3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3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한- 베트남 FTA는 제39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해설) 한- 베트남 FTA는 제39류에 속하는 품목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다른 호에 속하는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예를들어 핸드폰 보호필름(제3919.90호)를 생산할 때 동일한 소호에 속하는 테이프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다만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라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이러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된다면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39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39	CTH or RVC(40)	CTH or RVC(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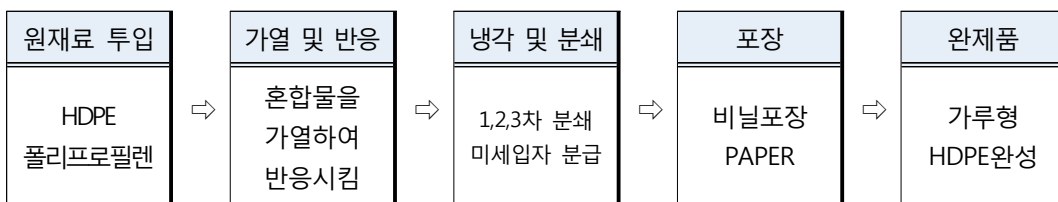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폴리스티렌)

✓ 품명: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 세번: 3901.20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에틸렌의 중합으로 생기는 사슬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은 중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생성되는데 밀도에 따라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구별된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기계적 성질, 내열성, 내한성이 뛰어나며 투명도는 낮은 것으로 각종 용기, 절연재료, 전선, 호스, 파이프, 로프 등 압출성형품에 등에 이용된다.

HDPE란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지칭하는 것으로 밀도가 0.94이상의 것을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 한다. 가지가 적고 결정화도가 높아 기계적 강도는 크지만 투명도는 낮으며 내충격성, 내한성, 가공성이 우수하여 플라스틱병,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파이프 등에 사용한다.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및 기타 촉매를 혼련하고 가열 및 반응압출공정을 거친 후 냉각하고 제련한 후 포장에 담아 완제품을 생산한다.



연번	HS	세부품명
1	2901.10	HEXANE(헥산)
2	3812.30	UV 3346
3	2915.70	CALCIUM STEARATE SC-110
4	2918.29	AO-1010
5	2710.11	NAPHTAH
6	2909.60	촉매
7	2917.14	무수말레이산
8	2919.90	ALKANOX 240
9	2933.69	ALVINOX FB-3V SIGMA
10	3824.90	DHT-4A
11	3901.20	폴리에틸렌
12	3902.30	폴리프로필렌

고밀도 에틸렌 생산의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한다면 우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여부를 다음과 같다. 제시된 모든 재료가 비원산지재료라고 가정하는 경우 완성품인 고밀도 에틸렌과 서로 다른 4단위 세번의 재료가 사용가능하다. 제시된 재료중에서 4단위가 동일한 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원산지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동일 호에 속하는 재료가 한-베트남 FTA에서 규정하는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재료가 최소허용범위를 초과한다면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역내에서 4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40류에는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001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울(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3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4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4005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6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관·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링]
4007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008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4009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10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 타이어 트레드(tread), 타이어 플랩(flap)
4013	고무로 만든 INNER튜브
4014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젓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15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7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2. 제4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40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4002209000(부타디엔 고무), 4002190000(기타의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4005101000(비가황 배합고무)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4002209000(부타디엔 고무)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20.8% 감소했다. 다만, 4010110000(금속으로 보강된 컨베이어용 벨트)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40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002209000	55,492	21.1	43,949	-20.8
2	4002190000	42,079	-9.7	38,321	-8.9
3	4005101000	9,553	105.4	12,866	34.7
4	4002590000	14,719	-20.4	11,899	-19.2
5	4002709000	3,734	23.8	4,369	17.0
6	4011101000	6,187	18.1	4,267	-31.0
7	4016999000	4,122	-11.1	3,049	-26.0
8	4005999000	2,867	27.9	3,038	6.0
9	4010110000	169	263.2	1,984	1,076.3
10	4016930000	1,248	18.8	1,915	53.5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4,017.00		12,565.70	

3. 제4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4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40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40류에는 천연고무, 천연고무와 유사한 천연검, 합성고무 라텍스 및 재생고무 등의 일차제품과 웨이스트, 스크랩 등과 고무류의 기타 제품들이 분류된다.

한-베트남 FTA는 제40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과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체로 대부분의 협정은 천연고무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여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두고 있는데, 천연고무 생산과 품목분류구조의 특성상 제품과 재료의 세번이 동일하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생산기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40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대부분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4011.10호, 제4011.20, 4011.40호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55%의 결합기준으로 매우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한 반면 한-베트남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40%로 완화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4001~4010	400110~401039	CTH or RVC(40)	CTH or RVC(40)
4011	401110~401120	CTH or RVC(40)	CTH+RVC(55)
	401130	CTH or RVC(40)	CTH or RVC(40)
	401140	CTH or RVC(40)	CTH+RVC(55)
	401150~401199	CTH or RVC(40)	CTH or RVC(40)
4012~4017	401211~401700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승용차 타이어 ✓ 세번: 4011.10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타이어는 천연고무와 합성고무, 카이어코드지, 비드와이어, 기타 고무 배합재료 및 기타 배합재료 등을 제조공정에 따라 결합 및 조립하여 제조한다.

< 승용차 타이어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합성고무	4002.11	타이어의 주요 원재료
카본블랙	2803.00	타이어의 주요 원재료
타이어코드지	5902.10	타이어의 주요 원재료
스틸코드	7312.10	타이어의 주요 원재료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해 한- 베트남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투입되는 모든 비원산지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상이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제시된 사례에서 투입되는 모든 원재료가 비원산지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제8부 원피·가족·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요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제43류)

제8부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족
	제42류	가족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족

1. 품목분류 체계

제41류에는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족’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1개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 목 번 호	품 명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dreed)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102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parchment-dreed)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이나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4103	그 밖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parchment-dreed)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이나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 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6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7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동물의 가죽[파치먼트가공(parchment-dressed)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2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3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4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가죽(patent leather)과 적층한 페이턴트 가죽(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가죽(metallised leather)
4115	컴퍼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s) 모양이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컴퍼지션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 2002년도에 제4108호부터 제4111호까지의 4개 호는 삭제

2. 제4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41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4107920000(소의 기타 그레인 스플릿), 4114201000(페턴트 레더), 4107120000(소의 전신 그레인 스플릿) 등으로 나타났다. 제41류의 對베트남 '15년 수출실적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HS 제41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107920000	94,233	25.1	104,987	11.4
2	4114201000	35,632	319.4	44,232	24.1
3	4107120000	18,712	-9.4	15,944	-14.8
4	4107990000	26,762	-41.8	15,138	-43.4
5	4107190000	9,254	44.7	5,700	-38.4
6	4107910000	5,258	10.7	5,397	2.6
7	4113300000	5,216	-24.0	4,896	-6.1
8	4104190000	5,191	343.8	3,315	-36.1
9	4114202000	1,650	-47.8	2,733	65.7
10	4112000000	2,371	-8.7	2,688	13.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04,279		205,030	

3. 제4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4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한- 베트남 FTA는 제41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41류에는 모피를 제외한 원피와 가죽이 분류된다. 따라서 제4101호 소의 원피를 제0102호의 소로부터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경이 충족된다. 다만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제4101호)를 수입하여 털을 깎은 후 그 원피(제4101호)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4104.11~4104.19호의 유연처리한 소의 원피(습윤상태의 것)는 제4101호(소의 원피)로부터 생산된다. 동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소의 원피를 수입하여 습윤상태의 유연처리한 소의 원피를 생산하면 이는 제4101호에서 제4104호로 4단위 세번변경이 되었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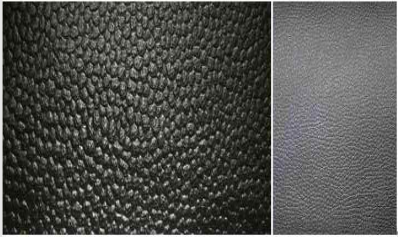
그러나 제4104.41~4104.49호의 유연처리한 소의 원피(건조상태)는 제4104.11호 또는 제410.19호의 원피를 건조하면 완성되는 물품으로 습윤상태의 소 원피(제4104.11호~제4104.19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건조하여도 비원산지재료와 물품의 4단위 세번이 제4104호로 동일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기준에 의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41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41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그레인 스플릿)

✓ 품명: 그레인 스플릿 (Grain split) ✓ 세번: 4107.92 ✓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가죽제조공정에서 스플릿(split)이란 원피를 두 층 또는 세 층씩 상하로 분할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분할하지 않은 원래 두께의 통가죽은 풀 그레인(full grain)이라 부르며, 털이 붙어 있는 표면층을 분할하여 가공한 것은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은면혁)이라고 하며, 은면층 아래의 육면층을 가공한 것을 스플릿(split, 스플릿)이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완성가공을 거친 소가죽의 주요 원재료는 유연처리한 소의 원피이다.

< 그레인 스플릿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유연 처리한 소의 원피	4104	소의 원피를 유연 처리 가공한 것

가죽의 가공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수행된다.

① 준비단계 : 가죽생산에 불필요한 원피의 성분들인 털, 지방, 가용성 단백질 등을 제거하고 단백질 섬유의 망상조직만을 남겨 놓는 공정

② 유연처리 및 크러스트 처리 단계 : 단백질 섬유의 망상조직에 유제약품을 반응시켜 일정한 섬유조직을 만드는 공정.

③ 완성가공 단계 : 유연처리가 끝난 섬유조직에 충실감, 색깔, 유연성 및 윤활감을 주어 사람이 즐겨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표면을 마무리하는 공정

< 소가죽 생산 공정 >

원피		유연처리, 크러스트처리		완성가공
생것, 염장, 건조, 석회처리, 산처리, 기타 보존처리한 원피(탈모.스플릿여부 불문)	⇒	유연제(식물성탄닌, 크로뮴염, 합성화학약품 등) 처리 ⇒ 건조처리(크러스트처리)	⇒	유연.신장.박연.타연.경화.도료도포.은면가공 또는 각인.윤택.연마.왁스처리.흑염.그레이징.광택처리.날염 등 완성가공
HS 제4101호~제4103호		HS 제4104호~제4106호		HS 제4107호, 제4112호~제4113호

동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다. 따라서 투입되는 모든 비원산지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상이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투입되는 원재료인 소의 원피(HS 제4101호)를 수입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유연처리 등 가죽을 만드는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인 그레이н 스플릿(HS 제4107호)을 제조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마찬가지로 유연처리 등 일차 가공된 원피(HS 제4104호)의 경우에도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입하여 추가가공을 통해 그레이н 스플릿(HS 제4107호)을 생산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42류에는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201	동물용 마구(고삐 줄·끈·무릎받이·재갈·안장용 방석·안장에 다는 주머니·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종류는 불문한다)
4202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executive-cases)·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 케이스·권총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시트(sheets)·방직용 섬유재료·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나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 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이나 컴퍼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205	그 밖의 제품[가죽이나 컴퍼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206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s skin)·방광이나 건(腱)의 제품

※ 2007년도에 제4204호는 삭제

2. 제4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42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4205002900(기타가죽제품), 4202221090(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핸드백), 4202121090(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케이스)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4202121090(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케이스)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42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205002900	922	120.6	1,126	22.1
2	4202221090	404	30.1	648	60.4
3	4202121090	24	2.5	146	505.5
4	4202922000	244	76.8	93	-61.9
5	4202122000	36	18	88	147
6	4202321020	222	19.6	87	-60.6
7	4202999000	95	-87.6	86	-9.6
8	4202921090	13	-93.3	27	100.7
9	4202921010	15	-48.1	25	72.5
10	4203309000	7	-55.5	25	257.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982		2,351	

3. 제4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4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한- 베트남 FTA는 제42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42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 베트남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우선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41류의 가죽을 수입하여 마구(제4201호), 핸드백 등 가죽제품(제4202호), 가죽의류(제4203호), 공업용가죽제품(제4204호), 기타의 가죽제품(제4205호)을 생산하여 캐나다로 수출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42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제4203.21호는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는 제4203.21호에 대하여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나 한-베트남 FTA는 이를 완화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으로 변경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4201~4202	420100~420299	CTH or RVC(40)	CTH or RVC(40)
4203	420310	CTH or RVC(40)	CTH or RVC(40)
	420321	CTH or RVC(40)	CC
	420329~420340	CTH or RVC(40)	CTH or RVC(40)
4205~4206	420500~420600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43류에는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며, 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301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꼬리부분·발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제4102호나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4302	모피(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꼬리부분·발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303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4304	인조모피와 그 제품

2. 제4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43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4303102920(라쿤으로 제조된 의류 부속품), 4303102600(여우로 제조된 의류 부속품), 4303102930(어린 양으로 제조된 의류 부속품)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4302209020(라쿤의 모피 절단품)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43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303102920	3,764	638.7	2,271	-39.7
2	4303102600	513	146.5	1,910	272.1
3	4303102930	360	-34.1	603	67.3
4	4303102200	252	283.3	414	63.8
5	4302209020	0	-99.9	208	73185.2
6	4302300000	24	-83.7	202	738.5
7	4304001000	111	-21.4	47	-57.4
8	4303102300	40	315.1	41	3.4
9	4304002000	12	881.8	22	84.1
10	4303101920	85	202	11	-87
해당 류 총 수출금액		5,161		5,729	

3. 제4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43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43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43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베트남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우선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모피(제4301호)를 수입하여 모피(제4302호), 모피의류(제4303호)를 역내에서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인조모피와 그 제품(제4304호)를 생산하고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43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43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세공물과 지조세공물 (제44류~제46류)**

제9부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1. 품목분류 체계

제44류에는 ‘목재와 그 제품, 목탄’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21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

품목번호	품 명
4401	떨나무(통나무.목편.작은 가지.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모양의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s)·펠릿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2	목탄[(셸(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3	원목[겉질이나 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4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split poles),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s)[지팡이·산류(傘類)·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제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휼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4405	목모(wood wool), 목분(wood flour)
4406	궤도용 침목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평삭한 것이나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나 엔드-조인트(end-jointed)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용 단판과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평삭(平削)한 것이나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나 엔드-조인트(end- jointed)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9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s)과 프리즈(friezes)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나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축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나 엔드-조인트(end- jointed)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1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riented strand board, OSB)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wafer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11	섬유판(fibre-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3	고밀도화 목재[블록(blocks) 모양·플레이트(plates) 모양·스트립(strips)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4	목재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415	목재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s)·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재로 만든 케이블드럼(cable-drums), 목재로 만든 팔레트(pallets)·박스패킷과 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팔레트 칼라(pallet collars)
4416	목재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s)·텍(tubs)과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널(staves)을 포함한다]
4417	목재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신발의 목제골
4418	목재로 만든 건축용 건구(建具)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s)·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9	목재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420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inlaid) 목제품, 목재로 만든 신변장 식용품용이나 칼붙이와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caskets)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小像]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재로 만든 가구
4421	그 밖의 목제품

2. 제4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44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4411121000(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중밀도 섬유판), 4411141000(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중밀도 섬유판), 4418400000(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4411121000(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중밀도 섬유판)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39.8% 감소했다. 특히, 4415200000(목재의 케이스·상자)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44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411121000	3,960	36.6	2,384	-39.8
2	4411141000	1,902	33.1	945	-50.3
3	4418400000	60	-34.5	800	1241
4	4418200000	575	6.6	636	10.5
5	4415200000	9	-55.4	574	6237.5
6	4411131000	1,386	40.8	408	-70.5
7	4411922010	193	-80.6	381	97.4
8	4401310000	0	0	215	0
9	4410119000	0	0	197	0
10	4411142010	744	529.3	180	-75.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8,829		6,720	

3. 제4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44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44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4401호~제4403호는 땔나무, 목탄, 원목이 분류되는데 원목의 경우 06류의 살아있는 수목의 상태에서 벌채하거나 절단하여 생산하므로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한다. 또한 원목을 수입하여 땔나무나 목탄, 제재목 등을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44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44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45류에는 ‘코르크(cork)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501	천연코르크(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의 웨이스트, 부순 코르크·알갱이 모양 코르크나 잘게 부순 코르크
4502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거칠게 각을 만든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모양·판 모양·시트(sheets) 모양이나 스트립(strips) 모양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s) ³⁰⁾ 을 포함한다]
4503	천연코르크의 제품
4504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와 응집코르크의 제품

2. 제4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45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실적은 전반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45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503900000	0	0	2	0
2	4504900000	0	-95.8	2	2036
3	4504100000	4	-60.7	1	-67.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		5	

3. 제4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45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30) 일반적으로 블랭크(blanks)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성된 제품과 같이 분류한다. 그러나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는 코르크의 제품(제4503호나 제4504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코르크의 반제품으로 제4502호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제4502호의 용어에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통칙 제2호 가목보다 통칙 제1호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물론 가장자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마개용 코르크는 제4503호나 제4504호로 분류한다.

(구성분석) 제45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한-베트남 FTA는 제45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코르크 제품에 4단위 호의 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가 부여된다. 예를들어 천연코르크(제4501호)를 잘라서 코르크제품(제4502호)을 만들면 호의 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45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45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1. 품목분류 체계

제46류에는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2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601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생산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조물재료·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를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생산품(시트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과 같이 최종 제품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602	바구니세공물(basketware)·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2. 제4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46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4602900000(기타 농세공품·지조세공품)으로 나타났으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증가했다.

HS 제46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602900000	19	-35.2	135	598.3
2	4601999000	0	0	35	0
3	4602120000	0	0	8	0
4	4602111000	0	0	7	0
5	4602112000	0	-100	6	0
	4602199000	0	-100	2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9		193	

3. 제4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4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46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4601호의 쉬트상의 조물제품은 06류의 식물을 수입하거나, 동일한 제46류에 속하는 물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또는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내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46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46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종이와 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47류~제49류)

제10부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 종이나 판지의 제품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와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이프문서와 도면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 품목분류 체계

제47류에는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701	기계목재펄프
4702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4705	기계적 펄핑(pulping)과 화학적 펄핑(pulping)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4706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4707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 제4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47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4707100000(표백하지 않은 회수한 종이나 판지), 4707200000(표백한 회수한 지와 판지), 4707900000(기타의 회수한 종이나 판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4707300000(기계펄프의 회수한 종이나 판지)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47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707100000	847	-3.3	1,063	25.5
2	4707200000	0	-100	1,055	0
3	4707900000	1,326	46.4	918	-30.7
4	4707300000	69	0	631	818.3
5	4703110000	26	0	3	-90.2
6	4705000000	0	0	1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268		3,671	

3. 제4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4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47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47류에 속하는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47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47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48류 종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48류에는 ‘종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의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22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801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모양으로 한정한다)
4802	도포하지 않은 종지와 판지(필기용·인쇄용이나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종이[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한다], 손으로 만든 종지와 판지
4803	화장지나 안면용 티슈스톡·타월이나 냅킨스톡(napkin stock)·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 것(crinkled)·울룩불룩한 것(embossed)·구멍을 뚫은 것(perforated)·표면착색·표면장식이나 인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롤 모양이나 시트모양으로 한정한다]
4804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2호나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5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806	황산지·내지지(耐脂紙)·트레이싱지(tracing papers, 透寫紙)·글라신지(glassine papers)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7	겹붙인 종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808	물결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주름지거나(creped).구겨지거나(crinkled)·울룩불룩하거나(embossed)·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9	카본지·셀프복사지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플레이트(offset plates)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0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지와 판지[결합제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

	고,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로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이나 인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1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s)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이나 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나 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2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 블록(blocks).필터 슬래브(slabs)와 필터 플레이트(plates)
4813	퀄런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소책자(booklets)나 튜브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814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창용 투명지
4816	카본지·셀프복사지·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플레이트(offset plates)(상자에 든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817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pouches).지갑과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8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s)·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로 만든 상자·포장대와 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제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2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 과 이와 유사한 제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s)·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나 그 밖의 것)·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의 앨범과 책 커버
4821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 여부를 불문한다)
4822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로 만든 보빈(bobbins)·스풀(spools)·콤프(cops)과 이와 유사한 권취용 제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 여부를 불

	문한다)
4823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제4815호는 삭제

2. 제4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48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4810929000(그 밖의 종이와 판지), 4821100000(인쇄한 지제의 레이블), 4810921090(기타 그 밖의 종이와 판지)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4810929000(그 밖의 종이와 판지)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28.0%가 증가했다. 특히, 4810191000(기타 무기질로 도포한 지), 4810131000(롤 모양의 무기질로 도포한 지)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48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810929000	26,434	2.9	33,832	28.0
2	4821100000	20,237	-20.5	20,423	0.9
3	4810921090	13,525	5.2	13,540	0.1
4	4810191000	149	33.4	12,056	7,983.2
5	4811590000	7,527	10.7	11,212	49.0
6	4810921010	8,339	33.6	10,333	23.9
7	4810131000	51	292.6	9,710	18,960.2
8	4804590000	11,467	50.7	9,477	-17.4
9	4814201000	7,085	20.6	7,397	4.4
10	4805939000	1,763	1,815.1	7,365	317.7
해당 류 총 수출금액		96,577		135,345	

3. 제4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4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한- 베트남 FTA는 제48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48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 베트남 FTA에서 우선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롤상의 복사지(제4809호)를 잘라서 복사지(제4816호)를 만드는 비교적 간단한 공정의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때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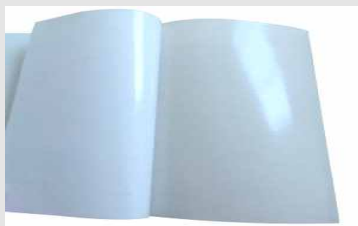
또는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내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48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48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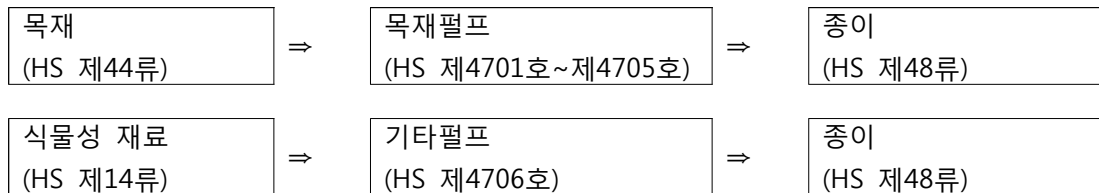
✓ 품명: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 ✓ 세번: 4810.19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지와 판지는 식물성 재료, 폐지, 펄프 등을 가공하여 제조한다.

< 필기용 종이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식물성 재료	제14류	펄프의 원료
목 재	제44류	펄프의 원료
펄 프	제47류	종이의 원료

< 종이 생산공정 >



한- 베트남 제48류에 대하여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투입되는 비원산지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상이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투입되는 원재료인 식물성 재료(HS 제14류), 목재(HS 제44류) 또는 펄프(HS 제47류) 등이 비원산지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이다.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와 그 밖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자문서와 도면

1. 품목분류 체계

제49류에는 ‘인쇄서적·신문·회화와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와 도면’을 분류하며, 다음 표49와 같이 11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901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s)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날장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902	신문·잡지와 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4903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4904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905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4906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의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 복사나 카본 복사한 것 ³¹⁾
4907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이나 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scomanias)]
4909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이나 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나 장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91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2. 제4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49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4911990000(그 밖의 인쇄물), 4901109000(단매의 인쇄서적), 4908909000(기타 전사지) 등으로 나타났으며, 제

31) 제4906호로 분류되는 도안은 제4906호의 용어와 HS 해설서에 의거 ‘손으로 그렸거나 쓴 원본·감광성 종이에 사진 복사한 것과 카본 복사한 것만이 분류되는 것이며, 원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컴퓨터에 의해 생산된 원본은 제4911.91호로 분류되는 것이다.’(관세청 분류 47280-640, 1997. 9. 10)

49류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HS 제49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4911990000	1430	59.1	1018	-28.8
2	4901109000	290	-4.6	549	89.2
3	4908909000	255	669.4	449	76.5
4	4901999000	266	-23	423	58.9
5	4911100000	389	98.6	345	-11.3
6	4908901000	69	51.8	95	39
7	4908100000	358	151.4	64	-82.1
8	4910001000	22	10.2	37	64.8
9	4909000000	0	-100	21	0
10	4903000000	110	-1.9	17	-84.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189		3,018	

3. 제4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4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49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49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베트남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48류에 속하는 종이, 제32류의 잉크 등을 수입하여 원재물을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49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49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제63류)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14개 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에서 ‘yarn’은 실이나 사(絲)란 단어를 적절히 사용한다.

제11부	제50류	견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제52류	면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제56류	워딩·펠트와 부직포, 특수사, 끈·코디지(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개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천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제60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제63류	그 밖의 방직용 섬유 제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와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 제품, 냅마

제50류 견

1. 품목분류 체계

제50류에는 ‘견(silk)’을 분류하며, 다음 표50과 같이 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002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5003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004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005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006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5007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2. 제5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50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5007202030(크렙 데신), 5007901000(기타의 견직물), 5007202090(순 견직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5004000000(견사), 5007209000(기타 견직물)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50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007202030	495	214.5	243	-50.9
2	5007901000	0	0	233	0
3	5007202090	273	6.8	162	-40.7
4	5007201000	71	0	142	99.4
5	5004000000	59	-34.8	127	116.2
6	5007202020	80	7.5	49	-39.3
7	5007209000	8	78.2	38	349.6
8	5007909000	19	-84.6	16	-17.8
9	5007903000	0	0	1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005		1,011	

3. 제5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5001 ~ 50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5004 50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50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 및 제50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 T H (e x , 5004,5005) or RVC40
50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둘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3.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SP or RVC40

(구성분석) 제50류는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누에고치(제5001호)와 생사(제5002호), 견웨이스트(제5003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상 완전생산기준으로 풀이된다. 누에고치 이전의 원료단계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류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사(제5002호)는 누에고치에서 뽑는데 역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누에고치를 수입하여 생사를 뽑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이라 할 수 없다. 결국 역내에서 완전생산한 누에고치에서 생사를 뽑을 경우에만 원산지상품이 된다. 다만 이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원산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

견사(제5004호), 견방사(제5005호)와 같은 사(絲)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생사(제5002호)를 수입하여 견사(제5004호)를 만드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견사(제5004호)를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해도 동일한 호에 분류되므로 이때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매용 견사(제5006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되, 원재료인 견사(제5004호)와 견방사(제5005호)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견직물이 분류되는 제5007호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우선 실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견직물을 짜는 경우 호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생지상태의 견직물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는 경우 동일한 제5007호에 분류되어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할 수 없다. 그러나 가공공정기준에 의해서 생지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염색 및 날염등의 공정을 완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50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대체로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견직물(제5007호)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의 선택기준만 규정하였으나 한-베트남 FTA는 부가가치기준을 추가하여 원산지판단기준의 선택폭을 확장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500100~500300	CC or RVC(40)	CC or RVC(40)
500400	CTH or RVC(40)	CTH or RVC(40)
500500	CTH or RVC(40)	CTH or RVC(40)
500600	CTH(ex, 5004, 5005) or RVC 40	CTH(ex, 5004, 5005) or RVC 40
500710~500790	CTH or SP(최소한 2공정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 or RVC(40)	CTH or SP(최소한 2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1. 품목분류 체계

제51류에는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섬수모)이나 거친 털(조수모),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3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101	양모[카드(carded)하지도 코움(combed)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ed)하지도 코움(combed)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03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5104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5105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ed)하거나 코움(combed)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ed)한 단편 모양의 양모를 포함한다]
5106	카드(carde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7	코움(combe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ed)하거나 코움(combed)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11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gimped)한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 여부를 불문한다]
5111	직물[카드(carde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112	직물[코움(combe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113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 제5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51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5111900000(기타의 카드한 양모·섬수모 직물), 5112191000(코움한 양모·섬수모 직물), 5111300000(기타의 카드한 양모·섬수모 직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5111900000(기타의 카드한 양모·섬수모 직물), 5107209000(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코움한 양모사)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51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111900000	433	740.7	2,646	510.6
2	5112191000	2,338	65.5	1,221	-47.8
3	5111300000	821	126	1,157	40.9
4	5109101000	1,005	-10.9	1,052	4.7
5	5109901000	1,102	635.4	940	-14.7
6	5112111000	276	-16.2	675	144.9
7	5105390000	683	0	491	-28.1
8	5112200000	573	11.9	423	-26.2
9	5107209000	13	-29.2	420	3090.2
10	5105290000	0	0	403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7,244		9,428	

3. 제5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5101 ~ 51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5106 ~ 51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51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ex, 5106~5108) or RVC40
5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5111 ~ 51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둘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3.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SP or RVC40

(구성분석) 제51류는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 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양모(제5101호~5105호)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코움하지 않은 양수모(제5101호, 제5102호)와 그 웨이스트(제5103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완전생산기준으로 풀이된다. 재료와 상품의 세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카드·코움하지 않은 양모(제5101호)를 수입하여 카드·코움하는 경우(제5105호)에는 2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 양수모의 가아넷스톡(제5104호)나 카드·코움한 양수모(제5105호)도 역내에서 완전생산 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양모사 및 섬수모사(제5106호~5108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양모(제5101호, 제5105호)를 수입하여 양모사를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소매용 양모사 및 섬수모사(제5109호)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되 특정원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코움한 양모사(제5106호~5107호)를 수입하여 소매용(제5109호)으로 만드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모직물(제5111호~제5113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되 특정원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우선 실(제5106호~제5109호)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모직물(제5111호~제5113호)을 짜는 경우 호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생지의 모직물(제5111호~제5113호)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는 경우 동일한 호에 분류되어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할 수 없고 가공공정기준에 의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51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직물에 대해 한-베트남 FTA는 부가가치기준을 추가하여 원산지판단기준의 선택폭을 확장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510111~510540	CC or RVC(40)	CC or RVC(40)
510610~510820	CTH or RVC(40)	CTH or RVC(40)
510910	CTH(ex, 5106~5108) or RVC 40	CTH(ex, 5106~5108) or RVC 40
510990	CTH(ex, 5106~5108) or RVC 40	CTH(ex, 5106~5108) or RVC 40
511000	CTH or RVC(40)	CTH or RVC(40)
511111~511300	CTH or SP(최소한 2공정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 or RVC(40)	CTH or SP(최소한 2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

제52류 면

1. 품목분류 체계

제52류에는 ‘면’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2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201	면[카드(carded)하지도 코움(combed)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202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203	면[카드(carded)하거나 코움(combed)한 것으로 한정한다]
5204	면 재봉사(소매용 여부를 불문한다)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12	그 밖의 면직물

2. 제5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52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5210390000(염색한 면직물), 5205231000(면 85% 이상의 면사)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52류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약 10,000천달러가 감소했다.

HS 제52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210390000	3,513	64.5	7,520	114.0
2	5205231000	18,016	34.4	6,257	-65.3
3	5205221000	6,561	1.0	5,878	-10.4
4	5209320000	2,869	-29.5	5,821	102.9
5	5209310000	6,785	-13.3	4,728	-30.3
6	5208591000	3,528	32.8	4,417	25.2
7	5210310000	7,935	-8.4	4,394	-44.6
8	5211320000	5,337	52.4	3,871	-27.5
9	5208320000	3,359	-21.9	3,502	4.3
10	5209390000	2,970	10.7	3,147	6.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60,873		49,535	

3. 제5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5201 ~ 52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5204 ~ 52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52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ex, 5204~5206) or RVC40
5208 ~ 5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52류는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면(제5201호~5203호)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다. 이 물품들은 재료와 상품의 세번이 동일하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완전생산기준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은 역내에서 재배 및 수확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

다.

면사(제5204호~5206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면을 수입하여 면사를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면사를 수입하여 면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지만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역내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한다면 원산지상품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매용 면사(제5207호)의 경우 제5205호 및 제5206호의 면사를 수입하여 소매용으로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들 호의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매용 면사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면직물이 분류되는 제5208호~제5212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다. 따라서 면의 함유량이 85%이상인 면직물(제5208호)을 생산할 때 모사(毛絲)또는 모직물(제5106호~제5113호), 인조섬유(제54류, 제5509호~제5516호)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원재료를 수입하여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52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520100~520300	CC or RVC(40)	CC or RVC(40)
520411~520645	CTH or RVC(40)	CTH or RVC(40)
520710	CTH(ex, 5204~5206) or RVC 40	CTH(ex, 5204~5206) or RVC 40
520790	CTH(ex, 5204~5206) or RVC 40	CTH(ex, 5204~5206) or RVC 40
520811~521225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면직물 ✓ 세번: 5210.39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면직물은 면사를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작한 직물이다.

< 면직물 생산공정 >



< 면직물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면 사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면 사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1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면 사	5207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필라멘트사	5404	인조필라멘트사

면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다. 우선 실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직물을 짜는 경우 주요 면사의 류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 면사가 한-베트남 FTA가 정한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면직물의 생산에 면사는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데 면사와 면직물은 동일한 제 52류에 속하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에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1. 품목분류 체계

제53류에는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을 분류하며, 다음 표53과 같이 10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물품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금액기준으로 0.009 %이며, 그 중에서 수입이 87 %이다. 제5309호·제5311호·제5306호의 순이다.

품목번호	품 명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아마·대마와 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5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 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노일(noils)과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6	아마사
5307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 섬유사
5308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paper yarn)
5309	아마직물
5310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 섬유의 직물
5311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직물, 종이실(paper yarn)로 만든 직물

2. 제5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53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5309190000(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아마직물), 5309290000(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아마직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5311009000(기타 식물성직물), 5309110000(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아마직물)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53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309190000	252	25.5	549	117.5
2	5309290000	507	153	496	-2.1
3	5311002000	0	-100	132	0
4	5311001000	62	-59.7	127	103.8
5	5311009000	4	0	45	985.5
6	5305009000	0	0	20	0
7	5306101000	11	-67.9	10	-9.9
8	5306202000	67	0	10	-84.6
9	5309110000	1	0	5	298.7
10	5309210000	23	0	4	-81.7
해당 류 총 수출금액		927		1,398	

3. 제5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5301 ~ 53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5306 ~ 53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5309 ~ 5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둘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3.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SP or RVC40

(구성분석) 제53류는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마 및 기타 식물성 섬유(제5301호~5305호)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마섬유는 02류의 아마경을 수입하여 섬유를 획득하는 경우 2단위 세번변경이 충족된다. 그러나 생아마(제 5301.10호)를 수입하여 코옴한 아마를 만드는 경우에는 동일한 류에 속하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제5306호~5308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섬유

(제5301호~5305호)를 수입하여 실을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동일한 호에 속하는 사를 수입하여 역내산 재료와 혼합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할 수 없고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원산지판단이 가능하다.

직물이 분류되는 제5309호~제5311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4단위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이다. 우선 실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직물을 짜는 경우 호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생지의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는 경우 동일한 호에 분류되어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할 수 없지만 가공공정기준에 의해 원산지상품이 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53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물에 대해 한-베트남 FTA는 부가가치기준을 추가하여 원산지판단기준의 선택폭을 확장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530110~530500	CC or RVC(40)	CC or RVC(40)
530610~530890	CTH or RVC(40)	CTH or RVC(40)
5309~5310	CTH or SP(최소한 2공정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 or RVC(40)	CTH or SP(최소한 2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것

1. 품목분류 체계

제54류에는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8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 여부를 불문한다)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	재생.반(半)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재생.반(半)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5	재생.반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와 재생.반(半)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6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	재생.반(半)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2. 제5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54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5407612000(염색하지 않은 비텍스처드 직물), 5407420000(염색한 나일론 직물), 5407520000(염색한 텍스처드 직물) 등이며, 특히, 5407430000(서로 다른 색실로 된 나일론 직물)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54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407612000	109,650	11.8	119,187	8.7
2	5407420000	95,664	0.2	72,033	-24.7
3	5407520000	38,728	0.5	40,909	5.6
4	5407692000	31,660	19.8	30,537	-3.5
5	5407729000	33,354	8.7	27,993	-16.1
6	5407614000	27,945	63.4	23,637	-15.4
7	5407922000	18,569	-3.6	23,401	26.0
8	5402479000	15,518	-16.7	13,192	-15.0
9	5407949000	12,268	754.8	12,967	5.7
10	5407430000	707	311.8	12,709	1,697.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84,063		376,565	

3. 제5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5401 ~ 54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5407 54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54류는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54류에는 인조필라멘트가 분류되는데, 제5401호~제5406호 까지는 각종 실이 분류되고 제5407호~제5408호에는 직물이 분류된다.

우선 인조섬유로 만들어진 실(제5401호~제5406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등 다른 류의 물품을 수입하여 인조필라멘트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면(제5201호~제5203호)이나 합성필라멘트트우 등(제5501호~제5507호)를 수입하여 인조필라멘트를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다른 호의 물품을 수입하여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7호)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양모사(제5106호~제5110호) 면사(제5205호~제5206호), 인조필라멘트사(제5401호~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 또는 합성, 재합성 또는 반합성 스펀지 섬유사(제5509호~제5510호)를 수입하여 이를 섞어 직조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54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5401~5406	540110~540600	CC or RVC(40)	CC or RVC(40)
5407~5408	540710~540834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나일론 직물)

✓ 품명: 나일론 직물 ✓ 세번: 5407.42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 제5206호,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 제5509호 및 제55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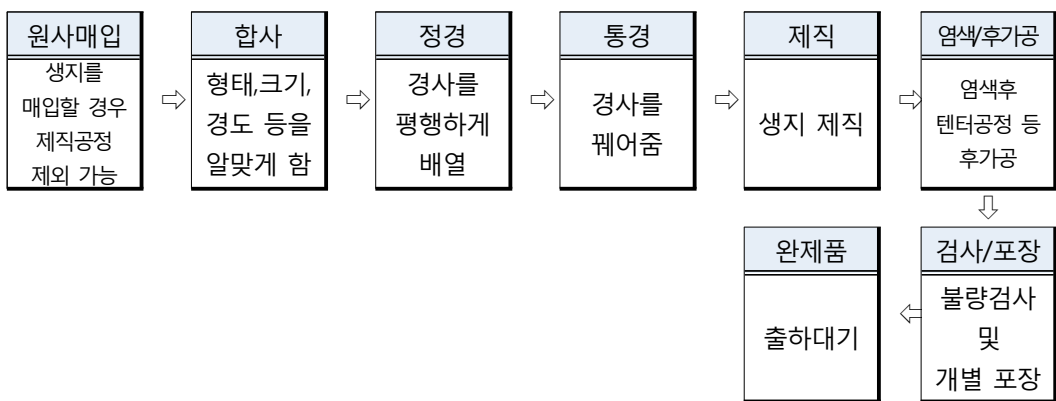
나일론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합성섬유로 1938년 미국 뒤폰사(社)의 캐로더스(Carothers)에 의해 발명되었으며 폴리아미드계에 속한다. 나일론이라 함은 폴리아미드계 합성 섬유에 붙여진 일반명인데, 나라별로 또는 생산회사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거미줄보다 가늘고 마찰에 강하며 인장강도가 다른 섬유보다 월등하다.

나일론직물의 주요자재 내역과 제조공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한중 FTA는 나일론 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제외세번을 포함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거나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일론 직물 생산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인데 아래 표와같이 제 5402호의 합성필라멘트 사를 투입할 경우 제외세번에 해당되어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만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비원산지 사를 투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사와 비원산지 사를 혼합하여 역내부가가치 40%이상을 충족할 수 있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연번	HS	세부품명
1	3204	염료
2	5402	합성필라멘트사, 100% 나일론 사
3	5407	합성필라멘트직물, Woven Fabrics
4	3809.91	완성가공제, 발수제
5	4819	박스
6	4822.90	보빈
7	3402.90	유기계면활성제, 조제/탈호제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1. 품목분류 체계

제55류에는 ‘인조스테이플섬유’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5502	재생.반(半)합성필라멘트 토우(tow)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 · 코움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	재생.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 · 코움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노일(noils) · 실 웨이스트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 · 코움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7	재생.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 · 코움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 여부를 불문한다)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10	재생.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3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4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516	재생.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2. 제5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55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5503209090(폴리에스테르의 합성필라멘트 섬유), 5512191000(염색한 합성스테이플 섬유), 5503201000(폴리에스테르의 합성스테이플 섬유)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5503209090(폴리에스테르의 합성필라멘트 섬유)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20.2% 감소했다.

HS 제55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503209090	57,521	-12.9	45,884	-20.2
2	5512191000	35,544	41.6	34,704	-2.4
3	5503201000	15,638	13.7	18,278	16.9
4	5515999000	9,124	93.4	12,099	32.6
5	5508102000	13,960	-14.2	11,328	-18.8
6	5512999000	7,723	143.6	9,896	28.1
7	5515119000	9,938	20.7	8,552	-13.9
8	5512991000	5,245	83.3	7,058	34.6
9	5512211000	6,888	26.5	6,715	-2.5
10	5516221000	5,411	113.7	6,274	15.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66,992		160,788	

3. 제5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5501 ~ 55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5508 ~ 5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5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508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 T H (e x , 5408~5510) or RVC40
5512 ~ 55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55류는 2단위 및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55류에는 인조스테이플섬유가 분류된다. 제5501호~제5507호까지는 각종 섬유(fiber)가 분류되고 제5508호~제5511호까지 실(yarn)이, 제5512호~제5516호에는 직물(fabric)이 분류된다.

우선 인조로 만들어진 섬유(fiber)(제5501호~제5507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등 다른 류의 물품을 수입하여 합성스테이플섬유 등을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다른 호의 물품을 수입하여 합성스테이플 섬유사 등(제5508호~제5511호)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제511호의 경우 제외세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5408호~5510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수입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다른 호의 물품을 수입하여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제5512호~5516호)의 직물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양모사 및 직물(제5106호~제5113호) 면사 및 면직물(제5205호~제5212호), 인조필라멘트사 및 직물(제5401호~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제5408호) 또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사 및 직물(제5509호~제5516호)를 수입하여 이를 섞어 직조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55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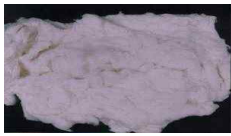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5501~5507	550110~550700	CC or RVC(40)	CC or RVC(40)
5508~5510	550810~551090	CTH or RVC(40)	CTH or RVC(40)
5511	551110~551130	CTH(ex,5508~5510) or RVC 40	CTH(ex,5508~5510) or RVC 40
5512~5516	551211~551694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 품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 세번:5503.20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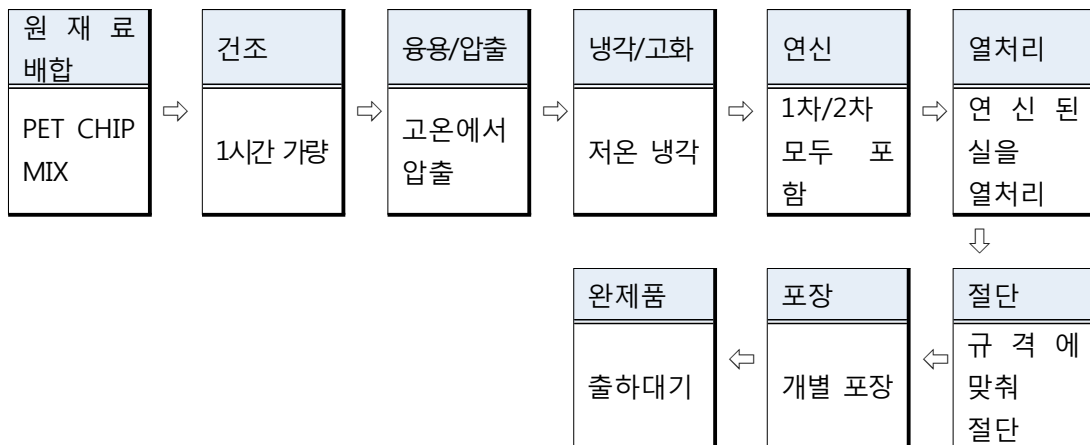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는 합성섬유 중 길이가 짧은 단섬유로 특히, HS 제 5503.20호에 속하는 물품은 카드나 코움 등 방적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말하며, 폴리에스테르로 이루어진 섬유를 말한다.

<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생산공정별 형태 >

종 류	종 류	종 류	종 류
			
칩(폴리에스터 원료)	합성필라멘트 토우	아크릴 스테이플	인조섬유의 웨이스트
			
재생 등 필라멘트 토우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아크릴 톱	방적처리된 스테이플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은 수많은 구멍으로 된 방사구를 통하여 방출되어 제조되는데, 수많은 방사구로부터 방출된 필라멘트(장섬유)는 토우(섬유다발)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이 토우는 짧은 길이로 절단되어 솜 모양으로 정제된 후 스테이플섬유로 가공된다.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생산공정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폴리에스테르	3907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원재료가 되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유연제	3402.90	섬유유연제
합성필라멘트사	5401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원재료가 되는 실
합성필라멘트 토크	5501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원재료가 되는 토크
염료	3204	섬유를 염색하는데 사용하는 유색유기화합물의 색소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fiber)(제5503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등 다른 류의 물품을 수입하여 합성스테이플섬유 등을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이때 동일 류에 속하는 토크(제5501호~제5502호)를 수입하여 합성스테이플 섬유(제5503호)를 생산한다면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 할 수 없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재료라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최소허용기준의 정도만큼은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정도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다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 할 수 없고 부가가치기준에 의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6류 워딩·펠트와 부직포, 특수사, 끈·코디지·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56류에는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특수사, 끈·코디지(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9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601	방직용 섬유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flock).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s)]
5602	펠트(felt)(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4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5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606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405호의 것과 짐프한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607	끈·코디지(cordage)·로프와 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여부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8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코디지(cordage)나 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된 어망과 그 밖의 제품으로 된 그물
5609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코디지(cordage)·로프나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제5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56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5603141000(인조필라멘트의 부직포),

5603940000(기타의 부직포), 5607500000(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끈·로프 및 케이블)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5603119000(인조필라멘트의 부직포)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증가했다.

HS 제56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603141000	14,829	-11.5	15,174	2.3
2	5603940000	20,783	-13.7	14,045	-32.4
3	5607500000	8,779	31.0	10,347	17.9
4	5603121000	4,399	61.1	5,898	34.1
5	5603119000	2,132	149.0	5,508	158.4
6	5607490000	4,880	20.3	4,802	-1.6
7	5603920000	5,799	-6.9	4,292	-26.0
8	5601220000	2,834	-63.2	3,307	16.7
9	5609003000	2,841	39.9	3,263	14.8
10	5607909000	3,348	24.0	2,838	-15.2
해당 류 총 수출금액		70,624		69,474	

3. 제5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5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구성분석) 제56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한-베트남 FTA는 제56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류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워딩,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제5601호~제5606호)를 수입하여 끈, 케이블 등 제품(제5607호~제5609호)를 생산하면 2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56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56	CC or RVC(40)	CC or RVC(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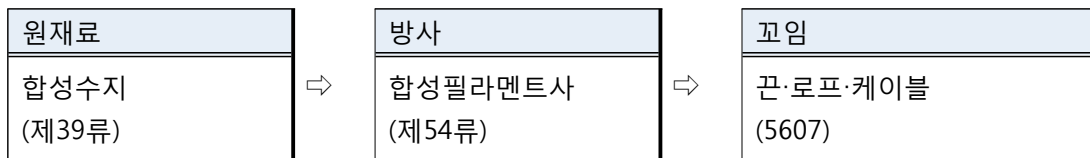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폴리에틸렌의 끈 ✓ 세번: 5607.49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HS 제5607호에 속하는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 등은 일반적으로 포장, 예인, 하적 등에 있어서 묶는 끈으로 사용된다. 이들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섬유는 대마, 황마, 사이살마, 면, 코이어섬유와 합성섬유이며, 지사로도 제조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엮었거나 금속으로 보강된 것에 한한다. 제5607.49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이러한 원재료 중 합성섬유인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제작된 것이다.

HS 제5607호에 분류되는 끈·로프 등은 합성수지로 생산된 합성섬유를 가공하여 실의 형태로 만든 후 이를 꼬아서 만든다.

< 끈·로프·케이블 생산공정 >



< 끈·로프 등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합성필라멘트사	5402	로프의 원재료
합성모노필라멘트사	5404	로프의 원재료

한-베트남 FTA는 폴리에스테르 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다. 동일한 류에 속하지 않는 다른류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류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내에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1. 품목분류 체계

제57류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ed)하거나 플록(flocked)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켈렘(Kelem)·슈맥(Schumacks)·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만든 러그(rugs)를 포함한다]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ed)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터프트(tufted)하거나 플록(flocked)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5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 제5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57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5703300000(터후트한 양탄자와 바닥깔개), 5705000000(기타의 양탄자와 바닥깔개) 등으로 나타났으나, 제57류의 수출실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57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703300000	26	404.6	213	717.7
2	5705000000	107	45.1	106	-1.1
3	5703200000	201	125.3	78	-61.2
4	5703900000	89	414.8	70	-20.8
5	5702990000	0	0	17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23		484	

3. 제5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5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구성분석) 제57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57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베트남 FTA에서 우선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류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한-중 FTA는 제57류 생산에 사용되는 면사(제5205호~5207호), 인조필라멘트(제5401호~5402호, 제5404호, 제5407호~제5408호), 인조스테이플섬유(제5508호~제5516호)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는데 한-베트남 FTA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동일한 류에 속하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 범위내이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57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57	CC or RVC(40)	CC or RVC(40)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 자수천

1. 품목분류 체계

제58류에는 ‘특수직물, 터프트(tufted)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rstries), 트리밍(trimming), 자수천’을 분류하며, 다음 표58과 같이 11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801	파일(pile)직물과 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2	테리타월(terry towelling)직물과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ed)한 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803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5804	튤(tulles)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스트립(strips)이나 모티프(motifs)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5805	고블랭직·플랜더스직·오뷔송직·보베직.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와 자수 가공한 태피스트리[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806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bolducs)]
5807	방직용 섬유로 만든 레이블(labels)·배지(badges)와 이와 유사한 제품[원단 상태·스트립(strips)이나 특정의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8	원단 상태의 브레이드(braids),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tassels)·폼퐁(pompons)과 이와 유사한 제품
5809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810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s)모양이나 모티프(motifs)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811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2. 제5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58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5807101000(레이블), 5806200000(세폭직물), 5804210000(인조섬유의 레이스)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5807101000(레이블)의 수출실적이 절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58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807101000	58,458	4.8	57,735	-1.2
2	5806200000	6,517	53.4	7,766	19.2
3	5804210000	5,134	0.6	5,168	0.6
4	5807901000	7,471	78.1	4,873	-34.8
5	5806320000	4,577	-32.9	3,713	-18.9
6	5810920000	1,575	-2.9	1,554	-1.4
7	5807109000	1,538	57.4	1,538	0.0
8	5804292000	981	-51.6	1,025	4.5
9	5804103000	1,277	28.4	1,017	-20.4
10	5806109000	220	2076.3	1,011	358.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87,748		85,400	

3. 제5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5801 ~ 58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5810 ~ 58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58류는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5801~5809호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 베트남 FTA에서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류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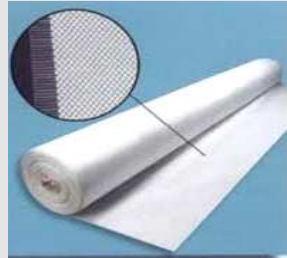
제5810호와 제5811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 모두 수입하여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58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580110~580900	CC or RVC(40)	CC or RVC(40)
581010~581100	CTH or RVC(40)	CTH or RVC(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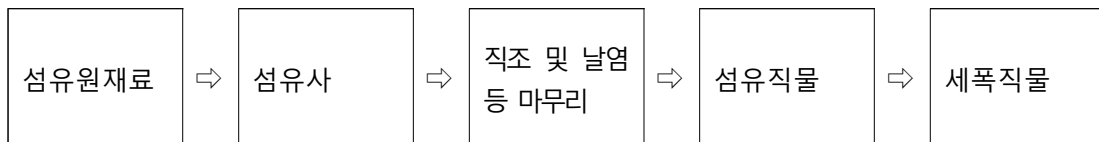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세폭직물 ✓ 세번: 5806.32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HS 제5806호에 속하는 세폭직물은 폭이 30cm이하인 직물로 여기에는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직조 풀칠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 양 가장자리를 짜 맞추어 만든 가이(false selvedge ; 절단된 직물의 가장자리가 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직물)를 가지는 것에 한하며, 관상의 직물 평폭이 30cm 이하의 것,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 바인딩으로서 가장자리를 뿔 때의 폭이 30cm 이하의 것이다.

세폭직물은 광폭의 직물을 절단하거나, 스트립의 가장자리를 단지 감치거나 고무 가공하여 만드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정의 인조섬유 리본의 경우 가장자리를 용융하여 만들기도 한다.

< 세폭직물 생산공정 >



< 세폭직물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견 사	5504	세폭직물의 원재료가 되는 섬유사
견 방 사	5505	

양 모 사	5106~5107	
면 사	5205~5206	
아 마 사	5306	
황 마 사	5307	
인조필라멘트사	5402~5405	

한- 베트남 FTA는 세폭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을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 가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완제품의 세번과 2단위 기준에서 다른 원 재료를 사용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방직공정을 거쳐 세폭직물을 생산할 경우 원 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시된 원재료 내역과 같이 제58류가 아 닌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59류에는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1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나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4	리놀륨(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 깔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905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7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5908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나 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s)과 백열가스 맨틀(mantles)용 관(tubular) 모양의 편물(침투 여부를 불문한다)
5909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하거나 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5910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911	방직용 섬유 생산품과 방직용 섬유 제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으로 한정한다)

2. 제5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59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5903200000(폴리우레탄 피복직물), 5903900000(기타 피복직물), 5911109000(공업용 방직용 섬유제품)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5903200000(폴리우레탄 피복직물)의 '15년 수출실적은 '14년 대비 8.8% 감소했다. 다만, 5911109000(공업용 방직용 섬유제품), 5902900000(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59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5903200000	196,406	13.8	180,336	-8.2
2	5903900000	25,272	42.2	32,074	26.9
3	5911109000	1,702	5,549.8	5,401	217.4
4	5903100000	11,673	61.4	4,716	-59.6
5	5902200000	3,268	71.6	3,582	9.6
6	5911900000	2,045	242.3	2,777	35.8
7	5907009000	5,360	11.0	2,426	-54.7
8	5911200000	820	335.4	2,043	149.2
9	5902900000	164	-70.5	1,592	872.4
10	5906990000	1,569	41.7	1,066	-32.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48,279		236,013	

3. 제5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5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구성분석) 제59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기본적으로 제59류의 물품을 생산할 때 다른 류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면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따라서 서적 장정용 직물(제5901호), 타이어코드 직물(제5902호), 플라스틱 등을 도포한 직물(제5903호~제5908호), 호스등(제5909호), 공업용 섬유제품(제5911호)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59류에 속하지 않는 다른 류의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여도 무방하다.

만약 동일한 류에 속하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 4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59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59	CC or RVC(40)	CC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 품명: 폴리우레탄 직물
- ✓ 세번: 5903.20
- ✓ 원산지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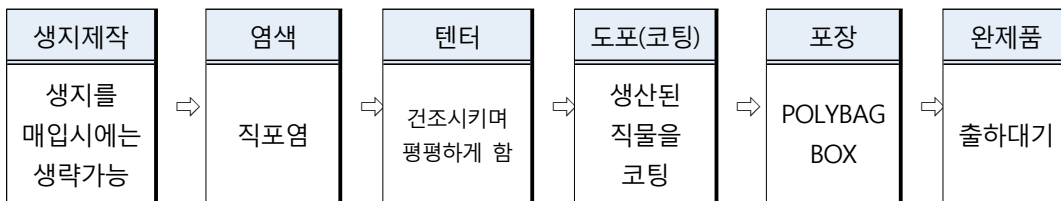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폴리우레탄은 Polyisocyanate 와 Polyalcohol의 반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우레탄 결합의 폴리머이다. 폴리우레탄은 탄성, 내마모성, 가공성이 우수하여 산업 및 소비재, 부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폴리우레탄의 종류에 따라 그 물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용도에 맞는 제품의 선택이 중요하다. 크게 2가지로 구분하면 폴리우레탄은 열가소성(열로 녹여 성형함)과 열경화성(액상을 열로 굳힘)이 있다.

우레탄의 주요 원재료 내역과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매입한 원단을 염색기계에 연결하고 염료, 물, 유안 등을 이용하여 약 100℃에서 염색작업을 수행한다. 이후 말리면서 160~170℃에서 주름 펴기 작업(텐터)을

거치고 염색된 원단을 코팅기계에 연결하여 폴리우레탄으로 코팅한 후 포장하여 완제품으로 출하한다.

연번	HS	세부품명
1	5407	합성필라멘트 직물, 생지, 나일론직물
2	3909.50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레진
3	3204	합성유기착색제, 산성염료
4	3809.91	페인트와 바니시, 발수제, 촉매 등
5	3208	페인트와 바니시, 폴리우레탄레진
6	4822.90	제지용 펄프, 지관
7	3910.00	실리콘수지, 실리콘
8	2803.00	탄소, 카본블랙
9	2902.30	환식탄화수소, 용제
10	3920.62	플라스틱 판, 쉬트, PET 필름
11	3923.29	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12	4821.10	종이, 판지
13	5402.45	합성필라멘트사, 나일론사
14	6006.32	메리야스 편물
15	7016.10	유리세공품, 클래스 비즈

한- 베트남 FTA는 폴리우레탄의 원산지결정기준을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류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약당사국 내에서 방직공정을 거쳐 우레탄을 생산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시된 원재료 내역과 같이 제59류가 아닌 물품을 수입하여 방직공정을 거쳐 우레탄을 생산하게 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제60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1. 품목분류 체계

제60류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명
6001	파일(pile)편물[롱파일(long pile)편물과 테리(terry)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02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제6001호나 제6002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이상인 것으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5	경편물(warp knit fabrics)[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 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2. 제6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60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6004100000(폭 30cm초과, 탄성사 5% 이상의 편물), 6006220000(염색한 면의 편물), 6006320000(염색한 합성섬유의 편물)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6004100000(폭 30cm초과, 탄성사 5% 이상의 편물)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HS 제60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004100000	274,198	0.7	295,441	7.7
2	6006220000	254,550	-10.4	218,560	-14.1
3	6006320000	130,544	14.0	129,588	-0.7
4	6005320000	101,377	19.0	104,420	3.0
5	6006420000	30,851	-7.8	46,759	51.6
6	6001210000	27,508	23.1	27,097	-1.5
7	6006240000	38,220	36.1	25,122	-34.3
8	6006230000	25,072	-5.0	22,023	-12.2
9	6006900000	8,020	300.2	20,568	156.4
10	6006340000	15,568	-30.7	13,286	-14.7
해당 류 총 수출금액		905,908		902,864	

3. 제6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6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60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한-베트남 FTA는 제60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60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60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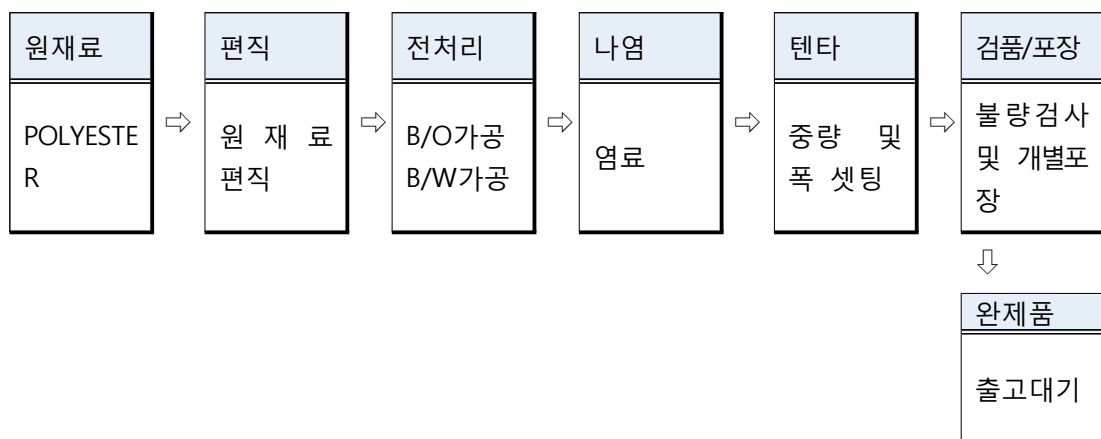
✓ 품명: 메리야스 편물 ✓ 세번: 6004.10.0000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메리야스(Knitted fabric)란 편성기계로 짠 편물로 경사나 위사로서 교착시켜 제직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Loop)를 계속하여 편조된 직물을 말한다.

최근에는 메리야스란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니트로 통용되고 있는데, 동물품은 합성필라멘트사(Polyester Yarn)로 편성한 편직물로 폭이 30cm를 초과하며 탄성사(Spandex Yarn)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인 것이다.

메리야스 편물의 주요 원재료는 폴리에스테르 사, 스판덱스 사와 염색을 위한 각종 염료 등이 포함되는데, 제60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주로 제50류~제55류에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재료 및 사(yarn)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되어 만들어진다.

< 메리야스편물 생산공정 >



< 메리야스 편물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폴리에스테르 사	5402.62	합성필라멘트사로 67데시텍스 미만의 폴리에스테르
스판덱스 사	5402.44	폴리우레탄(Pu) 사
염료	3204.15	건염염료로 날염공정에 사용
표백조제물	3402.90	표백제 비이온계면활성제, 탄산나트륨, 고탄산나트륨, 유기킬레이트로 구성된 백색계 분말상
섬유염색농축액	3809.10	섬유의 날염용 호료로 염색촉진용의 염색캐리어, 드레싱으로 섬유공업 완성가공제

한- 베트남 FTA는 메리야스편물의 원산지 판단시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시한 원재료 내역을 바탕으로 할 때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투입되는 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다르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4단위 세번에 속하는 원재료를 수입한 경우 최소허용기준내의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최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의해서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 품목분류 체계

제61류에는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³²⁾

품목번호	품 명
61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s) · 카코트(car-coats) · 케이프(capes) · 클록(cloaks) · 아노락(anoraks)(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s) · 윈드재킷(wind-jackets)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3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s) · 카코트(car-coats) · 케이프(capes) · 클록(cloaks) · 아노락(anoraks)(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s) · 윈드재킷(wind-jackets)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 · 앙상블(ensembles) · 재킷 · 블레이저(blazers)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 · 앙상블(ensembles) · 재킷 · 블레이저(blazers)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 ·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 · 브리프(briefs) · 나이트셔츠 · 파자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 · 페티코트(petticoats) · 브리프(briefs)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negligees)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9	티셔츠 · 싱글리트(singlets)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32) 제61류의 표제를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에서 2013년도 개정 관세율표에서는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로 변경하였다(제61류 주 제1호도 이와 같다). 그러나 호의 용어는 종전과 같아 이 책에서는 표제와 주는 호의 용어에 맞도록 표기하였다.

	로 한정한다)
6110	저지(jerseys) · 풀오버(pullovers) · 카디건(cardigans) · 웨이스트코트(waistcoats)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1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2	트랙슈트 · 스키슈트와 수영복(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3	의류(제5903호 · 제5906호나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4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5	팬티호스(panty hose) · 타이즈(tights) · 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7	그 밖의 의류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의류나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제6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61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6117900000(의류 부분품), 6117809000(의류 부속품), 6116930000(합성섬유의 장갑)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6116921000(작업용 장갑), 6114909000(기타 의류)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61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117900000	11,118	81.9	15,374	38.3
2	6117809000	16,995	108.1	11,437	-32.7
3	6116930000	6,107	18.9	6,192	1.4
4	6116921000	44	-7.8	558	1182.8
5	6115210000	58	315.5	333	473.1
6	6109101000	187	-49.2	304	62.1
7	6110301000	274	7.9	301	9.7
8	6115990000	344	235	255	-25.9
9	6114909000	9	-60.3	232	2372.5
10	6110110000	167	100.4	198	18.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5,303		35,184	

3. 제6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6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재단 및 봉제) or RVC 40

(구성분석) 제61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과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1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 베트남 FTA에서 우선 2단위 세번 변경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상품과 동일한 류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체약국내에서 재단 및 봉제의 가공은 실행될 것을 요구한다.

만약 61류에 해당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내 이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61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61	CC(재단 및 봉제) or RVC 40	CC(재단 및 봉제) or RVC 40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 품목분류 체계

제62류에는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s) · 카코트(car-coats) · 케이프(capes) · 클록(cloaks)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s) · 윈드재킷(wind-jackets)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s) · 카코트(car-coats) · 케이프(capes) · 클록(cloaks)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s) · 윈드재킷(wind-jackets)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 · 앙상블(ensembles) · 재킷 · 블레이저(blazers)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62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 · 앙상블(ensembles) · 재킷 · 블레이저(blazers)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62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 · 셔츠와 셔츠블라우스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s)와 그 밖의 조끼 · 언더팬츠 · 브리프(briefs) · 나이트셔츠 · 파자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s)와 그 밖의 조끼 · 슬립 · 페티코트(petticoats) · 브리프(briefs)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negligees) · 목욕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9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6210	의류(제5602호 · 제5603호 · 제5903호 · 제5906호나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6211	트랙슈트(track suits) · 스키슈트(ski suits) · 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6212	브래지어 · 거들 · 코르셋(corsets) · 브레이스(braces) · 서스펜더(suspenders) · 가터(garters)와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213	손수건
6214	숄(shawls)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mantillas) · 베일(veils)과 이와 유사한 제품

6215	넥타이류
6216	장갑류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나 의류 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6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62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6217900000(의류 부분품), 6217100000(의류 부속품)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6211431000(인조섬유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 6203490000(남성용 바지)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62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217900000	182,912	29.7	189,304	3.5
2	6217100000	127,738	10.2	139,598	9.3
3	6203430000	6,261	155.8	5,357	-14.4
4	6211331000	1,572	26.0	4,718	200.2
5	6211431000	81	419.1	3,601	4,329.8
6	6203429000	112	-71.4	454	305.3
7	6216009000	233	50.3	326	39.9
8	6203490000	13	42.3	320	2286
9	6204629000	35	-71.7	236	566.6
10	6212900000	547	239.3	218	-60.2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19,504		344,132	

3. 제6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6201 ~ 6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재단 및 봉제) or RVC40
6213 62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6215 ~ 62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재단 및 봉제) or RVC40

(구성분석) 제62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62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베트남 FTA에서 기본적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상품과 동일한 류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6213호와 제6214호를 제외한 모든 물품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역내에서 재단 및 봉제공정도 함께 수행될 것을 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62류에 해당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예를들어 제6217호의 견장을 수입하여 제6201호의 남성용 방한 외투에 부착하는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견장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최소허용기준에 의해 비원산지재료가 일부 허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62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6213호와 제6214호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는 원재료의 제한과 가공공정기준을 함께 충족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나 한-베트남 FTA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6201~6212	CC(재단 및 봉제) or RVC 40	CC(재단 및 봉제) or RVC 40
621320~621490	CC or RVC(40)	CC(ex 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801~5802, ch 60)+재단 및 봉제 or RVC 40
621510~621790	CC(재단 및 봉제) or RVC 40	CC(재단 및 봉제) or RVC 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합성섬유로 만든 드레스)

✓ 품명: 남성용바지

✓ 세번: 6203.43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바지는 보통 제54류 및 제55류의 직물을 재단 및 봉제하여 만든다. 주로 폴리에스테르제의 직물(제5407호)과 아세테이트 직물(5516호)을 이용하여 재단하고 봉제를 통해 바지를 제작하게 된다.

합성섬유 직물(제54류, 제55류)과 봉제에 사용되는 실(제54류~제55류)을 수입하여 이를 역내에서 재단 및 봉제가공을 거쳐 바지를 완성하는 경우 수입 원재료의 2단위 세번과 완성품의 세번이 상이하고 역내에서 재단 및 봉제공정을 수행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그리고 제6203.43호의 남성용 바지는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가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판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제63류 그 밖의 방직용 섬유 제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와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냅마

1. 품목분류 체계

제63류에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 제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와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냅마’를 분류하며, 세 개의 절에 속한 10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①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명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s)
6302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
6303	커튼[드레이프(drapes)를 포함한다].실내용 블라인드(blinds),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s)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305	포장용 빈 포대
6306	방수포(tarpaulins).차양(awnings)과 차일(sunblinds), 텐트, 돛[보트.세일보트(sailboard)나 랜드크라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s)을 포함한다]

② 세트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명
6308	러그(rugs)용 · 태피스트리(tapestries)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이나 서비에트(serviettes)용 직물과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 유무를 불문한다)나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③ 사용하던 의류와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냅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명
6309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
6310	냅마(사용하던 것이나 신제품으로 한정한다)와 끈 · 코디지(cordage) · 로프나 케이블의 스크랩(scrap)과 끈 · 코디지(cordage) · 로프나 케이블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 제6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63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6307909000(기타의 제품), 6307100000(청소용 포), 6309000000(구제의류)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6305320000(인조 방직용 섬유의 중간 벌크컨테이너)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63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307909000	4,500	-8.9	4,766	5.9
2	6307100000	919	1.8	1,907	107.5
3	6309000000	2,336	-92.6	1,870	-20.0
4	6307901000	875	0.7	1,132	29.4
5	6304990000	1,251	23909.9	631	-49.6
6	6307200000	273	45.3	577	111.6
7	6303920000	100	-6.7	232	131.7
8	6305320000	12	0	132	1012.3
9	6310100000	149	-64.4	112	-24.4
10	6303990000	248	334.6	105	-57.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0,663		11,464	

3. 제6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6301 ~ 63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6309 ~ 631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구성분석) 제63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309호와 제6310호를 제외한 제63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들어 모포, 린넨제품(제6301호~제6302호)의 경우 모직물(제5111호~제5113호), 면직물(제5208호~제5212호), 기타 식물성직물(제5310호~제5311호) 등 각종 직물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면 2단위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제6309호의 구제의류와 제6310호의 냅마 및 스크랩은 완전생산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체약국에서 수집되고 선정포장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한-아세안 FTA는 제6301호부터 제6308호의 물품에 대하여 주요 원재료를 제외 세번으로 규정하고 가공공정기준도 함께 충족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나 한-베트남 FTA는 이를 삭제하여 완화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6301~6308	CC or RVC(40)	CC(ex 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801~5802, ch 60)+재단 및 봉제 or RVC 40
6309~6310	WO	WO 1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인모(人毛)제품(제64류~제67류)

제12부에는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s)·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羽毛]와 그 제품, 조화(造花), 인모(人毛)제품’을 분류하며, 다음 표64-1과 같이 제64류부터 제67류까지 4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 부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s).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造花), 인모(人毛)제품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제64류는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명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그(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6402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이나 콤포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이나 콤포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5	그 밖의 신발류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 쿠션(heel cushions)과 이와 유사한 제품, 각반.레깅스(leggings)와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

2. 제6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64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6406909090(그 밖의 신발 부분품), 6406102000(신발의 갑피 부분품), 6406201000(신발의 바깥바닥)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6406909090(그 밖의 신발 부분품)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2.8% 감소했다.

HS 제64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406909090	65,496	15.6	57,112	-12.8
2	6406102000	7,670	106.9	12,361	61.2
3	6406201000	6,638	-42.9	8,813	32.8
4	6406101000	2,153	43.8	3,191	48.2
5	6406909010	1,941	-26.3	1,630	-16.0
6	6402999000	578	-48.5	726	25.6
7	6405900000	220	-4.7	641	191.8
8	6403400000	374	209.6	440	17.7
9	6406202000	2,326	43.9	390	-83.3
10	6404199000	51	-80.9	165	223.6
해당 류 총 수출금액		87,447		85,469	

3. 제6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64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64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4류는 다양한 종류의 신발(제6401호~제6405호)와 신발의부분품(제6406호)로 분류된다. 특히 제6406호는 신발의 주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갑피, 안창, 힐쿠션 등이 분류된다.

우선 제64류의 모든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제6406호의 신발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신발(제6401호~제6405호)을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6406호 신발부분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고무, 플라스틱, 가죽과 같은 다른 류의 재료들을 수입하여 갑피 등을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동에 무리가 없으

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64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64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신발 안창

✓ 세번: 6406.90

✓ 원산지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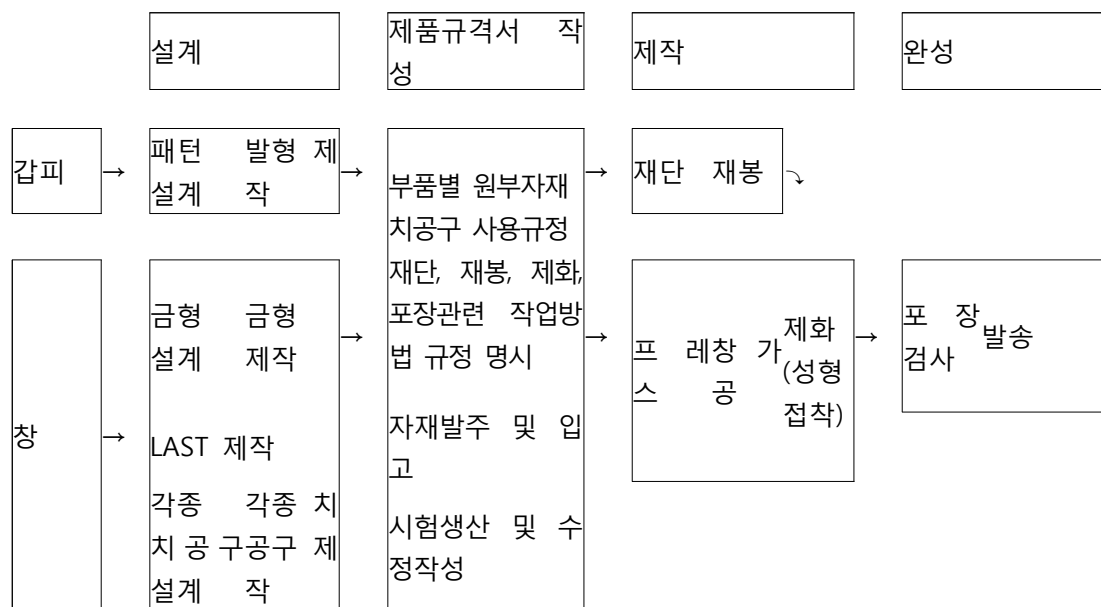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안창은 신발의 내부면을 구성하는 신발 부분품으로 주로 체중을 받쳐주는 쿠션 역할을 하여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완충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 소재로는 합성섬유와 고무가 많이 쓰이며 특히 혼합고무가 주로 이용된다.

< 신발류 부분품 생산공정 >



< 신발 안창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폴리에스테르직물	5512.19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Insole 의 외피부분
PE Foam	3921.19	폴리에틸렌 판상으로 Insole 의 몸통부분
EVA Sponge	3921.19	안창에 쿠션을 주는 스펀지. Insole의 쿠션부분
열가소성 고무	4005.91	Insole의 앞부분에 부착되는 부품
PP Cap	3920.99	폴리프로필렌 캡. Insole의 뒷굽치를 보강하는 부품

신발 안창의 경우 한-베트남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신발안창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들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인 HS 제6406호가 아닌 비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신발안창을 제조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제시된 원재료 구성내역을 바탕으로 할 때 동일한 호의 재료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모두 역외에서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더라도 4단위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데 무리가 없다.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제65류에는 ‘모자류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명
6501	모체[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는 것으로서 모자챙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송(manchons)[슬릿망송(slit manchons)을 포함한다]
6502	모체[각종 재료의 스트립(strips)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성형하지 않은 것이나 모자챙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은 것이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04	모자와 그 밖의 헤드기어(headgear) ³³⁾ [각종 재료의 스트립(strips)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이나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05	모자와 그 밖의 헤드기어(headgear)[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과 원단 상태[스트립(strips)상태는 제외한다]의 레이스·펠트(felts)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직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이나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안을 댄 것이나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06	그 밖의 헤드기어(headgear)(안을 댄 것이나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07	헤드밴드(head-bands)·내장재·커버·해트 파운데이션(hat foundations)·해트 프레임(hat frames)·챙과 턱 끈

※ 2007년도에 제6503호는 삭제

2. 제6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65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6507000000(모자 부착품), 6506100000(안전모자)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6507000000(모자 부착품)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4.7% 감소했다.

HS 제65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33) 현행 관세율표에서는 ‘모자’라고 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hats and other headgear’로 되어 있어 이와 같이 표기하였다. 제65류 표제는 ‘headgear’로 ‘모자류’라 하였다.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507000000	23,757	39.1	20,262	-14.7
2	6506100000	1,802	136.8	3,237	79.6
3	6506999000	213	-45.7	627	194.2
4	6505009021	33	953.3	76	128.4
5	6505009090	8	-94.8	22	194.8
6	6506910000	28	0	9	-67.7
7	6505009029	6	-3.9	1	-89.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5,847		24,234	

3. 제6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65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65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65류에는 모자와 모자의 부속품이 분류된다. 제65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우선 한-베트남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6502호의 모체를 수입하여 성형하거나 차양을 붙여서 모자(제6504호)를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65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65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66류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 ·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제66류에는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s) ·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3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명
6601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 · 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6602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s)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6603	제6601호나 제6602호의 제품의 부분품 · 트리밍(trimmings)과 부속품

2. 제6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66류의 對베트남 수출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66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601999000	24	83.6	43	76.5
2	6603900000	0	-100	28	0
3	6601992000	2	0	7	220.2
4	6603200000	0	0	6	0
5	6601991000	5	0	4	-30.8
6	6601910000	4	0	1	-85.6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5		89	

3. 제66류의 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6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66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6류에는 우산과 지팡이 및 그 부속품이 분류된다. 제66류에 속하

는 모든 물품은 한- 베트남 FTA에서 우선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6503호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성형하여 우산(제6601호)이나 지팡이(제6602호)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다.

또는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66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66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67류 조제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造花),인모(人毛)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67류에는 ‘조제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인모(人毛, 사람머리카락)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명
6701	새의 깃털(羽毛)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quills)와 깃촉(scapes)은 제외한다]
6702	인조(人造)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人造) 꽃·잎이나 과실로 만든 제품
6703	인모(人毛)(정돈·표백하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그 밖의 동물의 털(animal hairs)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6704	가발·가수염·눈썹과 속눈썹·스위치(switches)와 이와 유사한 것[인모(人毛)·동물의 털(animal hairs)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인모(人毛)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제6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67류의 對베트남 수출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67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704199000	66	71.7	52	-20.7
2	6704194000	8	-17.7	19	144.8
3	6703009000	0	0	7	0
4	6704900000	4	0	1	-6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78		79	

3. 제6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6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67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7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 베트남 FTA에서 우선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모(제6701호), 조화(제6702호), 인모(제6703호), 가발(제6704호)의 경우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인모(제6703호)를 수입하여 가발(제 6704호)을 만들면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또는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최소허용기준 의 범위 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 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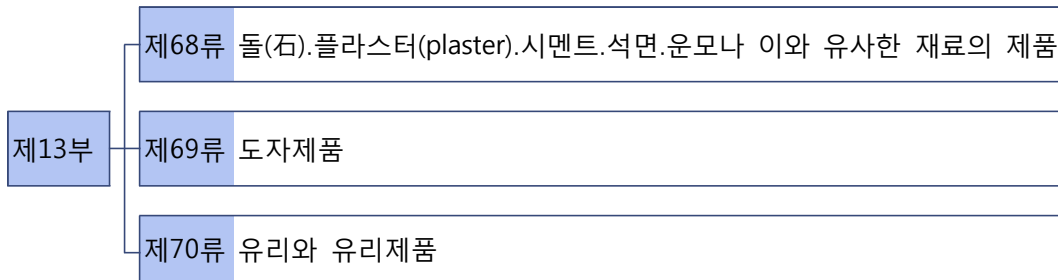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67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 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67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13부 돌(石)·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
자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제68류~제70류)**

제13부에는 ‘석(石)·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3개 류로 구성되어 있다



1. 품목분류 체계

제68류에는 ‘돌[石].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
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6801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6802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
6803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6804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버리기용·광택용·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6805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6806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7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6808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섬유·짚·목재의 대패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6809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제품
6810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1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직물·의류·모자·신발·개스킷(gasket)](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6811호와 제681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3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롤·스트립(strip)·세그먼트·디스크(disc)와 셔(washer)·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그 밖의 광물성 재료·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4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 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제6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68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6815101000(비전기용 흑연제품), 6805100000(방직용 섬유 직물제의 연마포·연마지), 6804220000(밀스톤·그라인딩휠)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6815101000(비전기용 흑연제품)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31.2% 감소했다.

HS 제68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815101000	7,504	36.7	5,163	-31.2
2	6805100000	4,696	8.4	4,777	1.7
3	6804220000	2,507	71.6	4,531	80.7
4	6815109000	949	0.8	3,503	269.3
5	6815102000	989	83.2	2,135	115.9
6	6804210000	310	33.6	1,533	395.1
7	6806109000	784	-46.3	1,499	91.1
8	6806204000	1,030	223.8	1,406	36.5
9	6805200000	923	-19.3	1,310	41.9
10	6806909000	1,142	47.8	1,231	7.7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0,834		27,088	

3. 제6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6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68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8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베트남 FTA는 제28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면섬유의 의류 등 제품(제6812.50호)의 경우 당해 호 하위에 속하는 소호의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6단위 세번변경은 발생하지만 4단위세번은 동일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68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대체로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6802.91호에 대해 한-아세안 FTA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반면 한-아세안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여 보다 완화된 규정을 선택하였다.

또한 제6811.40호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는 동일한 소호에 속하는 물품을 구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달리한 반면 한-베트남 FTA는 이러한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도록 완화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6801	680100	CTH or RVC(40)	CTH or RVC(40)
6802	680210~680229	CTH or RVC(40)	CTH or RVC(40)
	680291	CTH or RVC(40)	CC or RVC(40)
	680292~680299	CTH or RVC(40)	CTH or RVC(40)
6803~6810	680300~681099	CTH or RVC(40)	CTH or RVC(40)
6811	681140	CTH or RVC(40)	- 기타 슈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CC or RVC (40) -기타: CTH or RVC(40)
	681181	CTH or RVC(40)	CTH or RVC(40)
	681182	CTH or RVC(40)	CC or RVC(40)
	681189	CTH or RVC(40)	CTH or RVC(40)
6812~6815	61280~681599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69류 도자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69류에는 ‘도자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절에 속한 1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① 규산질의 화석분말이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6901	벽돌 · 블록 · 타일과 그 밖의 도제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 · 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6902	내화벽돌 · 내화블록 · 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s) · 도가니 · 머플(muffles) · 노즐 · 플러그 · 서포트(supports) · 회분접시(cupels) · 관(tubes) · 덮개(sheaths)와 막대(rod)](규산질의 화석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② 그 밖의 도자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6904	도자로 만든 건축용 벽돌 · 바닥 깔개용 블록 · 서포트타일(support tiles)이나 필러타일(filler tiles)과 이와 유사한 것
6905	기와 · 굴뚝 통 · 굴뚝 갓 · 굴뚝용 내장재 · 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로 만든 건설용품
6906	도자로 만든 관(管) · 도관(導管) · 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6907	도자로 만든 판석과 포장(鋪裝)용 · 노용(爐用)이나 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로 만든 모자이크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뒷면의 보강 여부를 불문한다)
6908	도자로 만든 판석과 포장(鋪裝)용 · 노용(爐用)이나 벽용 타일(유약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로 만든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의 보강 여부를 불문한다)
6909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이나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로 만든 항아리 · 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6910	도자로 만든 설거지통 · 세면대 · 세면대용 받침 · 목욕통 · 비데 · 수세식 변기통 · 수세식변기용 물통 · 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1	자기(porcelain or china)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
6912	도자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자기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6913	도자로 만든 작은 조각상(小像)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914	도자로 만든 그 밖의 제품

2. 제6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69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6909190000(이화학·공업용 도자제품), 6914909000(도자제의 기타 제품), 6912003000(도자제의 화장용품)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6909900000(이화학·공업용 도자제품), 6906001000(도자제의 관)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69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6909190000	1,732	59.8	4,125	138.1
2	6914909000	603	144.0	2,662	341.6
3	6912003000	1,582	97.5	2,070	30.9
4	6902909000	353	-33.4	368	4.2
5	6909900000	2	-93.5	326	13571.8
6	6906001000	0	0	243	57177.4
7	6903209000	21	44	156	640.4
8	6911109000	55	-25.4	143	160.4
9	6902200000	114	-18.9	140	23.1
10	6903205000	24	0	137	462.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486		10,370	

3. 제6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6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69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9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 베트남 FTA에서 우선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6907호의 도자제 판석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유약을 시공하여 제 6908호의 도자제 제품으로 완성하면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 또는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69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69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70류에는 ‘유리와 유리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9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7001	깨진 유리(cullet)와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유리 괴(mass)
7002	유리로 만든 구(球)[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s)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3	주입법(鑄入法)과 롤법(rolled)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s)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s)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4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6	제7003호·제7004호나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8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multiple-walled insulating units)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010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s)·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ampoules)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이나 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1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밸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전구·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4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7015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 여부를 불문한다) 유리 [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segments)
7016	압축하거나(pressed) 주형한(moulded) 유리로 만든 포장용(鋪裝用) 블록(blocks)·슬래브(slabs)·벽돌·스퀘어(squares)·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세공품(뒷면의 보강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s)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s)·패널(panels)·플레이트(plates)·셸(shells)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包)유리
7017	실험실용·위생용이나 약제용 유리제품(눈금 유무를 불문한다)
70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s)·모조진주·모조귀석이나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소상(小像)과 램프에 사용되는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s)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
702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2007년도에 제7012호는 삭제

2. 제7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70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7007191000(강화 안전유리), 7006009000(가공한 유리쉬트), 7019909000(유리섬유)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7007191000(강화 안전유리)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170.7% 증가한 51,745천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70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007191000	4,072	-45.1	51,745	1,170.7
2	7006009000	4,473	4,276.1	14,465	223.4
3	7019909000	1,656	143.4	4,429	167.4
4	7019901000	911	22.4	2,458	169.9
5	7010900000	1,584	5.0	2,020	27.5
6	7019110000	1,431	1,016.4	1,725	20.5
7	7019310000	1,195	-60.2	1,642	37.3
8	7020009000	1,378	147.1	1,634	18.5
9	7019590000	316	-1.7	955	202.7
10	7013490000	998	8.2	909	-8.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8,014		81,982	

3. 제7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7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70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70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 베트남 FTA에서 루선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리제품의 원재료인 유리쉬트(제7004호~ 제7006호를 수입하여 제 7007 호의 안전유리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제7019.52호의 폭이 30cm 초과하는 유리섬유 직물을 수입하여 제 7019.51호의 폭이 30cm 이하인 품목을 만드는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내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70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70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14부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 귀석이나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제71류)

제71류 살아있는 동물

1. 품목분류 체계

① 천연진주나 양식진주와 귀석이나 반귀석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명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이나 등급을 매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썬 것 · 장착하거나 세트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썬 것을 포함한다)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장착되거나 세트된 것은 제외한다)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이나 등급을 매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썬 것 · 장착되거나 세트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썬 것을 포함한다)
7104	합성한 것이나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이나 등급을 매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썬 것 · 장착되거나 세트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썬 것을 포함한다)
7105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이나 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②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명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 반가공 모양이나 가루 모양으로 한정한다)
7107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인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 반가공 모양이나 가루 모양으로 한정한다)
7109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인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 · 반가공 모양이나 가루 모양으로 한정한다)
7111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 · 은이나 금(반가공인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신변장식용품·금세공품·은세공품과 그 밖의 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4	금세공품이나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5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7116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합성한 것이나 재생한 것)의 제품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7118	주화

2. 제7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71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7113192000(귀금속제 신변장식용품), 7108131010(반도체 제조용 금), 7108129000(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의 금)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7113192000(귀금속제 신변장식용품)의 '15년 수출 실적은 전년대비 37.5% 증가했다.

HS 제71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113192000	7,464	10.4	10,262	37.5
2	7108131010	4,068	58.7	6,592	62.0
3	7108129000	12,798	3.0	3,600	-71.9
4	7106929000	253	1,008.7	1,471	481.3
5	7106922000	475	87.0	1,250	163.2
6	7117199000	1,283	75.5	1,147	-10.6
7	7108131090	0	-100	799	0
8	7104909090	482	17.2	409	-15
9	7106911000	82	2024.9	324	294.3
10	7111000000	267	0	307	14.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7,172		26,161	

3. 제7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7101.10 7101.2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7101.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7102 ~ 71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71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71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7106 ~ 71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711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7113.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7113.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711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7114.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711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711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711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71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711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7117.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711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71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71류는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71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한- 베트남 FTA에서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천연진주(제7101.10호)와 미가공의 양식진주(제7101.21호)는 완전생산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역내에서 채취되거나 양식과정을 거쳐 획득된 진주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공한 양식진주(제7101.22호)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미가공 양식진주(제7101.21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면 6단위 세번이 변동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가공한 양식진주의 경우 주요원재료의 역외산 사용이 자유롭다고 풀이된다.

다이아몬드 등의 귀석(7102~7104호)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예를들어 제7102.10호의 선별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채취된 초기상태의 것으로 세번변경기준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완전생산기

준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7102.21~29호의 공업용 다이아몬드나 제7102.31~39호의 공업용이 아닌 다이아몬드는 선별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로부터 생산되므로 선별하지 않는 다이아몬드(제7201.10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 7103호와 제7104호 역시 동일한 구조이다.

금(제7108호)의 경우 화폐용이 아닌 가공하지 않은 금(제7108.12호)을 역내에서 가공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71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7101.22호는 한-아세안 FTA는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였으나, 한-베트남 FTA는 6단위 세번변경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으로 규정하여 원산지판단 기준의 선택적 활용이 가능토록 완화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7101	710110	WO	WO 1
	710121	WO	WO 1
	710122	CTSH or RVC(40)	WO 1
7102~7104	710210~710490	CTSH or RVC(40)	CTSH or RVC(40)
7105	710510	CTH or RVC(40)	CTH or RVC(40)
	710590	CTSH or RVC(40)	CTSH or RVC(40)
7106~7112	710610~711299	CTH or RVC(40)	CTH or RVC(40)
7113	711311	CTSH or RVC(40)	CTSH or RVC(40)
	711319	CTH or RVC(40)	CTH or RVC(40)
	711320	CTSH or RVC(40)	CTSH or RVC(40)
7114	711411	CTSH or RVC(40)	CTSH or RVC(40)
	711419	CTH or RVC(40)	CTH or RVC(40)
	711420	CTSH or RVC(40)	CTSH or RVC(40)
7115	711510	CTH or RVC(40)	CTH or RVC(40)
	711590	CTSH or RVC(40)	CTSH or RVC(40)
7116	711610~711620	CTSH or RVC(40)	CTSH or RVC(40)
7117	711711	CTSH or RVC(40)	CTSH or RVC(40)
	711719	CTH or RVC(40)	CTH or RVC(40)
	711790	CTSH or RVC(40)	CTSH or RVC(40)
7118	711810~711890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제72류~제83류)

제15부	제72류	철강
	제73류	철강의 제품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8류	납과 그 제품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s), 이들의 제품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제83류	비금속(卑金屬)로 만든 각종 제품

제72류 철강

1. 품목분류 체계

① 일차재료,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의 생산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명
7201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피그(pig) · 블록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
7202	합금철(ferro-alloys)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 생산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 생산품[덩어리(lumps) · 펠릿(pellets)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분의 99.94인 철[덩어리(lumps)·펠릿(pellets)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7205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과 철강으로 한정한다]

② 철과 비합금강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熱間壓延)한 것으로 한정하고, 입히거나(clad)·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입히거나(clad)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입히거나(clad)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입히거나(clad)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입히거나(clad)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熱間壓延)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압연(熱間壓延)·열간인발(熱間引拔)이나 열간압출(熱間壓出)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延)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③ 스테인리스강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 모양으로 한정한다]와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熱間壓延)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④ 그 밖의 합금강과 합금이나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압연(熱間壓延)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기타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hollow drill bars)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

2. 제7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72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7208399000(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 7219131090(스테인레스강 판), 7208389000(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7208399000(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24.7% 감소했다.

HS 제72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208399000	238,216	-8.3	179,341	-24.7
2	7219131090	128,513	7.4	163,805	27.5
3	7208389000	105,876	-14.7	90,350	-14.7
4	7208519000	108,762	52.8	69,848	-35.8
5	7213919000	55,731	24.0	51,779	-7.1
6	7208511000	24,831	18.9	34,016	37.0
7	7210702000	24,311	1.1	31,746	30.6
8	7219121090	27,681	-33.8	30,804	11.3
9	7219331090	17,152	-31.0	23,895	39.3
10	7209179000	14,441	201.4	14,606	1.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745,514		690,190	

3. 제7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7201 ~ 72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7219.11 ~ 7219.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7219.31 ~ 721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7220.11 7220.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ex, 7219) or RVC40
7220.20 7220.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7221 ~ 7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72류는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72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한- 베트남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광석을 수입하여 선철과 페로얼로이드(제7201호~제7203호)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이 된다. 그리고 제7204호의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철광석을 수입하여 선철과 페로얼로이드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그밖의 철강제품들을 수입하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여도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잉곳(제7206호)를 수입하여 반제품(제7207호)를 생산하는 경우 한-중 FTA와 같은 일부협정은 잉곳은 제외세번으로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엄격한 결정기준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베트남 FTA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잉곳을 수입하여 반제품을 생산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판(제7220.11~7220.12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제외세번을 포함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다. 따라서 원재료인 스테인레스 강(제7219호)를 수입하여 판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할 수 없고,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원산지상품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반면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판(제7220.20~7220.90호)은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스테인레스 강의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72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대체로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7209호의 평판압연제품과 제7220호 스테인레스 판에 대해 아세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 기준을 선택한 반면 베트남과의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원산지기준을 완화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7201~7208	7201~7208	CTH or RVC(40)	CTH or RVC(40)
7209	7209	CTH or RVC(40)	CTH
7210~7219	7210~7219	CTH or RVC(40)	CTH or RVC(40)
7220	722011	CTH(ex,72.19) or RVC(40)	CTH(ex. 7219)
	722012	CTH(ex,72.19) or RVC(40)	CTH(ex. 7219)
	722020~722090	CTH or RVC(40)	CTH or RVC(40)
7221~7229	722100~722990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철강판 ✓ 세번: 7208.51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철을 만드는 단계를 크게 제선, 제강, 압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선공정은 쉽게 말해 철광석을 녹여서 쇳물로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철의 원료인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하여 용광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단한 덩어리의 상태로 사전처리를 한

다. 이렇게 사전처리한 재료들을 용광로에서 녹여 쇳물을 만들게 된다.

다음으로 제강공정은 녹인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철을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쇳물을 토피토카라고 불리는 장치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의 쇳물로 만들고 개별 철강제품에 맞도록 정밀하게 조정을 진행한다. 이후 액체 상태인 쇳물을 일정한 틀에 흘려보내 두꺼운 널빤지 형태의 슬래브(Slab), 직사각형의 막대형태의 블룸(bloom), 가늘고 긴 막대형태의 빌렛(billet)으로 만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압연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압연공정은 다양한 종류의 철강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다. 슬래브를 가열하여 회전하는 roll사이를 통과시키면 얇고 긴 형태의 철만으로 만들 수 있다. 보통 압연공정을 마친 제품들을 열연제품과 냉연제품으로 구분한다. 열연제품은 주로 건축자재 및 산업용 파이프로 사용되고, 냉연제품은 일반가정용품, 자동차 플레임등에 사용된다.

한-베트남 FTA는 철강판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열연철강판의 생산에 사용되는 주재료인 제7207호의 철강반제품(슬래브, 블룸)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압연과정을 거쳐 판을 생산하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제73류 철강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천공이나 조립 여부를 불문한다), 용접된 형강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s) · 체크레일(check-rails)와 치형레일(rack rails) ³⁴ · 스위치블레이드(switch blades) · 교차구류(crossing frogs) · 전철봉(point rods)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s) · 침목(크로스 타이) · 이음매판(fish- plates) · 좌철(chairs) · 좌철쐐기(chair wedges) · 밑판(sole plates)(베이스플레이트) · 레일클립 · 받침판(bedplates) · 격재(ties)와 궤조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7303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프로파일(hollow profiles)
7304	철강(주철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프로파일(hollow profiles)[무계목(無繼目, 이음매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 · 리벳(riveted)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프로파일(hollow profiles)[예: 오픈 이음매(open seam)이나 용접 · 리벳(riveted)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7307	철강으로 만든 관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s) · 엘보(elbows) · 슬리브(sleeves)]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 · 수문 · 탑 · 격자기둥(lattice masts) · 지붕 · 지붕틀 · 문과 창.이들의 틀과 문지방 · 셔터 · 난간 ·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플레이트(plates) · 대(rods) · 봉 · 형강 · 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9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의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가열장치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하거나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의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가열장치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하거나 열접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311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 · 로프 · 케이블 · 엮은 밴드 · 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3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銑, 철조망), 철강으로 만든 대(hoop)나 평선을 끈 것(가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끈 이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7314	철강으로 만든 클로드(cloth)[엔드리스밴드(endless bands)를 포함한다] · 그릴 · 망 · 울타리,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7315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7316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7317	철강으로 만든 못 · 압정 · 제도용 핀 · 파형 못 · 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제품[두부(頭部)가 다른 재료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을 제외한다]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와 볼트 · 너트 · 코치스크루(coach screws) · 스크루 훅(screw hooks) · 리벳(rivets) · 코터(cotters) · 코터핀(cotter-pins) · 와셔(washers)(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제품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 · 수편침 · 돛바늘 · 코바늘(crochet hooks) · 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 판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 · 레인지 · 화상 · 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바비큐(barbecues) · 화로 · 가스풍로 · 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7322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 · 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wool),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 패드(polishing pads) ·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4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2. 제7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73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7308909000(기타 구조물), 7326909000(기타 철강 제품), 7305900000(봉합한 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7309000000(철강제 용기)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73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308909000	161,358	7.6	173,587	7.6
2	7326909000	70,408	6.9	72,109	2.4
3	7305900000	35,133	1,475.6	55,001	56.6
4	7309000000	7,160	33.6	42,647	495.6
5	7326190000	28,481	7.8	32,679	14.7
6	7307999000	11,512	11.3	21,850	89.8
7	7318153000	11,885	70.4	15,359	29.2
8	7306500000	18,328	105.2	12,314	-32.8
9	7305111000	21,839	397.6	11,456	-47.5
10	7307930000	11,930	198.8	11,243	-5.8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78,034		448,245	

3. 제7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73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73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73류에 속하는 물품은 우선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호에 속하는 철강제품을 수입하여 제7308호의 다리, 지붕틀, 문틀과 같은 철강제 구조물을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34) 제7302호에서 척레일은 보호레일이나 안전레일로 알려진 것으로 횡단이나 커브에서 차량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랙레일에 고정시킨 것이다. 치형레일은 급경사진 노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톱니가 있는 궤조를 말한다.

그러나 비주철제의 관이 분류되는 제7304호의 경우 제7304.49호의 기타 합금강제의 관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7304.41호에 속하는 냉간압연제품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7315호의 철강으로 만든 체인의 경우 체인의 부분품(제7315.19호, 제7315.90호)을 수입하여 체인을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수입한 부분품이 최소허용기준의 인정 범위내라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철강으로 만든 스토프 및 레인지(제7321호)와 철강제의 위생용품(제7324호) 역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동일 호에 속하는 제7321.90호와 제7324.90호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체인과 마찬가지로 최소허용기준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사용된 경우에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7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종합적으로 풀이해 보면 기본적으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도록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택하고 있다. 다만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같은 물품이 상품과 동일한 호(4단위)에 속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품목분류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범위에서만 사용하거나, 이러한 범위를 넘는다면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다.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73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73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톱니형 앵커 ✓ 세번: 7308.90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톱니형 앵커는 신축이음장치에 사용되는 것으로 평판압연 철강판을 이음모양에 맞도록 성형하여 제작한다. 다른 재료 없이 철강판만 주요 원재료로 하고 성형하는 제조공정이 주요 생산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공품이다.

한- 베트남 FTA는 동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앵커 제작에 사용되는 평판압연 철강판(제7208.51호)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는 공정을 수행하였다면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부가가치기준을 고려할 필요없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7401	구리의 매트(mattes), 시멘트구리(cement copper)(침전구리, precipitated copper)
7402	정제하지 않은 구리, 전해정제용의 구리 양극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04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405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s)
7406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s)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s)
7408	구리의 선
7409	구리의 판(plates) · 시트(sheets)와 스트립(strips)(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이나 종이 · 판지 ·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411	구리로 만든 관(管)
7412	구리로 만든 관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s) · 엘보(elbows) · 슬리브(sleeves)]
7413	구리로 만든 연선 · 케이블 · 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415	구리로 만든 못 · 압정 · 제도용 핀 · 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제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지는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s)와 볼트(bolts) · 너트(nuts) · 스크루 훅(screw hooks) · 리벳(rivets) · 코터(cotters) · 코터핀(cotter-pins) · 와셔(washers)[스프링와셔(spring washers)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제품
7418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 · 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polishing pads) · 글러브(gloves)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419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2. 제7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74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7403110000(정제한 구리), 7408110000(정제한 구리의 선), 7410219000(정제한 구리의 박)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7403110000(정제한 구리)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62.7% 증가했다.

HS 제74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403110000	172,920	73.7	281,306	62.7
2	7408110000	49,135	45.0	39,762	-19.1
3	7410219000	7,974	-2.2	15,106	89.4
4	7407210000	5,043	85.8	10,709	112.4
5	7410211000	9,287	111.7	10,533	13.4
6	7409219000	9,021	47.1	9,317	3.3
7	7403210000	5,549	-21.9	6,713	21.0
8	7410110000	5,383	40.5	4,861	-9.7
9	7409402090	2,359	61.4	4,048	71.6
10	7409119000	3,079	10.1	3,885	26.2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69,750		386,240	

3. 제7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7401 ~ 74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74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ex,7407) or RVC40
7409 ~ 74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74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ex,7408) or RVC40
7415 ~ 74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74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74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구리봉(제7407호)과 구리선(제7408호)을 제외세번으로 규정 하하는 구리선과 구리케이블은 해당하는 제외세번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리봉(제7407호)를 수입하여 구리 선(제7408호)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수 없고, 구리봉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원산지판단을 할 수 있다. 또한 구리케이블(제7413호)을 생산할 때 주재료인 구리선(제7408호)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 하지만 제외세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74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대체로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리봉과 구리케이블에 대하여 아세안과의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 단일 기준을 선택하였으나 한-베트남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7401~7407	CTH or RVC(40)	CTH or RVC(40)
7408	CTH(ex, 74.07) or RVC(40)	CTH(ex. 7407)
7409~7412	CTH or RVC(40)	CTH or RVC(40)
741300	CTH(ex, 74.08) or RVC(40)	CTH(ex. 7407)
7415~7419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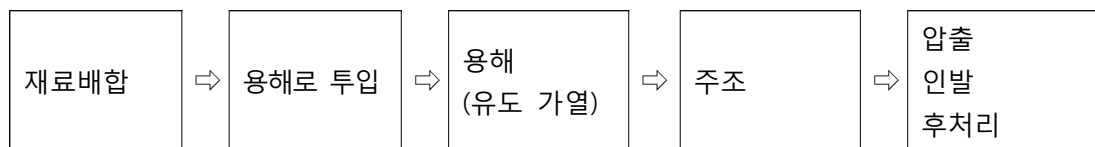
✓ 품명: 구리봉 ✓ 세번: 7407.21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황동봉은 환봉 및 육각봉의 형태로 주로 구리와 아연, 납, 주석, 철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 및 기계부품과 각종 밸브, 전자부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절삭·가공·주조성 등 기계적 성질이 양호하고 내부식성·내해수성이 뛰어나며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 및 강도가 크고 친환경적인 특성이 있다.

황동봉은 주로 황동 잉곳으로부터 생산되나 스크랩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구리와 아연, 납 등을 혼합하여 만든다.

< 황동봉 생산공정 >



< 황동봉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황동스크랩	7404.00	황동 봉/선재/판 절삭·절단 후 생성된 설, 분, 판, 절봉 등의 형태의 스크랩
황동잉곳	7403.21	동-아연 합금의 황동
구리캐소드	7403.19	정제한 동으로 음극과 음극의 형재
아연잉곳	7901.11	아연 함유량이 99.99% 이상인 아연괴
납	2607.00	납

황동봉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다.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740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제7407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므로, HS 4단위 기준에서 세번이 다른 황동스크랩(HS 제7404호), 납(HS 제2607호) 등 주요 원재료를 수입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황동봉을 생산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데 무리가 없다.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7501	니켈의 매트(matted) ·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7502	니켈의 괴(塊)
7503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504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s)
7505	니켈의 봉 · 프로파일(profiles)과 선(線)
7506	니켈의 판 · 시트(sheets) · 스트립과 박(箔, foil)
7507	니켈로 만든 관이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s) · 엘보(elbows) · 슬리브(sleeves)]
7508	니켈로 만든 그 밖의 제품

2. 제7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75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7508909000(니켈의 기타 제품), 7506101000(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판·시트·스크랩), 7506201000(니켈 합금으로 만든 판·시트·스크랩)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7508909000(니켈의 기타 제품)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22.8% 감소했다.

HS 제75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508909000	1,924	-6.7	1,485	-22.8
2	7506101000	1,578	44.3	1,079	-31.6
3	7506201000	349	66.8	443	26.9
4	7506102000	0	0	365	0
5	7507200000	150	-54.4	212	41.4
6	7502109000	168	537.7	126	-24.9
7	7502101000	254	201.4	125	-51
8	7504001000	0	0	76	0
9	7505210000	31	24.8	49	56.2
10	7507120000	0	-100	39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454		3,999	

3. 제7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7501 ~ 75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750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7507.12 7507.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75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구성분석) 제75류는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75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한-베트남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니켈의 괴(제7502호)를 수입하여 니켈 봉(제7505호) 인켈판(제7506호) 니켈 관(제7507호) 등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75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대체로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니켈관 등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반면 한-베트남 FTA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호에 속하더라도 서로다른 소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보다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750110~750711	CTH or RVC(40)	CTH or RVC(40)
750712~750890	CTSH or RVC(40)	CTH or RVC(40)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7601	알루미늄의 괴(塊)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603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s)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s)
7605	알루미늄의 선(線)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s)와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7	알루미늄의 박(箔, foil)[인쇄한 것이나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9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s)·엘보(elbows)·슬리브(sleeves)]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기둥(lattice masts)·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plates)·봉(rods)·프로파일(profiles)·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1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가열장치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가열장치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613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얇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제품과 이들

	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polishing pads)·글러브(gloves)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2. 제7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76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7606120000(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판), 7606920000(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기타의 판), 7601201000(캐스팅 알루미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7606920000(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기타의 판)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76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606120000	247,754	10.1	215,275	-13.1
2	7606920000	2,363	-3.2	63,465	2,586.4
3	7601201000	57,512	16.9	61,135	6.3
4	7604299000	4,968	131.2	28,062	464.8
5	7616999090	15,141	31.3	19,005	25.5
6	7610909000	8,031	58.0	17,999	124.1
7	7604291000	2,059	90.5	14,793	618.5
8	7601209000	2,162	625.3	7,286	237.0
9	7612909010	6,227	42.6	5,898	-5.3
10	7601202000	921	17.1	5,346	480.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47,138		438,264	

3. 제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7601 ~ 76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76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ex, 7604) or RVC40
7606 ~ 76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76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ex, 7605) or RVC40
7615 76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76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76류의 모든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알루미늄 괴(제7601호)를 수입하여 봉(제7604호), 선(제7605호), 판(제7606호), 관(제7608호) 등을 생산한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알루미늄 선은 알루미늄봉(제7604호)을 제외세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수입하여 선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알루미늄 케이블(제7614호) 역시 주요원재료인 선(제7605호)을 제외세번으로 하여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만약 알루미늄 선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들 재료의 비중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76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대체로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알루미늄 선에 대하여 한-베트남 FTA는 원재료인 알루미늄 봉(제7604호)를 제외세번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제한이 없는 한-아세안 FTA 보다 엄격하게 변경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7601~7604	CTH or RVC(40)	CTH or RVC(40)
7605	CTH(ex, 76.04) or RVC(40)	CTH or RVC(40)
7606~7613	CTH or RVC(40)	CTH or RVC(40)
7614	CTH(ex,7605) or RVC 40	CTH(ex,7605) or RVC 40
7615~7616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품명: 알루미늄 시트 ✓ 세번:7606.12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알루미늄 시트는 일반적으로 원료를 용광로에서 용해하여 주조하고 평면형태로 면삭과정을 거친다음 규질화처리를 한다. 이후 열감압연 및 냉간압연후 소둔하여 절삭하고 포장과정을 거치게 된다.

알루미늄 시트를 생산하는 재료는 주로 알루미늄 바(제7604.29호)로 이를 용해하여 일련의 공정을 통해 시트를 생산한다.

한-베트남 FTA는 알루미늄 시트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완제품과 4단위 기준에서 세번이 상이한 비원산지 원재료를 수입하여 체약당사국에서 금형 및 주조 등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결국 알루미늄 바를 역외에서 모두 수입하여도 역내에서 압연공정 등을 통해 시트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므로 역외산 원재료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풀이할 수 있다.

제78류 납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7601	알루미늄의 괴(塊)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603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s)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s)
7605	알루미늄의 선(線)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s)와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7	알루미늄의 박(箔, foil)[인쇄한 것이나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9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s)·엘보(elbows)·슬리브(sleeves)]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기둥(lattice masts)·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plates)·봉(rod)·프로파일(profiles)·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1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가열장치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가열장치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613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얇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제품과 이들

	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polishing pads)·글러브(gloves)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2. 제7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78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7801101000(정제한 납의괴), 7801992090(기타 납의괴)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7801101000(정제한 납의괴)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25.6% 감소했다. 다만, 7801992010(납-주석 합금의괴)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78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801101000	46,422	230.0	34,519	-25.6
2	7801992090	51,540	-9.7	14,344	-72.2
3	7801910000	6,437	42.5	6,243	-3.0
4	7801109000	2,642	-34.4	3,268	23.7
5	7801992010	72	0	773	975.2
6	7806003030	350	-10.2	425	21.6
7	7806009000	472	0	174	-63.1
8	7806004010	12	-46.8	23	90.8
9	7804190000	60	0	14	-77
10	7806003010	2	0	13	492.5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08,009		59,796	

3. 제7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7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78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모든 78류의 물품은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납의 판 및 쉬트(제7804호)는 두께가 일정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납의 박(제7804.11호)을 수입하여 가루나 플레이크(제7804.20호)가 생산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또는 제7804.11호의 박을 수입하여 동일 소호에 분류되는 뒷면을 덧대지 않는 형태의 박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이경우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78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78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7901	아연의 괴(塊)
7902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903	아연의 더스트(dust).가루와 플레이크(flakes)
7904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s)과 선(線)
7905	아연의 판.시트(sheets).스트립과 박(箔, foil)
7907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제7906호는 삭제

2. 제7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79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7901110000(합금하지 않은 아연의 괴), 7901120000(합금하지 않은 아연의 괴), 7901201000(아연-알루미늄 합금의 괴)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7901110000(합금하지 않은 아연의 괴)의 '15년 수출 실적은 전년대비 9.1% 감소했다.

HS 제79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901110000	83,230	35.5	75,694	-9.1
2	7901120000	14,136	349.9	26,721	89.0
3	7901201000	9,036	-14.9	12,754	41.1
4	7904001000	3,523	-4.6	3,030	-14.0
5	7903100000	636	72.0	1,573	147.3
6	7901209000	1,216	92.1	768	-36.9
7	7907009090	1,871	83.2	765	-59.1
8	7903901000	292	3675.8	402	37.8
9	7905001000	678	1791.5	361	-46.8
10	7907009010	0	0	50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14,618		122,118	

3. 제7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7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79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모든 제79류의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아연의 봉 및 선(제7904호) 등은 아연의 봉을 수입하여 선을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아연의 판 및 쉬트의 경우 제7905.20호의 박을 수입하여 동일 소호에 분류되는 뒷면을 덧대지 않는 형태의 박을 생산하는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79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79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아연의 괴는 아연정광(제2608호)를 배소공정을 거쳐 아연소광(Calcine)을 만든 후 이를 용해하여 주조공정을 거쳐 생산한다. 아연의 괴는 주로 기초금속으로 다른 원재료와 합금을 만드는데 주요 사용된다.

한-베트남 FTA는 아연의 괴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아연괴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재료인 아연정광(제2608호)와 세번이 상이하므로 역외산 아연정광을 수입하여 괴를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데 무리가 없다.

✓ 품명: 아연의 괴 ✓ 세번: 7901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8001	주석의 괴(塊)
8002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003	주석의 봉·프로파일(profiles)과 선(線)
8007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2007년도에 제8004호·제8005호·제8006호는 삭제

2. 제8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80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8003001090(주석의 봉·프로파일), 8001100000(합금하지 않은 주석의 괴)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8003001090(주석의 봉·프로파일)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2.4% 증가했다.

HS 제80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003001090	696	148.5	782	12.4
2	8001100000	134	-59.3	346	159.3
3	8003002090	79	130.6	85	8.1
4	8007001000	0	0	81	0
5	8007004000	0	0	16	0
6	8001200000	169	-34.2	14	-91.8
7	8007009000	8	0	9	16
8	8007002000	0	-100	7	0
9	8003002010	7	0	1	-80.7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093		1,341	

3. 제8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8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80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0류 역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석의 괴(제8001호)를 수입하여 주석의 봉 및 선(제8003호) , 기타 주석 제품(제8007호)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주석의 봉을 수입하여 동일 호에 속하는 주석 선을 생산하다면 4단위 세번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경우에는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80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80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s), 이들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2	몰리브데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	탄탈룸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5	코발트의 매트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6	비스무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0	안티몬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1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2	베릴륨 · 크롬 · 게르마늄 · 바나듐 · 갈륨 · hafnium · 인듐 · 니오븀(컬럼븀) · 레늄 · 탈륨과 이들 금속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3	서멧(cermets)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2. 제8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81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8101991010(텅스텐 봉), 8113000000(서멧), 8108909000(기타 티타늄) 등이며, 제81류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81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101991010	887	62.3	3,620	308.3
2	8113000000	386	-64.1	1,671	333.1
3	8108909000	192	152.4	1,664	767.5
4	8111000000	6	0	252	4349
5	8104110000	0	0	224	0
6	8104909000	53	401.8	220	317.6
7	8104302000	44	0	138	210.5
8	8101100000	509	-27.4	94	-81.6
9	8112995000	0	0	69	0
10	8109201000	0	0	64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2,077		8,016	

3. 제8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8101 ~ 81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104.11 ~ 810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104.30 810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105 ~ 81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81류는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104.30호와 제8104.90호를 제외한 모든 물품은 한- 베트남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8101.94호의 텅스텐 괴를 수입하여 기계적으로 타발하고 이를 압연 또는 인발에 의해서 시트, 바, 형재 또는 선(제8101.99호) 가공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호의 재료가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81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대부분 품목에 대하여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마그네슘 기타의 제품(제8104.90호)의 경우 한-아세안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반면 한-베트남 FTA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엄격하게 변경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8101~8103	810110~8103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104	810411~810420	CTH or RVC(40)	CTH or RVC(40)
	810430	CTSH or RVC(40)	CTSH or RVC(40)
	81049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105~8113	8105~8113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날이·스펀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8201	수(手)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도끼·빌훅(bill hooks)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草切機)·올타리 전단기(剪斷機)·제재용(製材用) 썰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 공구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이나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3	줄·플라이어(pliers)[절단용 플라이어(pliers)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 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pipe-cutters)·볼트크로퍼(bolt croppers)·천공편치와 이와 유사한 수(手)공구
8204	수동식 스패너(spanners)와 렌치(wrenches)[토크미터렌치(torque wrenches)를 포함하나 탭 렌치(tap wrenches) ³⁵⁾ 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 유무를 불문한다)
8205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s),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s)·클램프(clamps)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anvils), 이동식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s)
8206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8207	수(手)공구용(동력작동식 여부를 불문한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스(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이나 스크루드라이빙용(screw driving)][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壓出)용 다이(dies)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8208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8209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s)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21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나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211	칼(톱니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날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s)로서 스트립(strips)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213	가위 · 재단용 가위. 이와 유사한 가위와 이들의 날
8214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 · 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 · 토막용(choppers) 칼과 다지기용(mincing) 칼 · 종이용 칼],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 줄을 포함한다)
8215	스푼 · 포크 · 국자 · 스킴머(skimmers) · 케이크서버(cake-servers) · 생선용 칼 · 버터용 칼 · 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2. 제8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82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8207702000(밀링커터), 8212200000(안전 면도날), 8205599000(기타 수공구)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8207702000(밀링커터), 8207901000(호환성 공구)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함에 힘입어 제82류 전체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HS 제82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207702000	3,170	499.3	49,564	1,463.4
2	8212200000	10,705	27.1	8,755	-18.2
3	8205599000	5,467	16.9	8,657	58.3
4	8207709000	6,833	5,660.8	7,744	13.3
5	8207901000	438	6.5	7,516	1,617.7
6	8206000000	3,875	700.8	6,420	65.7
7	8207909000	2,537	-6.7	4,011	58.1
8	8205909090	7,938	-3.8	3,861	-51.4
9	8207301000	3,448	215.0	2,856	-17.2
10	8208900000	1,191	23.7	2,122	78.2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5,602		101,506	

3. 제8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35) 탭 렌치는 제8205호로 분류한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8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82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82류의 비금속제의 공구는 4위 세번변경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판단된다. 따라서 완성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82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82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 ✓ 품명: 밀링용 공구
- ✓ 세번: 8207.90
-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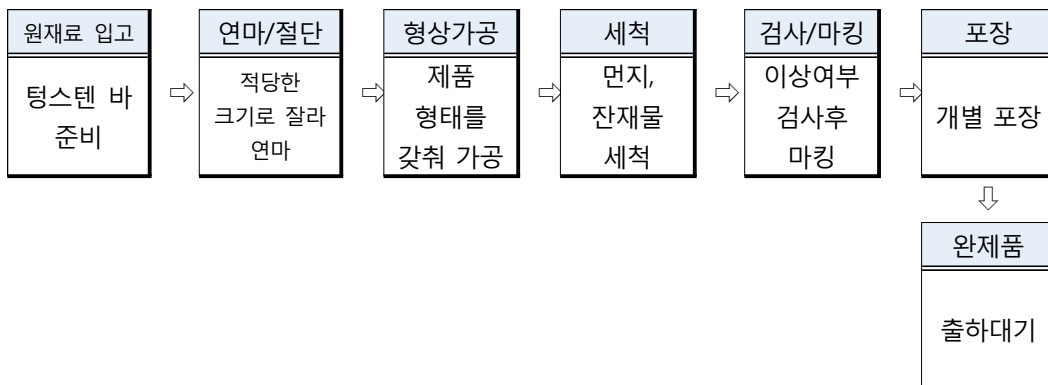


밀링(milling) 공구는 밀링 머신에 사용되는 절삭 공구 등의 공구를 일컫는다. 밀링머신은 가공물을 임의의 각도로 분할절삭하거나 기어의 제작, 공구의 절삭 등에

사용된다. 밀링용 공구는 밀링 머신의 구성품으로서 제품의 절삭에 이용되는데, 밀링 공구에는 밀링 커터(플레인 커터 • 헤리컬 커터 • 스테거드 커터 • 앵글 커터), 기어커팅 톱 등이 포함된다.

밀링용공구의 주요 원재료 내역과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가공기계 스타트 라인에 원재료인 텅스텐 바를 준비하고 투입된 원재료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원통연마를 한 후에 규격에 맞게 엔드밀 형상가공을 한다. 가공이 완료되면 먼지, 가공 잔재물을 세척처리 한 후 이상여부를 검사하고 플라스틱 및 박스포장을 하면 완성된다.



연번	HS	세부품명
1	8101.99	텅스텐
2	4819.10	종이
3	7106.92	Silver Foil
4	7208.51	철강재
5	7228.60	합금강
6	3923.10	케이스

한- 베트남 FTA는 밀링용 공구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다. 밀링공구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텅스텐 바를 주재료로 금형가공하여 생산한다.

앞서 제시된 투입되는 주요 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더라도 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제8101호등의 재료를 모두 수입하여 역내에서 공구를 생산하여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83류 비(卑)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8301	비(卑)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이나 전기작동식), 비(卑)금속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비(卑)금속으로 만든 열쇠
※8302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제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卑)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s)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캐스터(casters)와 비(卑)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3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갑(armoured)하거나 보강한 금고·스트롱박스(strong-boxes)와 스트롱룸(strong-rooms)용 문과 저장실·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8304	비(卑)금속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s)·페이퍼 레스트(paper rests)·펜 트레이(pen trays)·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305	비(卑)금속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립·레터코너(letter corner)·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卑)금속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s in strips)(예: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
※8306	비(卑)금속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卑)금속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小像)과 그 밖의 장식품, 비(卑)금속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卑)금속으로 만든 거울
8307	비(卑)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308	비(卑)금속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s)·버클걸쇠(buckle-clasps)·훅(hooks)·아이(eyes)·아일릿(eyelets)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양·핸드백·여행구나 그 밖의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卑)금속으로 만든 관리벳(tubular rivets)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s), 비(卑)금속으로 만든 구슬과 스팅글(spangles)
8309	비(卑)금속으로 만든 전(栓)·캡과 뚜껑[병마개·스크루캡(screw caps)과 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병용 캡슐·나선형 마개·마개용 커버·실(seals)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8310	비(卑)금속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숫자·문

	자와 그 밖의 심벌(symbols)(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8311	비(卑)금속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생산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이나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卑)금속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2. 제8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83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8308102000(아이·아일릿), 8308909000(기타 비금속 유금), 8302499000(비금속 장작구) 등이며, 8308102000(아이·아일릿)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0.8% 증가했다.

HS 제83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308102000	17,754	31.4	17,901	0.8
2	8308909000	14,458	-20.3	15,532	7.4
3	8302499000	46,812	1,634.5	8,677	-81.5
4	8308101000	3,621	36.7	4,461	23.2
5	8308902000	5,219	90.3	4,153	-20.4
6	8308200000	4,433	55.3	3,826	-13.7
7	8307100000	1,104	179.5	2,981	170.1
8	8309901000	2,914	36.8	2,923	0.3
9	8311209000	5,042	-17.6	2,826	-43.9
10	8311109000	2,025	-27.5	1,994	-1.5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03,382		65,274	

3. 제8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83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83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83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적

용받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소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8301호에 분류되는 자물쇠 및 열쇠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와 상품간에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제8301호는 동호에 분류되는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부분품(제8301.60호)도 동일호에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품(제8301.60호)를 수입하여 자물쇠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이때에는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8305호의 사무용품과, 제8308호의 버클 등의 경우에도 부분품이 완성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므로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최소허용기준 범위내에서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83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대체로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8305호의 사무용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는 6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호에 속하는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8305호를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한-베트남 FTA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이 경우에는 한-베트남 FTA가 한-아세안 FTA보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엄격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8301~8304	CTH or RVC(40)	CTH or RVC(40)
8305	CTH or RVC(40)	CTSH or RVC(40)
8306~8311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16부 기계류, 전기기기,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4류~제85류)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屬)이나 종(種)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屬)이나 종(種)의 어린 것도 포함되며,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

제16부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기계식 기기, 이들의 부분품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기계식 기기, 이들의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요소(카트리지), 동위 원소 분리용 기계류와 장치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과열수 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s)
8403	중앙난방용 보일러(제8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8404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보조설비(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 스팀이나 그 밖의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405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406	스팀터빈과 그 밖의 증기터빈(steam turbines and other vapour turbines)
8407	왕복이나 로터리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8409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10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regulators)
8411	터보제트(turbo-jets)·터보프로펠러(turbo-propellers)와 그 밖의 가스터빈
8412	그 밖의 엔진과 모터
8413	액체펌프[측정 기구(measuring device)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액체엘리베이터

8414	공기펌프나 진공펌프(air or vacuum pumps) ·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415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6	액체연료 · 분쇄한 고체연료나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용(爐用)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s)[이들의 기계식 불판(gates) · 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7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8	냉장고 · 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장비나 냉동장비(전기식 여부를 불문한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9	가열 · 조리 · 배소(焙燒) · 증류 · 정류 · 살균 · 저온살균 · 증기가열 · 건조 · 증발 · 응축 · 냉각이나 그 밖의 온도변화의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류 · 설비나 실험실용 장비[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
8420	캘린더기계(calendering machines)나 그 밖의 롤 기계(rolling machines)(금속이나 유리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cylinders)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2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척용이나 건조용 기계류, 병 · 강통 · 상자 · 자루 ·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합용·실링(sealing)용이나 레이블 부착용 기계류, 병 · 단지 · 튜브와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용 기계류, 그 밖의 패킹(packing)이나 포장(wrapping) 기계류(열수축 포장기계류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계류
8423	중량측정기계류[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 각종 저울추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 · 살포용이나 분무용 기계식 기기(수동식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 (소화제 충전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스팀이나 모래의 분사(blasting)기계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계
8425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s)[스킵호이스트(skip hoists)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s), 잭(jacks)
8426	선박의 데릭(derricks),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운반대 · 스트래들 캐리어 (straddle carriers)와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8427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s),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8428	그 밖의 권양(捲揚)용 · 하역용 · 적하용이나 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 · 에스컬레이터 · 컨베이어 · 텔레페릭(teleferics)]
8429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s) · 앵글도저(angledozer) · 그레이더(graders) · 레벨러(levellers) · 스크래퍼(scrapers) · 메커니컬 셔블(mechanical shovels) · 엑스커베이터(excavators) · 셔블로더(shovel loaders) · 탬핑 머신(tamping machines)과 로드롤러(road rollers)

8430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excavating)용·탐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이나 천공용 기계류(토양용·광물용이나 광석용으로 한정한다), 말뚝 박는 기계(pile-drivers, 항타기)와 말뚝 뽑는 기계(pile-extractors,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s)와 스노블로어(snow-blowers)
8431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8432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 기계류(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
8433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의 결속기(balers)를 포함한다], 풀이나 건초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나 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류는 제외한다)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류
8435	포도주·사과술·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하는 프레스·크러셔와 이와 유사한 기계류
8436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이나 양봉용 기계류(기계식 장비나 가열장비를 갖춘 발아용 설비를 포함한다),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7	종자·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계류·분류기계류나 선별기계류, 제분업용 기계류나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용 기계류(농장형은 제외한다)
8438	식품이나 음료의 조제용이나 제조 산업용 기계류(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류는 제외한다)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류·종이나 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류
8440	제본기계류(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1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의 가공용 기계류(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2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와 장비(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공작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그레인이나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lithographic stones)
8443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4	인조 방직용 섬유재료의 방사(紡絲)용·늘림(drawing)용·텍스처(texturing)용이나 절단용 기계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合絲機)·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적사 제조용 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weft-winding))를 포함한다]와 제8446

	호나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하는 방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8446	직기(직조기)
8447	편직기 · 스티치 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s)와 짐프사(gimped yarn) · 튜(tulle) · 레이스 · 자수천 · 트리밍(trimmings) · 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와 터프팅(tufting)용 기계
8448	제8444호 · 제8445호 · 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류[예: 도비(dobbies)기 · 자카드기 · 자동정지기 · 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8444호 · 제8445호 · 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피들(spindle) · 스피들 플라이어(spindle flyers) · 침포(card clothing) · 코움(combs) · 방사니플(extruding nipples) · 셔틀(shuttles) · 종광(healds) · 종광 프레임(heald-frames) · 메리야스용 바늘]
8449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 · 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모자 제조용 형(型, blocks)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과 건조 겸용기계를 포함한다)
8451	세탁용 · 클리닝 · 쥐어짜기용 · 건조용 · 다림질용 · 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es)를 포함한다] · 표백용 · 염색용 · 드레싱용 · 완성가공용 · 도포용 · 침지(沈漬)용 기계류(제8450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직용사 · 직물류나 이들로 만든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 · 풀기(unreeling)용 · 접음용 · 절단용이나 핑킹(pinking)용 기계
8452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 · 밀판 · 덮개, 재봉기용 바늘
8453	원피 · 모피·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 · 유피(柔皮)기나 가공기계류나 원피 · 모피·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제품의 제조용 · 수선용 기계류(재봉기는 제외한다)
8454	전로 · 레이들(ladles) · 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6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 광자빔 · 초음파 · 방전 · 전기화학 · 전자빔 · 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워터제트 절단기계
8457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s)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s)[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과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s)
8458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8459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닛헤드머신(way-type unit head machines)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 · 보링(boring) · 밀링(milling) · 나선가공(threading)이나 태핑(tapping)에 사용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

	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8460	디버링(deburring) · 샤프닝(sharpening) · 그라인딩(grinding) · 호닝(honing) · 래핑(lapping) · 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 연마재 ·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 절삭기 · 기어연삭기나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8461	평삭(planing)용 · 웨이핑(shaping)용 · 슬로팅(slotting)용 · 브로칭(broaching)용 · 기어절삭용 · 기어연삭용 · 기어완성가공용 · 톱질용 · 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62	단조(forging)용 · 해머링(hammering)용 · 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bending)용 · 접음(folding)용 · 교정(straightening)용 · 펄침(flattening)용 · 전단(shearing)용 · 펀칭(punching)용 · 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8463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8464	돌[石] · 도자기 · 콘크리트 · 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재료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가공기계
8465	목재 · 코르크 · 뼈 · 경질고무 · 경질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재료의 가공기계[네일(nailing)용 · 스테이플용 · 접착용이나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8466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 · 툴홀더(tool holders)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s) · 분할대(dividing heads)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수(手)지식 공구에 사용하는 각종의 툴홀더(tool holders)
8467	수(手)지식 공구(압축공기식·유압식·전기식이나 비전기식 모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468	납땜용이나 용접용 기계류와 장치(절단가능 여부를 불문하며, 제851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면 열처리용 기계나 기기(가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9	타자기(제8443호의 프린터기는 제외한다), 워드프로세싱머신
8470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 · 우편요금계기 · 표권발행기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2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나 스텐실(stencil) 등자기 · 주소인쇄기 · 현금자동지불기 · 주화분류기 · 주화계수포장기 · 연필깎이 · 천공기나 지철기(stapling machines)]

8473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8474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모양·가루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의 토양·돌[石]·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형입기·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석고·가루모양이나 페이스트모양의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계(成形機械)
8475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나 플래시벌브(flashbulbs, 섬광전구)(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이나 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생산품을 제조하는 기계류(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8	담배의 조제(preparing)나 제조(making up) 기계류(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와 기계식 기기(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재료·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moulds)
8481	파이프·보일러 동체(shells)·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taps)·코크(cocks)·밸브(valves)와 이와 유사한 기기(감압밸브와 온도 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2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3	전동축(transmission shafts)[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와 크랭크(cranks),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s)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s), 기어(gears)와 기어링(gearing), 볼 스크루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s), 기어박스과 그 밖의 변속기[토크 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s)과 풀리(pulleys) [풀리블록(pulley blocks)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es)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s)[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s)를 포함한다]
8484	개스킷(gaskets)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료가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s)
8486	반도체 보울(boules)이나 웨이퍼(wafers)·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나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기계와 장치,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장치, 부분품과 부속품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나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제2007년도에 제8485호는 삭제

2. 제8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84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8479899099(기타 기계류), 8480710000(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909090(기타 기계류 부분품)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8479899099(기타 기계류)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74.6% 증가했다. 특히, 8419899090(가열·살균·건조기기)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84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479899099	216,927	15.6	378,650	74.6
2	8480710000	148,453	46.4	191,177	28.8
3	8479909090	151,602	51.6	173,103	14.2
4	8419899090	8,793	174.9	117,190	1,232.8
5	8471601090	114,751	-51.5	100,801	-12.2
6	8464202000	17,996	18,313.2	82,388	357.8
7	8481801090	35,118	-45.8	66,185	88.5
8	8486306090	0	0.0	64,283	0.0
9	8419509000	11,589	351.5	56,194	384.9
10	8429521012	34,607	0.0	48,082	38.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739,836		1,278,053	

3. 제8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8401 ~ 84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10.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10.12호 및 제 8410.1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ex, 8410.12, 8410.13) or RVC40

8410.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10.11호 및 제 8410.1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ex, 8410.11, 8410.13) or RVC40
8410.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10.11호 및 제 8410.1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ex, 8410.11, 8410.12) or RVC40
8410.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11 84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13.11 ~ 8413.8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13.91 8413.9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14.10 ~ 8414.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1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15.10 ~ 8415.8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1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17.10 ~ 8417.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1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18.10 ~ 8418.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18.91 8418.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19.11 ~ 8419.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1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2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20.91 8420.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21.11 ~ 8421.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21.91 8421.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22.11 ~ 8422.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2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23.10 ~ 8423.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2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24.10 ~ 8424.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2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25 ~ 84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32.10 ~ 8432.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3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33.11 ~ 8433.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3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34 84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36.10 ~ 8436.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36.91 8436.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37.10 8437.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3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38.10 ~ 8438.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38.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39 ~ 844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43.11 ~ 8443.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43.31 8443.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43.39 ~ 8443.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44 ~ 84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50.11 ~ 845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50.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51.10 ~ 845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5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52.10 ~ 845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5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5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54.10 ~ 845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5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55 ~ 846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67.11 ~ 8467.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67.91 ~ 8467.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68 ~ 84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72 ~ 847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79.10 ~ 8479.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7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80 84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82.10 ~ 8482.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82.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CTH or RVC40

8482.9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483 848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86.10 ~ 8486.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48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48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84류는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한- 베트남 FTA는 제84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84류에 속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규정한 특징이 있다.

우선 84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기본적으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제84류의 품목분류 구조가 동일한 호에 완성품과 부분품이 함께 분류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으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통해 원산지상품으로 판정되기 유리하게 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제8401.40호의 원자로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8401.10호~제8401.30호의 원자로를 생산하면 6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8402.90호의 보일러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8402.11호의 보일러를 생산하는 경우 역시 6단위 세번이 변동되었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한-베트남 FTA는 제84류의 다양한 부분품 세번에 대해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품의 원산지 판단은 다소 엄격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8410호의 수력터빈에 대해서는 제외세번을 포함하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수력터빈에 사용되는 제외세번에 속하는 원재료를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에서는 제외세번도 수입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84류의 대부분의 품목들은 제8402호의 해설과 유사하게 원산지 판단이 가능하다. 즉 동일한 호에 속하는 부분품을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할 경우 6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충족시키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84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대체로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제84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의 기본적인 유형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반면 한-베트남 FTA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여 원산지판단의 엄격성을 다소 완화 시켰다.

다만 수력터빈의 경우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와는 달리 제외세번을 규정하여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하는 엄격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제8415.10호의 공기조절기의 경우 한-아세안 FTA는 부가가치기준 단일 기준만 규정한 반면 한-베트남 FTA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여 원산지판단의 가능성을 확장 시켰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8401~8409	8401~8409	CTH or RVC(40)	CTH or RVC(40)
8410	841011	CTSH(ex, 8410.12, 8410.13) or RVC(40)	CTH or RVC(40)
	841012	CTSH(ex, 8410.11, 8410.13) or RVC(40)	CTH or RVC(40)
	841013	CTSH(ex, 8410.11, 8410.12) or RVC(40)	CTH or RVC(40)
	8410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11~8412	841111~8412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03	841311~841382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1391~841392	CTH or RVC(40)	CTH or RVC(40)
8414	841410~84148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14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15	841510	CTSH or RVC(40)	RVC(45)
	841520~841583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15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16	8416	CTH or RVC(40)	CTH or RVC(40)
8417	841710~84178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17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18	841810~841869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1891~841899	CTH or RVC(40)	CTH or RVC(40)
8419	841911~841989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19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20	84201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2091~842099	CTH or RVC(40)	CTH or RVC(40)
	842111~842139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2191~842199	CTH or RVC(40)	CTH or RVC(40)
	842211~84224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22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2310~842389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23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2410~842489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24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25~8431	842511~843149	CTH or RVC(40)	CTH or RVC(40)
8432	843210~84328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32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33	843311~84336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33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34~8435	843410~8435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36	843610~84368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3691~843699	CTH or RVC(40)	CTH or RVC(40)
8437	843710~84378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37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38	843810~84388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38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39~8442	843910~84425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43	844311~844319	CTH or RVC(40)	CTH or RVC(40)
	844331~844332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4339~844399	CTH or RVC(40)	CTH or RVC(40)
8444~8449	844400~84490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50	845011~84502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50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51	845110~84518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51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52	845210~84523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52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53	845310~8453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54	845410~84543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54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55~8466	845510~846694	CTH or RVC(40)	CTH or RVC(40)
8467	846711~846789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6791~846799	CTH or RVC(40)	CTH or RVC(40)

8468~8470	846810~8470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71	8471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72~8478	8472~8478	CTH or RVC(40)	CTH or RVC(40)
8479	847910~84796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7971~847981	CTSH or RVC(40)	CTSH or RVC(40)
	847982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7989	CTSH or RVC(40)	CTSH or RVC(40)
	8479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80~8481	848010~8481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82	848210	CTSH or RVC(40)	CTSH or RVC(40)
	848220~84828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48291	CTH or RVC(40)	CTH or RVC(40)
8483~8484	848310~8484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86	848610~848640	CTSH or RVC(40)	CTSH or RVC(40)
	848690~8487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487	848710~848790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 품명: 사출식 금형
- ✓ 세번: 8480.71
-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금속성의 형(型)이며 주요한 것으로는 주물(鑄物)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철이나 그 밖의 금속으로 만든 주형(鑄型), 플라스틱 등의 성형용(成型用)으로 사용되는 것, 위아래의 형(型) 사이에 금속의 얇은 판이나 플라스틱판 등을 끼우고 정해진 형상으로 압축해서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제 형 등이 있다.

주물용 금형인 경우에는 부어 넣는 금속의 녹는점이나 부어 넣을 때 녹은 금속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을수록 강력한 형이 요구된다. 보통 금형 주물로는 보통강이 쓰이나 필요에 따라서 내열강·공구강(工具鋼)이 사용된다. 플라스틱 성형용 형의 경우 성형압(成型壓)이 높을 때에는 경화(硬化)한 강이 사용되고 저압력일 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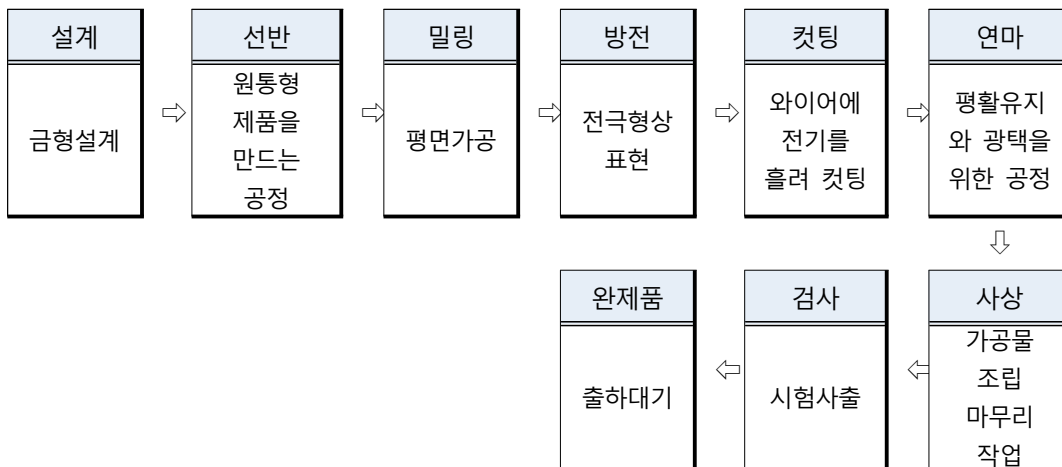
는 구리합금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플라스틱의 정밀한 모양의 성형에는 베릴륨구리의 금형이 이용된다. 이러한 성형용 금형은 모서리 등이 빨리 닳아 모양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크로뮴 도금을 한다. 금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조각을 하는데 복잡한 형은 조각비가 많이 들고 제품의 수량이 적으면 값이 높아진다.

앞에서 말한 베릴륨구리는 이에 대해 정밀주조로 형이 만들어지므로 형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유리하다.

금형의 제조공정과 주요원재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품과 금형을 설계하고 원통형의 제품을 만드는 선반공정을 거친다. 그 후 공작물의 평면가공을 하는 밀링공정을 거쳐 가공 전극과 같은 형상을 공작물에 표현하는 방전가공공정을 한다. 공기대신 와이어에 전기를 흘려 커팅하고 광택과 평활유지를 위해 연마공정을 거친다. 가공물의 조립과 마무리 작업인 사상공정을 거쳐 시험사출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연번	HS	세부품명
1	7318	와셔, 볼트류, 오링
2	7319.90	회전방지핀, 코어 핀
3	8477.90	핫 런너, 유닛, 가이드 레일 등
4	8487.90	고정판, 다리, 밀판, 코어 등
5	7326.90	블록
6	7228	스틸 바
7	8480	몰드 베이스
8	7226	저탄소 합금 공구강
9	7320	스프링

10	7307	로케이트 링
11	4016.99	우레탄, 오링
12	8536	스위치
13	7206.10	철
14	9029	샷 카운터
15	4415.10	나무 케이스
16	7209.90	구조용 강철판
17	7211.90	구조용 강철봉
18	4009.22	스팀호스
19	7317.00	링
20	7325.99	스틸
21	3921.90	PP 필름
22	8479.89	사이클 카운터
23	9205.90	온도센서

금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다. 금형에는 다소 많은 부품과 원재료들이 사용되지만, 위의 예시에서는 주요 원재료만 제시하였다. 만약 위에 제사한 원재료를 모두 수입하여 금형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몰드 베이스가 완성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다만 몰드베이스가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내에서 사용되었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것이다.

몰드베이스의 비중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한다.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3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하는 제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ecks)·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s), 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s)
8506	일차전지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여부를 불문한다)
8508	진공청소기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내장(內藏한 것 ³⁶)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10	면도기·이발기와 모발제거기[전동기를 내장(內藏)한 것으로 한정한다]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이나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와 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장비(제8539호의 제품은 제외한다). 윈드스크린 와이퍼(windscreen wipers)·제상기(defrosters)와 제무기(demisters)(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장비는 제외한다)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dielectric loss) ³⁷)을 포함한다],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dielectric loss) 재료가열기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식(magnetic pulse)이나 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의 납땀이나 용접용 기계와 장치(절단기능 유무를 불문한다), 금속이나 서멧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계와 장치
8516	전기식의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장치와 토양가열장치,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s)],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장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이나 수신용 장치(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이나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장치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나 제8528호의 송신용이나 수신용 장치는 제외한다)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9	음성녹음용이나 음성재생용 장치
8521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장치(비디오튜너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
8522	제8519호부터 제8521호까지의 장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그 밖의 매체[기록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matrices)과 마스터(masters)를 포함하되, 제37류의 생산품은 제외한다]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장치(수신장치나 음성녹음장치나 음성재생장치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6	레이더장치·항행용 무선장치와 무선원격조절장치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장치[음성녹음장치.음성재생장치나 클록(clock)을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8	텔레비전 수신 장치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장치(라디오 방송용 수신 장치·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이나 재생용 장치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9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장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0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이나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장비·안전장비나 교통관제장비(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전기장치(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2	축전기[고정식·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셋)으로 한정한다]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s)와 전위차계(potentiometers)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4	인쇄회로(printed circuits)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전기식 장치[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억제기(surge suppressors)·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전기식 장치(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surge suppressors)·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용 커넥터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데스크(desks)·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장치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90류의 기기나 장치와 수치제어장치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 장치는 제외한다)
8538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나 제8537호의 장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unit lamps)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arc-lamps)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이나 광전관[예: 진공관·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攝像管, camera tubes)]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로 조립되거나 패널로 만들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2	전자집적회로
8543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전기식 기계와 장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8546	애자(磚子, electrical insulators)(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8547	전기식 기계.기기나 장비용으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卑)금속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548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계류나 장치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007년도에 제8520호·제8524호는 삭제

2. 제8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85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8517701029(통신기기 부분품), 8542323000(플래시 메모리), 8531909000(전기식 신호용기기 부분품) 등이며, 가장

- 36) “내장(self-contained)”이란 면도기.진공청소기.시계와 같이 케이스 안에 동력(전동기)을 비롯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자급식(自給式)이라고도 한다. ‘갖춘 것’보다는 ‘내장한 것’이 의미전달이 보다 정확하다.
- 37) 제8514호에서 “유전손실(dielectric loss)”이란 유전체 재료에서 열로 전환된 전기적 에너지를 말한다. 따라서 이 열을 이용하는 방식의 노와 오븐이나 재료가열기는 이 호로 분류한다.

수출실적이 높은 8517701029(통신기기 부분품)의 '15년은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88.8% 증가했다. 특히, 8531909000(전기식 신호용기기 부분품)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85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517701029	1,934,107	44.4	3,650,975	88.8
2	8542323000	1,050,428	-8.7	1,094,489	4.2
3	8531909000	539	211.5	984,172	182,632.9
4	8542311000	204,365	44.3	664,945	225.4
5	8534009000	495,861	-8.6	573,075	15.6
6	8543709090	222,307	-24.7	409,076	84.0
7	8534002000	205,749	6.1	343,666	67.0
8	8542391000	520,836	-16.9	343,272	-34.1
9	8542313000	595,333	22.7	340,977	-42.7
10	8517701090	160,910	111.3	296,153	84.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5,390,435		8,700,800	

3. 제8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8501 ~ 85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04.10 ~ 8504.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0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06.10 ~ 8506.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0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07.10 ~ 8507.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or RVC4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0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08.11 ~ 8508.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08.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09 8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11.10 ~ 851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1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12 ~ 85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16.10 ~ 8516.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1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17.11 ~ 8517.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17.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18.10 ~ 8518.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18.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19 ~ 85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31.10 ~ 853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3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32.10 8532.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32.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32.23 ~ 853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33 ~ 85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3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36.20 ~ 853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37 853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39.10 ~ 8539.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3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40.11 ~ 8540.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40.91 8540.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41.10 ~ 8541.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4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CTH or RVC4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42.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42.33 8542.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4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43.10 8543.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43.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43.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854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544 ~ 854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85류는 4단위,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5류의 품목분류 구조 역시 제84류와 유사하게 동일한 호에 완성품과 부분품이 함께 분류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제85류의 특징에 따라 한-베트남 FTA는 부분품에 대해서는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RVC 40%)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하고 본품에 대해서는 동일호에 속하는 부분품을 수입하여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용이하도록 6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제8503호의 발전기부분품을 수입하여 제8501호의 발전기를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입한 원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이 변동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변압기 부분품(제8504.90호)을 수입하여 제8504.10호의 안정기, 제8504.23호의 변압기, 제8504.32호~제8504.50호의 변압기를 생산하면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85류의 대부분의 품목들은 제8504호의 해설과 유사하게 원산지 판단이 가능하다. 즉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동일호에 속하는 특정 부분품을 수입하여 생산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시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결국 동일한 호에 완성품과 부분품을 함께 분류하는 경우가 다수인 제84류 및 제85류의 품목분류구조의 특징에 따라 어떠한 협정이 완성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동일한 호에 속하는 부분품을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엄격한 규정으로 풀이되고, 반대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면 역외산 부분품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완화된 기준으로 풀이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대체로 제85류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동일한 세번내에서도 물품을 구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구분하는 특징이 있는데 한-베트남 FTA에서는 이를 모두 일원화 하였다. 즉 한-아세안 FTA는 1세번 다품목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이었던 반면 한-베트남 FTA는 1세번 단일 원산지결정기준의 형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한-아세안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반면 한-베트남 FTA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여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보다 엄격한 품목들이 있다. 일차전지(850610~850680), 축전지(850710~850780), 진공청소기(8508), 가정용 전열기기(851610~851680), 음향증폭기기(851810~851830)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한-아세안 FTA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반면 한-베트남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여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보다 엄격한 품목들도 있다. 반도체메모리(852352), 라디오 및 텔레비전 송신기기(852560), 램프(8539)등이 이에 해당한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8501~8503	8501~8503	CTH or RVC(40)	CTH or RVC(40)
8504	850410~85044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0450	CTSH or RVC(40)	CTSH or RVC(40)

	8504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05	850511~8505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06	850610~85068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06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07	850710~85078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07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08	850811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0819	CTSH or RVC(40)	-가정용의 것: CTH or RVC(40) -기타: CTH or RVC(40)
	850860	CTSH or RVC(40)	CTSH or RVC(40)
	85087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09~8510	850940~8510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11	851110~85118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11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12~8515	851210~8515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16	851610~85168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16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17	851711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1712	CTSH or RVC(40)	CTSH or RVC(40)
	851718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1761	CTSH or RVC(40)	-기지국용 송수신기: CTH or RVC(40) -기타: CTH or RVC(40)
	851762	CTSH or RVC(40)	- 무선전화용 · 무선전신용의 수신 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CTH or RVC(40) -기타: CTH or RVC(40)
	851769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1770	CTH or RVC(40)	CTSH or RVC(40)
8518	851810~85183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184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1850	CTSH or RVC(40)	CTSH or RVC(40)
	8518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19	85192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1930	CTH or RVC(40)	-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CTH or RVC(40) -기타: CTH or RVC(40)
	851950~851989	CTH or RVC(40)	CTH or RVC(40)
8521	852110~8521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22	85221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2290	CTH or RVC(40)	CTSH or RVC(40)

8523	852321~852351	CTH or RVC(40)	CTH or RVC(40)
	852352	CTH or RVC(40)	CTSH or RVC(40)
	852359~85238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25	85255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2560	CTH or RVC(40)	CTSH or RVC(40)
	85258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26~8527	852610~852799	CTH or RVC(40)	CTH or RVC(40)
8528	852841~852869	CTH or RVC(40)	CTH or RVC(40)
	852871	CTH or RVC(40)	-천연색의 것: CTSH or RVC(40) -기타: CTH or RVC(40)
	852872	CTH or RVC(40)	CTSH or RVC(40)
	852873	CTH or RVC(40)	CTH or RVC(40)
8529	85291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2990	CTH or RVC(40)	CTSH or RVC(40)
8530	853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31	853110~85318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31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32	853210~853221	CTH or RVC(40)	CTH or RVC(40)
	853222	CTH or RVC(40)	CTSH or RVC(40)
	853223~853229	CTH or RVC(40)	CTH or RVC(40)
8535	8535	CTH or RVC(40)	CTH or RVC(40)
8536	853610	CTSH or RVC(40)	CTSH or RVC(40)
	853620~8536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37~8538	853710~8538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39	85391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3921	CTSH or RVC(40)	CTSH or RVC(40)
	853922~853929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3931	CTSH or RVC(40)	CTSH or RVC(40)
	853932~853949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3990	CTH or RVC(40)	CTSH or RVC(40)
8540	854011~85402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4040	CTSH or RVC(40)	1-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레코드판: CTH or RVC(40) -기타: CTSH or RVC(40)
	854060	CTSH or RVC(40)	CTSH or RVC(40)
	854071	CTSH or RVC(40)	CTSH or RVC(40)
	854079	CTSH or RVC(40)	- 속도변조관(klystron): CTSH or RVC(40) -기타: CTH or RVC(40)

	854081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4089	CTSH or RVC(40)	CTSH or RVC(40)
	854091	CTH or RVC(40)	CTSH or RVC(40)
	854099	CTH or RVC(40)	CTH or RVC(40)
8541	854110~85416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4190	CTH or RVC(40)	CTSH or RVC(40)
8542	854231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4232	CTH or RVC(40)	CTH or RVC(40)
	854233~854239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42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43	854310~854320	CTSH or RVC(40)	CTH or RVC(40)
	85433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4370	CTSH or RVC(40)	1.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저: CTH or RVC(40) -기타: CTSH or RVC(40)
8544~8548	8543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54411~854890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 품명: PCB (전자회로기판) ✓ 세번: 8534.00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PCB(Printed Circuit Board:전자회로기판)는 전기절연체 표면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도체 패턴을 형성시킨 것을 말한다. 다른용어로는 PWB(Printed Wiring Board)라고도 한다. 다만 PCB 제조시에 부분적으로 인쇄용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대부분의 공정이 감광성 필름을 사용하여 회로를 형성한다.

PCB는 전자부품을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페놀 또는 에폭시 등의 절연판 위에 구리등의 동박(copper foil)을 부착시킨 다음 회로 배성에 따라 에칭하여 필요한 회로를 구성하고 회로 간 연결 및 부품 탑재를 위한 드릴 홀(drill hole)을 가공하여 생산한다. 따라서 PCB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는 동판넬(제7410호)와 산

업용 잉크(제3515호)라고 할 수 있다.

한- 베트남 FTA는 제8534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비원산지재료의 4단위 세번과 완성품의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결국 PCB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재료인 판넬과 잉크를 역외에서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여도 서로다른 류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세번변경기준 충족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동 물품은 역외산 재료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장비 관련품(제86류~제89류)

제17부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장비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88류	항공기·우주선과 이들의 부분품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제86류 살아있는 동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炭水車)
8603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4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 여부를 불문한다] [예: 공작차(workshops)·기중기차(cranes)·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s) ·트랙라이너(trackliners)·검사차(testing coaches)와 궤도검사차(track inspection vehicles)]
8605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86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철도차량의 부분품
8608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이나 비행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용·안전용이나 교통관제용 장비, 이들의 부분품
8609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제8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86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8609003000(일반화물 운반용 컨테이너)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8609003000(일반화물 운반용 컨테이너), 8607210000(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86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609003000	2	0	765	37473.7
2	8607210000	3	0	71	1998.5
3	8607303000	0	0	19	0
4	8609001000	0	0	8	0
5	8607290000	0	0	5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5		868	

3. 제8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8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86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86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베트남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8607호의 철도차량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8603호~제8606호의 객차 등을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86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86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s)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4	화물자동차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ies)·기중기차(crane lorries)·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8706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9	공장·창고·부두나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10	전차(戰車)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s)를 포함한다]와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s)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사이드카(side-cars)
8712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자전거를 포함한다)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의 유무나 기계구동식 여부를 불문한다)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5	유모차와 그 부분품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2. 제8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87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8708999000(자동차용 부분품), 8701201000(새미트레일러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8704211010(5톤 이하 일반 화물차)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8708999000(자동차용 부분품)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0.0% 증가했다.

HS 제87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708999000	239,536	30.1	263,519	10.0
2	8701201000	64,300	208.6	157,887	145.5
3	8704211010	110,182	16.0	152,147	38.1
4	8703227000	59,023	26.6	105,268	78.4
5	8704221011	64,304	524.4	103,060	60.3
6	8703231010	85,985	32.1	75,916	-11.7
7	8704231010	58,490	374.3	61,818	5.7
8	8703239010	46,128	132.9	56,665	22.8
9	8704221091	24,745	94.3	56,405	128.0
10	8702102010	38,453	74.9	53,225	38.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791,146		1,085,910	

3. 제8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87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70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5
870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703.21 ~ 8703.90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5
8704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5
8705 ~ 87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708.10 ~ 8708.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708.40	1. 기어박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부분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 기어박스: CTH or RVC 40 2. 부분품 CTH or RVC 45
8708.50	1.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비구동 차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부분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비구동 차축 CTH or RVC 40 2. 부분품 CTH or RVC 45
8708.70 8708.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708.91	1. 방열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부분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 방열기 CTH or RVC 40 2. 부분품 CTH or RVC 45
8708.92	1. 소음기와 배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부분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 소음기와 배기관 CTH or RVC 40 2. 부분품 CTH or RVC 45

8708.9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708.94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5
8708.95 8708.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709 ~ 87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87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한-베트남 FTA는 제87류의 물품에 대해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40%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부분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조정하여 45%기준으로 다소 완화하였다. 그 외의 특정 세번에 대하여 부가가치기준 단일 기준만 규정한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트랙터(제8701호)와 설상주행차 및 골프차(제8703.10호), 특수용도차량(제8705호)등과 같은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여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다. 반면 10인이상 차량(8702) 일반 승용차(8703.21 ~ 8703.90), 화물차(8704)등은 부가가치 45% 단일기준이 적용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87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대체로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8708.80호에 대하여 아세안과의 협정에서는 서스펜션과 부분품을 구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달리 규정한 반면, 한-베트남 FTA는 이러한 물품 구분없이 단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터사이클(8711)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는 부가가치기준 단일기준을 선택하였으나 한-베트남 FTA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판단의 가능성을 확장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8701	8701	CTH or RVC(40)	CTH or RVC(40)
8702	8702	RVC(45)	RVC(45)
8703	870310	CTH or RVC(40)	CTH or RVC(40)

	870321	RVC(45)	RVC(45)
8704	870410~870490	RVC(45)	RVC(45)
8705~8707	870510~870790	CTH or RVC(40)	CTH or RVC(40)
8708	870810~870830	CTH or RVC(40)	CTH or RVC(40)
	870840	-기어박스 CTH or RVC(40) -부분품: CTH or RVC(45)	-기어박스 CTH or RVC(40) -부분품: RVC(45)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 축과 비구동 차축: CTH or RVC(40) -부분품: CTH or RVC(45)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비구동 차축: CTH or RVC(40) -부분품: RVC(45)
	870870	CTH or RVC(40)	CTH or RVC(40)
	870880	CTH or RVC(40)	-서스펜션 쇼크업소버: CTH or RVC(40) -부분품: RVC(45)
	870891	-방열기: CTH or RVC(40) -부분품: CTH or RVC(45)	- 방열기: CTH or RVC(40) -부분품: RVC(45)
	870892	-소음기와 배기관: CTH or RVC(40) -부분품: CTH or RVC(45)	-소음기와 배기관: CTH or RVC(40) -부분품: RVC(45)
	870893	CTH or RVC(40)	CTH or RVC(40)
	870894	RVC(45)	RVC(45)
	870895~870899	CTH or RVC(40)	RVC(45)
8709~8710	8709~8710	CTH or RVC(40)	CTH or RVC(40)
8711	8711	CTH or RVC(40)	RVC(45)
8712~8716	8712~8716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 품명: 쇼바 마운트 ✓ 세번: 8708.99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8708.99호에는 매우 다양한 자동차 부품들이 분류된다. 자동차 방음패드는 내

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흡수하는 하고 내부에서 발생된 음향을 소실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방음패드는 주로 폴리염화비닐(제3904호)와 폴리우레탄(제3905호)를 핵심재료로 하여 생산된다.

한- 베트남 FTA는 제8708.99호에 분류되는 방음패드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자동차 방음패드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원재료와 완성품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역외에서 이들 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여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데 무리가 없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이라 하겠다.

만약 방음패드와 달리 제8708.99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품을 재료로 사용하여 새로운 다른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4단위 세번이 동일하므로 원재료 조달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동일한 호에 속하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내에서만 역외산 재료 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88류 항공기·우주선과 이들의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8801	기구와 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과 우주선 운반로켓
8803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4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achutes),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2. 제8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88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8803200000(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등으로 수출실적은 458천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88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803200000	285	70.8	458	60.9
2	8804001000	1	1158.2	7	584.9
3	8803301000	24	159.4	2	-91.5
해당 류 총 수출금액		310		467	

3. 제8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8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88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88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제88류에 속하는 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항공기 부분품(제8803호)를 수입하여 항공기등(제8801호, 제8802호)을 생산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8804~제8805호에 속하는 낙하산 및 훈련장비 역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낙하산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804.90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낙하산을 생산하는 경우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부분품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88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88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8901	순항선(cruise ships) · 유람선 · 페리보트(ferry-boats) · 화물선 · 부선(barges)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8902	어선, 공작선(factory ships)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의 그 밖의 선박
8903	요트와 유람용이나 운동용의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4	예인선(tugs)과 푸셔크라프트(pushers)
8905	조명선 · 소방선 · 준설선 · 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浮船渠, floating docks),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8906	그 밖의 선박(군함과 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7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 · 탱크 · 코퍼댐(coffer-dams) · 부잔교(landing-stages) · 부표(buoys) · 수로부표(beacons)]
8908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2. 제8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89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8904001000(예인선), 8904901000(화물선), 8903100000(인플랫터블식 보트)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8906900000(그 밖의 선박)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89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8904001000	3,400	2.1	3,300	-2.9
2	8901901000	0	-100.0	1,447	0.0
3	8903100000	1,320	191.4	791	-40.1
4	8907909000	612	106.5	527	-13.9
5	8906900000	10	0	260	2513.1
6	8903999000	0	-100	37	0
7	8908009000	0	0	7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5,342		6,369	

3. 제8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8901 ~ 89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9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 50
890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89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89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된다.

(기본해설) 제89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 베트남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폐선 직전의 중고 어선(제8902호)을 수입하여 기계장치등을 제거하고 해체용 선박(제8908)으로 만들면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내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89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8901~8906	CTH or RVC(40)	CTH or RVC(40)
890710	CTH or RVC(50)	CTH or RVC(50)
890790~890800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18부 광학기기 · 사진용기기 · 영화용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0류~제92류)

제18부	제90류	광학기기 · 사진용기기 · 영화용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제92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살아있는 동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9001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polarizing)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 프리즘 ·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 프리즘 ·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구와 장치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구와 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9003	안경 · 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장착구와 이들의 부분품
9004	시력교정용 · 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 · 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5	쌍안경 · 단안경.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구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9006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장치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7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기록장치나 재생장치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008	투영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장치와 장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우프(negatoscopes), 영사용 스크린
9011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 · 마이크로 영화촬영용이나 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장치(diffraction apparatus)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s)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 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es)와 그 밖의 항행용(navigation) 기기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 · 수로측량기기 · 해양측량기기 · 수리계측 기기 · 기상관측기기 · 지구물리학용기기[컴퍼스(compasses)는 제외한다], 거리측 정기
9016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의 유무를 불문한다)
9017	제도용구 · 설계용구나 계산용구(예: 제도기 · 축소확대기 · 분도기 · 제도세트 · 계 산척 · 계산반), 수지식 길이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 · 마이크로미터 · 캘리 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8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이나 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의 진단장 치 · 그 밖의 전기식 의료장치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장치,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장치, 오존흡입기 · 산소 흡입기 · 에어로졸치료기 · 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 장치
902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スマ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 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 · 외과용 벨트와 탈장대(trusses)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와 결합 ·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 ·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사용하는 장치(내과용 · 외과용 · 치과 용이나 수의용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장치 · 엑스 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 · 고압발생기 · 조절반 · 스크린 · 검사나 치료용 테이블 · 의자와 이와 유사한 제품을 포함한다)
9023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장치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 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9024	재료(예: 금속 · 목재 · 방직용 섬유재료 · 종이 · 플라스틱)의 경도 · 항장력 · 압축 성 · 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계와 기기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 온도계 · 고온계 · 기압계 · 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9026	액체나 기체의 유량 · 액면 · 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이나 검사용 기구와 장치(예: 유량계 · 액면계 · 압력계 · 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 · 제9015 호 · 제9028호나 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구와 장치(예: 편광계 · 굴절계 · 분광계 · 가스 분석기나 매연 분석기), 점도 · 포로서티(porosity) · 팽창 · 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측정 이나 검사용 기구와 장치, 열 · 소리 · 빛의 양의 측정이나 검사용 기구와 장치

	(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s)
9028	기체·액체나 전기의 적산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calibrating meters)를 포함한다]
9029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s)
903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s)·스펙트럼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구와 장치(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구와 장치
9031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구·기기와 기계, 윤곽 투영기
9032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구와 장치
9033	제90류의 기계·기기·기구나 장치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002년도에 제9009호는 삭제

2. 제9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90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9031809099(기타의 측정·검사용 기기), 9031909000(기타의 측정·검사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2119090(기타 대물렌즈)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9031809099(기타의 측정·검사용 기기)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69.8% 증가했다. 특히, 9025900000(온도계·습도계의 부분품)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90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9031809099	78,535	46.2	133,343	69.8
2	9031909000	51,732	0.0	119,842	131.7
3	9002119090	104,913	-6.6	111,991	6.7
4	9001909000	31,609	-3.8	84,361	166.9
5	9031499000	36,471	0.0	59,554	63.3
6	9025900000	1,585	0.0	23,078	1,356.2
7	9013801190	127,756	-47.6	20,156	-84.2
8	9002111000	6,975	175,276.2	17,683	153.5
9	9013801930	9,538	54.9	16,813	76.3
10	9001200000	11,569	277.3	15,636	35.2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60,683		602,457	

3. 제9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9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90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0류에 속하는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고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7002호의 유리제품을 수입하여 제9001.10호의 광섬유를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경이 충족됨에 무리가 없고 따라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것이다. 9011.90호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9011.10호~제9011.80호의 광학현미경을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지만 부분품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부가가치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90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대체로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9002호의 경우 한-아세안 FTA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한-베트남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여 한-베트남 FTA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9001	CTH or RVC(40)	CTH or RVC(40)
9002	CTH or RVC(40)	CTSH or RVC(40)
9003~9033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 ✓ 품명: 자동차 검사구
- ✓ 세번: 9031.80
-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대상물품은 자동차 전면부의 좌우측에 있는 평형등의 부위별 치수를 측정 및 점검하는 기능을 가진 자동차 검사기기이다. 검사구의 원재료는 다음과 같이 주로 알루미늄제 구조물에 다이얼 게이지와 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 명	HS	설 명
Aluminum Base	7610.9	검사구 하부의 알루미늄구조물
Aluminum 판재	7606.11	검사구 중앙의 양측상부 구조물
Aluminum 각재	7610.9	검사구 상부의 알루미늄구조물
Dial Gauge	9031.80	단차측정시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는 비기기
Brass Pin	7415.29	검사구의 상하부를 연결,고정시켜 주는 황동핀

한-베트남 FTA는 검사구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에서 제시한 투입되는 원재료 중에서 다이얼 게이지(제9031호)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다만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면 최소허용기준에 의한 보완은 가능하다. 또한 다이얼게이지의 비중이 최소허용수준은 넘는 정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9101	손목시계 · 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가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102	손목시계 · 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를 갖춘 클록(clocks)(제9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4	차량용 · 항공기용 · 우주선용이나 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s)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s)
9105	그 밖의 클록(clocks)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나 동기(同期)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 · 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s) · 타임레코더(time-recorders)]
9107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나 동기(同期)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9108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09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s)(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
9111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2	클록(clocks) 케이스와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3	휴대용 시곗줄 · 휴대용 시계밴드, 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4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2. 제9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91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9102119010(손목시계), 9114900000(계기판 클록)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9102119010(손목시계)의 '15년 수출실적

은 전년대비 26.5% 감소했다.

HS 제91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9102119010	921	88	677	-26.5
2	9114900000	535	-38.3	332	-37.9
3	9106902000	121	17.9	261	114.8
4	9102999000	157	1466.4	111	-28.9
5	9102299000	73	0	105	45.4
6	9102199090	9	-36.4	59	580.4
7	9101990000	32	0	48	49.2
8	9109900000	0	0	26	0
9	9104001000	23	827	19	-17.8
10	9106909000	2	-87.2	17	715.6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873		1,655	

3. 제9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9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91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1류에 속하는 모든물품은 한- 베트남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동일한 호이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9011.90호의 시계 배터리를 수입하여 제9011.10호의 무브먼트를 생산하는 경우 무브먼트의 원산지결정기준상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이상 발생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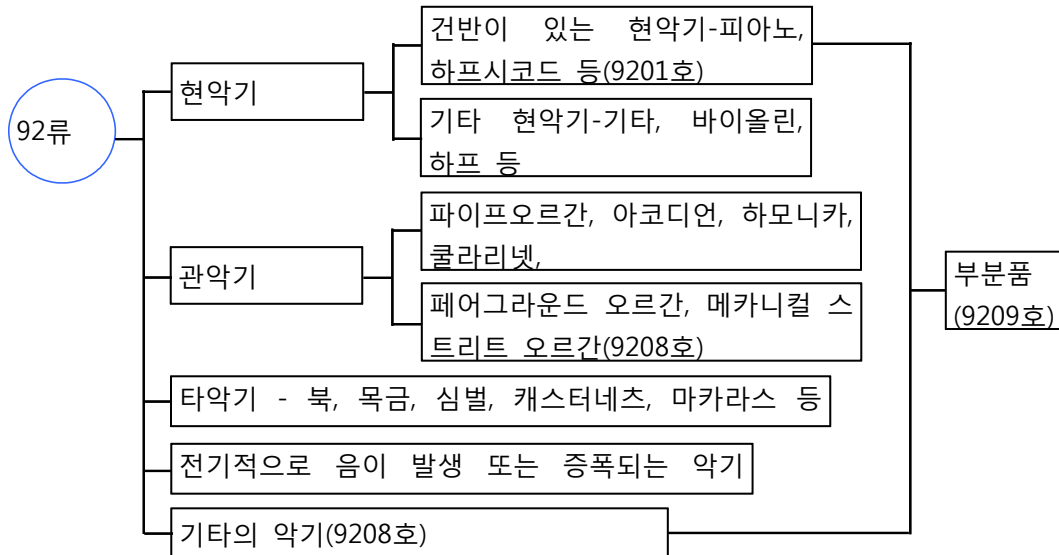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91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91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92류 살아있는 동물

1. 품목분류 체계



2. 제9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92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9209940000(악기의 부분품), 9201909000(기타의 피아노)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9209940000(악기의 부분품)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33.8% 감소했다.

HS 제92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9209940000	1,565	19.4	1,036	-33.8
2	9201909000	84	0	64	-23.6
3	9201109000	54	2606.8	37	-31.6
4	9207103000	21	-45.2	32	53.3
5	9207109000	12	-48.5	12	0.8
6	9201200000	0	0	10	0
7	9202901000	5	-43.3	9	72.3
8	9209920000	10	155.9	7	-35.8
9	9209910000	6	-80.1	6	-2.8
10	9207101000	43	741.7	3	-92.1
해당 류 총 수출금액		1,800		1,216	

3. 제9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9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92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2류에 속하는 모든 약기는 한- 베트남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기부분품(제9029호)를 수입하여 각종 약기(제9201호~제9208호)를 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92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92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19부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3류)

제93류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9301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s) · 피스톨(pistols)과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2	리볼버(revolvers)와 피스톨(pistols)(제9303호나 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3	그 밖의 화기(firearms)와 폭약으로 점화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s) · 총구장전화기 ·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s)과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 공포탄용 피스톨(pistols)과 리볼버(revolvers) · 캡티브볼트형의 무통도살기(captive-bolt humane killers) · 줄발사총(line-throwing guns)]
9304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 · 공기총 · 가스총 · 경찰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6	폭탄 · 유탄 · 어뢰 · 지뢰 · 미사일.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 그 밖의 총포탄 · 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하는 와드(wads)를 포함한다]
9307	검류 · 창.이와 유사한 무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집

2. 제9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93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9304009000(기타의 무기) 등으로 나타났다.

HS 제93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9304009000	424	64.9	1,312	209.4
2	9306900000	38	0	31	-18
3	9306309000	0	0	7	0
4	9303209011	0	0	1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462		1,351	

3. 제9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93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93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3류에 속하는 모든 무기는 한- 베트남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기부분품(제9305호)를 수입하여 각종 무기(제9301호~제9304호)를 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93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93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20부 잡품(제94류~제96류)

제20부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ress supports)·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s)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6류	잡품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젖힘과 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4	매트리스서포트(matress supports), 침구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매트리스·이불·깃털이불·쿠션·푸프(pouffes)·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 셀룰러 고무나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9405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s)·스포트라이트(spotlights)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s)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9406	조립식 건축물

2. 제9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94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9401909000(의자의 부분품), 9405409000(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9405999000(기타 램프와 조명기구)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9401909000(의자의 부분품)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25.9%

증가했다.

HS 제94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9401909000	21,218	6.2	26,710	25.9
2	9405409000	12,274	50.0	12,065	-1.7
3	9405999000	6,785	56.2	8,453	24.6
4	9405109000	3,743	1,212.9	3,046	-18.6
5	9406009090	4,089	27.0	2,798	-31.6
6	9403100000	1,118	-64.5	2,368	111.8
7	9403890000	2,392	-0.6	1,974	-17.5
8	9403209000	1,987	19.9	1,688	-15.0
9	9403900000	2,022	-14.8	1,595	-21.1
10	9401200000	961	40.5	1,504	56.5
해당 류 총 수출금액		56,589		62,201	

3. 제9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9401 94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9403.10 9403.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9403.30 ~ 9403.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 60
9403.70 ~ 9403.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940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9404 ~ 94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94류는 4단위,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94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품목은 한- 베트남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호에 속하는 부분품(제9401.90호)을 수입하여 의자(제9401.10호~제9401.80호)를 제작할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비원산지재료)이 부가가치기준의 조건(역내부가가치 40%이상)을 충족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금속제의 가구(제9403.10~20호)와 플라스틱제 등의 가구(제9403.70~89호)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소재인 금속(72류)나 플라스틱(39류)와 부분품(9403.90호)를 수입하여 가구를 생산하는 경우 부분품이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94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목제가구(제9403.30~60호)의 경우 한-아세안 FTA는 부가가치기준 60%의 단일 기준을 규정하여 한-베트남 FTA보다 엄격하다 할 수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940110~940320	CTH or RVC(40)	CTH or RVC(40)
940330~940360	CTH or RVC(40)	RVC(60)
940370~940600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95류 완구·게임용구와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9503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 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퍼즐
9504	비디오게임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5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이나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 풀(paddling pools)용품
9507	낚시대·낚시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 순회서커스용품과 순회동물원용품, 순회극장용품

※ 2007년도에 제9501호·제9502호는 삭제

2. 제9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95류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9503003990(완구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7200000(낚시바늘), 9506399000(그 밖의 골프용품) 등이며,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9503003990(완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26.7% 감소했다.

HS 제95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9503003990	5,706	66.8	4,184	-26.7
2	9507200000	823	-14.9	1000	21.4
3	9506399000	237	-26.8	871	267.6
4	9504201000	388	20	672	73.1
5	9507901000	245	-36	262	6.9
6	9506990000	406	-7.4	248	-39
7	9508900000	254	-35.3	243	-4.2
8	9503003919	217	74.7	194	-10.6
9	9503003300	19	-64.8	191	913
10	9503003700	115	19	176	52.9
해당 류 총 수출금액		8,410		8,041	

3. 제9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95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9504.20 ~ 9504.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950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9505 ~ 95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95류는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95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완구 및 운동용구 등은 한-베트남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 호에 속하는 부분품(제9503.29호)을 수입하여 완구(제9503호)를 제작할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비원산지재료)이 부가가치기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

다. 완구 외에 골프채(제9506.31호)의 경우도 동일하다.

다만 게임용구(제9504.20~50호)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제9504.90호의 게임용구 부분품을 수입하여 게임용구를 생산하여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데 무리가 없다. 만약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였다면 역외산 부분품의 사용이 일정부분 제한되는 엄격한 원산지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95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대체로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게임용구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여 동일한 호에 속하는 부분품의 역외산 사용이 제한되는 반면 한-베트남 FTA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변경하여 이를 완화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9503	CTH or RVC(40)	CTH or RVC(40)
950420~950450	CTSH or RVC(40)	CTH or RVC(40)
950490~950890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96류 잡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9601	가공한 아이보리(ivory) · 뼈 · 귀갑(龜甲) · 뿔 · 가지진 뿔 · 산호 · 자개 ·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2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 · 스테아린(stearin) · 천연검·천연수지나 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s)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젤라틴의 제품
9603	비 · 브러시(기계 · 기구 ·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 ³⁸⁾ · 자루걸레(mops)와 깃 먼지떨이, 비나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스퀴지(squeegees)[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s)는 제외한다]
9604	수동식 체와 수동식 어레미(riddles)
9605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 · 바느질용 · 신발용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9606	단추 ·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s) · 스냅파스너(snap-fasteners)와 프레스스터드(press-studs) · 단추의 몰드(moulds)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블랭크(blanks)
9607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s)와 그 부분품
9608	볼펜, 팁이 펄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ped)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 · 철필형 만년필(stylograph pens)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s)이나 슬라이딩 펜슬(sliding pencils), 펜 홀더 · 펜슬 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caps)과 클립(clips)을 포함하며 제 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9	연필(제9608호의 펜슬은 제외한다) · 크레용 · 연필심 · 파스텔 · 도화용 묵탄 · 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961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9611	날짜 도장(日附印) · 봉합용 스탬프 · 넘버링 스탬프(numbering stamps)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s)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組版)용 스틱과 조판(組版)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9612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상자들이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613	흡연용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기계식이나 전기식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라이터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4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을 포함한다)와 시가홀더 · 시가렛홀더와 이들의 부분품
9615	빗 · 헤어슬라이드(hair-slides)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머리핀 · 컬링핀(curling pins) · 컬링그립(curling grips) · 헤어컬러(hair-curlers)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와 이들의 마운트(mounts)와 두부(頭部, heads), 화장품류나 화장용품의 분첩(powder-puffs)과 패드(pads)
9617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³⁹⁾)
9618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lay figures),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9619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 ·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이와 유사한 제품(재료를 불문한다)

2. 제9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96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물품은 9607191000(슬라이드파스너), 9607201000(슬라이드파스너의 부분품), 9606210000(플라스틱 단추)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9603500000(그 밖의 브러쉬)의 경우 '15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HS 제96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9607191000	35,077	5.4	33,506	-4.5
2	9607201000	8,822	17.5	7,953	-9.9
3	9606210000	7,734	-4.7	6,107	-21.0
4	9603500000	162	-30.4	5,682	3,409.1
5	9607202000	4,939	1.4	5,149	4.3
6	9607199000	4,361	45.5	4,814	10.4
7	9607110000	3,927	24.6	2,932	-25.3
8	9606220000	1,705	-29.7	2,669	56.5
9	9606299000	1,860	8.4	2,562	37.7
10	9606100000	4,046	-4.1	2,491	-38.4
해당 류 총 수출금액		72,633		73,865	

38) 모터를 갖춘 청소기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

39) 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7020호에 분류한다.

3. 제9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9601 ~ 96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9608.10 ~ 9608.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9608.50 ~ 9608.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960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9609.20 ~ 960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9610 ~ 96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9613.10 ~ 9613.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961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9614 ~ 96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96류는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96류에 속하는 잡품은 한- 베트남 FTA에서 기본적으로 한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품목(볼펜, 연필, 라이터 등)에 대해서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경우 완성품과 부분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완화하여 역외에서 동일한 호에 속하는 부분품으로 수입하여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96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대체로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볼펜, 연필, 라이터등의 일부세번은 한-아세안 FTA는 엄격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반면 한-베트남 FTA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완화하였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9601~9607	CTH or RVC(40)	CTH or RVC(40)
960810~960840	CTSH or RVC(40)	CTH or RVC(40)
960850~960899	CTH or RVC(40)	CTH or RVC(40)
960910	CTSH or RVC(40)	CTH or RVC(40)
960920~960990	CTH or RVC(40)	CTH or RVC(40)
9610~9612	CTH or RVC(40)	CTH or RVC(40)
961310~961380	CTSH or RVC(40)	CTH or RVC(40)
961390	CTH or RVC(40)	CTH or RVC(40)
9614~9619	CTH or RVC(40)	CTH or RVC(40)

5.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 품명:지퍼
 - ✓ 세번: 9607.19
 - ✓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지퍼는 의류용, 신발용, 여행용구 등 다양한 용도와 크기로 제작된다. 대부분의 지퍼는 방직용섬유의 2개의 좁은 대로 구성되고 각 대의 일단에 플라스틱제의 스크프가 부착되어 슬라이더에 의하여 서로 맞물리도록 만들진다.

따라서 지퍼의 주요 원재료는 방직용 섬유(제54류 또는 제55류)와 플라스틱(제39류)로 단순구성된다.

한-베트남 FTA는 지퍼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지퍼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세번과 지퍼의 세번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들 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지퍼를 생산하여도 지퍼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따라서 지퍼의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역외산재료를 사용하여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데 무리가 없는 완화된 기준으로 풀이된다.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제97류)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屬)이나 종(種)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屬)이나 종(種)의 어린 것도 포함되며,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

제97류 예술품·수집과 골동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9701	회화·데생과 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2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와 석판화
9703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9704	우표나 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4907호의 것을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9705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과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6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제9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제97류의 對베트남 수출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97류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4년~2015년)

(단위 : 천불, %)

순번	HS 코드	2014		2015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9701101000	1	0	52	5593.7
2	9702001000	6	0	3	-49.5
3	9702002000	0	0	3	0
4	9703001000	0	0	3	0
5	9703002000	0	0	1	0
해당 류 총 수출금액		7		62	

3. 제9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9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구성분석) 제97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7류에 속하는 예술품 등은 한- 베트남 FTA에서 기본적으로 한- 베트남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97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S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97	CTH or RVC(40)	CTH or RVC(40)

2. 한-베트남 FTA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2-1. 수출유망품목 선정

우리기업이 베트남으로 수출 시 한-베트남 FTA 활용할 수 있는 유망품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우선 2015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수출규모가 크고, 베트남으로 수출 시 FTA 관세 양허 품목으로서 특혜세율의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을 선별하였다. (이때 베트남이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은 FTA 활용실익이 없으므로 제외) 다음으로 선별된 품목 중에서 10대 산업을 기준으로 수출상위 품목을 2개씩 선정하였다.

[한- 베트남 FTA 산업별 수출유망 품목 선정기준]

1. 2015년 수출실적 상위
2. 베트남측 양허품목(베트남의 무관세 품목 제외)
3. 10대 산업별 수출상위 2개 품목 선정

[한- 베트남 FTA 산업별 수출유망 품목 20선]

연번	산업	HSK	원산지결정기준	MFN(%)	FTA(%)
1	광산물	2712.10-9000	CTH or RVC(40)	3	0
2	광산물	7106.92-9000	CTH or RVC(40)	1	0
3	기계류	8414.80-9230	CTSH or RVC(40)	5	0
4	기계류	8402.19-9000	CTH or RVC(40)	3	0
5	농림수산물	0303.43-0000	WO	15	5
6	농림수산물	0303.90-2010	WO	12	0
7	생활용품	6406.10-2000	CTH or RVC(40)	15	5
8	생활용품	6406.20-1000	CTH or RVC(40)	30	18
9	섬유류	5407.43-0000	CTH or RVC(40)	12	0
10	섬유류	5603.12-1000	CC or RVC(40)	12	5
11	잡제품	9004.10-9000	CTH or RVC(40)	20	0
12	잡제품	9004.90-2000	CTH or RVC(40)	20	0
14	전자전기제품	8538.90-9000	CTSH or RVC(40)	3	0
13	전자전기제품	9405.40-9000	CTH or RVC(40)	10	5
15	철강금속제품	7305.31-9000	CTH or RVC(40)	5	0
16	철강금속제품	7325.99-1000	CTH or RVC(40)	20	5

17	플라스틱고무및 가죽제품	4106.93-0000	CTH or RVC(40)	3	0
18	플라스틱고무및 가죽제품	3924.10-0000	CTH or RVC(40)	27	22
19	화학공업제품	7006.00-9000	CTH or RVC(40)	5	0
20	화학공업제품	3215.90-9000	CTH or RVC(40)	7	5

2-2. 수출유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1. 광산물		석유 왁스 (HS 2712.10-9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석유 왁스	2712.10-9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원유	2709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석유왁스는 원유의 감압증유 잔사유를 차가울 때 프로판으로 탈레이크, 탈납, 탈유한 다음 분리하거나 잔사유가 뜨거울 때 푸르푸랄로 처리한 다음 푸르푸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한-베트남 FTA는 석유왁스가 분류되는 제2712.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원산지재료에 해당하는 원유와 완제품인 석유왁스의 6단위 세번을 상호비교하여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원재료인 원유는 제2709호에 속하고 왁스는 제2712.10호에 속하므로 6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여 왁스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베트남 FTA는 세번변경기준만 단일규정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협정들은 석유제품에 대하여 별도로 협정에서 정한 특정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협정별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주의하여야 하겠다.			

2. 광산물		용접봉(HS 7106.92)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용접봉	7106.92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은	7106	원산지
	구리 빌렛	7403.13	비원산지
	알루미늄 빌렛	7601.20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베트남 FTA는 은이 함유된 용접봉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시된 주요 원재료의 내역을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해보면 구리빌렛과 알루미늄 빌렛이 비원산지재료로 용접봉과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용접봉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고 부가가치기준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만약 원재료중 은을 역외에서 수입하여 용접봉을 생산하였다면 비원산지재료인 은과 용접봉의 4단위 세번이 동일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여 한-베트남 FTA가 규정한 부가가치 계산방식에 따라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40%이상의 부가가치가 산출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베트남 FTA는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을 (FOB-비원산지재료비)/FOB*100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기계류		에어컴프레서(HS 8414.8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에어컴프레서	8414.8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크랭크 케이스	8414.90	비원산지
	기어	8483.40	원산지
	샤프트	8483.10	비원산지
	실린더헤드 본체	8414.90	비원산지
	피스톤	8409.91	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베트남 FTA는 에어컴프레서가 속한 제8414.8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시된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면 우선 크랭크케이스, 샤프트, 실린더헤드와 같은 비원산지재료와 에어컴프레서의 6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에어컴프레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고 부가가치기준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만약 제시된 것과 달리 에어컴프레서와 동일한 6단위 세번에 해당하는 재료를 역외에서 수입하여 생산한 경우에는 세번이 동일한 비원산지재료가 최소허용기준의 범위(FOB 가격의 10%)내에서 사용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기계류		보일러 (HS 8402.19-9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보일러	8402.19-9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컨트롤 판넬	8537.10	비원산지
	압력기 시계	9026.20	비원산지
	ventury valve	8481.80	원산지
	캐스트 아이언	7303.00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프레셔 센서	9026.90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베트남 FTA는 보일러가 속한 제8402.19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례에서 보일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재료들의 HS 번호와 원산지 지위를 확인해보면 비원산지재료에 해당하는 판넬, 시계, 캐스트 아이언의 세번과 보일러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보일러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기준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례에서 제시된 핵심재료를 모두 수입하여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보일러와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보일러와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번이 동일한 비원산지재료가 최소허용기준의 범위(FOB 가격의 10%)내에서 사용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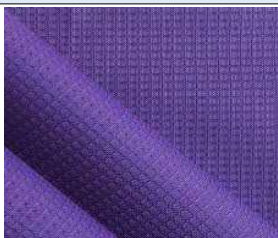
5. 농림수산물 냉동참치(HS 0303.43-0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냉동참치	0303.43-0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참치	0302	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한-베트남 FTA는 제0303.43호에 속하는 냉동참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정문 제3.2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2조 ‘바’호에는 “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그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로상품”은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치는 일반적으로 영해를 벗어나 원양에서 잡아 선상에서 바로 냉동하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그러므로 냉동참치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등록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참치를 획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참치는 일반적 공산품과 다르므로 “선박국적증명서”와 “원양어획물반입신고확인서” 등을 원산지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 원양어획물반입신고확인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선박이 획득할 어획물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반입하는 항구의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어획물 반입신고를 하여 확인을 받는 서류		

6. 농림수산물 (HS 0303-90-201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냉동 명란	0303-90-201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명태	0302.55	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명란은 명태를 어획하는 즉시 용도나 수요에 따라 제품으로 가공하면서 부산물로 나오는 명란이나 고니 등을 별도선별하여 동결하는 제품이다. 냉동명란은 보통 배에서 명태를 잡는 즉시 선상에서 급속냉동하는 방식과 육지로 가져와서 급속동결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명태는 주로 북태평양의 러시아 캄차카반도 주변 해역, 미국의 베링해 알래스카만 주변 해역, 일본의 홋카이도 근해 해역에서 서식한다. 한-베트남 FTA는 제0303.90호에 속하는 냉동명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3.2조에서 규정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협정문 제3.2조는 “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그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로상품”은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태가 주로 잡히는 러시아, 미국, 일본의 해역들은 공해이므로 영해밖의 수역에서 잡히는 어로상품은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획득될 때만 원산지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등록되고 한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명태를 획득하고 선상에서 명란을 바로 분리하여 냉동시킨 경우에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7. 생활용품		갑피의 부분품(HS 6406.10-2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갑피의 부분품	6406.10-2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인조가죽	3920.99	비원산지
	소가죽	4107.99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신발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갑피의 부분품에 대하여 한-베트남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피의 부분품은 신발의 소재에 따라 핵심원재료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제시된 사례는 인조가죽과 소가죽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사례의 핵심 원재료 내역과 HS 번호, 원산지 지위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해 보면 우선 원재료 모두 비원산지재료로 인조가죽과 소가죽의 4단위 세번과 갑피부분품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갑피부분품을 생산할 때 인조가죽과 소가죽 모두 역외에서 수입하여도 한국에서 충분한 공정과정을 거쳐 제조하면 한-베트남 FTA에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갑피부분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 기준 충족여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8. 생활용품		신발 밑창(HS 6406.20-1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신발 밑창	6406.20-1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고무판	4008.29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베트남 FTA는 제6406.20호에 분류되는 신발밑창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발의 밑창은 고무판을 녹여 모델별로 사출성형하여 생산한다. 따라서 고무판의 역외에서 수입하여 한국에서 성형과정을 거쳐 생산하는 경우에 고무판과 밑창의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신발 밑창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9. 섬유류		차단용 부직포(HS 5603.12-9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차단용 부직포	5603.12-9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부직포	5603.93	원산지
	방지제	3926.90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베트남 FTA는 차단용 부직포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단용 부직포는 부직포 원단에 차단기능을 하는 방지제를 도포하여 생산한다. 핵심원재료인 부직포와 방지제의 HS 번호와 원산지지위가 사례와 같을 때 원산지를 판단해보면 비원산지재료인 방지제와 차단용 부직포의 2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이미 충족하였으므로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 부직포를 역외에서 수입하거나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재료인 부직포와 완제품인 차단용 부직포의 2단위 세번이 동일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또한 부직포는 완제품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원재료이므로 최소허용기준의 범위(FOB 가격의 10%)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베트남 FTA는 부가가치계산을 공제법에 따르고 있다.		

10. 섬유류		나일론 직물(HS 5407.43.0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나일론 직물	5407.43-0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나일론 사	5402.51	비원산지
	염료 1	3204.90	비원산지
	염료 2	3204.11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베트남 FTA는 나일론 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나일론 직물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와 HS 번호, 원산지지위를 사례와 같이 가정하고 원산지를 판단해 보도록 한다.		
	사례에서 모든 원재료가 비원산지재료이므로 모든 재료와 나일론직물의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이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기준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한-미 FTA 등의 일부 협정은 직물생산에 사용되는 실의 경우 제외세번으로 규정하여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여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한 반면 한-베트남 FTA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한 특징을 보인다.		

11. 잡제품	선글라스(HS 9004.10-9000)		
	품명	HS code	이미지
완제품	선글라스	9004.10-9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안경테	9003.11	비원산지
	안경렌즈	9001.50	비원산지
	볼트	7318.15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베트남 FTA는 선글라스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선글라스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와 HS 번호, 원산지지위를 사례와 같이 가정하고 원산지를 판단해 보도록 한다. 사례는 모든 핵심재료를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경테, 렌즈, 볼트와 선글라스의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선글라스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번변경기준 충족 외에 부가가치기준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선글라스의 핵심재료들을 모두 수입하더라도 한국에서 충분한 공정을 거쳐 생산하면 세번변경기준 충족에 의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고 한-베트남 FTA의 특혜를 통한 수출이 가능하다.		

12. 잡제품		시력교정용 안경(HS 9004.90-109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시력교정용 안경	9004.90-109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안경테	9003.11-0000	비원산지
	안경렌즈	9001.40-1000	원산지
	볼트	7318.15-2000	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베트남 FTA는 선글라스와 마찬가지로 시력교정용 안경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시력교정용 안경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와 HS 번호, 원산지지위를 사례와 같이 가정하고 원산지를 판단해 보도록 한다.		
	우선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해 보면 비원산지재료인 안경테와 완성품인 안경의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시력교정용 안경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부가가치기준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안경의 핵심재료들의 4단위 세번이 완성품과 상이하므로 이들 원재료를 모두 수입하더라도 한국에서 충분한 공정을 거쳐 생산하면 세번변경기준 충족에 의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고 한-베트남 FTA의 특혜를 통한 수출이 가능하다.		

13. 전자전기 터치스크린(HS 8538.90-9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터치스크린	8538.90-9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ITO glass	7005.10	비원산지
	ITO film	3920.62	비원산지
	은 화학제품	7106.10	비원산지
	PCB	8534.00	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원산지판정	한-베트남 FTA는 터치스크린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시된 핵심원재료와 HS 번호, 원산지지위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해 보면 3개의 비원산지재료와 완제품인 터치스크린의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터치스크린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에서 기업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부가가치기준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14. 전자전기 LED 모듈(HS 9405.40-9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LED 모듈	9405.40-9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PCB 기판	8534.00	비원산지
	LED 칩	8541.40	비원산지
	다이오드	8541.10	원산지
	전기저항기	8533.29	비원산지
	플라스틱 하우징	9405.99	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베트남 FTA는 LED 모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시된 핵심원재료와 HS 번호, 원산지지위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해 보면 3개의 비원산지재료와 완성품인 모듈의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한편 제시된 원재료 중에서 완성품인 모듈과 4단위 세번이 동일한 플라스틱 하우징의 원산지지위에 따라 원산지 판단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플라스틱 하우징을 원산지재료가 아니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플라스틱 하우징이 한-베트남 FTA가 규정한 FOB 가격 10% 이내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비록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허용기준에 의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하우징의 비중이 최소허용기준을 초과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따라서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5. 철강금속 스텐레스 강관 (HS 7305.31-9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스테인레스 강관	7305.31-9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철판	7208.52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베트남 FTA는 스텐레스 강관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스테인레스 강관은 철판을 구멍을 뚫어 가공하거나 구부려서 이음매를 용접하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강관 생산 원재료인 철판을 역외에서 수입하여 한국에서 강관형태로 공정을 수행하여 생산하더라도 원재료인 철판과 강관의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강관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결국 강관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번변경기준 충족이 용이하므로 부가가치기준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16. 철강금속		주조제품 (HS 7325.99)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주조제품	7325.99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스틸 스크랩	7204.10	비원산지
	pig iron	7201.10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베트남 FTA는 주조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주조제품은 철과 철 스크랩 등의 원재료를 용해하여 제품 모형에 주입하여 생산한다.		
	제시된 핵심원재료를 모두 수입하여 한국에서 용해 및 주조공정을 수행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재료와 제품의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베트남 FTA는 주조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세번변경기준을 무리없이 충족하므로 부가가치기준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주조제품의 생산 특성상 제품에 맞는 모형을 설계하고 모형틀을 제작하여 용해된 원재료를 주입하여 생산하므로 주조제품과 동일한 호(제732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주조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중에서 주로 세번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 판단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17.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고무 가스켓(HS 4106.93)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고무 가스켓	4106.93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고무	4002.59	비원산지
	가황촉진제 1	2934.20	비원산지
	가황촉진제 2	2930.20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베트남 FTA는 고무가스켓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고무가스켓은 고무와 가황촉진제를 이용하여 원하는 모양 및 규격의 개별제품으로 생산한다.		
	제시된 핵심 원재료를 모두 역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스켓 생산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재료와 가스켓의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가스켓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가스켓은 원재료를 모두 수입하더라도 한국에서 생산공정을 수행하였다면 한-베트남 FTA가 요구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이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선택기준 중 하나인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18.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실리콘 매트(HS 3924.1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실리콘 매트	3924.1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실리콘	3901.10	비원산지
	UV 인쇄잉크	3215.19	비원산지
	PVC 시트	3921.90	비원산지
	소매포장지	4819.10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베트남 FTA는 실리콘 매트가 분류되는 제3924,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실리콘 매트 생산에는 실리콘, 잉크, 시트, 포장지 등이 핵심재료로 사용된다. 제시된 핵심원재료와 HS 번호, 원산지지위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		
	원재료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으므로 모든 재료와 완성품인 매트 4단위 세번을 상호비교하여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재료와 제품의 4단위 세번이 모두 상이하므로 매트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이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선택기준 중 하나인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여부는 검토한 필요가 없다.			

19. 화학공업		잉크(HS 3215.90-9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잉크	3215.90-9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안료 1	3206	비원산지
	안료 2	3210	원산지
	계면활성제	2915.90	비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베트남 FTA는 잉크가 분류되는 제3215.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잉크는 색상에 따른 안료와 계면활성제를 혼합하여 생산한다. 제시된 핵심원재료와 HS 번호, 원산지지위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		
	비원산지 재료에 해당하는 안료 1과 계면활성제의 4단위 세번과 잉크의 4단위 세번을 상호비교하여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재료와 제품의 4단위 세번이 모두 상이하므로 잉크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이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선택기준 중 하나인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20. 화학공업		전사지(HS 3212.10-0000)	
완제품	품명	HS code	이미지
	전사지	3212.10-0000	
원재료 내역	품명	HS code	원산지
	pet foil	3920.62	비원산지
	잉크	3215.19	비원산지
	잉크 보조제	3215.19	원산지
	이형제	3215.19	비원산지
	점착제	3506.91	원산지
원산지판정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베트남 FTA는 전사지가 분류되는 제3212.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전사지는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용, 각종플라스틱 구조물용, 가구용, 문구류, 화장품용기 및 일용잡화 등에 사용되는 데 필름 표면에 고도의 고분자처리와 인쇄를 하여 특정무늬를 형성하여 생산한다. 제시된 전사지의 핵심원재료와 HS 번호, 원산지지위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 비원산지 재료에 해당하는 foil, 잉크, 이형제의 4단위 세번과 전사지의 4단위 세번을 상호비교하여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재료와 제품의 4단위 세번이 모두 상이하므로 전사지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이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선택기준 중 하나인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Ⅲ. 對베트남 주력수출품목의 양허현황과 FTA활용실익

2-3. 소결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망품목을 2015년 수출규모와 양허현황을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산업간 형평을 고려하여 MTI 1단위 기준 10대 산업별로 수출상위 2대 품목을 선정하여 총 20개 품목을 선별하고 이들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검토 하였다.

한-베트남 FTA 수출유망 품목 20선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산업별로 일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품목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중에서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다수의 수출유망품목이 사용되는 핵심원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베트남 FTA 수출유망품목들은 대체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달리 말하자면 원재료들을 모두 수입하여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과정을 거친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데 어려움이 없는 완화된 기준으로 풀이 할 수 있다.

다만 LED 모듈과 차단용 부직포의 경우 핵심원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이 동일하므로 동일세번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원산지지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선택기준의 하나인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베트남 FTA는 전체품목의 70%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유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과 유사하게 다른 품목들도 원산지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한-베트남 FTA와 베트남이 제3국과 체결한 FTA와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3-1. 對베트남 교역현황과 비교우위 품목 선정

가. 베트남의 FTA 체결현황

본 장에서는 베트남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와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상호간에 우리의 주력수출품을 중심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상호비교 분석하여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비교대상이 되는 협정은 한-베트남 FTA와 동일 한 형태인 양자협정으로 제한하고 아세안회원국으로서 체결한 다자협정을 제외하고자 한다. 다자협정의 일원으로 FTA는 베트남의 산업특성을 반영한 원산지결정기준이 마련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 협정은 베트남-한국, 베트남-일본, 베트남-칠레 협정으로 한다.

[베트남의 FTA 발효현황(2016. 10월 기준)]

협정	발효일
아세안-중국 FTA	2005.7.1
아세안-한국 FTA	2007.6.1
아세안-일본	2008.12.1
베트남 일본 FTA	2009.10.1.
아세안-인도	2010.1.1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0.1.1
베트남-칠레 FTA	2012.3.14
베트남-한국 FTA	2015.12.20

나. 비교우위품목의 선정

우리나라가 베트남으로 주력으로 수출하는 20대 품목에 대하여 베트남의 연평균 수입증가율, 한국산 점유율,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의 양허내용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20대 품목 중 11개의 품목은 최혜국대우관세율이 0%로 FTA 활용의 실익이 없고 9개의 품목은 여전히 단계별로 관세가 철폐되므로 베트남이 제3국과 체결한 FTA 상호간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9개품목을 중심으로 베트남이 양자협상에 의하여 체결한 3개 협정(한국, 일본, 칠레)간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의 한국산 점유율과 양허현황]⁴⁰⁾

연 번	HS 6	품목명	연평균 증가율	대 한 수입액	한국 점유율	MFN	한 - 아 세안	한 - 베 트남
1	851770	전화기(휴대폰)의 부분품	47.8	2,286	39.9	0-5%	0%(2016)	
2	854232	메모리반도체	56.1	1,205	80.5	0%		
3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117.6	800	23	0%		
4	853400	인쇄회로	69	704	55	0%		
5	854239	전자집적회로의 기타	79.5	595	21.1	0%		
6	854370	기타의 전기기기	68.7	496	73.7	0%		
7	271019	석유과 역청유 조제품	-1.5	339	7.2	3~10%	0%(2018)	
8	847989	기계류의 기타	18.8	277	37.6	0%		
9	600410	편물(폭 30cm초과, 탄성 사 5%이상)	14.4	274	37.6	12%	0%(2018)	
10	600622	기타편물의 염색한것	-6.8	255	43.6	12%	0%(2018)	
11	760612	알루미늄의 판, 시트, 스트립	14.8	248	67.2	0~3%	0%	
12	72083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7.9	242	28.6	0%		
13	870899	자동차 부분품의 기타	0.2	240	47.1	10~15%	민감	
14	271012	경질석유 및 조제품	-	214	7.7	7~12%	초 민 감	
15	852851	모니터(LCD모니터 포함)	19.6	200	71	0%		
16	590320	방직용 직물(폴리우레탄 을 침투,도포, 피복)	4.2	196	28.3	12%	0%(2018)	
17	621790	의류의 부분품	34.5	183	83.8	20%	0%(2018)	
18	853120	LCD, LED패널	50.7	180	89.5	0%		
19	854390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	61.7	179	37.3	0%		
20	390210	폴리프로필렌	10	176	29.5	0%		

*연평균증가율을 2011~2014년 對세계수입액, 對한국수입액 및 점유율은 2014년 기준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er(ITC)- Trade map, 베트남 관세청, 베트남 양허안

40) 이 자료는 2015년 한국무역협회 「한-베트남 FTA 기대효과」의 주요 수출품목 양허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연평균증가율과 한국산 수입액 및 점유율의 2015년 통계의 부재로 2014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3-2. 비교우위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⁴¹⁾

베트남이 양자협정에 의해 체결한 한국, 일본, 칠레와의 협정간의 주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공통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속서에 품목별기준표를 작성하여 개별 품목코드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이러한 품목별기준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은 공통기준으로 규정하였다.

한국, 일본, 칠레와 맺은 협정 모두 품목별기준의 공통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여 협정상호간에 엄격성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제 60류와 62류에 대하여 베트남-일본 FTA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기본으로 하면서도 제품생산에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경우 특정한 가공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될 것을 나열하여 매우 엄격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한 특징을 보인다.

베트남-한국 FTA에서도 제62류에 대하여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동시에 가공공정기준이 역내에서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과의 차이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는 것이다.

HS	베트남-한국	베트남-일본	베트남-칠레
851770	CTH or RVC(40)	CTH or RVC(40)	CTH or RVC(40)
271019	CTH or RVC(40)	CTH or RVC(40)	CTH or RVC(40)
600410	CTH or RVC(40)	CC ⁴²⁾	CTH or RVC(40)
600622	CTH or RVC(40)		CTH or RVC(40)
760612	CTH or RVC(40)	CTH or RVC(40)	CTH or RVC(40)
870899	CTH or RVC(40)	CTH or RVC(40)	CTH or RVC(40)
271012	CTH or RVC(40)	CTH or RVC(40)	CTH or RVC(40)
590320	CC or RVC(40)	CC ⁴³⁾	CTH or RVC(40)
621790	CC(재단 및 봉제) or RVC(40)	CC ⁴⁴⁾	CTH or RVC(40)

41) 출처는 베트남 재무부 (The Ministry of Finance) <http://www.mof.gov.vn>

42) provided that, where non originating materials of 50.04~50.06, 51.06~51.10, 52.04~52.07, 53.06 ~53.08, 54.01~54.06, or 55.08 ~55.11 are used, each of the non originating materials is spun,

3-3. 소결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공통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속서에 품목별기준표를 작성하여 개별 품목코드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이러한 품목별기준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은 공통기준으로 규정하였다.

베트남이 공통기준으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이상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으로 한-베트남 FTA에서 전체 품목의 약 70%를 공통기준으로 규정하였다.

베트남이 우리나라 외에 일본 및 칠레와 맺은 협정에서도 한-베트남 FTA와 유사하게 대다수의 품목을 동일한 공통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베트남은 자국산업의 중요성 및 민감도가 높은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엄격화에 집중하고 그 외 대다수 품목은 협정 상대국 구분없이 공통규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우위품목에서도 베트남은 한국, 일본, 칠레와 맺은 협정 모두 품목별기준의 공통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여 협정상호간에 엄격성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or dyed or printed entirely in either Party or non-Party which is a Member State of the ASEAN; or No required CTC, provided that the good is dyed or printed entirely and that the non-originating material of Chapter 60 is knitted or crocheted entirely in either Party or a non-Party which is a Member State of the ASEAN

43) ** (ex, 50.07, 51.11~51.13, 52.08 ~52.12, 53.09~53.11, 54.07, 54.08, or 55.12~55.16, provided that, wher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50.04 ~50.06, 51.06 ~51.10, 52.04~52.07, 53.06 ~53.08, 54.01~54.06, or 55.08~55.11 are used, each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is spun entirely in either Party or a non-Party which is a Member State of the ASEAN.

44) provided that, wher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50.07, 51.11 ~51.13, 52.08 ~52.12, 53.09 ~53.11, 54.07, 54.08, 55.12 ~55.16 or chapter 60 are used, each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is woven entirely in either Party or a non-Party which is a Member State of the ASEAN.

4. 수출유망품목 한-베트남 FTA 활용가이드

4-1. 베트남의 통관환경

1) 베트남의 통관행정 조직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한 베트남의 정부기관은 재무부 산하 관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으로 관세총국의 기능은 통관절차 수행, 수출입화물의 검사 및 감독, 밀수조사, 단속 등 기타 세관 업무의 집행 등이다.

베트남 관세총국의 조직은 본청(해관총국), 성급세관(해관국), 지역세관(해관지국) 등 3단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63개 직할시 및 성 가운데 31개 직할시 및 성에 성급세관(해관국)이 설치되어 있다.

다만, 각 성급세관의 경우 중앙의 재무부와 본청의 강한 지휘 통제를 받고 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 세관 직원 역시 성급세관별 자율선발체제로 세관원의 재량과 권한이 막강하여 신속통관 지연, 일관성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베트남의 관세율

1999년 1월 1일 베트남은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여, 기존의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일반 관세율, MFN관세율, 특별특혜 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품목별 특별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시작했다.

베트남의 관세율 체계

구분	주요 내용
일반 관세율	특혜관세율 및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하는 163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
MFN 관세율	베트남과 MFN 협정을 체결한 미국, 일본, EU 등 총 163개국에 대해 적용하는 특혜관세
특별특혜 관세율	베트남과 특별 관세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적용하는 고나세로 현재 아세안 회원국 간 실시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 등이 이에 해당

출처 : 2015 4분기 FTA무역리포트

3) 베트남의 비관세 장벽

베트남의 비관세 장벽은 아래 표와 같이 크게 자동수입허가, 안전인증서, 라벨링, 표준규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수입허가 및 안전인증서는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특정품목에 대해서만 라벨링 및 표준규격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용된다.

베트남의 비관세 장벽

구분	주요 내용
자동수입허가(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	산업무역부에서 지정하는 화장품, 철강제품 등 특정 품목은 물품의 하역 전 자동수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안전인증서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음료, 약품, 약재,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이 필요함
라벨링(Labelling)	모든 수입물품은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포장용기에 법에서 규정하는 필수정보를 기재할 것
표준규격	품목별 표준 규격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기준에 맞추어 표준규격이나 제품설명을 작성해야 함

출처 : 2015 4분기 FTA무역리포트

4) 관세면제제도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근거로 해외 직접투자자에 대한 각종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외국계 투자업체의 공장설비 이전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용 공장 설비 기계류”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베트남에 면세수입을 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은 베트남 투자기획부로부터 투자허가서 취득 후 60일 이내에 수입계획을 각 성의 투자기획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입되는 설비 기계류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면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하여 주고 있다.

“투자용 공장 설비 기계류” 이외에 일반적인 면세규정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으며, 수출용 일시 수입물품, 재수입용 일시 수출물품, 전시회 및 박람회용 물품 등에 대하여도 관세부과가 면제된다.

베트남의 통관단계별 유의사항

구분	단계	유의 사항
1	수입신고 전 준비단계	- 산업무역부(MOIT)에서 정하는 수입자동허가(AIL)대상 품목은 수입 신고 이전, 물품의 하역 전, 산업무역부에서 허가를 획득해야 함 - 일부 서류에 대하여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베트남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함 - FTA 세율 적용 희망 시 한국에서 정확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함
2	수입신고 및 세관심사 단계	- 세관별로 업무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일 제품에 대하여 다른 관세율을 적용 받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함 - 관세총국과 다른 정부 기관과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통관이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음 - 관세사 제도가 존재하지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 수입신고에 전문성이 다소 감소하는 경우가 있음 - 전산시스템으로 수입신고 후 추가적으로 서류도 제출해야 함 - 세관통관시스템상으로 통관 진행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세관 방문 등으로 인해 손실발생의 가능성이 있음 - 기계류 HS 분류가 우리나라에 비해 자세하지 않아 품목분류가 어려움
3	면세 등 특혜 적용	- 면세가 적용되는 “투자 목적의 고정 자산인 공장 설비” 기준 판단에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면세 신청에 있어 정형화된 면세신청서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 - 샘플과 광고 및 홍보 물품도 관세 납부의 대상임
4	수입신고 수리 이후 단계	- 통관 이후 물품은 관세법령 이외 현지의 내국 법령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며,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현지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함 - 특정 처분이 추후 일방적으로 변경 및 철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5	수출 및 환급단계	- 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해진 기간을 엄수하여 수입 자재를 사용하도록 할 것 - 정해진 기간보다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자금 계획에 반영, 여유를 두고 기다리는 것이 좋음

출처 : 조세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4-2. 원산지증명 가이드

1) 한-베트남 FTA에서의 협정 적용 범위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에 적용한다. 베트남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 내수, 영해 및 영역 위의 상공,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영해 밖에 있는 해양지역이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과 자율발급방식 두 종류가 있다. 기관발급방식의 경우 지정된 기관을 통해 인장이나 서명 등을 받는 방법이고, 자율발급방식의 경우 계약당사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직접 발급주체가 돼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한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기관 증명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국의 경우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3) 발급 신청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주체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4)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은 한-베트남 FTA 협정문 부속서 3-다에 규정되어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다.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한다.

5)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및 제출 면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후 선적일을 포함한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문구가 기재된 FTA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과세가격이 FOB기준 6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원산지 증빙 첨부서류의 제출이 생략되어 신속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 방법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한-베트남 FTA 협정문 부속서 3-다)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참조)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VIETNAM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V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 a)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O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s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Remarks					
210mm X 297mm [백상지 80g/㎡ (재활용품)]					

다음 중 하나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 가능

- 1란: 수출자의 성명(상호)와 주소를 기재
- 2란: 수입자의 성명(상호)와 주소를 기재
- 3란: 운송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항일, 운송수단 편명, 선적항을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기재
- 4란: 수입국 세관공무원이 해당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표시한 후 서명
- 5란: HS CODE가 다른 물품들이 있을 경우 HS CODE 6단위가 같은 물품끼리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 6란: 포장의 표시와 번호를 기재
- 7란: 포장의 포장개수, 포장형태, 송장(인보이스)상의 물품명, 물품수량, 수입당사국의 HS CODE 6단위를 기재. 물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있을 경우 기재
- 8란: 원산지기준을 'WO', 'CTC', 'RVC 40%', 'CTH+RVC 40%', 'PE', 'Article 3.5' 등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기준으로 기재
- 9란: 해당 물품의 총중량을 기재하고 기타 상품의 관례적인 측정단위(부피 또는 개수)를 기재. RVC기준(부가가치기준)이 사용된 경우 FOB수출금액을 기재
- 10란: 송장번호와 송장발급일자를 기재
- 11란: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생산국가명, 수입국가명, 신청일자,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
- 12란: FTA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장소, 발급일자를 기재하고, 발급기관의 서명 및 인인이 기재됨. 재발급일 경우 '진정등본(CERTIFICATE TRUE COPY)'문구가 기재됨
- 13란: 비당사국에서 상품에 대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중계무역등) 'Non-Party Invoicing'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비당사국 회사의 상호와 국가명이 기재하여야 기타 필요시 그 밖의 비고사항을 기재

다수의 품목을 신청할 경우 5란~10란이 별지서식으로 작성될 수 있음

4-3. 원산지검증 가이드

한-베트남 FTA 협정문에 의하면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 무작위로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도 있고, 수입 당사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이나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を 가지는 경우에도 특정 절차에 따라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 검증방식

원산지 검증방식으로는 수입국 관세행정기관이 수출국 세관에 요청해 수출국 관세행정기관이 검증을 주도하는 간접검증방식, 또는 수입국 관세행정기관이 상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직접검증방식이 있다.

한-베트남 FTA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도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수출국 방문검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베트남 관세행정기관이 국내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대상으로 방문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수입국은 검증을 위한 방문을 수행하기 전에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방문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통보를 수출국 발급기관 및 관세당국 등에 통지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방문검증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검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통보를 받은 발급 당국은 제안된 검증방문을 연기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런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연기 요청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당사국 간 합의한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방문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상품의 자격에 대한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허용된다.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의견서나 추가 정보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가 관련 발급 당국에 통지된다.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2)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검증 과정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서명된 날로부터 5년간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의 원산지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원산지 증명서 사본과 해당 상품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보관하는 서류는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이다.

FTA특례법상 보관 서류

분류	설명
수출자	·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수출신고필증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생산자	·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 계약서 · 제2호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수입자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

출처 :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4-4. 소결

베트남의 교역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5.05 한-아세안 FTA와는 별도로 개방 수위를 대폭 상향한 한-베트남 FTA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한-베트남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부록 1. 한-중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
01	WO
02	WO
03	WO
04	WO
05	WO
06	WO
07	WO
08	WO
09	WO
10	WO
11	WO
12	WO
13	WO
14	WO
15	WO
16	CC RVC(45)
17	WO
18	CC CC or RVC(50)
19	CC CC, except from chapter 4
20	CC CC, except from chapter 7 CC, except from subheading 0805.20, 0805.90
21	CTH
22	CC CTH
23	CC CTH
24	WO
25	CTH CTSH WO
26	CC WO
27	CTH CTSH
28	CTH CTH, except from subheading 2530.90 CTSH, except from subheading 2840.11 CTSH, except from subheading 2840.19
29	CTH
30	CTH CTH, except from heading 30.03
31	CTH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
32	CTH
33	CTH
	CTH, except from subheading 1211.20, 1302.19
34	CTH
35	CTH
	CTH or RVC(40)
	CTH, except from heading 11.08
36	CTH
37	CTH
	CTH, except from heading 37.07
38	CTH
	WO
39	CTH
	WO
40	CTH
	WO
41	CTH
	WO
42	CTH
43	CTH
44	CC
	CTH
45	CTH
46	CC
	CTH
47	CTH
	WO
48	CTH
	CTH(ex 48.09)
49	CTH
50	CC
	CTH
	CTH(ex 50.04, 50.05)
	WO
51	CC
	CTH or RVC(40)
	CTH (ex 51.06~51.13, 52.05~52.12, ch54, 55.09~55.16) or RVC(40)
	CTH(ex 51.06, 51.07, 51.08) or RVC(40)
	WO
52	CTH
	CTH or RVC(40)
	CTH (ex 51.06~51.13, ch54, 55.09~55.16) or RVC(40)
	CTH(ex 52.05, 52.06) or RVC(40)
	WO
53	CC
	CTH
54	CC
	CTH(ex 51.06~51.10, 52.05 ~52.06, 54.01 ~54.02, 54.04, 54.06, 55.09 ~55.10) or RVC(40)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
55	CC (ex 54.01 ~54.06; or RVC(40)
	CTH(ex 51.06~51.13, 52.05~52.12, 54.01~54.02, 54.04, 54.06~54.08, 55.09~55.16)or RVC(40)
	CTH(ex 52.05~52.07, 54.01~54.02, 54.04, 54.06, 55.06~55.11) or RVC(40)
	WO
56	CC (ex 52.05~52.07, 54.02, 54.04, 55.01, 55.03, 55.06~55.16) or RVC(40)
57	CC (ex 52.05~52.07, 54.01~54.02, 54.04, 54.07~54.08, 55.08~55.16) or RVC(40)
58	CC(ex 52.05~52.07, 54.01~54.02, 54.04, 54.07~54.08, 55.08~55.16) or RVC(40)
59	CC, (ex 52.05~52.07, 54.07~54.08, 55.12~55.16) or RVC(40)
	CC, (ex 54.07~54.08, 55.12~55.16) or RVC(40)
60	CC, (ex 54.01~54.02, 54.04, 54.07~54.08, 55.01, 55.03, 55.06~55.16) or RVC(40)
61	CC or RVC(40)
62	CC or RVC(40)
63	CC or RVC(40)
	WO
64	CTH
65	CTH
66	CTH
67	CTH
68	CTH
69	CTH
70	CTH
	WO
71	CC
	CTH
	CTSH
	WO
72	CTH
	CTH, (ex 72.06)
	CTH, (ex 72.06 or 72.07)
	CTH, (ex 72.08)
	CTH, (ex 72.08 or 72.09)
	CTH, (ex 72.13 or 72.14)
	CTH, (ex 72.18)
	CTH, (ex 72.18 or 72.19)
	CTH, (ex 72.24)
	CTH, (ex 72.24, 72.25)
	WO
73	CTH
74	CTH
	CTH, (ex 74.07)
	CTH, (ex 74.09)
	CTH, (ex 74.11)
75	WO
	CTH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
	WO
76	CTH
	CTH, (ex 76.04)
	CTH, (ex 76.05)
	CTH, (ex 76.08)
	WO
78	CTH
	WO
79	CTH
	WO
80	CTH
	WO
81	CTSH
	For Bismuth and articles there of : CTSH;
	For waste and scrap : WO
	For cermets and articles there of : CTSH;
	For waste and scrap : WO
	For Maganese and articles there of : CTSH;
	For waste and scrap : WO
	For unwrought base metal and powders : CTSH;
82	CC
	CTH
83	CTH
84	CTH
	CTH and RVC(45)
	CTH and RVC(50), provided that the Computer Numerical Control (CNC) System shall be originating within the meaning under the rule for 85.37 or 90.32
	CTSH
	RVC(40)
	RVC(45)
	CTH
	CTH and RVC(50)
	CTH or RVC(40)
	CTH or RVC(45)
	CTH or RVC(55)
	CTSH
	CTSH or RVC(40)
	WO
86	CTH
87	CTH
	CTH and RVC(60)
	CTH or RVC(40)
	RVC(40)
	RVC(50)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
88	CTH
89	CC or RVC(60)
90	CTH
	CTH and RVC(50)
	RVC(45)
91	CTH or RVC(40)
92	CTH or RVC(40)
93	CTH or RVC(40)
94	CTH or RVC(40)
95	CTH or RVC(40)
96	CTH or RVC(40)
97	CTH or RVC(40)

부록 2. 한-베트남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HS 2	원산지결정기준
01	WO
02	WO
03	WO
04	CC or RVC(45)
	CTH(0403 역외산비중제한)or RVC(45)
	CTH(0406.30역외산비중제한) or RVC(45)
	CTSH
	WO
05	WO
06	WO
07	WO
08	CTSH
	WO
09	A. Thyme ; bay leaves : WO B. Other : RVC(40)
	CC
	CC or RVC(40)
	CTSH
	RVC(40)
	RVC(45)
	WO
10	WO
11	A. Rice flour, Rye flour: WO
	B.Others:CC(10.03,10.06 완전생산)or RVC40(10.03,10.06 완전생산)
	CC
	CC or RVC(40)
	CC(ex 1003,1006) or RVC 40(ex 1003,1006)
	WO
12	CTH or RVC(40)
	WO
13	CC
	CC, (ex 1211.20)
	WO
14	CC
	WO
15	CC
	CC or RVC(40)
	CTH or RVC(40)
16	CC

HS 2	원산지결정기준
	CC or RVC(40)
	CTH or RVC(40)
	CTH(ex, ch1, ch2, ch5) or RVC 40(es, ch1, ch2, ch5)
17	CC, (ex Ch12)
	CTH or RVC(40)
	CTH, (ex 04.09,17.02)
18	CTH or RVC(40)
19	CC or RVC(40)
	CTH or RVC(40)
	CTH(ch 10 완전생산)or RVC40(ch 10 완전생산)
20	CC or RVC(40)
	CC(ex, ch8) or RVC 40 (ex, ch8)
	CC, (ex Ch12)
	CC, (ex Ch8)
	CTH or RVC(40)
21	CTH
	CTH or RVC(40)
	CTH or RVC40(1211.20, 1212.20,1302.19 완전생산)
22	CC or RVC(40)
	CTH or RVC(40)
	RVC 40(1211.20, 1302.19 완전생산)
23	CC
	CC(ex, ch8) or RVC 40 (ex, ch8)
	CTH or RVC(40)
24	CTH
	CTH or RVC(40)
	CTH(24.03역외산비중제한)
	WO
25	CTH or RVC(40)
	WO
26	CTH or RVC(40)
27	CTH or RVC(40)
	CTSH
28	CTH or RVC(40)
29	CTH or RVC(40)
	CTSH or RVC(40)
30	CTH or RVC(40)
31	CTH or RVC(40)
32	CTH or RVC(40)
33	CTH or RVC(40)
	CTH(1211.20, 1302.19 완전생산)or RVC 40(1211.20, 1302.19 완전생산)
	CTSH or RVC(40)
34	CTH or RVC(40)
35	CTH or RVC(40)
36	CTH or RVC(40)
37	CTH or RVC(40)
38	CTH or RVC(40)

HS 2	원산지결정기준
39	CTH or RVC(40)
40	CTH or RVC(40)
41	CTH or RVC(40)
42	CTH or RVC(40)
43	CTH or RVC(40)
44	CTH or RVC(40)
45	CTH or RVC(40)
46	CTH or RVC(40)
47	CTH or RVC(40)
48	CTH or RVC(40)
49	CTH or RVC(40)
50	CC or RVC(40)
	CTH or RVC(40)
	CTH(ex, 5004, 5005) or RVC 40
	CTH or SP(최소한2공정이상의예비공정또는마무리공정을수반한염색또는날염 공정)or RVC(40)
51	CC or RVC(40)
	CTH or RVC(40)
	CTH(ex, 5106~5108) or RVC 40
	CTH or SP(최소한2공정이상의예비공정또는마무리공정을수반한염색또는날염 공정)or RVC(40)
52	CC or RVC(40)
	CTH or RVC(40)
	CTH(ex, 5204~5206) or RVC 40
53	CC or RVC(40)
	CTH or RVC(40)
	CTH or SP(최소한2공정이상의예비공정또는마무리공정을수반한염색또는날염 공정)or RVC(40)
54	CC or RVC(40)
	CTH or RVC(40)
55	CC or RVC(40)
	CTH or RVC(40)
	CTH(ex,5508~5510) or RVC 40
56	CC or RVC(40)
57	CC or RVC(40)
58	CC or RVC(40)
	CTH or RVC(40)
59	CC or RVC(40)
60	CTH or RVC(40)
61	CC(역내재단및봉제수행)or RVC(40)
62	CC or RVC(40)
	CC(역내재단및봉제수행)or RVC(40)
63	CC or RVC(40)
	WO
64	CTH or RVC(40)
65	CTH or RVC(40)
66	CTH or RVC(40)
67	CTH or RVC(40)

HS 2	원산지결정기준
68	CTH or RVC(40)
69	CTH or RVC(40)
70	CTH or RVC(40)
71	CTH or RVC(40)
	CTSH or RVC(40)
	WO
72	CTH or RVC(40)
	CTH,(ex 72.19) or RVC(40)
	CTSH or RVC(40)
73	CTH or RVC(40)
74	CTH or RVC(40)
	CTH, (ex74.07)or RVC(40)
	CTH, (ex 74.08)or RVC(40)
75	CTH or RVC(40)
	CTSH or RVC(40)
76	CTH or RVC(40)
	CTH(ex,7605) or RVC 40
	CTH, (ex 76.04)or RVC(40)
78	CTH or RVC(40)
79	CTH or RVC(40)
80	CTH or RVC(40)
81	CTH or RVC(40)
	CTSH or RVC(40)
82	CTH or RVC(40)
83	CTH or RVC(40)
84	CTH or RVC(40)
	CTSH or RVC(40)
	CTSH, (ex 8410.11,8410.12)or RVC(40)
	CTSH, (ex8410.11,8410.13)or RVC(40)
	CTSH, (ex8410.12,8410.13)or RVC(40)
85	CTH or RVC(40)
	CTSH or RVC(40)
86	CTH or RVC(40)
87	A. Drive-axles with differential and non-driving axles: CTH or RVC(40)
	B. Parts: CTH or RVC(45)
	A. Gear Box: CTH or RVC(40)
	B.Parts:CTHorRVC(45)
	A. Radiators: CTH or RVC(40)
	B.Parts:CTHorRVC(45)
	A. Silencers (mufflers) and exhaust pipes: CTH or RVC(40),
	B.Parts:CTHorRVC(45)
	CTH or RVC(40)
	RVC(45)
88	CTH or RVC(40)
89	CTH or RVC(40)
90	CTH or RVC(40)
91	CTH or RVC(40)
92	CTH or RVC(40)

HS 2	원산지결정기준
93	CTH or RVC(40)
94	CTH or RVC(40)
95	CTH or RVC(40)
	CTSH or RVC(40)
96	CTH or RVC(40)
	CTSH or RVC(40)
97	CTH or RVC(40)